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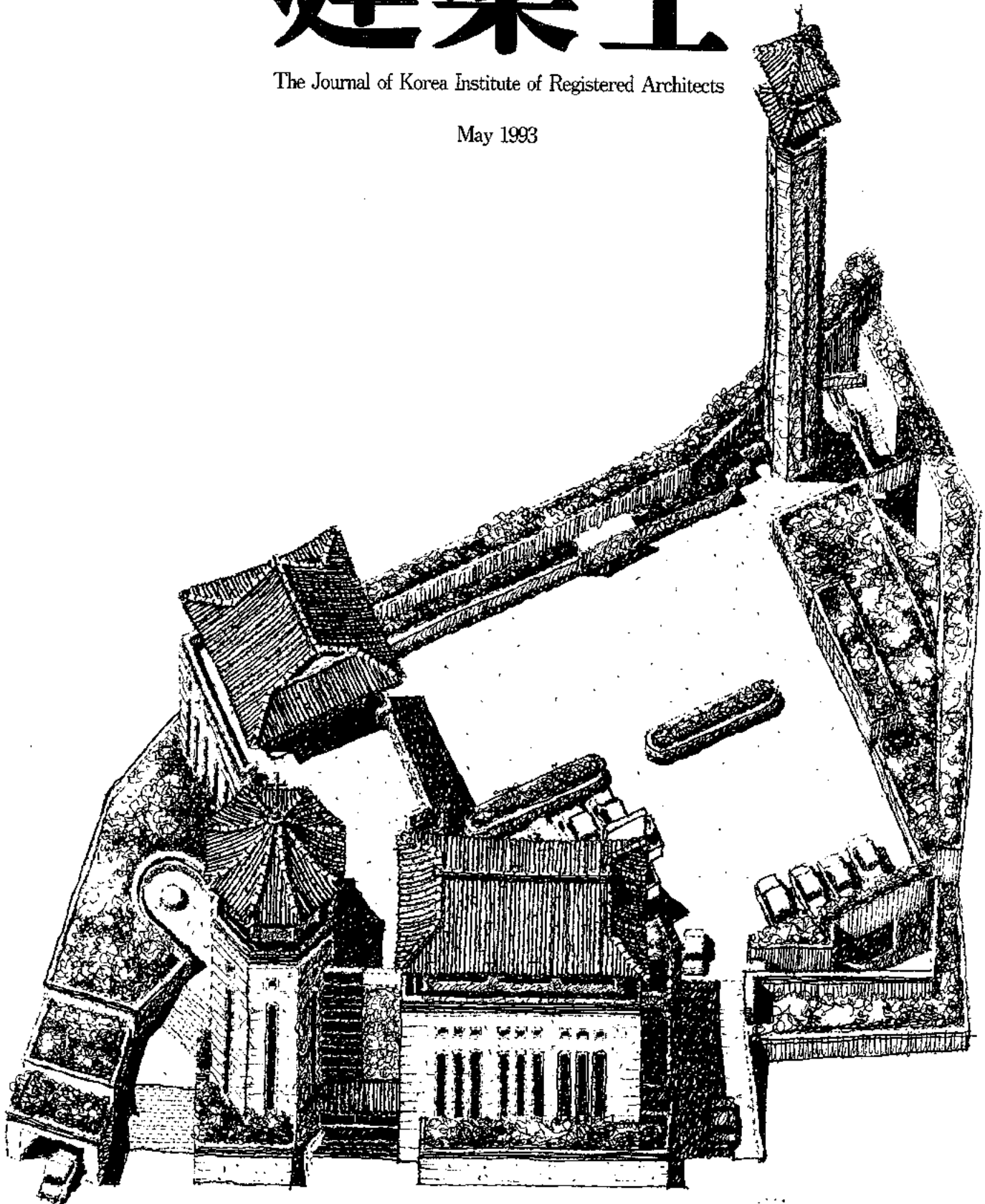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3년 5월호
통권 289호 (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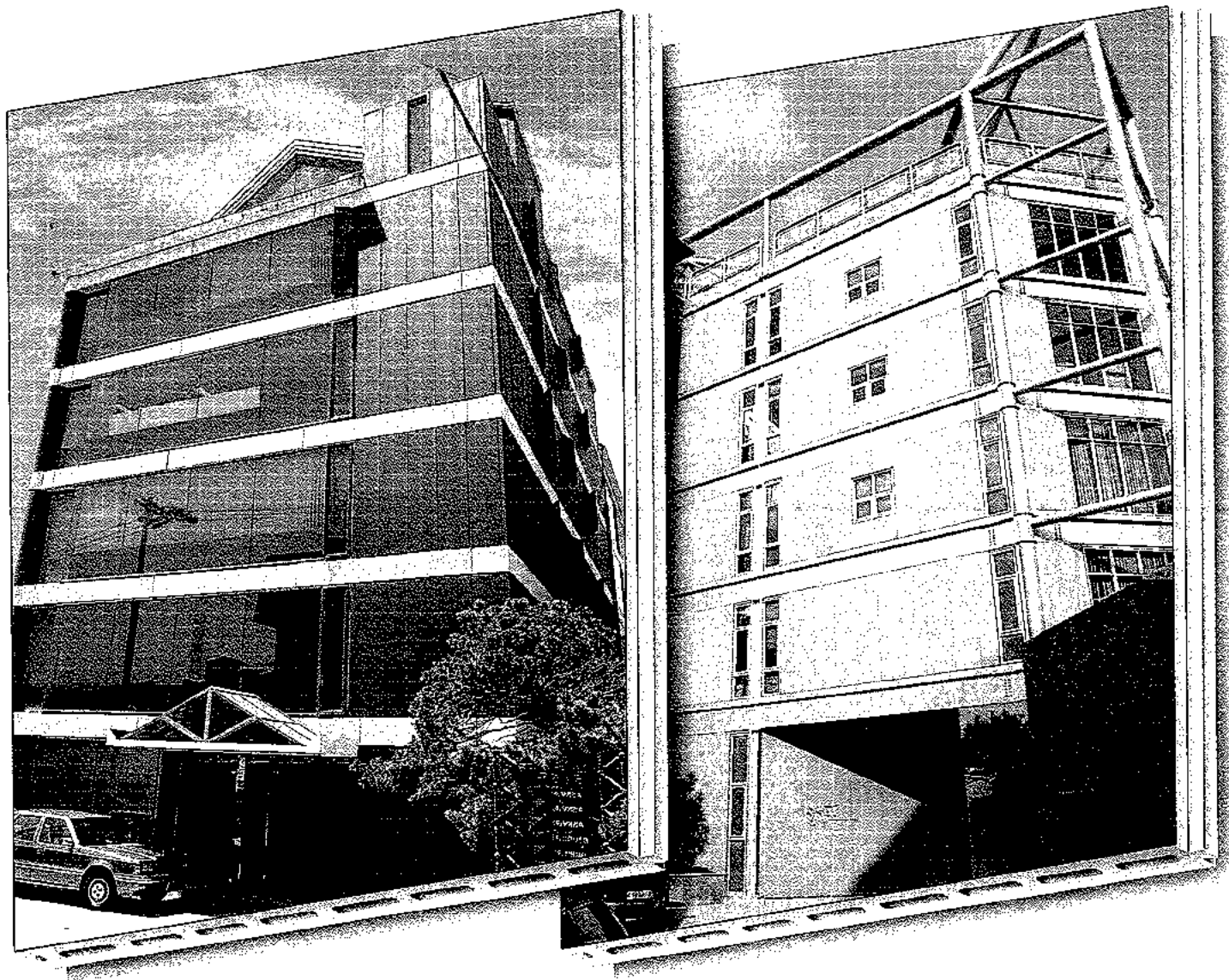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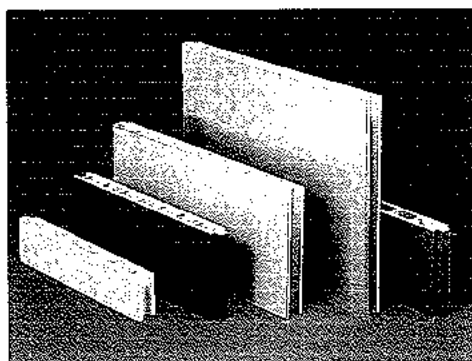
May 1993



5
MAY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²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किन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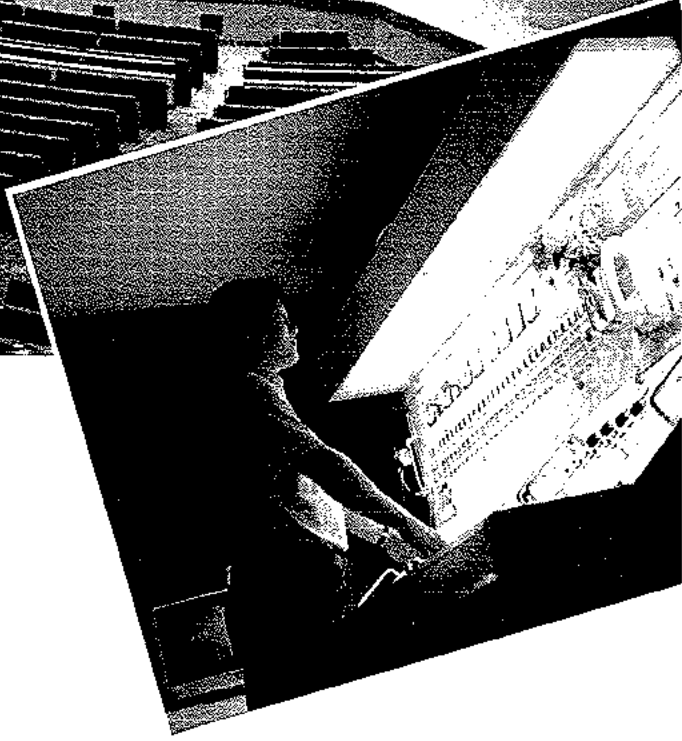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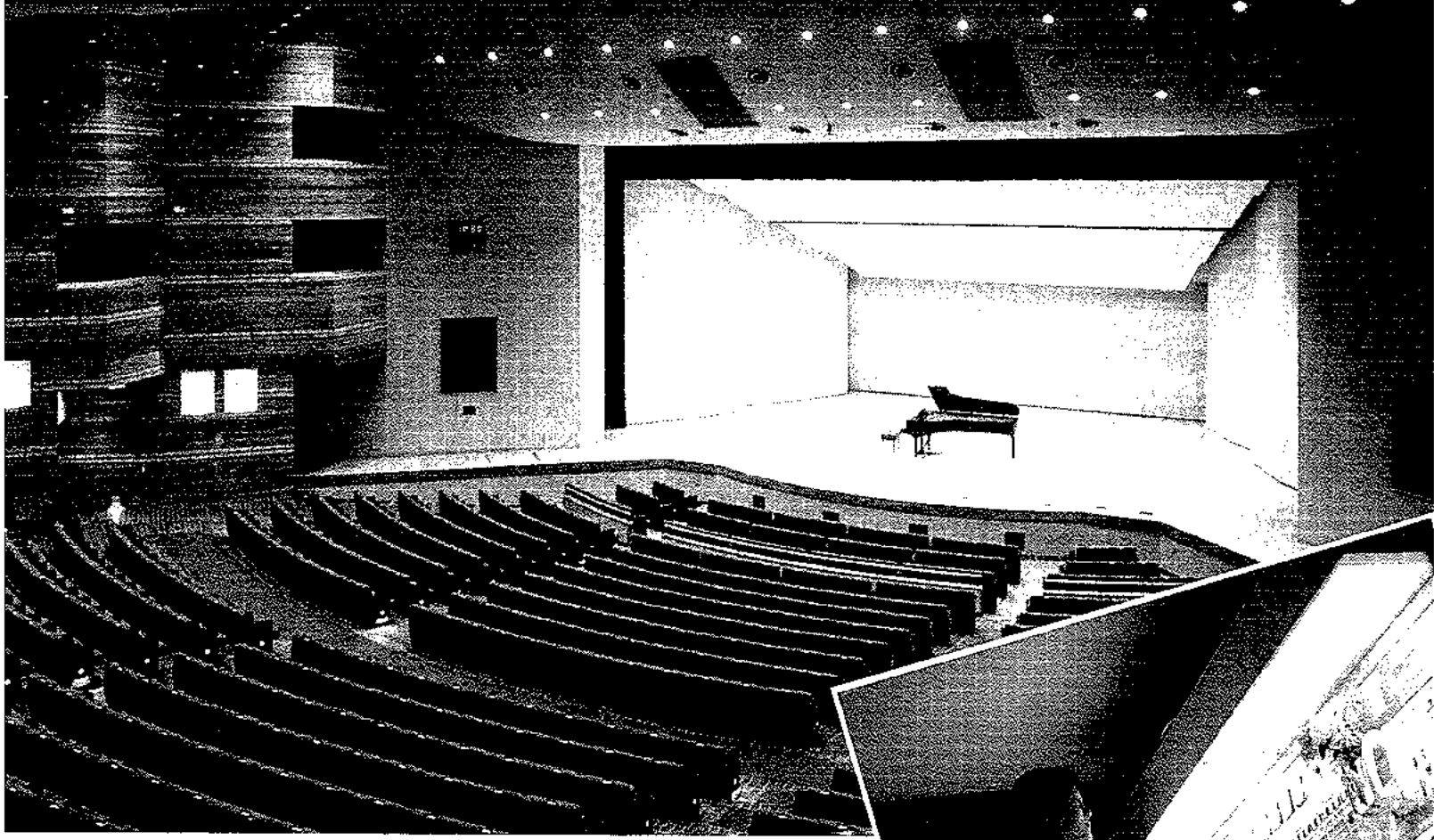
벽산 베이스



대표전화 : (02)260-6114
FAX : (02)275-0050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라튼위커킬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 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분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봉신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
|--|--|--|

주요생산품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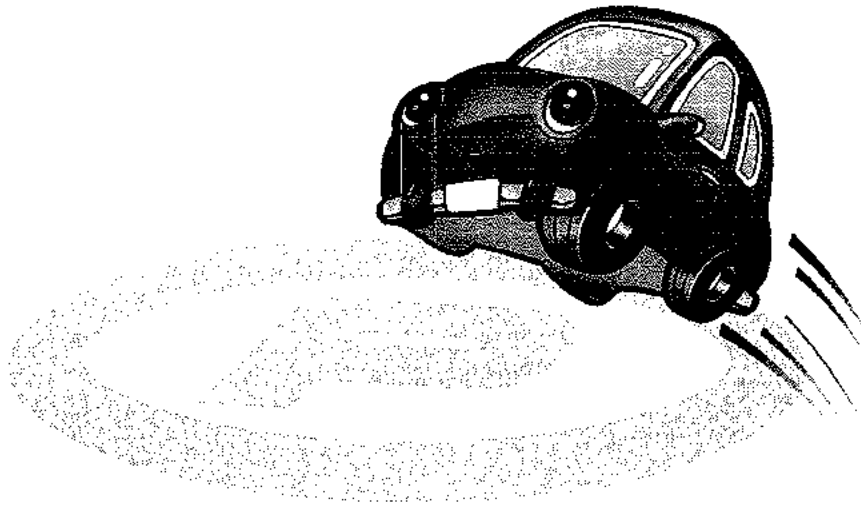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阜面 山 209-1 松蔭里 山 209-1
TEL. (0341) 997-4184, (02) 63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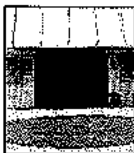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의 장치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자의 워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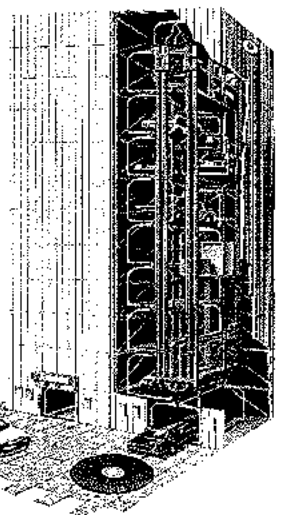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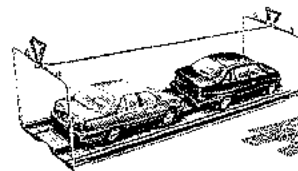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방식 대형채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캐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캐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선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제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삼성중공업은 국내외에서 10여년전부터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하고,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의 장치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자의 워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방식: 대형채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캐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초고속형: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턴테이블 내장형: 캐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선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이중탑제형: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지하 다층 순환방식: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는

삼성중공업

어머니,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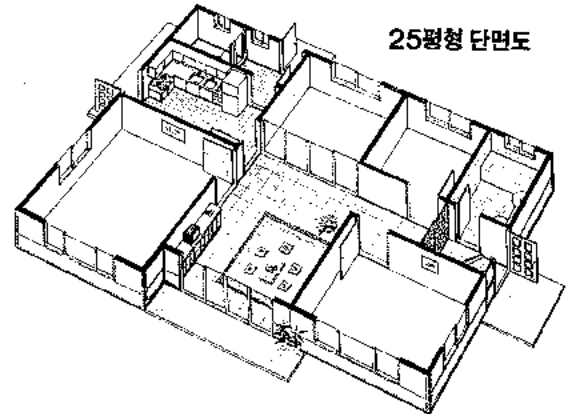
인슈그린하우스
INSU GREEN HOUSE

농촌의 주거공간 — 인슈 그린하우스가 바뀌드립니다.

힘든 눈·발일 끝내시면
높은 부엌 문지방 오르내리시면서 허리 한 번
펴보시지 못하시고 나이드신 고향의 어머니!

‘네사, 고향이 좋다’ 시는 어머니는 편리한 도시생활도
싫다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나요...
이제 그 푸르른 고향, 좋은 터전 위에 전원주택
인슈그린 하우스가 생깁니다.
어머니 편히 지내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의 편리하고 행복한 집 —
인슈그린 하우스!



25평형 단면도

첨단 신 건축자재로 시공되는
인슈 그린하우스의 특징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오래 연구 끝에 개발된 인슈패널 시스템과
다년간 축적된 연합인수의 노하우로 실현되는 전원주택 —
공정제조를 통한 품질 고급화, 시공 단순화 등으로
기존 주택의 건축공법에 비해 25~30% 저렴하게
시공됩니다.

탁월한 주거기능이 있습니다.

최고의 단열소재 폴리우레탄 폼(PUR)과 1급
불연재 그라스울을 사용하는 전원주택 —
구조성과 내구성은 물론이고, 방음, 방수, 방진 기능으로
부터 냉·난방비의 절감효과에 이르기까지 기존 주택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능으로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로부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치밀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연합인수,
대명건설 —
애프터 서비스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주택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님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고, 생활도 편해지니
퇴직후에 저도 여기서 살고 싶군요!”



“영농생활은 물론이고
집안일 하시기도 편하시겠어요!”



“화장실이 깨끗한 욕실과 함께 있어
이제 우리집처럼 편해요!”

20 평형 전용면적 : 65.6㎡ (19.88평)

23 평형 전용면적 : 76.2㎡ (23.1평)

25-A 평형 전용면적 : 84.24㎡ (25.53평)

25-B 평형 전용면적 : 81.69㎡ (24.76평)

한국의 전통 양식을 기초로하여
영농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됩니다.

욕실과 세면 시설이 주택 입구에 설치
되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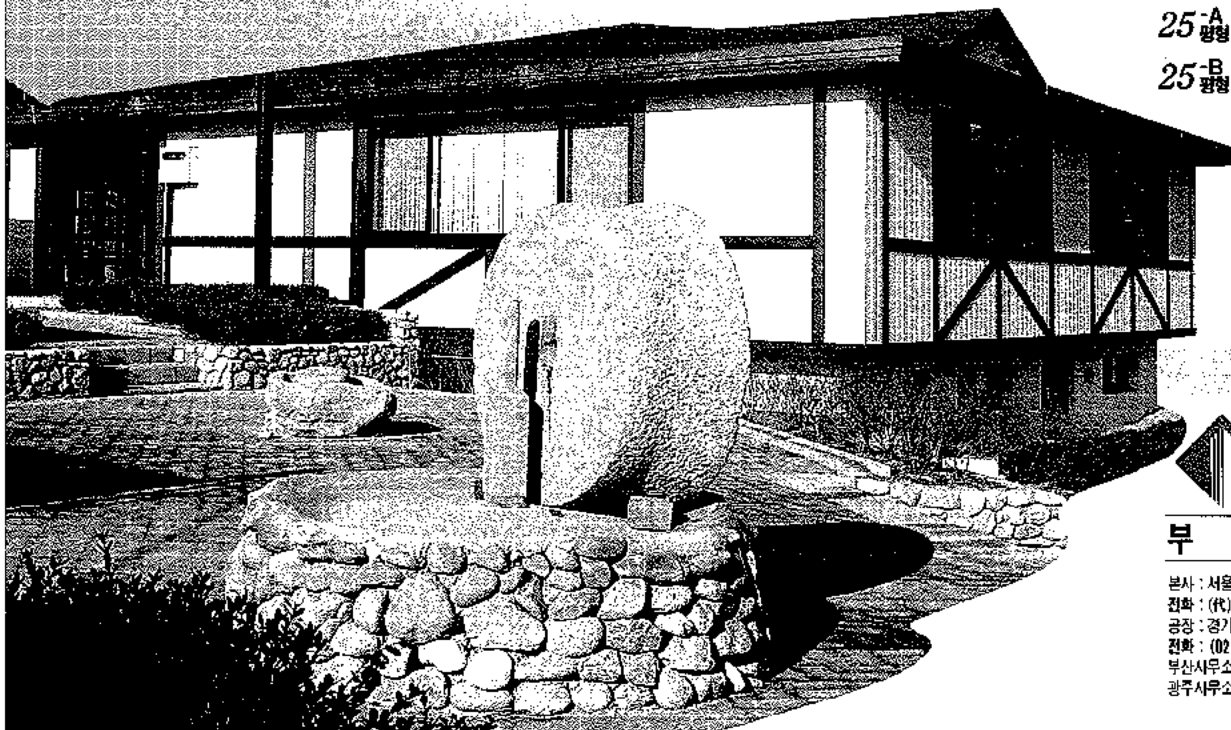
노부모님들을 위한 방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수
주식회사 대명건설

부 설 기술 연구소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수빌딩
전화 : (대) (02) 555-6881, FAX : 553-1851
공장 : 경기도 아전군 배서면 도림리 39-2
전화 : (02) 745-0687, (0336) 34-8880, FAX : (0336) 32-4243
부산사무소 : (051) 816-7781
광주사무소 : (062) 527-7144 대구사무소 : (053) 66-2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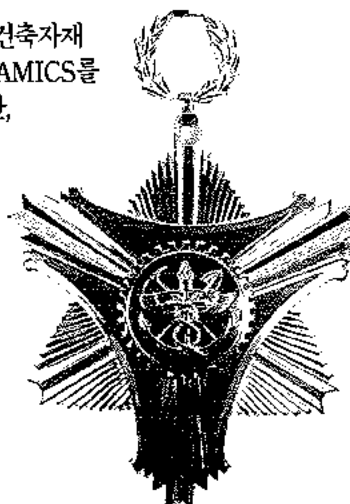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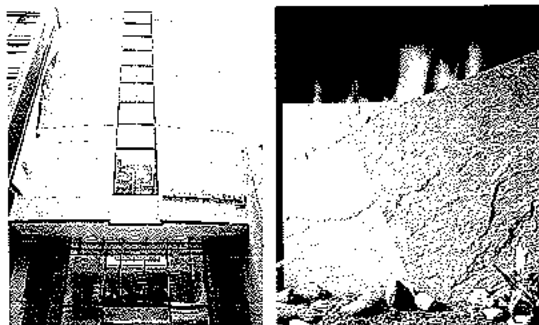


시거츠 내이장개 燒結石 BIO-HAPPY STONE—

고려청자의 그 기술과 정신을 창고의 모퉁이 어디까지 이식시킨다

세라믹제품 제조전문업체로 국가 중화학공업 발전에 이바지 해온지 30년—
'91년 우수KS업체대상수상에 이어 '92년 제 18회 전국 품질관리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계 수준의 각종 염기성 내화물, 국내 최초의 신건축자재
소결석 BIO-HAPPY STONE, 신소재 FINE CERAMICS를
고려청자를 빚는 장인정신으로 최고급 제품을 생산,
21세기 최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2년 은탑산업훈장수상

BIO-HAPPY STONE의 3가지 자부심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9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워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9가지 색상 외 주문생산 가능)

2. 뛰어난 가공성

1,200℃ 이상에서 소결(燒結)한 불연제품으로 수축, 팽창이 적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3. 선택의 다양함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600mm×25,
600×900mm×25로 언제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을 창조합니다.



'92년 전국 품질관리
현업조 경진대회 은상수상



'91년 우수KS업체 대상수상



'91년 전국 품질관리
현업조 경진대회 동상수상

BIO-HAPPY STONE 직판장 및 전국 각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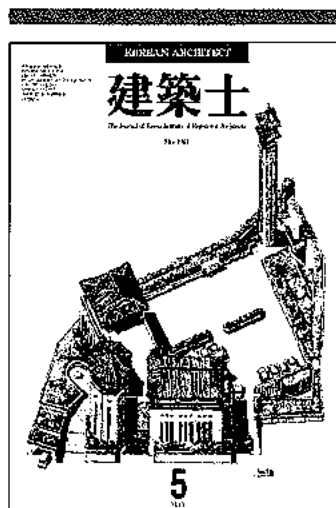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본사 : 전제사업부 TEL(0562)91-2051~3 / 서울직판장 TEL(02)516-7772~4 FAX 616-7775 전국각대리점 / 서울지역 : 옥산빌업 : TEL(02)540-1637~9
FAX 540-1640 / 대구지역 : 신희특수 : TEL (053) 755-9994, 742-1576 FAX 751 5884, 우성상사 : TEL (053)582-5750~1 FAX582-5751 / 광주지역 :
영신금속(주) : TEL(062) 524-7151~3 FAX 524-7154, (주)창일건설 : TEL(062) 222-1224, 265-9008 FAX 265 1951 / 울산지역 : 삼화상사 :
(0522)43-7068~9 FAX 43-7069 / 마산지점 : 동양건설(0551)92-3335~6 FAX 55-5700 / 포항지역 : 동양상사 : TEL(0562)81-2220, 81-7482



차례/1993년 5월호 통권 제289호

역대작품	춘천종합문화예술회관/韓淑元	8
	영등포 구민회관/柳春秀	14
	힐하우스/趙載元+金煥喆	20
	성락교회/咸仁善	26
	코스모 플라자/尹柱憲	32
	인천 신흥동 한일빌딩/宋光燮	36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주)정림건축	40
계곡작품	장석교회/崔英集	42
스케치	스케치 5제/洪宰東	46
알려져 생각하여	구조 代案 제시의 활성화/李昌男	48
비평	비전의 제시와 통념의 정리/李範宰	50
현상설계	대전시청사	60
	거여지구 아파트 단지계획	70
	분당성당	86
기고	"P"빌딩 구조설계에 얹힌 이야기(3)/李昌男	82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	85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94
통계	1993년 3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02
협조소식		104



표지사진 : 장석교회
(설계/최영집)

發行人 : 李永熙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員長 : 李鍾寬

委員 : 金文圭, 金仁喆, 吳元根,
金相景, 金煥孜, 姜健熙

編輯·取材 : 出版事業部/梁元錫, 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170

電話 :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 Lee, Young-He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Jong-Kwan

Member : Kim, Moon-Kyu / Kim, In-Cheol
Oh, Won-Keun / Kim, Sang-Kyeong /
Kim, Kyeong-Ja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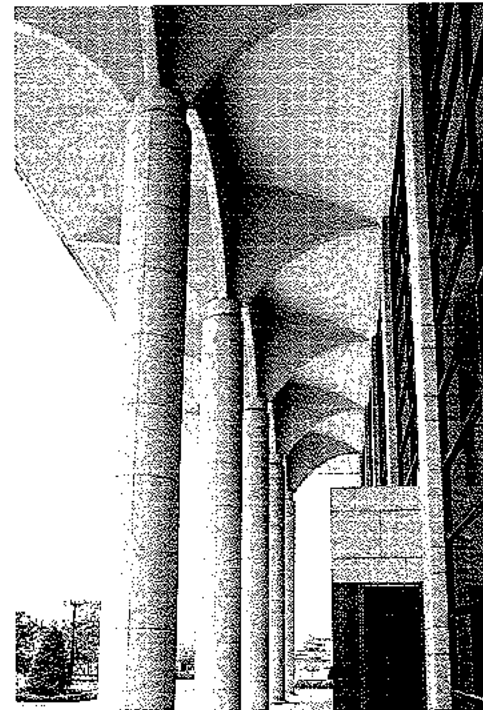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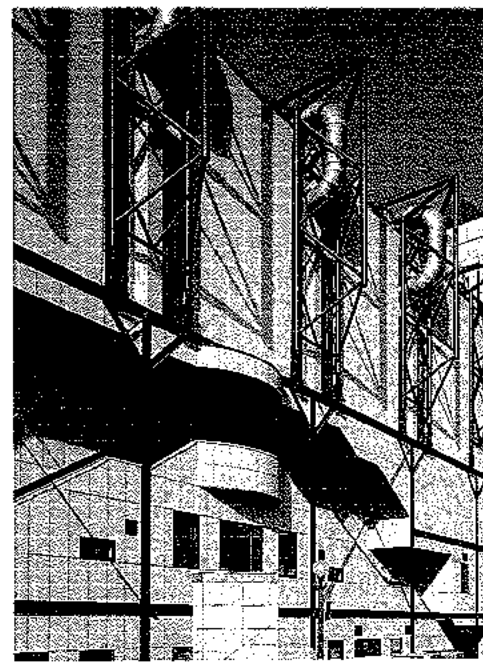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1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FOUNDING	Chunchön Culture and Art Foundation / Han, Suk-Won	8
	Yöngdöngpo Civic Center / Ryu Choon-Soo	14
	The Hill House / Cho, Jae-Won & Kim, Hong-Chul	20
	Sungrak Baptist Church / Hahm, In-Sun	26
	Cosmo plaza / Yoon Ju-hun	32
	Inchon Shinheungdong Hanil Building / Song, Kwang-Sub	36
	The Hall of Humanity Faculty, Ewha Women's University	40
PROCESS WORKS	Changsuk Church / Choi, Young-Jip	42
SKETCH	5 Project / Hong, Jae-Dong	46
ESSAY	Let's Activate, To Make a Alternative Idea on Structural Design / Lee, Chung-Nam	48
CRITICISM	Presentation of Vision and Arrangement of Common Idea / Lee, Beom-Jae	50
COMPETITION	Daejeon City Hall	60
	Keoyeodong Apartment Town	70
	Poondang Catholic Church	80
FEATURE	Structural Designed Procedure of "P" Building / Lee, Chang-Nam	82
LAWS &		
ORDINANCE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85
STATISTICS		102
KIRA NEWS		10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감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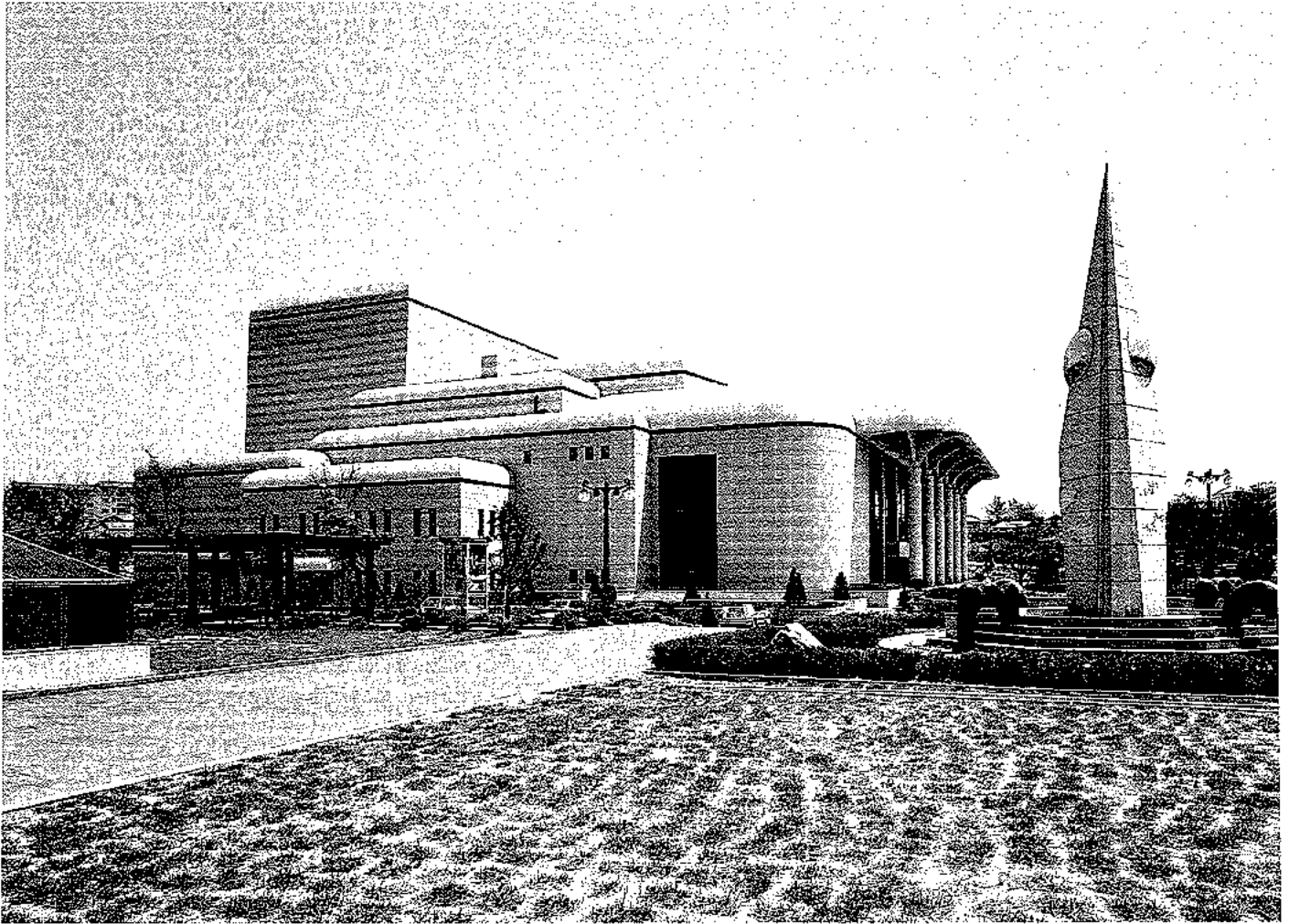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서울특별시건축사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09-25, 333-6411, 관악분회/관악구신원동1422-17, 882-6744,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0-3425,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경서분회/경서구회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0, 446-5244,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원동101-7, 923-6313, 중보분회/중보구수성동46-18, 735-0905,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336-5057,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중구분회/중구로2가49-11, 279-1415, 용산분회/용산구인효로1가129-22, 712-7647,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강남분회/강남구노원동242-30, 511-8515,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1019-79, 902-8076,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송파분회/송파구민복동166-46, 923-6123, 성북분회/성북구상선5가110, 923-4101,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3-4048,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 전구 법전동847-18, 28(06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8, (053)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 (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 수원시매산로37(124-5, (0331)47-6129~30,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31)43-6662, 7072,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323-5, (0343)49-2698, 구전분회/구천시중구원비동88-1, (032)664-1534,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15, 의정부분회/의정부시정무동182, (0351)2-1683, 송탄분회/송탄시서정동343-22, (0333)4-6153, 고양분회/고양시원곡동164-1, (0344)63-8902,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이천분회/이천시인원동192-1, (0336)635-6545, 평택분회/평택시현삼동464-7, 682-2875,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 춘천시육천동39-5, (0361)54-2442,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 (0391)2-2262,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3-5081,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동1리90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87-3, (0431)56-2752, 53-7342, 충주분회/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제천분회/제천시외동8-8, (0443)43-6253,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충청남도천안시대성동452-2, (042)256-4088,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련리239-1, (0451)32-2755,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2-2217,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10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서시송동635-5(대륙빌딩 508), (0652)87-6007~8, 이리분회/이리시남동1가77-22, (0653)52-3304, 군산분회/군산시신창동35-4, (0654)445-4060, 남원분회/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전라남도경주시 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062)364-7567, 33-9944,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순천분회/순천시상원동51-11(0661)3-2457,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141번지, (0652)1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중구중인동17(285번지, (053)425-4904, 포항분회/포항시북도동13-8, (0662)44-6029, 46-1664,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771-4, (0561)3-3638, 구미분회/구미시서원동964-204, (0546)32-7517,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51)54-5708, 김천분회/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41, 영주분회/영주시후천2동612-52, (0572)33-7504, 김천분회/김천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5,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인동37(47, (0551)46-4530~1,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진주분회/진주시민정동7-20, (0591)41-6403, 창원분회/창원시서호동163-18, (0557)44-3232, 김해분회/김해시부림동611-1, (0525)35-5692,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6)43-0090,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34-3050, 거제분회/거제군신원읍고현리130-2, (0558)635-3432, 남천포분회/삼천포시동진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춘천종합문화예술회관

Chunchŏn Culture and Art Foundation

韓淑元(주) / 우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Designed by Han, Suk-Won



①

위치 / 강원도 춘천시 효자 1동 산 40-2번지 일대

대지면적 / 35,191㎡

건축면적 / 3,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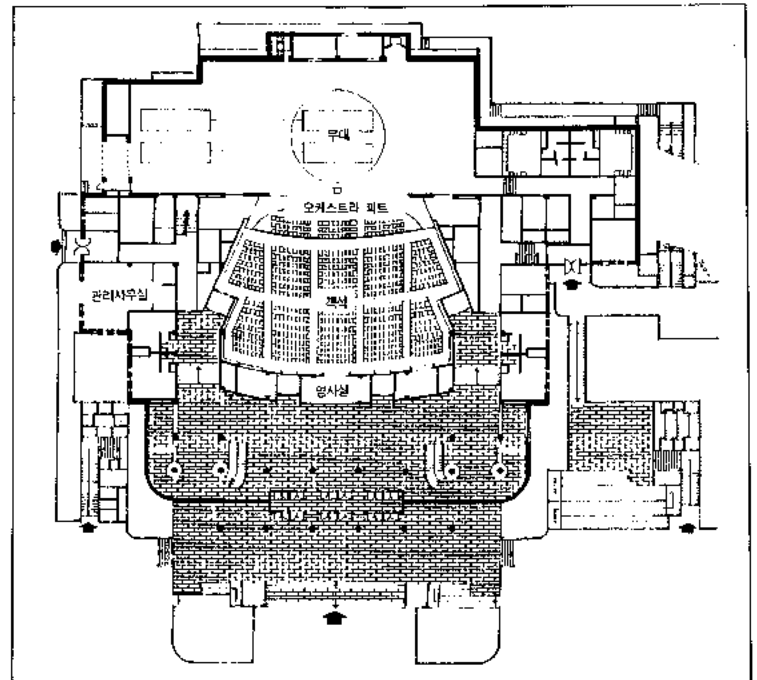
연면적 / 9,654㎡

규모 / 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외부미감 / 화강석 버너마감(포천석+문경석),
석재 뿔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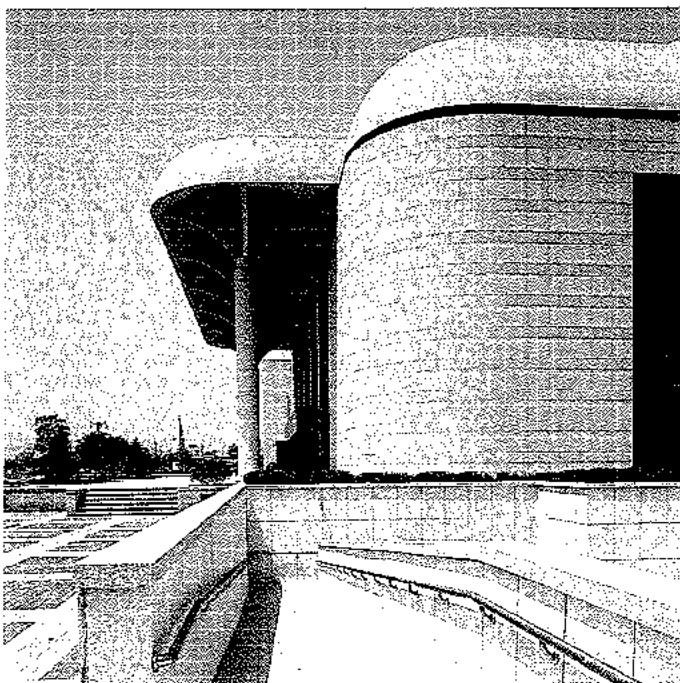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③ 전면 전경
- ④ 외벽모서리 상세
- ⑤ 외부 디테일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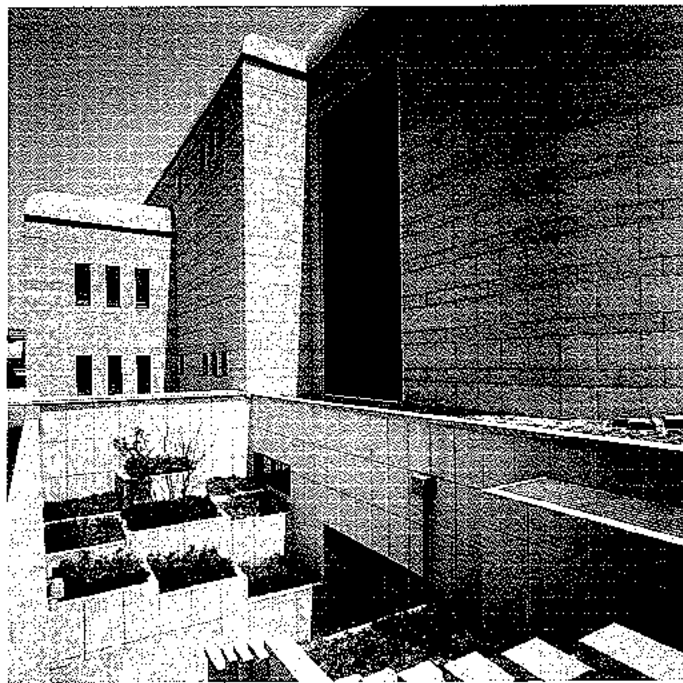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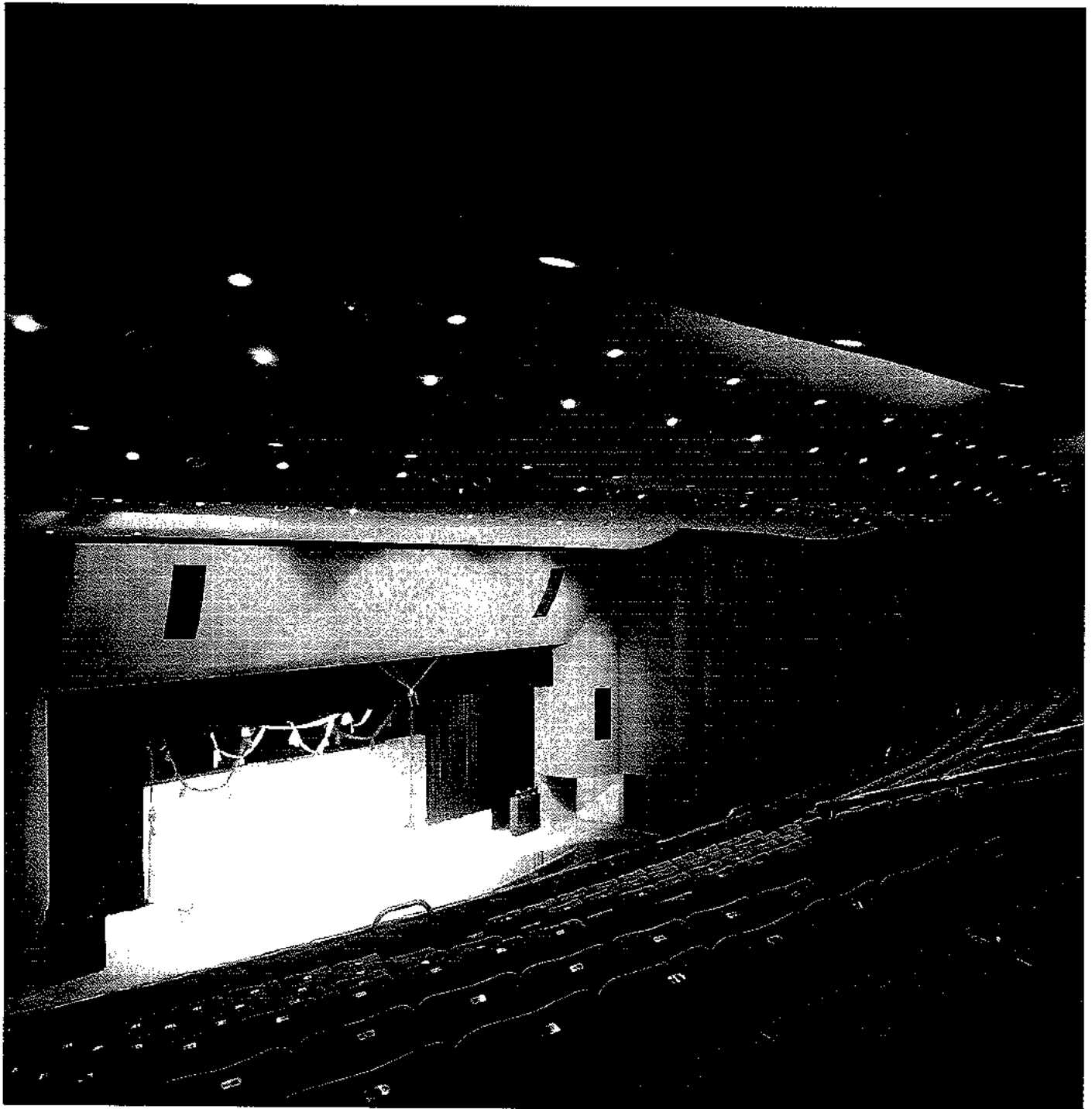
3



4



5



6

배경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건축물의 조형미가 도시미관에 기여하며, 회관의 부지는 공원으로 개발하여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도시환경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있다.

형태

건물의 이미지는 폐쇄된, 비교적 넓은 외벽을 재래의 민가와 토담의 벽면이 갖는 토속적인 정취와 강원도의 상징적 이미지를 지니는 산의 형태를 기초로 한 낮고 부드럽고 수평적인 선과 면의 요소를 갖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매스는 소규모

모로 분할하여 작은 형태의 집합체로 구성하여 중첩된 산의 인상을 은유하고 아기자기한 변화를 갖도록 하였으며, 외벽의 지면 높이에 변화를 주어 대지에 대한 적응이 되도록 하였다.

차마파라넷은 재래의 민가와 산봉우리의 고선을 도입하여 수직벽면과 곡면지붕이 조화되도록 하며 예리한 스카이라인을 피하고 건물 전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시도로써 형태의 요철 분할을 다시 건물 전체로 통일하게 외벽의 수평성이 도입되었다.

토지이용

부지가 주 간선도로에서 격리된 점과 동·서방향으로 길고 부정형인 점을 감안하여 외부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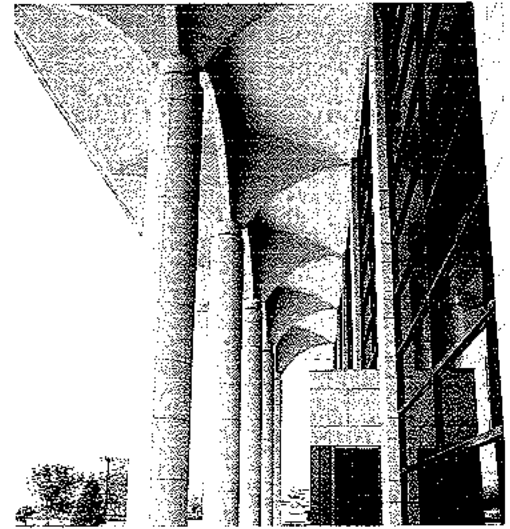
의 접근성과 부지내의 시설 및 동선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높이도록 하고, 진입로와 순환로의 위치, 지형상의 고저, 경관상의 이유로 도로, 광장, 주차장은 남측에 배치, 건물은 북측으로 배치되도록 하였다.

기능

본 회관의 시설은 특정 공연예술의 장르를 수용하기 위한 전용시설이 아닌 다양한 예술종목을 수용하는 복합용도의 시설로써 연구, 영화는 물론 완전 편성 관현악 및 발레, 뮤지컬, 오페라의 공연이 가능한 무대크기와 1,100명 규모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로비, 부대지원시설 및 부속설과 국악전수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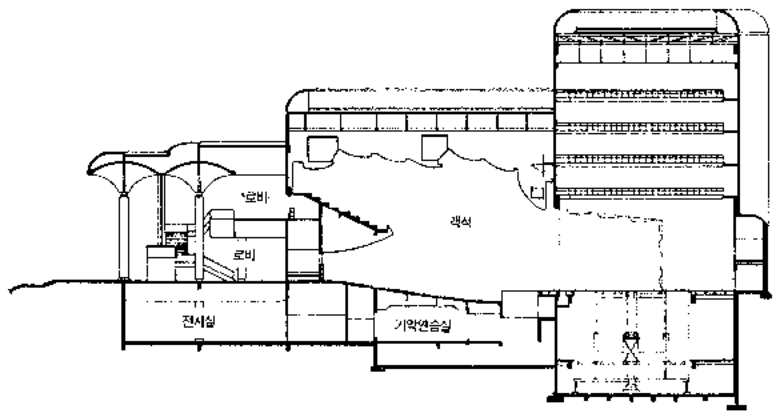


9

- ⑥ 공연장 무대 전경
- ⑦ 재래의 민가와 신봉우리의 곡선을 도입한 처마파라пет
- ⑧ 주출입구측 외벽상세
- ⑨ 1천 1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객석
- ⑩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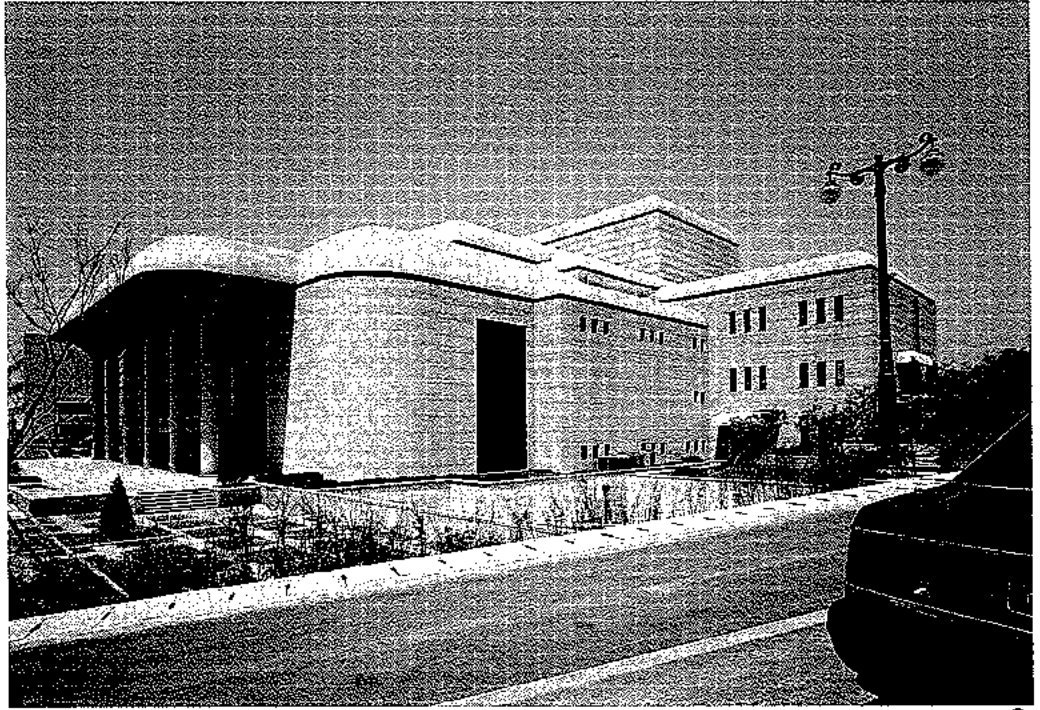
실, 관리사무실과 문예단체사무실, 전시실 등을 두고 있다.

내부동선은 1,2층 로비를 중심으로 객석 좌, 우 부속실이 연결되고, 상·하층의 수직적 연결은 로비의 좌, 우 주계단과 좌, 우 부속실의 코어에 있는 직통계단을 통해 지하 및 지상층이 연결되도록 하였고 지하전시실은 선관을 두어 개방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10

- ① 측면 전경 I
- ② 측면 전경 II
- ③ 진입도로에서 본 전경
- ④ 올라디본 외벽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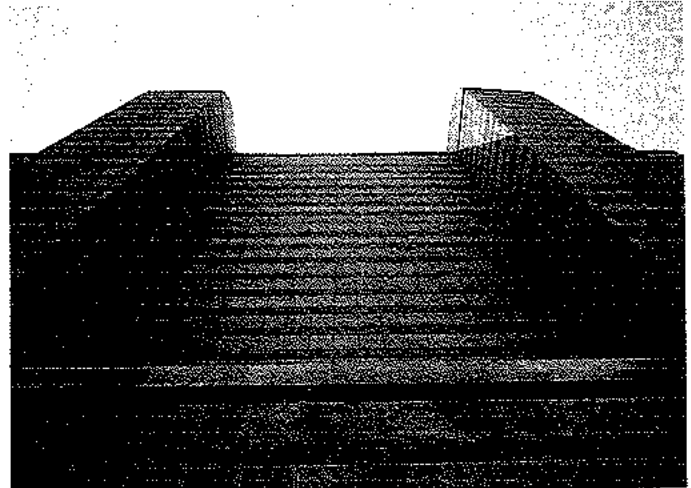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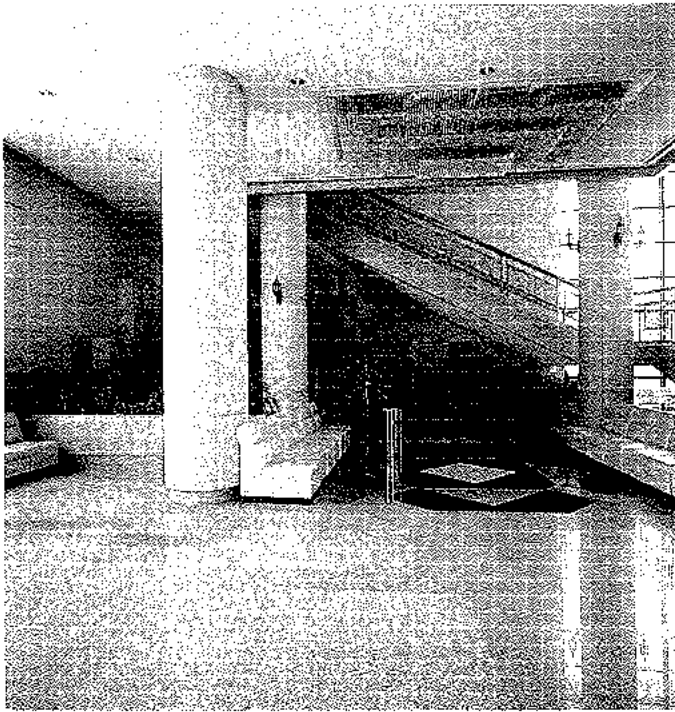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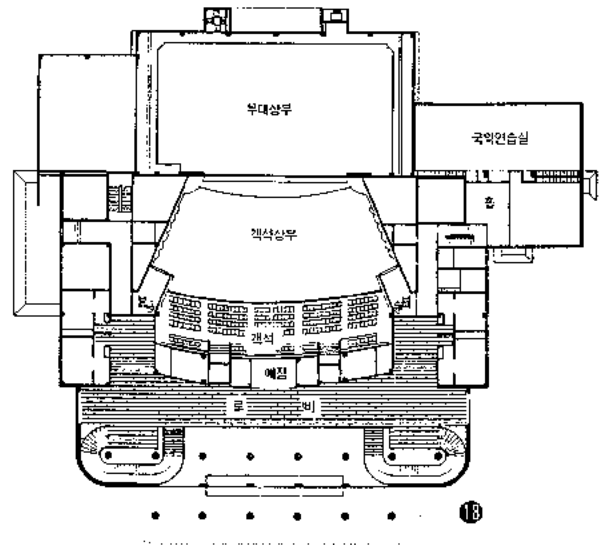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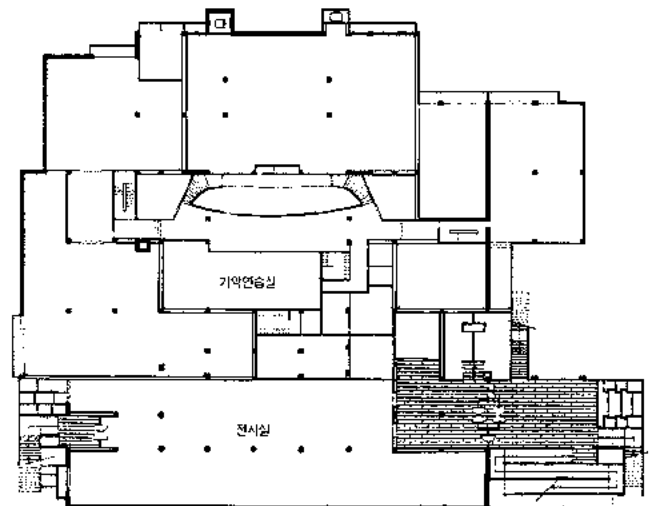
16



17



18



19

- 15 2층 로비
- 16 연결계단에서 본 로비
- 17 1층 로비
- 18 2층 평면도
- 19 지하 1층 평면도

영등포 구민회관

Yŏngdŕngpo Civic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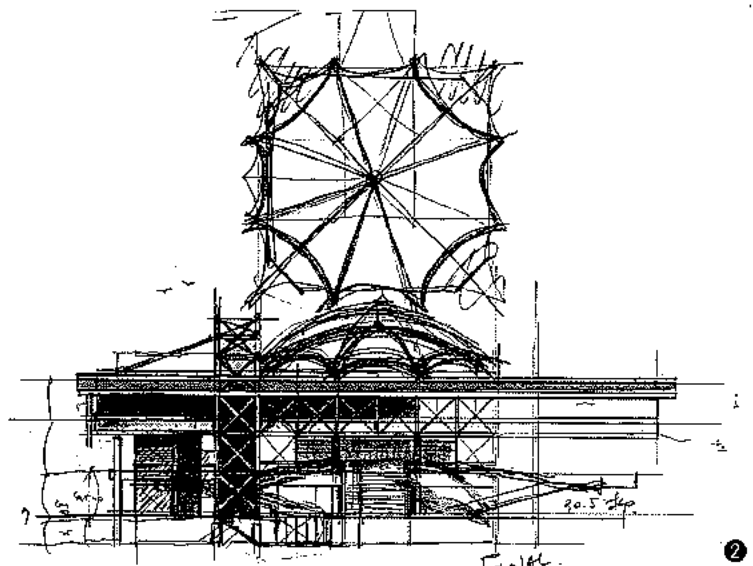
柳春秀/(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Designed by Ryu Choo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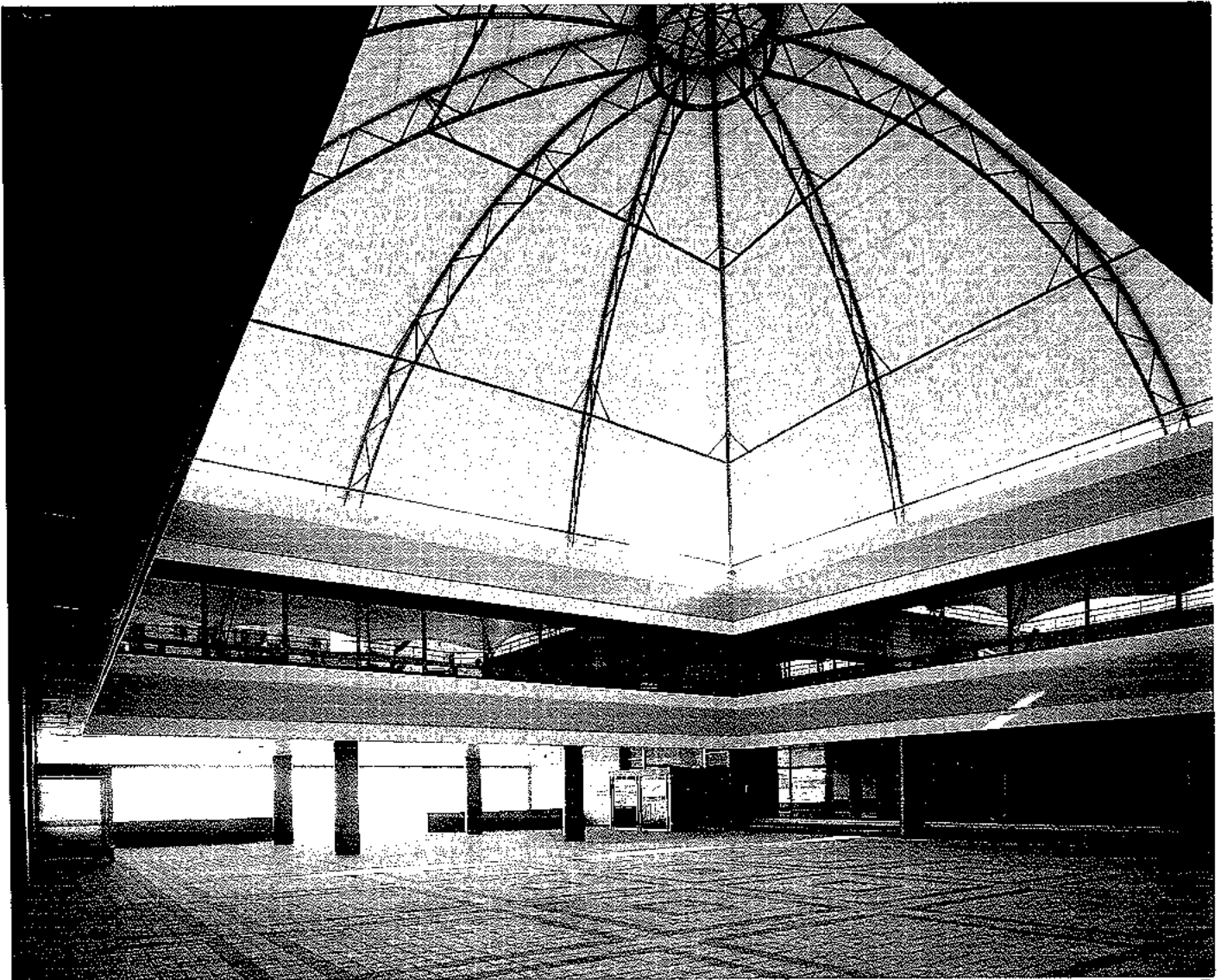
1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7,075m²
 건축면적 / 3,155m²
 연면적 / 9,246.9m²
 건폐율 / 44.59%
 용적률 / 61.4%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 철골+베이스패널워 불소수지
 도장 18mm 컬러 복층유리
 주차대수 / 85대(육외 : 39, 육내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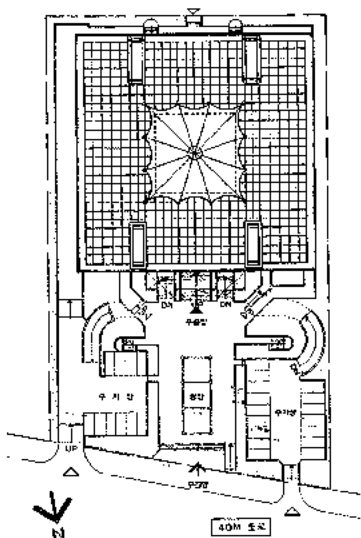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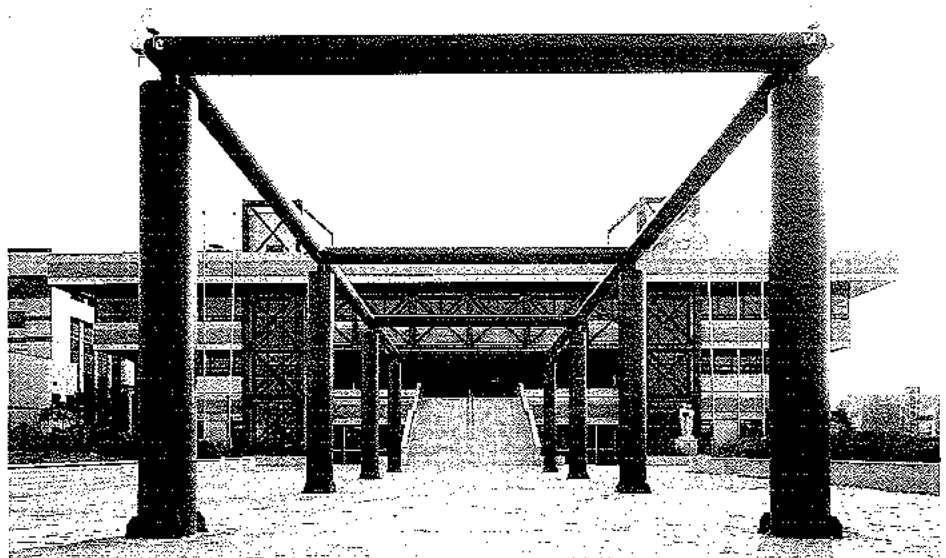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입면 스케치
- ③ 중정 및 상부 패브릭 텐트 구조
- ④ 배치도
- ⑤ 주출입구진입 철골트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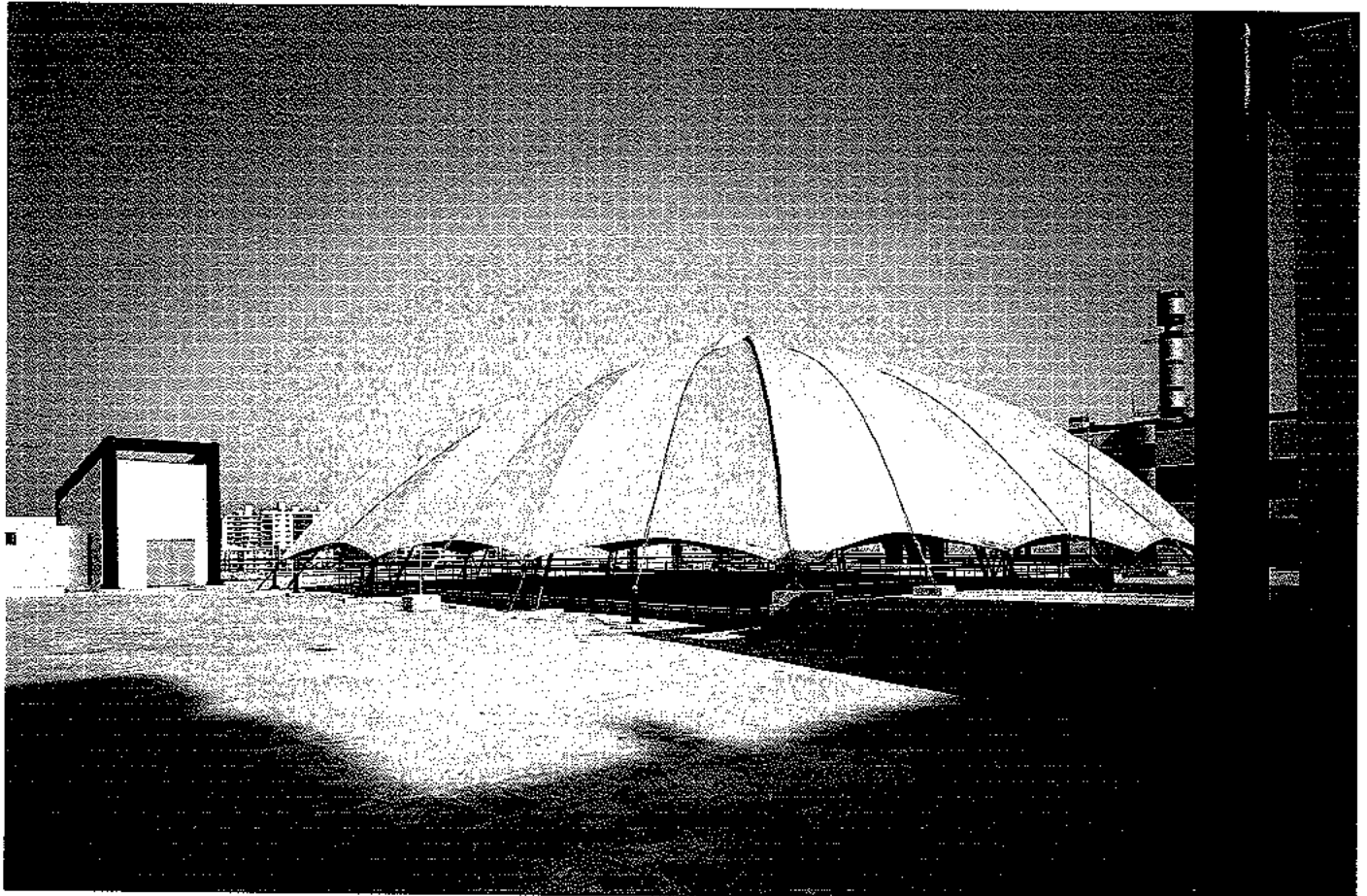
③



④



⑤



6

- ① 옥상에서 본 패브릭 텐트
- ② 전면 전경
- ③ 대강당 로비
- ④ 측면 상세
- ⑤ 주단면도
- ⑥ 정면도

계획의 목적

- 구민 화합과 종합 복지 편의 시설 제공
- 선진 문화 시민 의식 정착을 위한 시민 교육장으로 활용
- 구민의 구정 참여와 올바른 사회 홍보 확대
-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 실시에 따른 구의회 사무실 확보

계획의 지침

- 구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배치 및 평면 계획
- 구민 회관에 적합한 세부 층별 평면 배치 등 용도가 지정되도록 적절한 변적 배분 계획
- 부지 입지 여건, 구민회관 및 구의회 특성, 업무 및 당 사업목적에 합당한 계획
- 구민 회관과 구의회가 조화를 이루고 출입과 외형이 구분 되도록 계획
- 실내 체육관 시설 확보(배구장 및 기타 부대 시설)
- 추후 연면적 750평(지하 1층, 지상 3층) 내외의 보건소가 건립될 수 있는 배치 계획 고려
- 구의회 사무국 사무실은 3개계에 30명 내외

의 직원수를 감안하고 사무국장실은 별실 구획

계획의 주안점

- 초 현대적 감각의 균형
 - 무접고 전형적인 외관의 탈피
 - 철골, 유리, 알루미늄 등 현대적 재료의 사용
 - 건식 공법의 최대화—공기절감
- 대강당을 중심으로한 기능의 일체화
 - 독립형 대강당에 따른 분리의 배제
- 시민 이용 우선의 공간 계획
 - 중정의 다목적 기능 도입/광장, 옥외 무대 등
 - 우천시 활용을 위한 중정 상부의 우산식 텐트 지붕의 제안

—저층화에 따른 이용의 편리성 제고

- 구민 회관과 구의회의 기능적 분리와 융통성 부여
 - 중정과 별도 Core에 의한 공간적 기능의 완전 분리
 - 필요시 상호 기능의 연결과 면적 배분의 조정이 가능케함
- 구조와 설비기능의 일체화
 - 중심부의 단 Span(4m)에 설비 배관의 집중화로 외곽 장 Span(10m) 층고의 최소화
- 옥외 공간의 활용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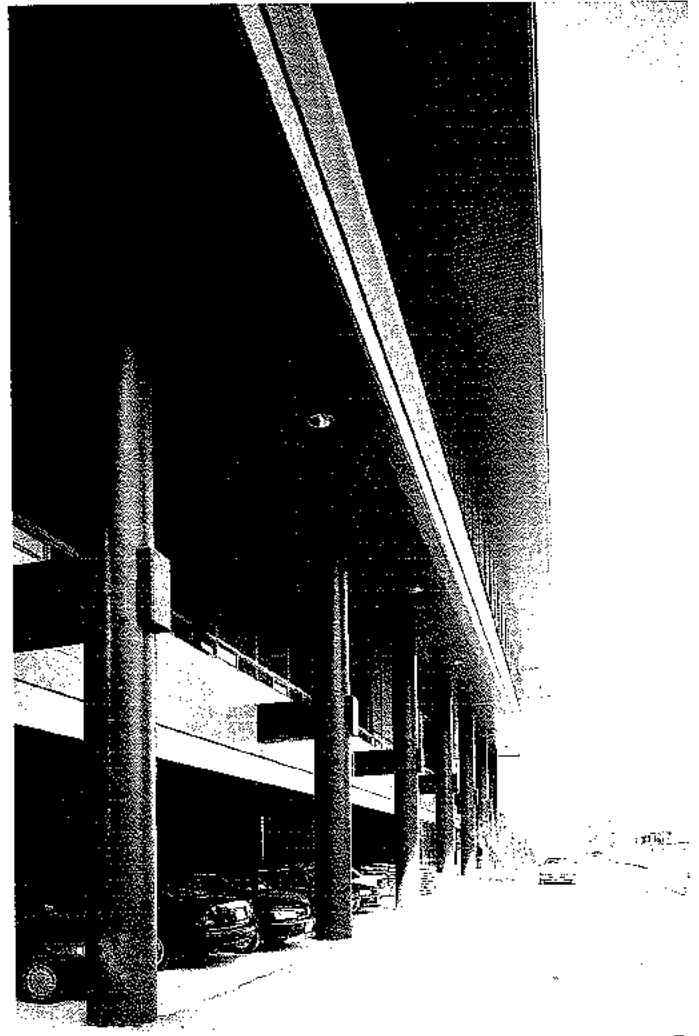
-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공간 배분
 - 피로탈을 통한 대지 전반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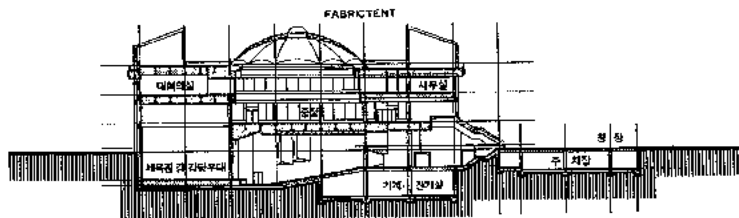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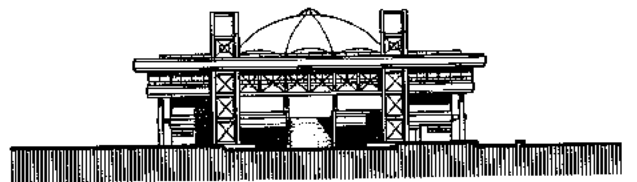
8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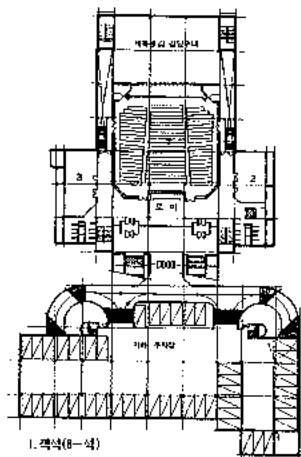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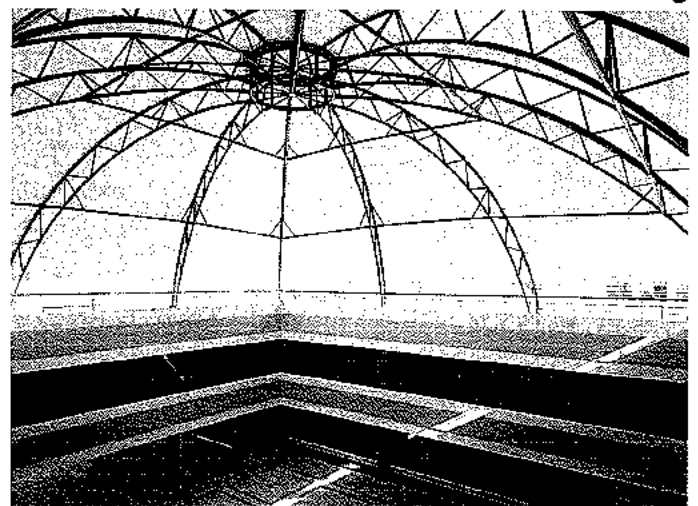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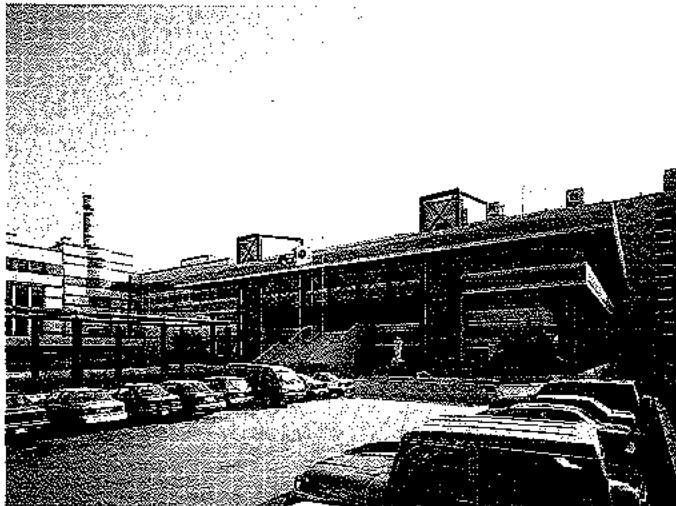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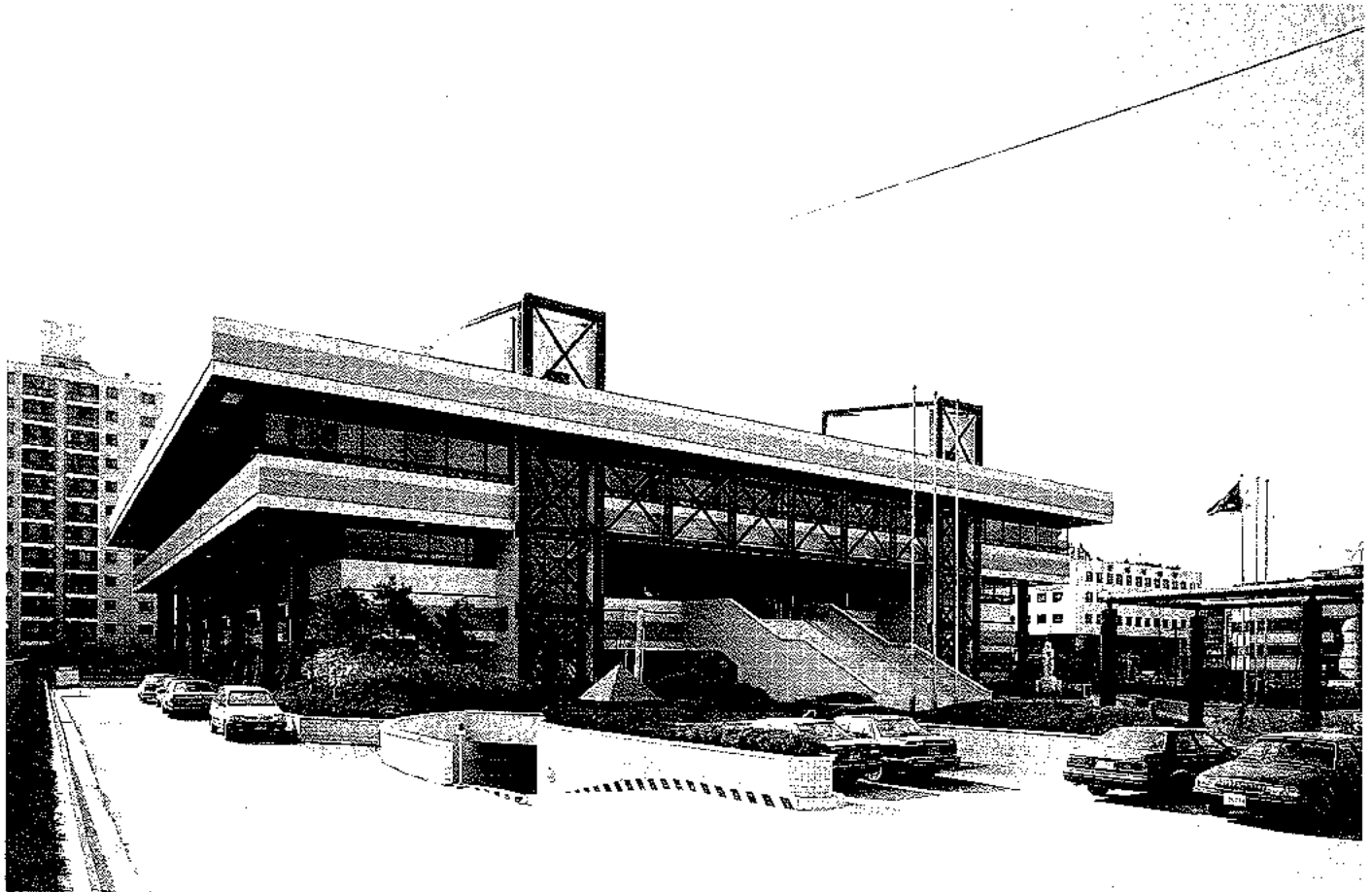
- 구민회관 및 구의회의 균등한 기능 배치
- 공간의 전이를 통한 자연스런 흐름 유도
 - 진입광장→피로티→중정→내부기능실
 - 공공건물의 경직성 탈피/구민 이용률 제고
- 보차 동선의 적절한 분리
- 이용동선의 기능적 분리 및 융통성 제고
 - Split Level 중정을 활용한 동선 분리
 - 내부 수직동선을 통한 동선 연결
- 상징적, 구심적 공간의 제공
 - 진입광장 및 중정→구민 단합의 장

평면 개념

- 매개공간으로서의 중정
 - 중정을 통한 동선·분리
 - 상호 공간의 연계성 제고
- 구의회 및 구민회관의 균등한 공간 배분
- 이용동선의 기능적 분리 및 융통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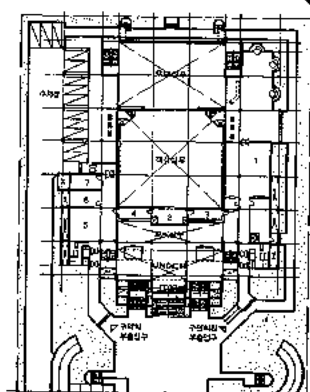
- 내부 공간의 효율성 극대화
 - 강당무대와 체육관의 복합적 기변 활용
- 단면개념
 - Split Level을 활용한 동선 분리
 - 1층 강당 레벨: 집회, 전시, 체육 동선
 - 2층 중정 레벨: 강의, 회의, 사무 동선
 - 전·후면 진입부의 피로티 처리
 - 시각적 개방감 확보
 - 주민의 용이한 접근성 유도
 - 건물 중앙부 중정의 도입
 - 상·하부 공간의 연계성 도모
 - 내부 공간의 유기적 활성화 유도
 - 층별 기능의 분리
 - 1층: 군집기능-동적-강당, 전시, 체육실
 - 2층: 대민기능-중적-강의, 휴게, 사무실
 - 3층: 개설기능-정적-독서, 회의, 자료실
- 입면 개념

- 현대적 재료 사용과 미래지향적 외관
 - 철골, 알루미늄, Fabric 사용: 현대적 재료, 모듈화, 공기절감
 - 공공건물 외관의 경직성 탈피
- 건물로의 흡입력 강조
 - 건물 중앙 피로티 처리 및 개방감/초대의 상징
 - 강당, 체육실, 전시실 등 선큰 처리/광장과 연계
- 내부기능의 시작화
 - 본체/수평선 강조
 - 코아/수직선 강조
 - 구의회 및 구민회관의 기능 분리와 균등한 외관 처리
- Fabric Tent Dome
 - 공공건물로서의 이미지 부각: Dome의 상징성 현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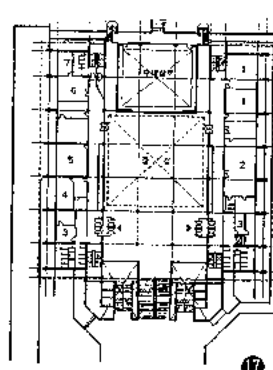
1. 객석(8~4)
2. 자동단차사무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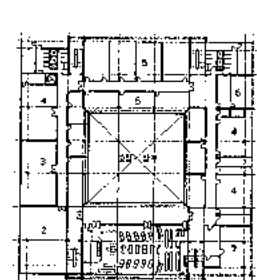
1. 식당 및 휴게실
2. 영사실
3. 등합실
4. 조명실
5. 홀
6. 옥각실
7. 기사대기실

16



1. 취미 강학실
2. 유회실
3. 수위 및 당직실
4. 국장실
5. 서무실
6. 자료실
7. 문서고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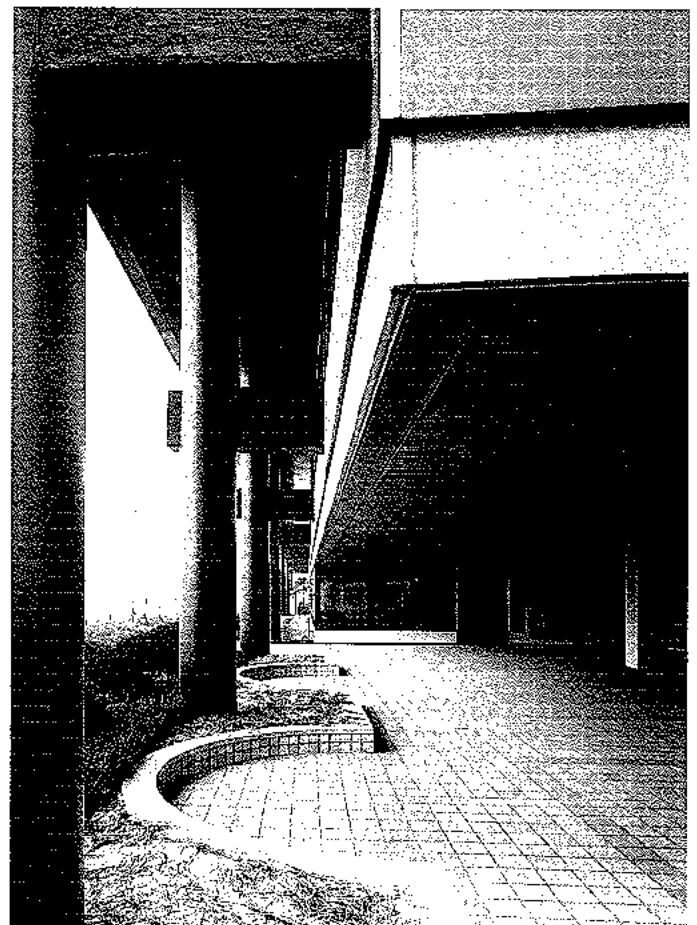


1. 대회의실
2. 독서실(남자)
3. 독서실(여자)
4. 소회의실
5. 위원회심의회실
6. 복의정실
7. 의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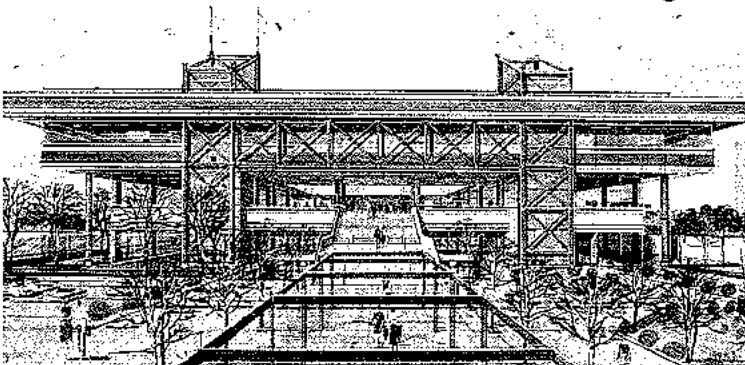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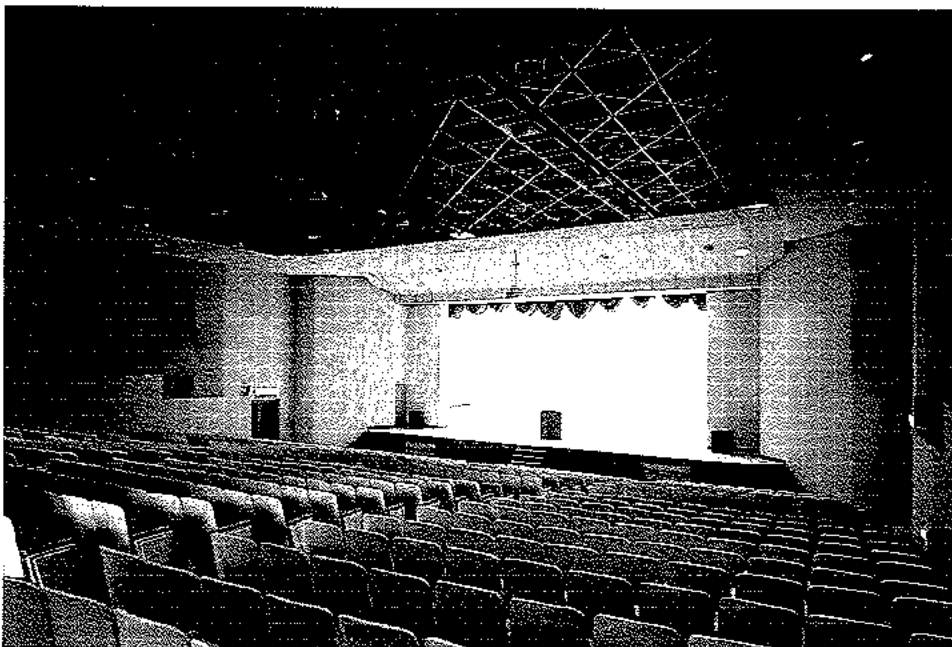


20



21

- 12 북동측 전경
- 13 북서측 전경
- 14 페브리 텐트 상세
- 15 지하 및 중층 평면도
- 16 1층 평면도
- 17 2층 평면도
- 18 3층 평면도
- 19 후면에서 본 측면 및 모서리 상세
- 20 후면 부출입측 상세
- 21 투시도
- 22 강당



22

힐 하우스

The Hill House

趙載元+金洪喆 /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Jae-Won & Kim, Hong-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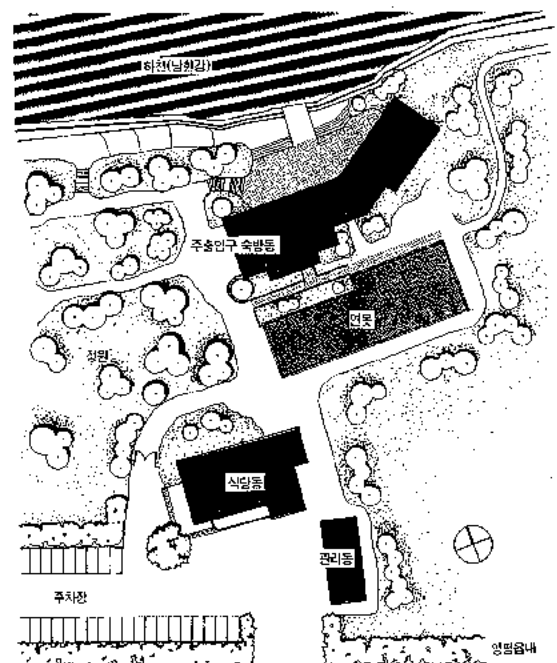


〈숙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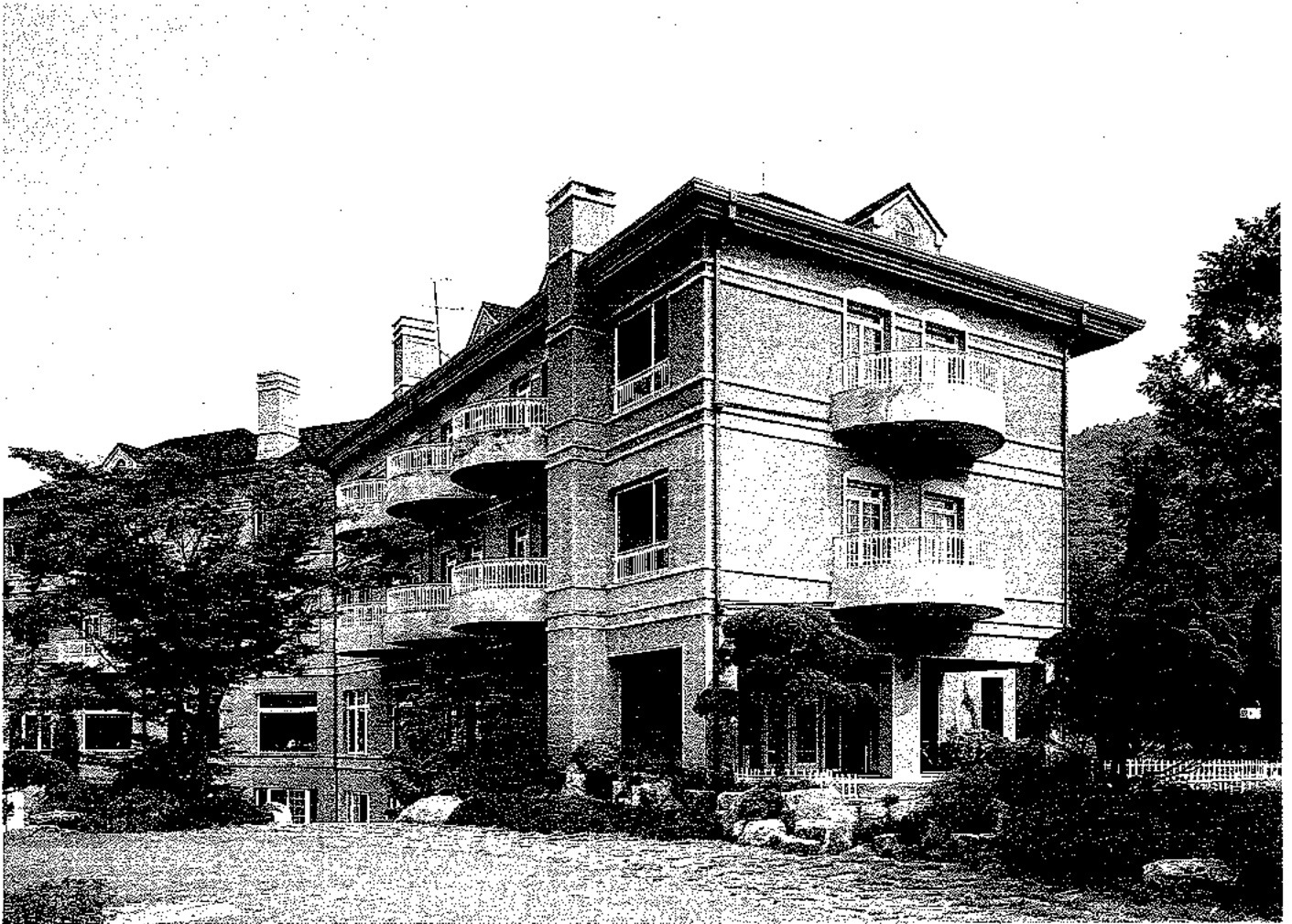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7-3
지역 / 비도시계획지역
대지면적 / 885.05㎡
건축면적 / 493.64㎡
연면적 / 1,850.74㎡
건폐율 / 55.77%
용적률 / 157.7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식당동〉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8-1, 22-7
대지면적 / 873.00㎡
건축면적 / 339.50㎡
연면적 / 655.20㎡
건폐율 / 38.89%
용적률 / 62.5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숙박동 주 출입구측 전경
- ④ 숙박동 정면도
- ⑤ 식당동 정면도



③

본 대지는 남한강을 따라 양평쪽으로 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가 이렇게 호젓한 강변에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지는 바람
이 느껴지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양평교를 건너 퇴촌, 광주로 빠지는 도로는 최근에 포장된
도로로써 아직도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길로써 밤나무와 잣
나무로 우거진 주변은 어쩌면 옛 황도길이 어울릴 것 같다. 이
도로와 남한강 사이에 위치한 이 대지는 옛날 '나루계'라는 지
명을 가진 나룻터였으며 주변에는 많은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논길 사이로 걸어 강둑에 서면 잔잔하게 물결치는 파도소
리, 시원한 강변의 바람소리, 그리고 높고 낮게 형성된 강 건너
의 산봉우리와 경춘선 열차 기적소리가 어울려 도시에서 느껴
볼 수 없는 포근함을 느낀다.

힐 하우스는 자연 속에서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은 이국적인 모습이 자연속에 동화되기를 바라면서 설계
된 건물이다.

이 건물의 완성에는 건축주의 애착과 열의가 더욱 빛나는
Project가 아닌가 생각한다. 건물의 형태, 재료, 색깔 선택 뿐
만 아니라 조경에 대한 높은 식견과 열의는 건축이 홀로서는
작업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작업임을 다시한번 생각케 한다.



④



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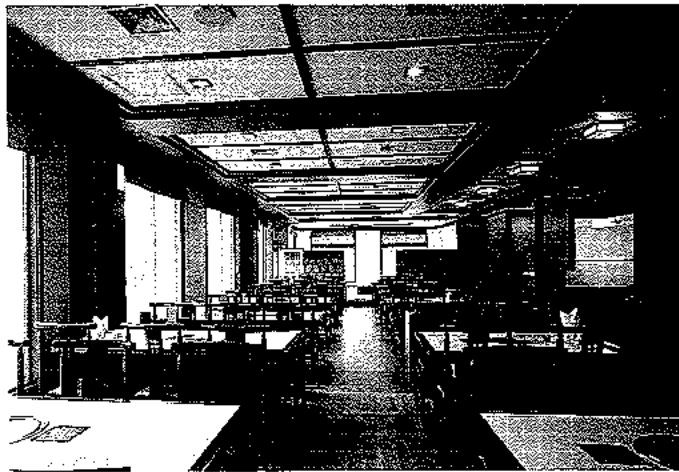
7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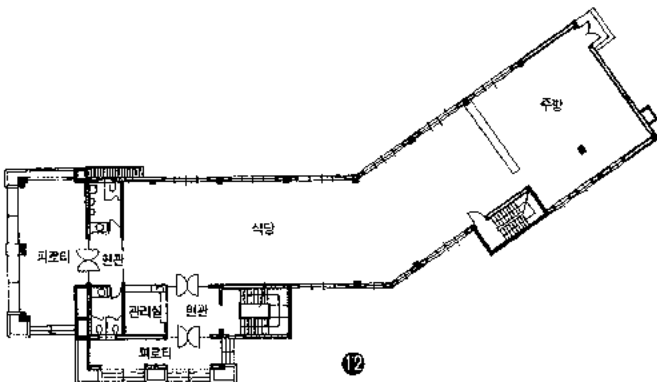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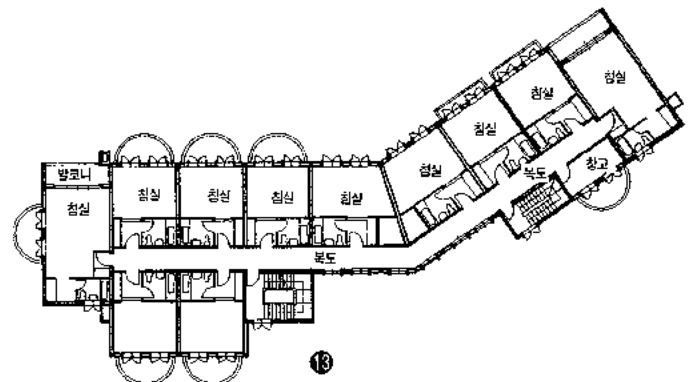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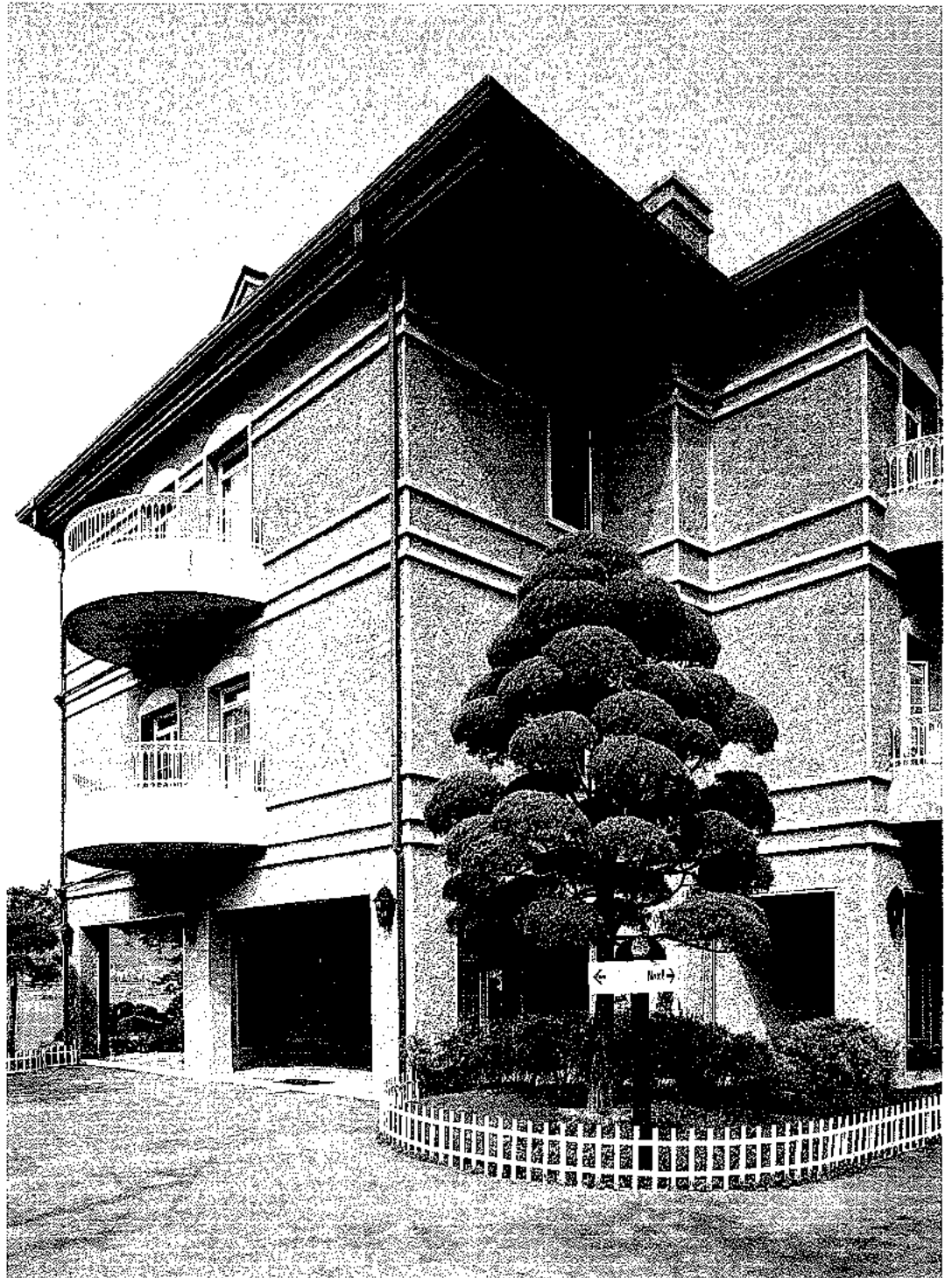
- 6 이국적 정취가 풍기는 숙박동
- 7 식당동 전경
- 8 숙박동 측면 상세
- 9 식당동의 1층 식당 전경
- 10 숙박동의 레스토랑
- 11 언뜻에서 본 숙박동 외부상세
- 12 숙박동 1층 평면도
- 13 숙박동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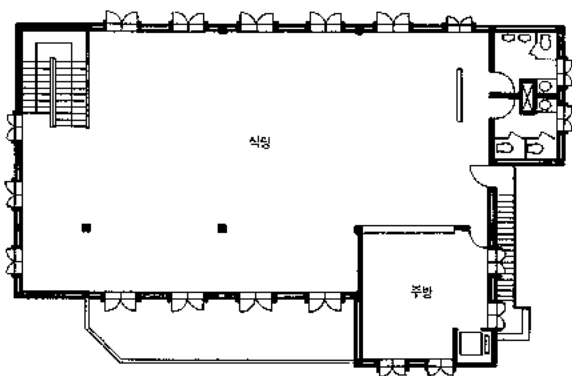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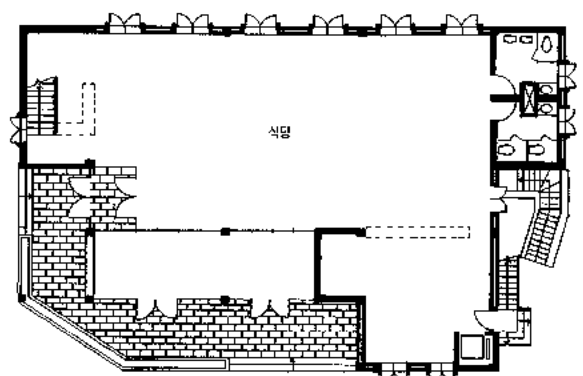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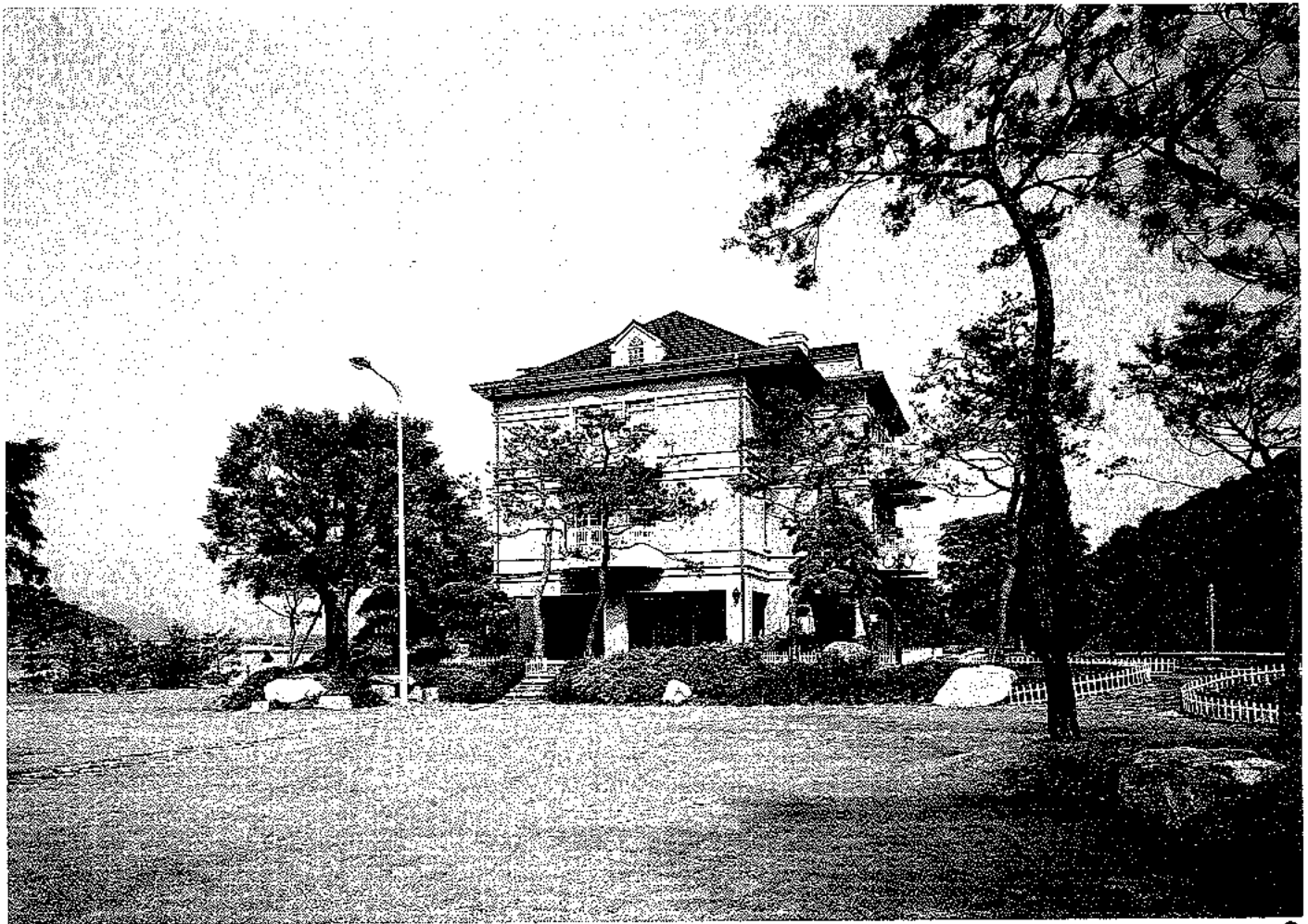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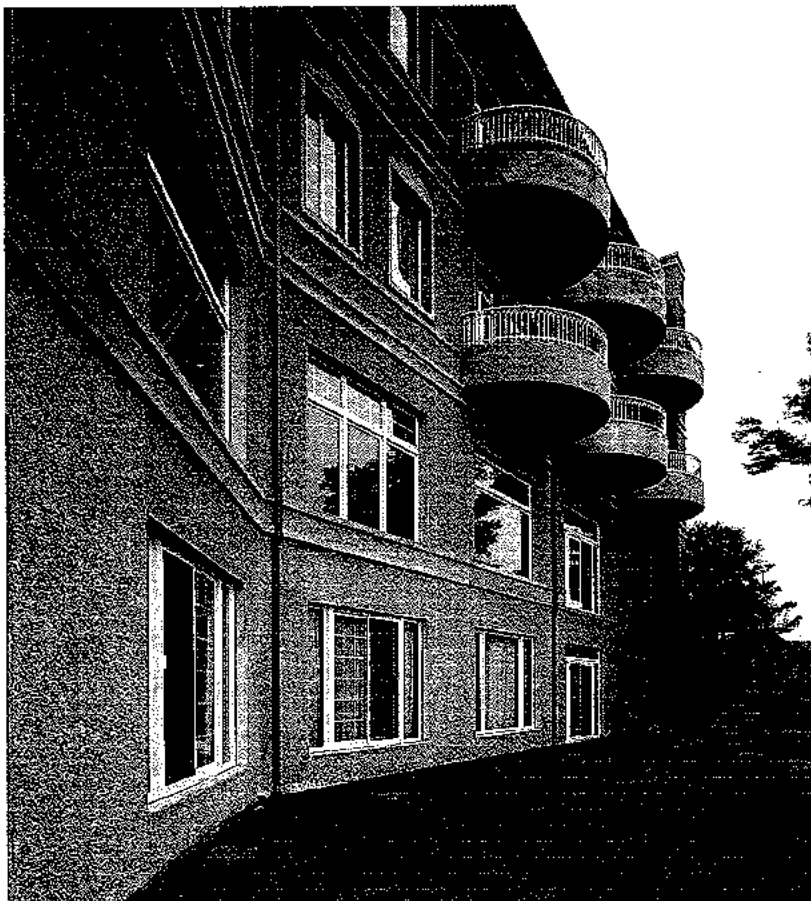
15



16



17



18



19

- ① 숙박동 후면 외부상세
- ② 식당동 2층 평면도
- ③ 식당동 1층 평면도
- ④ 멀리서 본 숙박동 측면 전경
- ⑤ 숙박동 외벽 상세
- ⑥ 숙박동의 레스토랑

성락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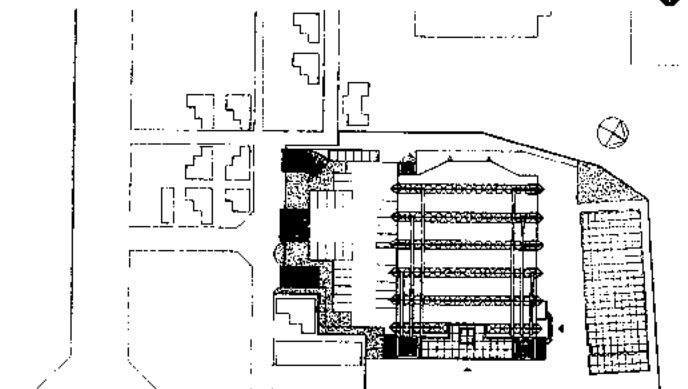
Sungrak Baptist Church

咸仁善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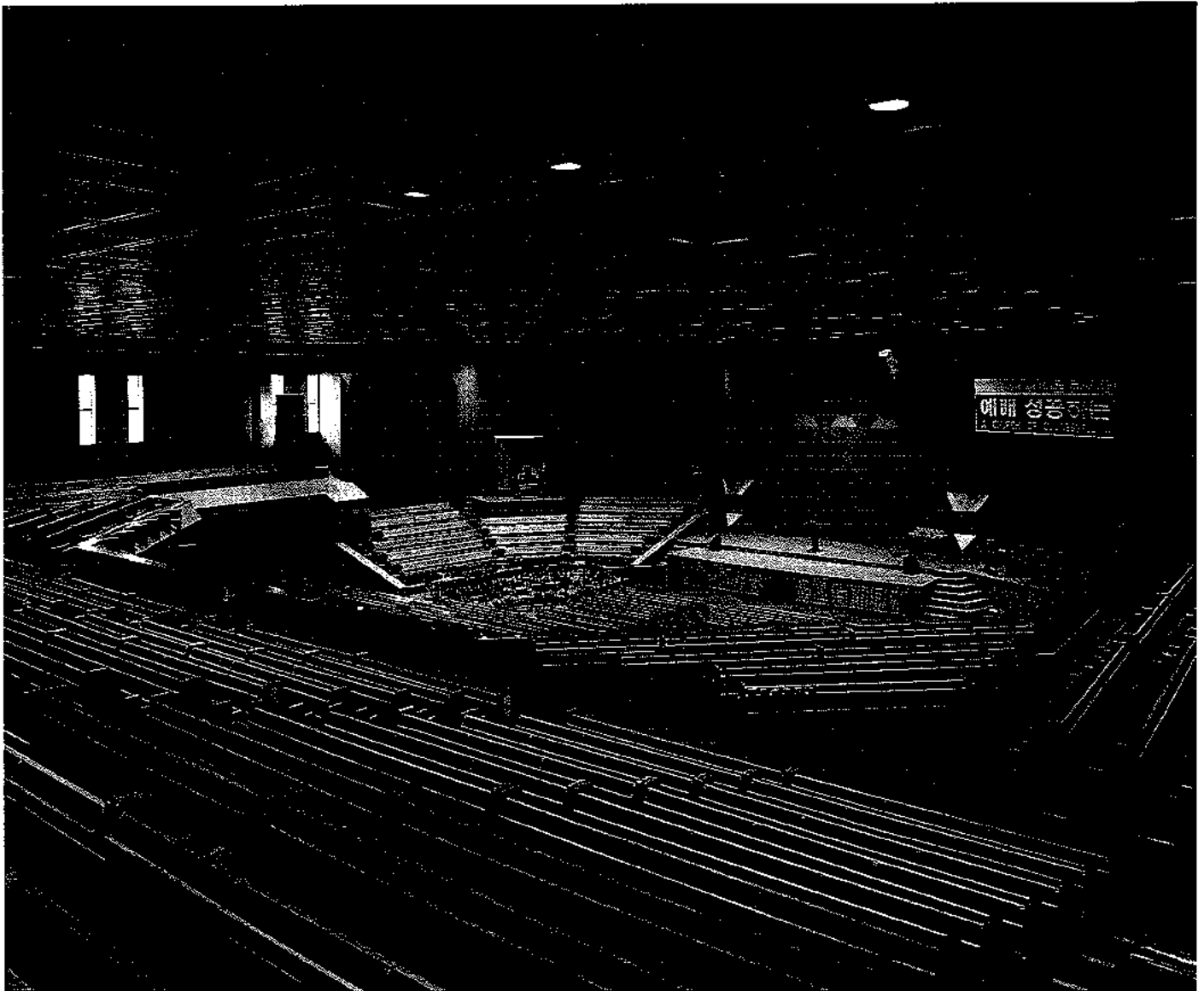
Designed by Hahm, In-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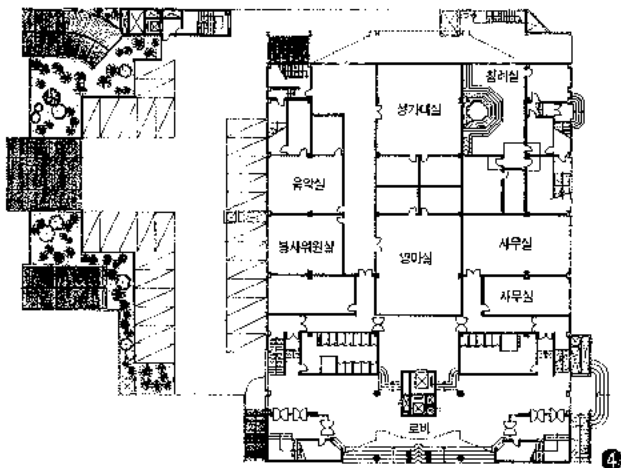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20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주
 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4,733.96㎡
 건축면적 / 1,962.48㎡
 연면적 / 20,648.48㎡
 건폐율 / 42.88%
 용적률 / 152.42%
 규모 / 지하 4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주차대수 / 321대
 외부미감 / 벽-화강석, 베이스판
 지붕-폴리테크



- ① 도로측 전경
- ② 배치도
- ③ 본당 내부전경
- ④ 1층 평면도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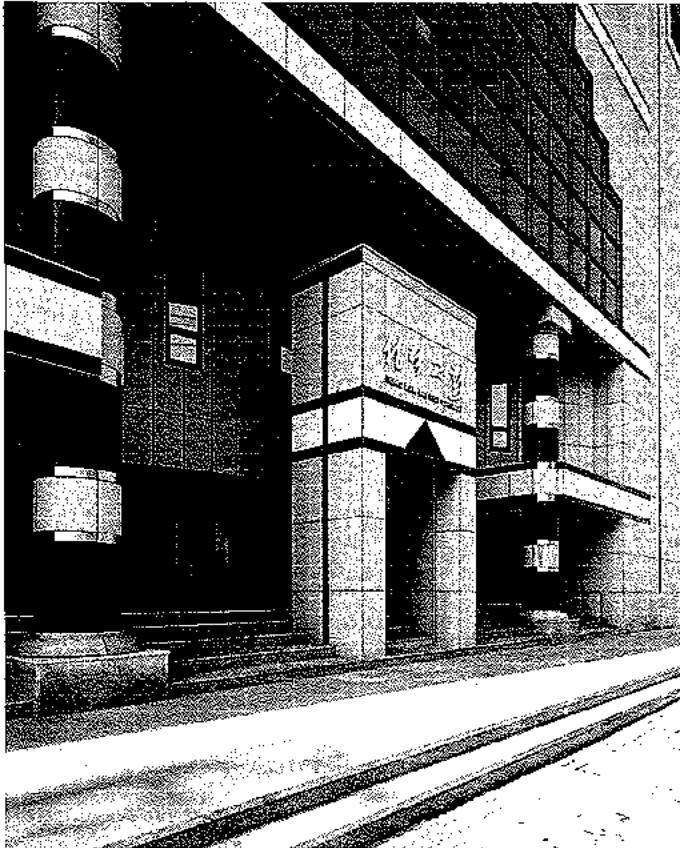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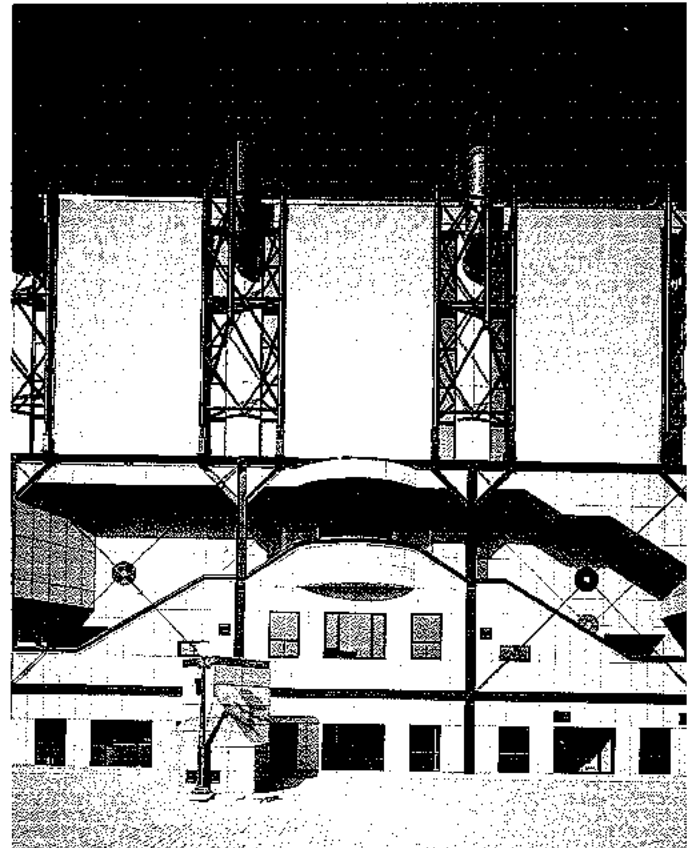
현대 개신교 교회건축의 딜레마

교회건축이 본질적으로 안고있는 모순은『하나님의 집』인 동시에『인간의 집』이라는 데에 있다. 『거룩하심』과『임재하심』이라는 모순된 명제가 동시에 표현되어야 하는 교회건축은 영원한 건축적 과제이다. 역사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교회건축은 이 두 요소중 하나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하나님의 집』임이 강조되던 때의 교회는 장엄, 화려하며 고압적이었고, 『인간의 집』임이 강조될 때는 여느 세속건물과 구별이 안되는 형식도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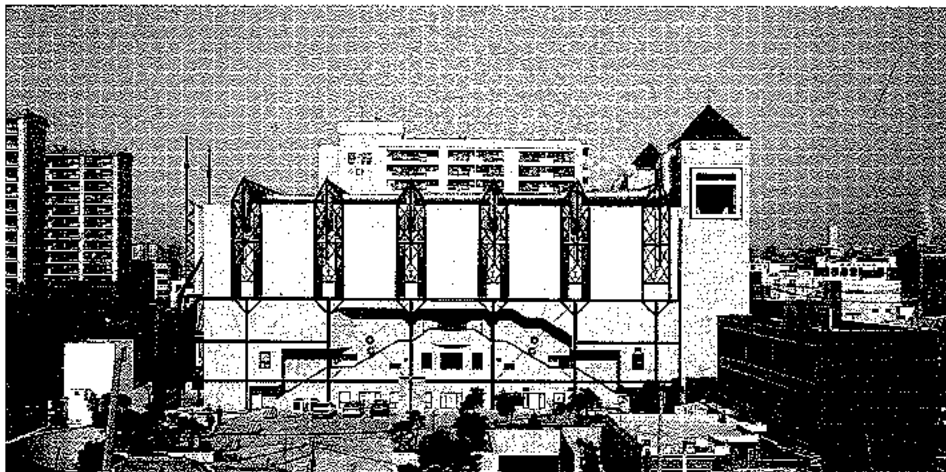
현대 개신교 교회건축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더욱 복잡하다. 내용적으로는 많은 회중이 모여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큰 집회공간의 기능을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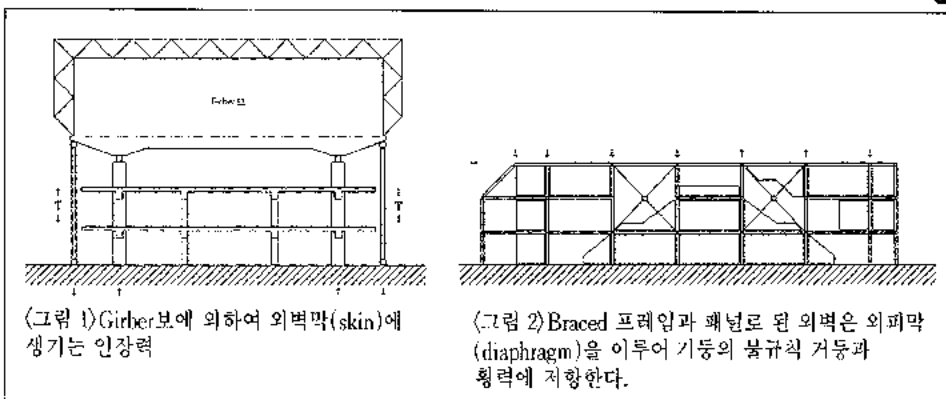
5



6



7



〈그림 1〉Girder보에 의하여 외벽막(skin)에 생기는 인장력

〈그림 2〉Braced 프레임과 패널로 된 외벽은 외벽막(diaphragm)을 이루어 기둥의 불규칙 거동과 횡력에 저항한다.

8

5 보행자를 위해 1층을 개방한 현관

6 측면 상세

7 남측원경

8 구조 개념도

9 입면상세

10 3층 로비

11 전장상부상세

면서,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교회라는 특징적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도시내 대형교회는 인근지역 주민과의 마찰등의 이유로 더욱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딕의 스타일을 닮을 것인가. 고딕의 정신을 닮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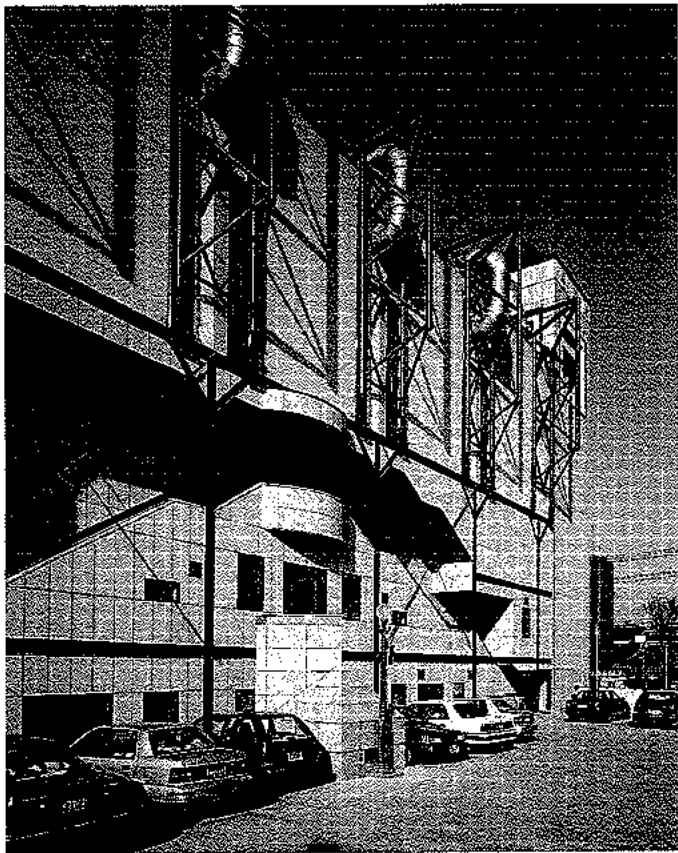
발전된 현대 건축기술은 위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할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첨단 구조공법을 통해 지붕을 높이지 않고도 넓은 공간을 덮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발전된 음향, 환경 기술들은 많은 회중들에게 좋은 음향,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수 있게 해주고 있다.

본 성락교회를 설계함에 있어 설계자는 이러한 최첨단 건축기술을 적극도입함으로써 주어진 여러가지 제한조건, 즉 경제적, 범규적, 기능적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믿었으며 또한 현대 건축 기술의 여러요소를 표현요소로 적극 사용함에 의해 건축미적으로도 솔직한 표현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기대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세야말로 교회 건축 역사의 백미로 여겨지는 고딕 교회건축을 계승하되『고딕스타일』을 표피적으로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의 최첨단 건축기술을 과감히 수용하여 건축사의 큰 진보를 이루었던『고딕의 정신』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설계개념과 그 해결

건축주 측에서 제시한 설계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주어진 범규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하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것.



9



10

둘째, 말씀중심의 신약교회 및 회중중심의 침례교회의 성격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게할것.

셋째, 고딤교회가 그 당시의 최첨단 교회였듯이 현대교회의 건축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수 있는 미래지향적 건축개념을 도입할것.

첫째 조건을 만족시킴에 있어 설계자는 건축법에 의해 주어진 최대용적을 모두 내부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매인트러스와 공조덕트를 노출시켰으며 전체 건물높이를 줄이기 위하여 트러스를 Portal Frame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베이스페넬 등 조립식 부재를 적극사용하여 공기, 공사비를 절감코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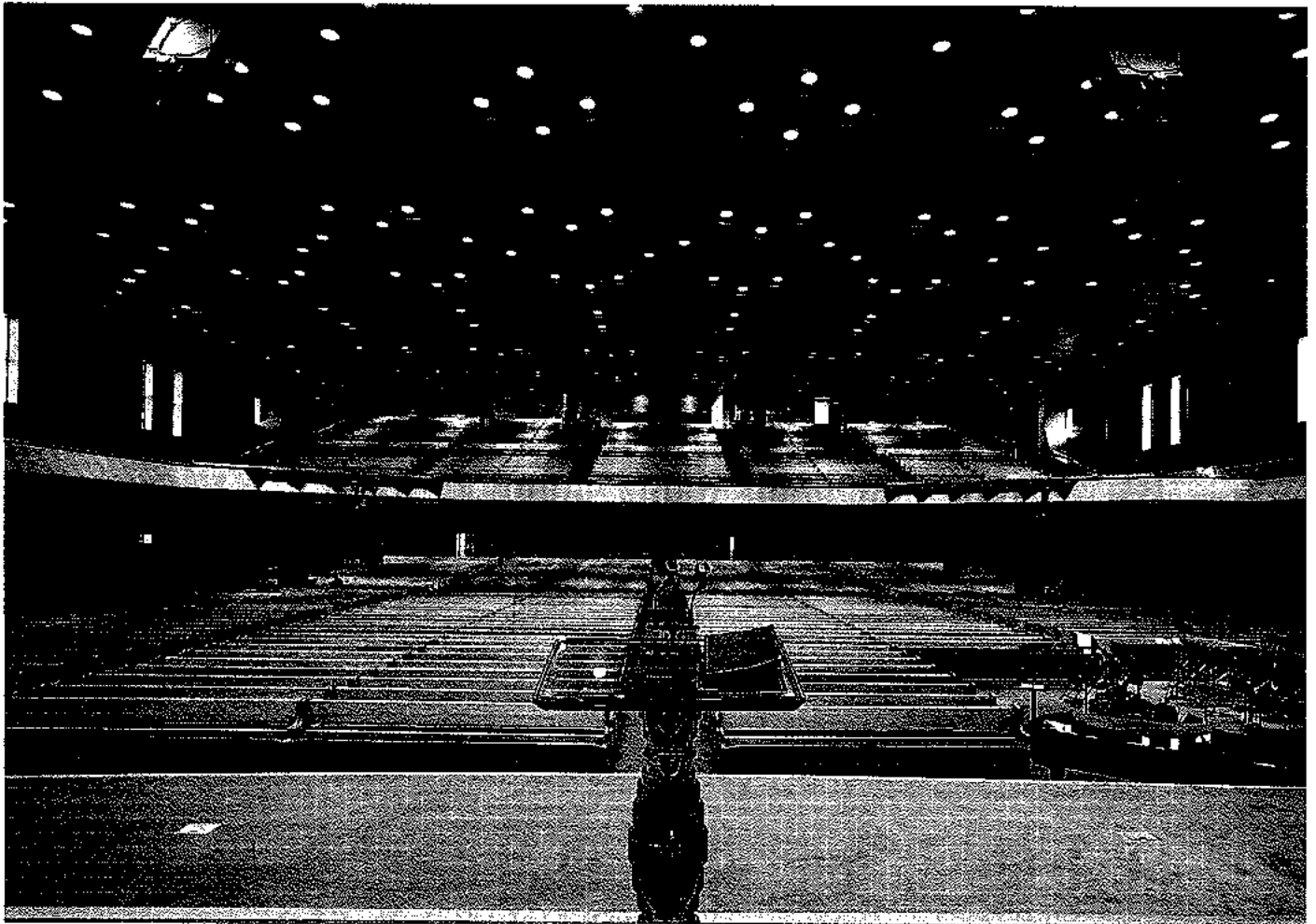
둘째로 통상 안에 숨겨 마련한 구조, 설비들을 오히려 외부로 드러내어 건물의 입면구성요소로 적극사용함에 의해 이 건물은 외부가 내부를 위해 봉사하는 건물, The Church(유형의 교회, 교회제도, 교회당)가 Church(무형의 교회, 회중)에 종속됨을 표현하는 건물이 되었다고 보았다.

셋째로 이상과 같은 건축기법들을 도입하여 현대교회 건축이 요구하는 기능적, 미학적 과제를 정면돌파함과 아울러, 많은 고전적 건축요소를 차용하여 교회건축의 전통과 연계성을 가지코자 하였다. 측면의 기계미학적 이미지와는 달리 정면이 구도는 매우 고전적인 비례이며 실내 역시 재료나 디자인을 상당부분 보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거룩한 하나님의 집』의 특징을 형태적으로 가지면서 동시에『예배하는 인간의 집』의 기능적 요구를 현대기술을 통해 해결함에 의해 현대 개신교 교회건축이 안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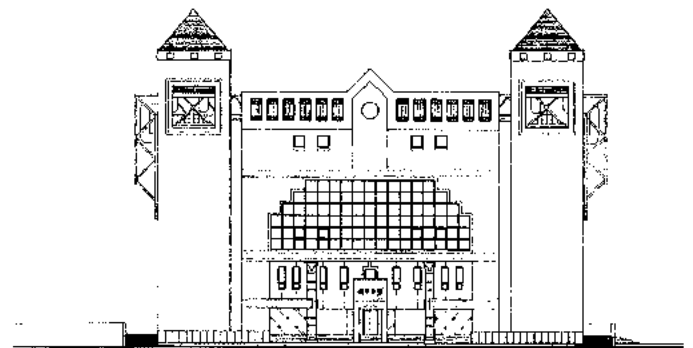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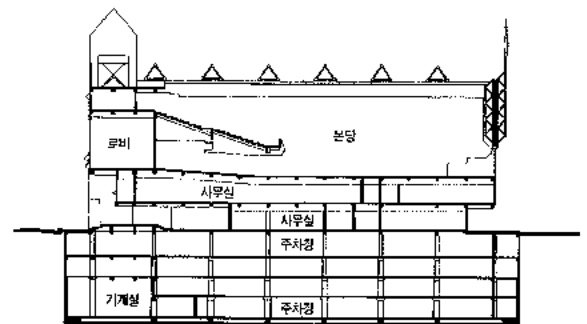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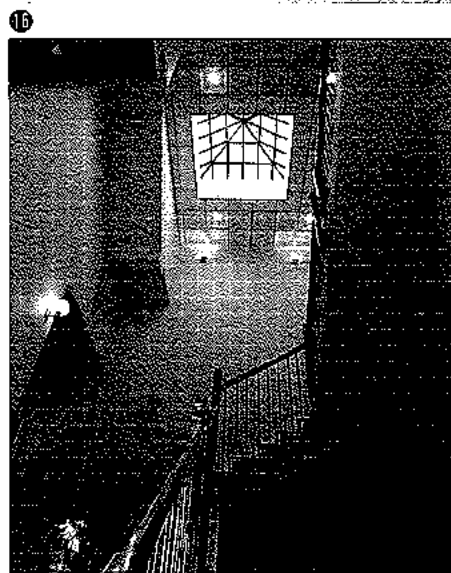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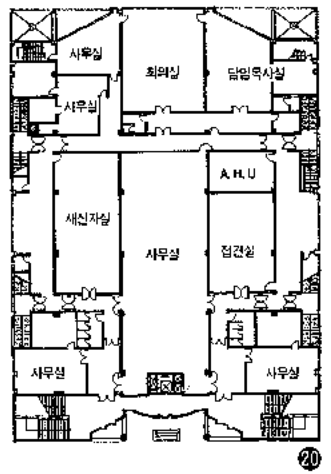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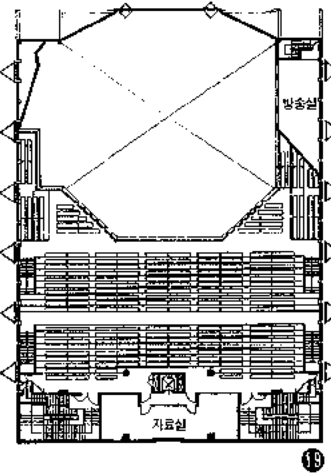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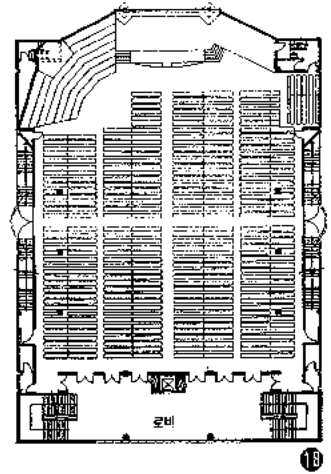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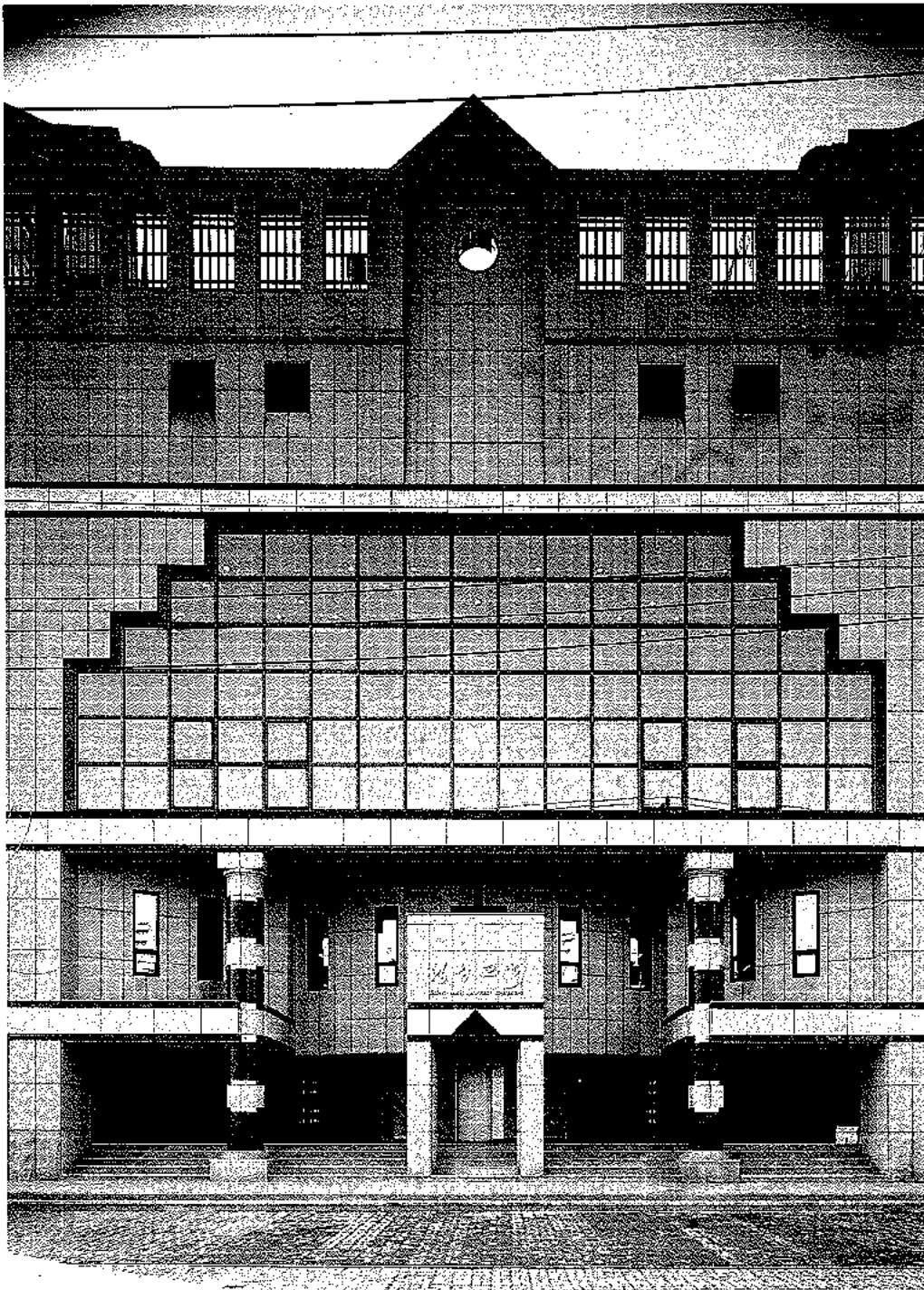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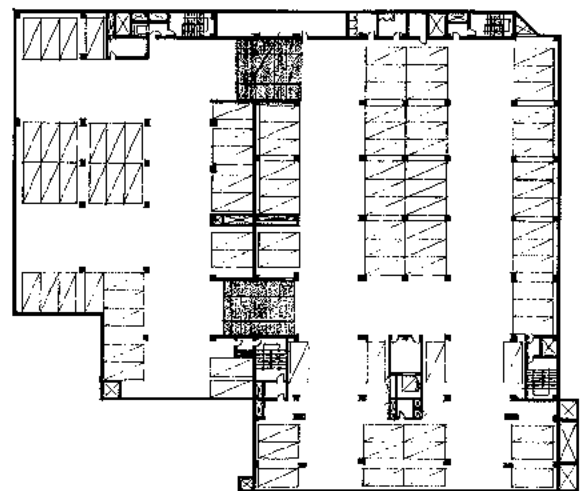
14



15



- ⑫ 강당에서 회중석을 바라봄
- ⑬ 정면상세(야경)
야간에는 내부가 투사됨에 의해
다른 공간경험을 준다.
- ⑭ 정면도
- ⑮ 종단면도
- ⑯ 정면 상세
- ⑰ 계단상부 천창
- ⑱ 3층 평면도
- ⑲ 4층 평면도
- ⑳ 2층 평면도
- ㉑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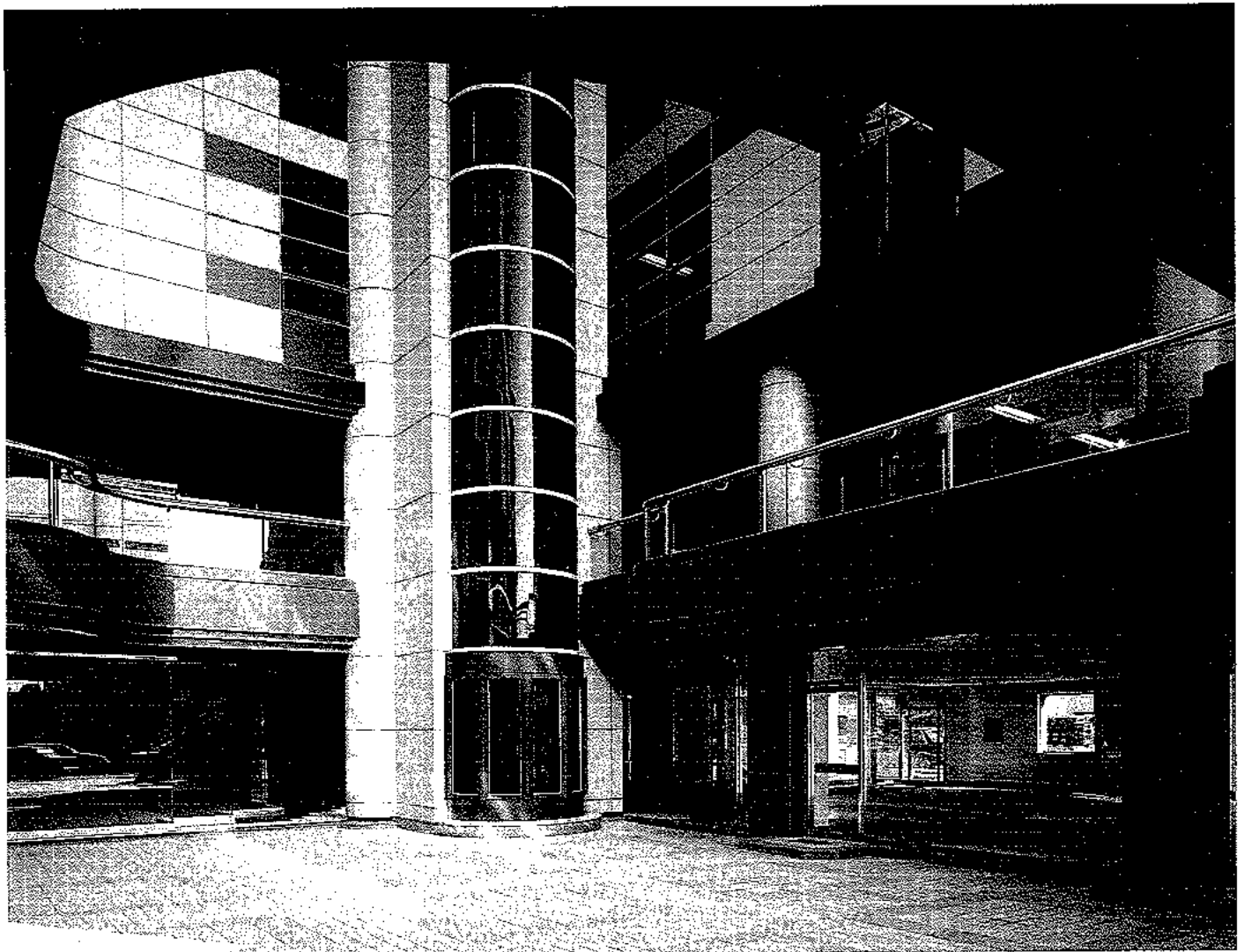
코스모 플라자

Cosmo plaza

尹柱憲/내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oon Ju-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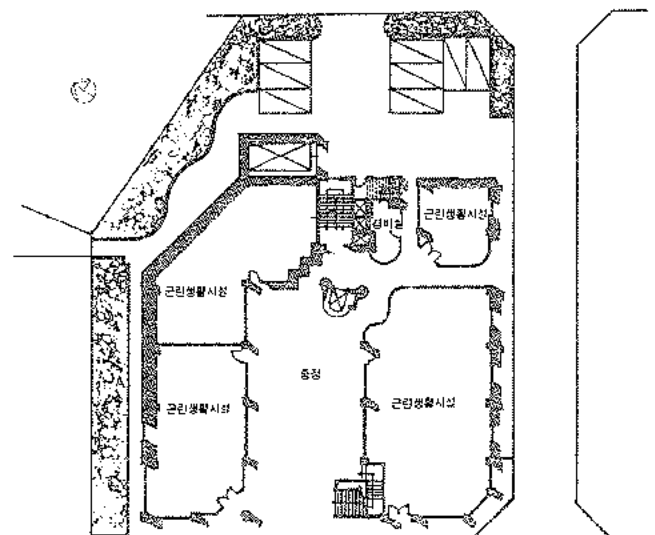




②

대지위치 / 강남구 신사동 568-11
 대지면적 / 1,849.4m²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면적 / 891.45m²
 연면적 / 5,625.61m²
 건폐율 / 48.2%
 용적률 / 247.74%
 주차대수 / 50대
 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 업무시설, 쇼핑물
 외부마감 / 불소수지아연도강판, 마천석 버너구이

- ① 남측 전경
- ② 브릿지 하부에서 본 중정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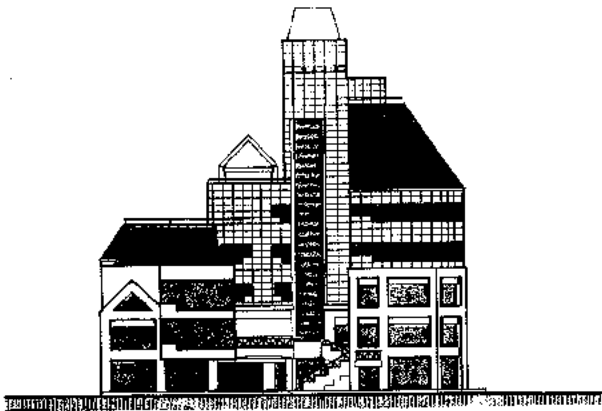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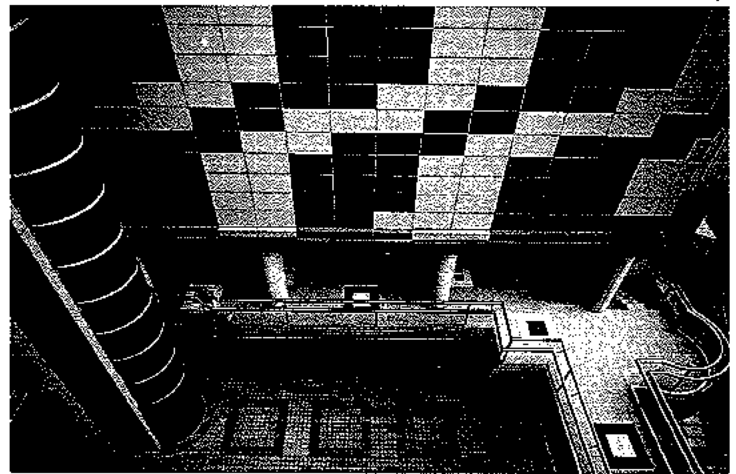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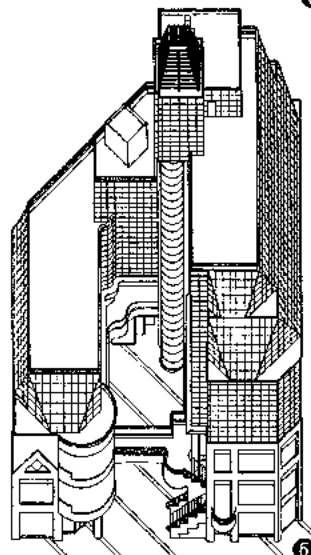
4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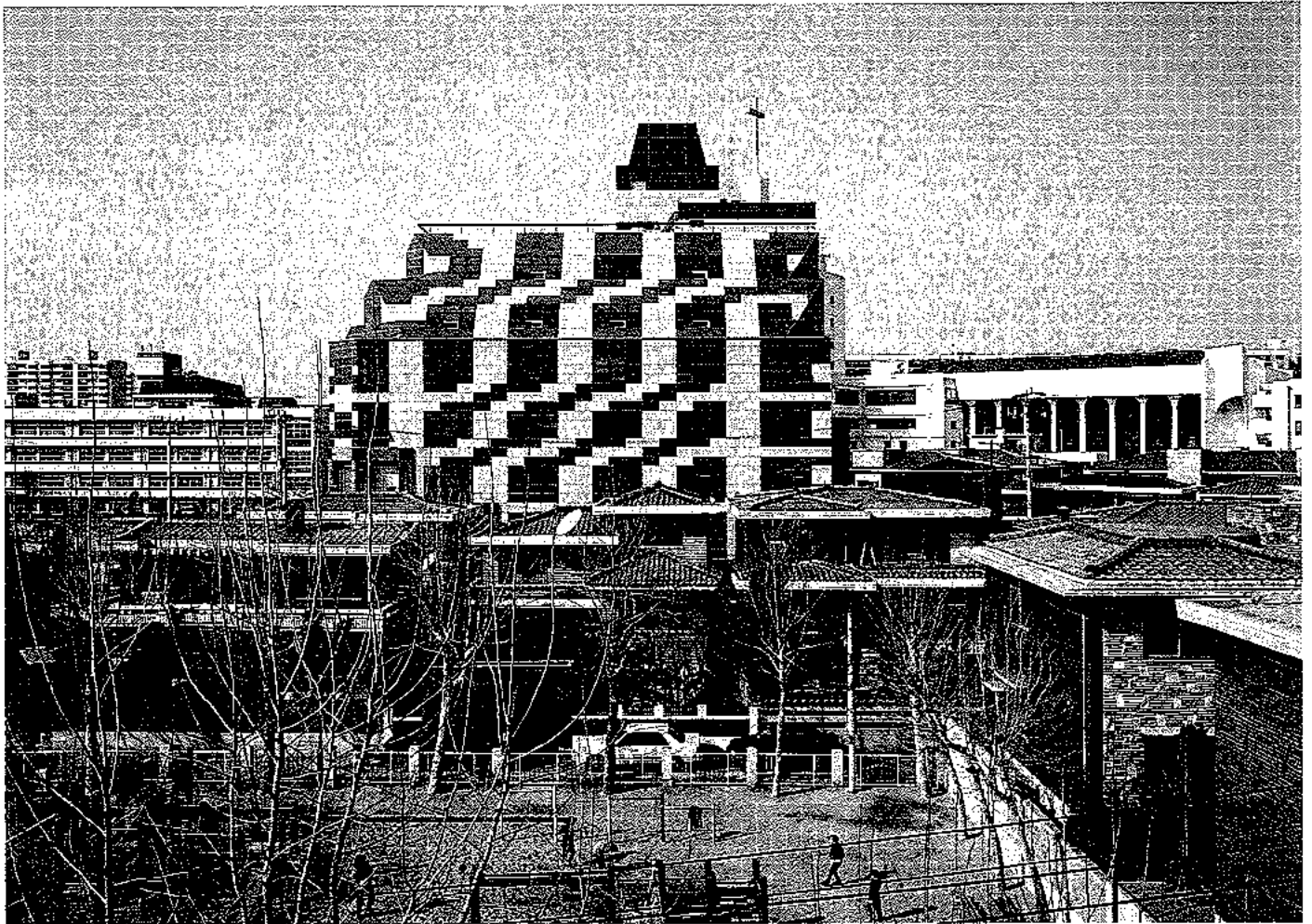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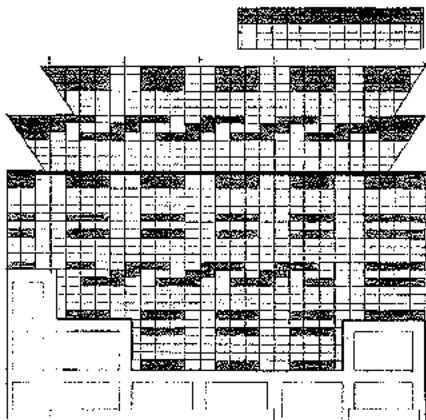
- 4 남서측 전경
- 5 정면도
- 6 엑소노 메트릭
- 7 위에서 내려다본 중정
- 8 2층 중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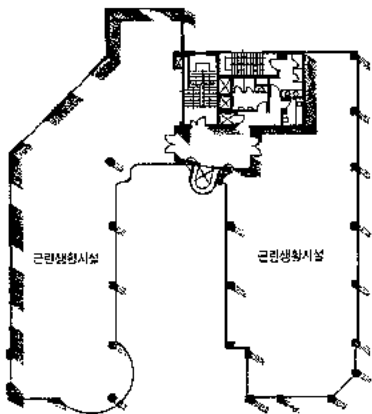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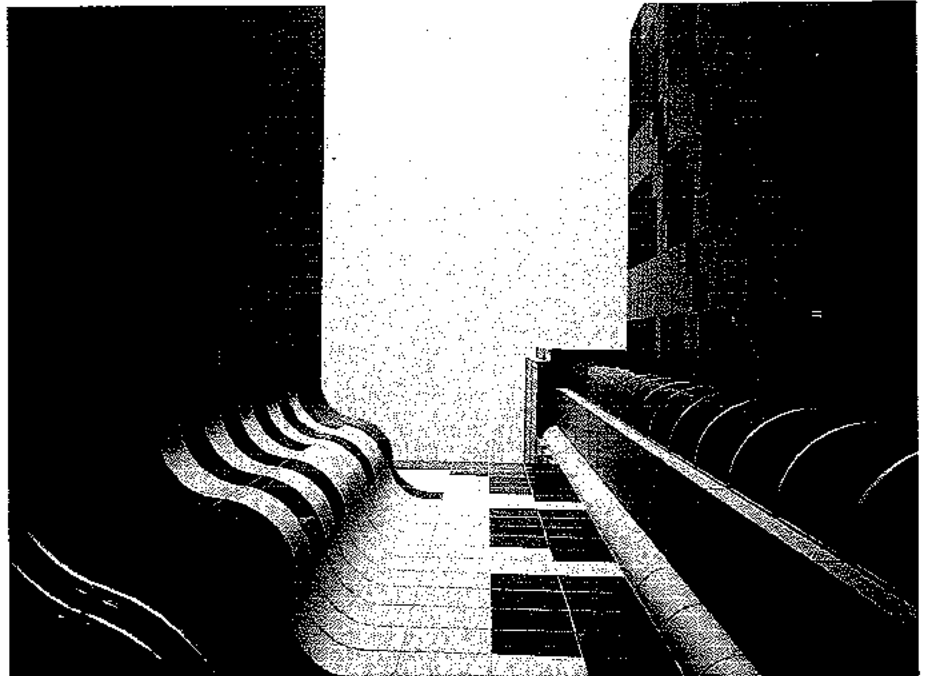
9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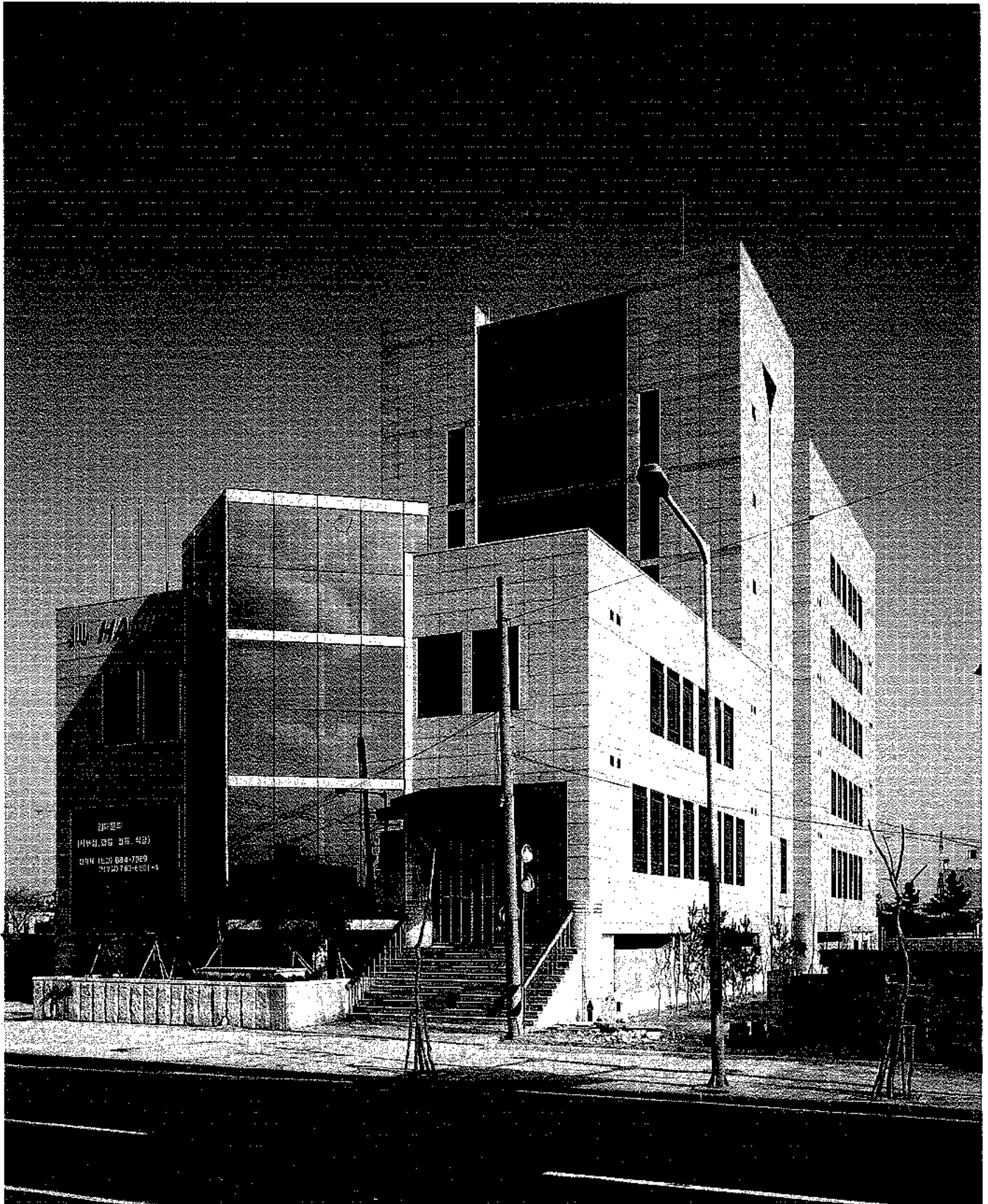
- 9 동측 전경
- 10 컬러패턴 계획도
- 11 3층 평면도
- 12 아래서 올라다본 중정

인천 신흥동 한일빌딩

Inchon Shinheungong Hanil Building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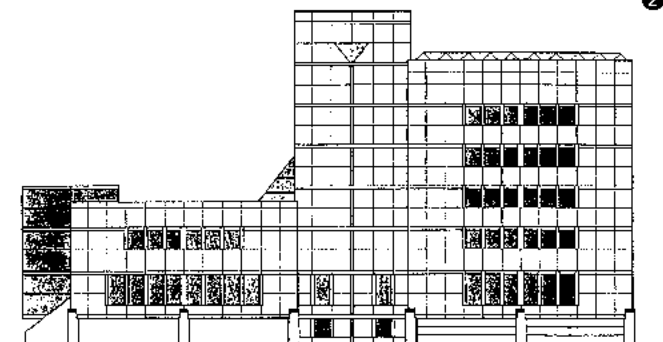
위치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23
 지역·지구 / 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역, 방화
 지구, 2종 비관리지구
 대지면적 / 1,322.70㎡
 건축면적 / 1,005.91㎡
 연면적 / 5,940.36㎡
 건폐율 / 76.05%
 용적률 / 304.42%
 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 44대
 외부마감 / 문경석 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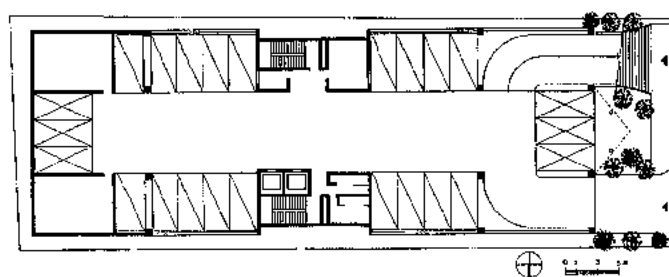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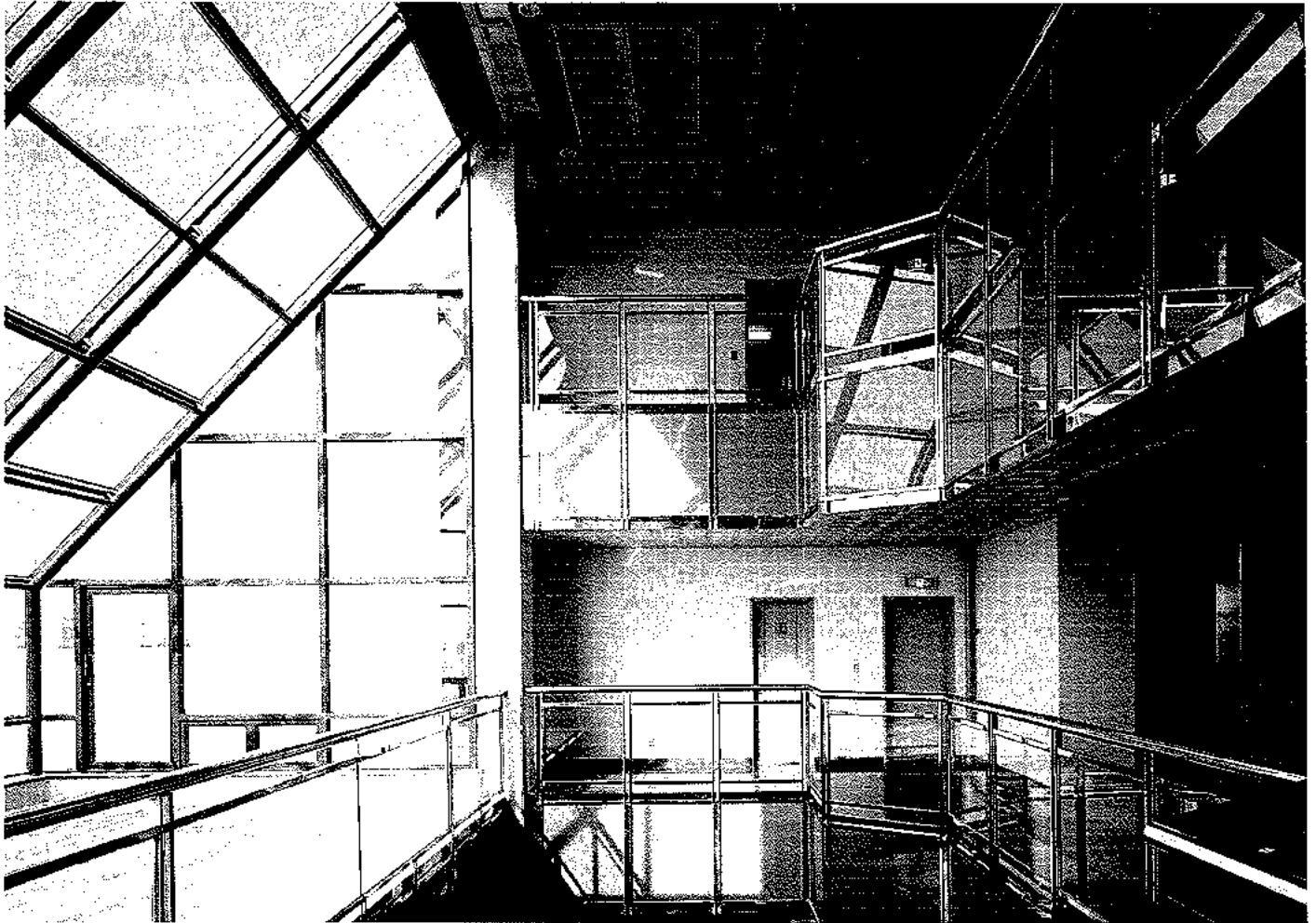
경인 고속도로의 끝부분 인천항과 마주 보는
 장소, 서해안 고속도로와 시점이 되는 무척이나
 교통량이 빈번한 곳이다. 주변에 머지않아 대형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좁고 긴 대지 이따금씩 장마때 쓸물이 겹치면 하
 수도나 도로가 물에 잠기는 특수한 조건이 있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건물의 임대나 사람들이
 머무를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필로디로 띄운
 주차장, 데크화면 1층이 고려 되었고, 지반 구조
 의 취약함이 공사비의 절감과 맞물려 지하 1층만
 으로 해결하려 한점, 기다란 평면이 내부의 중정
 형식의 큰 홀이 저층부와 고층부의 분절을 가져
 오며, 새롭게 보이는 오피스의 아트리움이 되는
 부분이다. 전면에 개방되어 보이는 월미도와
 바다 그리고 시원스런 홀이 취약해지기 쉬운 오피스
 평면을 긴장하게 만든다.

전면부의 살인적인 차량과 소음, 편안하게 옥
 외 광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특수성때문에
 내부의 그러한 자그마한 마당으로서의 방법이 고
 려된 것이다. 주변의 한국은행과 같은 제질인
 화강석을 사용하여 동질감을 주었으며, 양측 재
 단의 타워는 내재된 아트리움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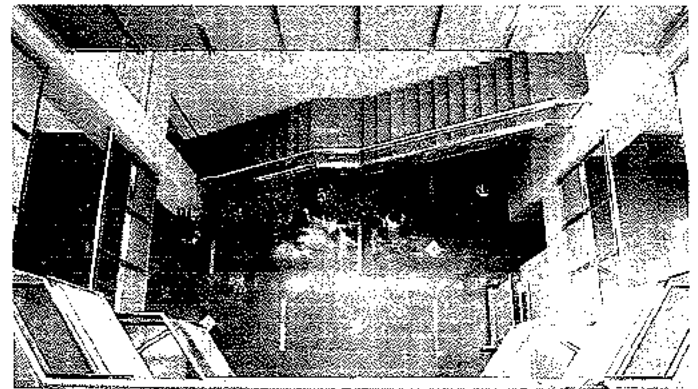


- ① 도로에서 본 전경
- ② 입면 상세
- ③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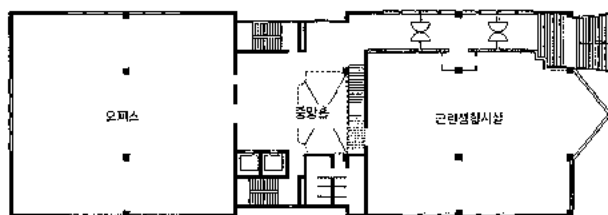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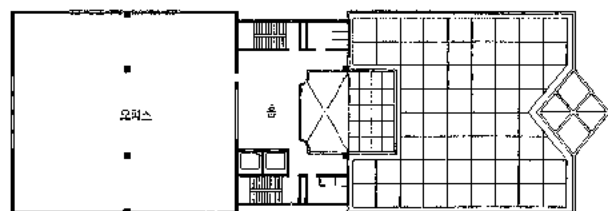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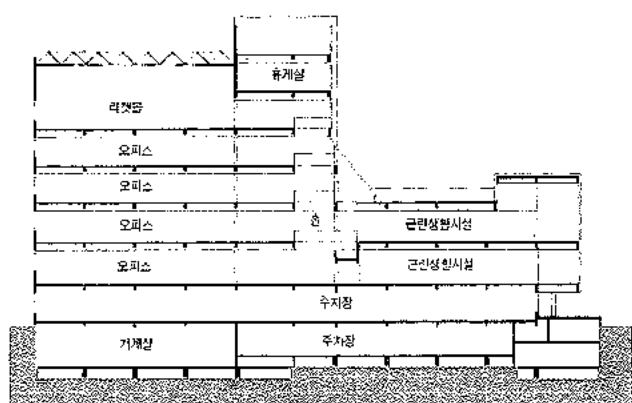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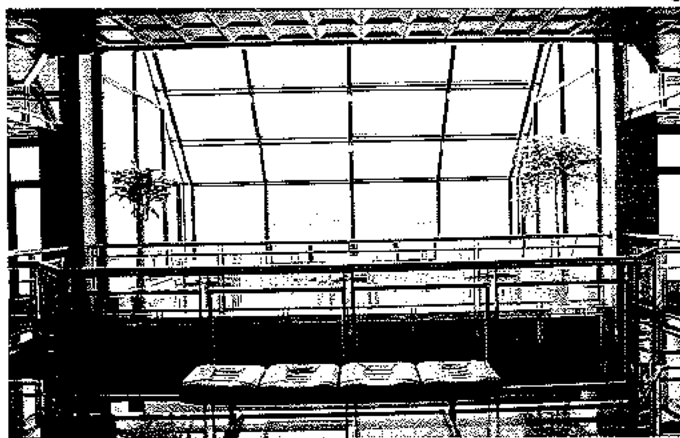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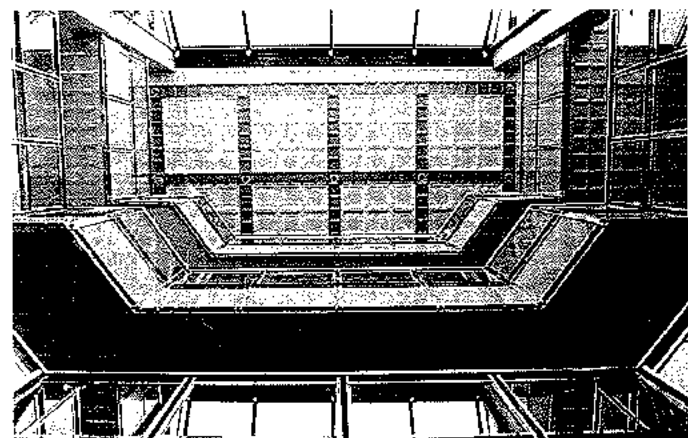


⑥

- ④ 옥외정원과 통하는 4층 휴게 공간
- ⑤ 1층 평면도
- ⑥ 2층 평면도
- ⑦ 기준층 평면도
- ⑧ 위에서 내려다본 로비



⑦



- ⑨ 휴게 공간
- ⑩ 로비에서 올라다 본 내부중정
- ⑪ 휴게공간 및 아트리움
- ⑫ 단면도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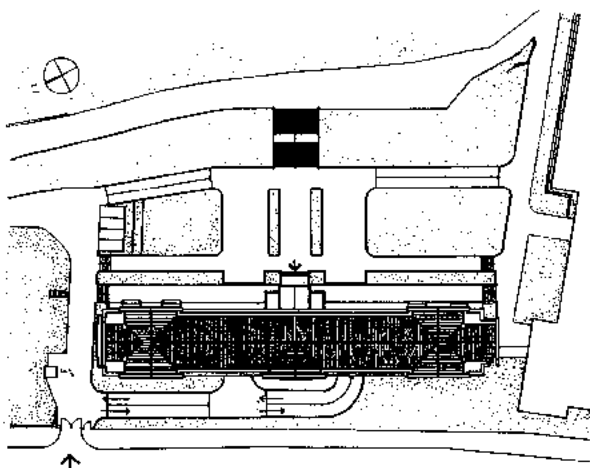
The Hall of Humanity Faculty, Ewha Women's University

(주)정림건축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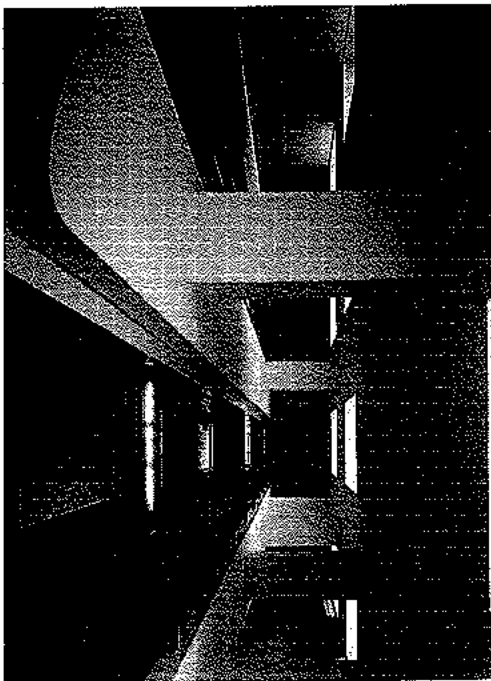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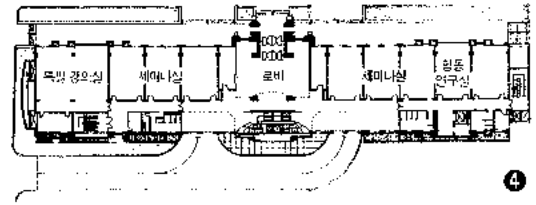


2



3

위치 / 서대문구 대신동
 지역,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4종 비관리지구
 대지면적 / 529,000㎡
 건축면적 / 1,451.19㎡
 연면적 / 11,985.4㎡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물갈기, 흑두기



이대 인문관은 2가지 점에 있어 이미 설계되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계획안들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는 이대 박물관에 보여주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건축적 맥락의 단절을 재 정립한다는 의미이고 두번째는 계획할 부지의 입지적 조건에 따른 건축환경적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첫번째의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로서 부지의 위치가 성신대로변에서 위치하고 있어 상시 음압이 75dB 이상, 최대치 90dB로 나타나고 있는 곳으로 소음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음에 대한 문제는 기존 인문대학관에서 소음으로 인한 강의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소음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서 우리는 건물 자체가 커다란 방음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평행되도록 배치하였고, 도로측의 벽은 복도 및 계단실 등단을 배치하여 음에 대한 완충대 역할을 하도록 하고 모든 창은 채광만이 가능하도록 고정창 및 유리블럭을

사용, 음의 차단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완충장치는 환기에 문제를 유발하므로 그 대책으로서 3~6층을 뚫어주고 지붕속에 팬(fan)을 설치, 강제환기를 시켜 환기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이전의 일련의 계획안들에서 보여준 건축적 맥락은 박물관지붕으로 지붕을 덮고 건물의 벽을 둘로 감싼다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인문대학의 교수연구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화여자대학의 역사성, 전통성 구현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였고, 그 방법을 건축적 맥락 재현에서 찾아보았다.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1층 로비전경
- ④ 1층 평면도
- ⑤ 전면 주출입구측 상세
- ⑥ 복도 및 중정 상세

장석교회

Changsuk Church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탐

Designed by Choi, Young-Jip



위치 / 서울 노원구 월계동873-1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3,561㎡

건축면적 / 705.21㎡

연면적 / 9,946.75㎡

건폐율 / 19.8%

용적률 / 56.2%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Post T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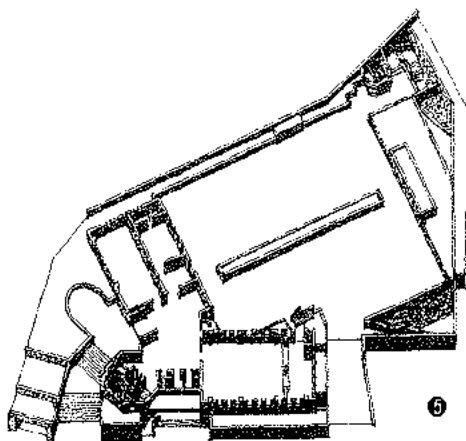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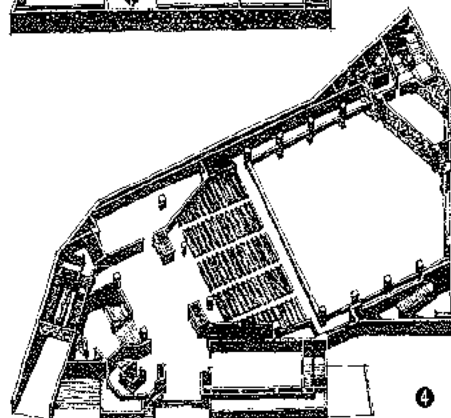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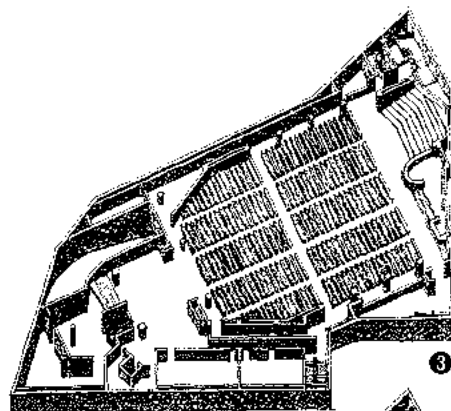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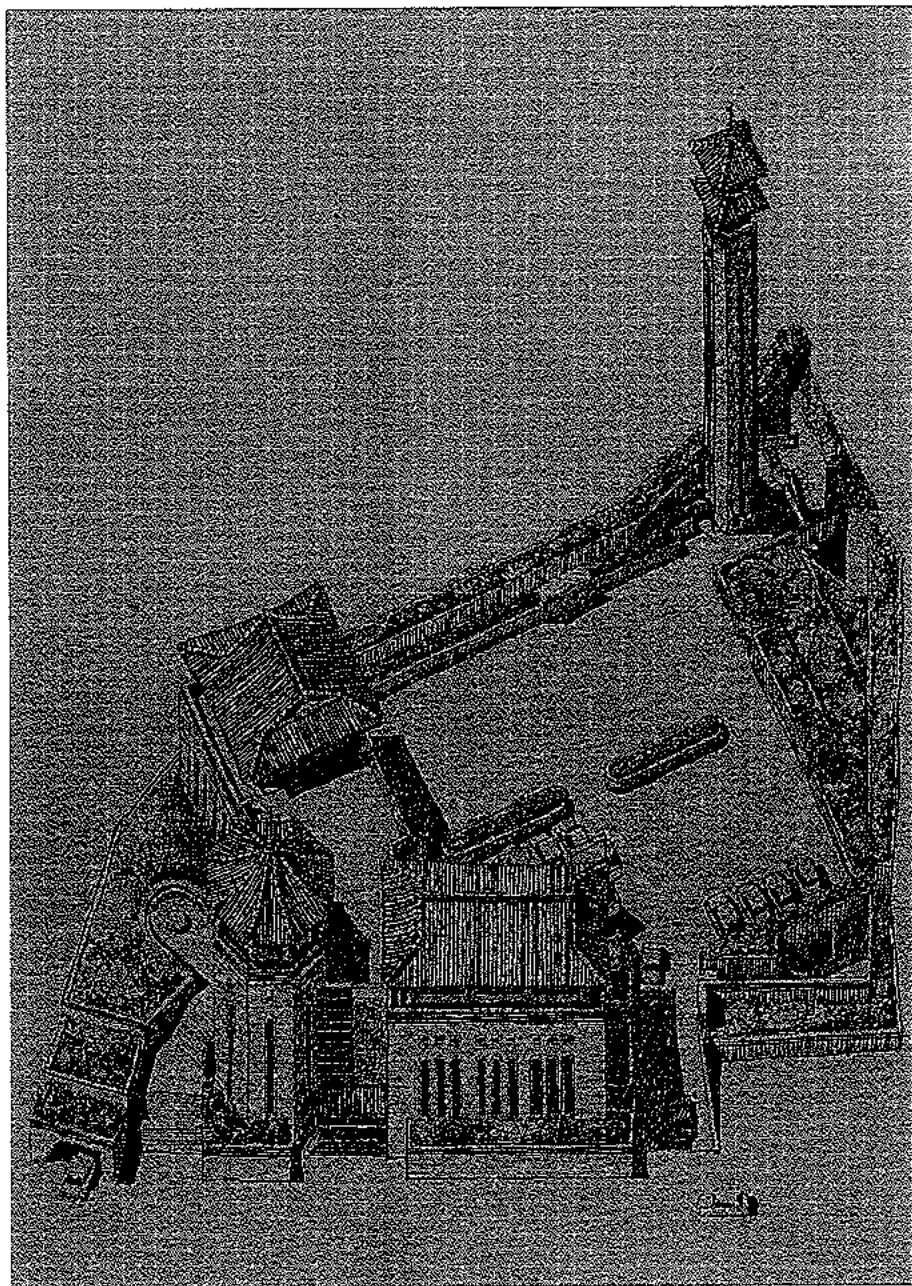
한창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월곡동 야산, 자연녹지지역의 일부대지에 교회설계를 시작한지 2년이 넘어간다. 어려운 대지조건, 대형교회로서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형성, 원만한 기능충족과 더불어 독특한 외관조성등 모든 전체조건들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더니 2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만 것이다. 이제 설계는 끝났지만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나게 될지는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다. 한국교회 2세기에 접어든 지금, 또 21세기를 향한 우리 교회의 각오와 자세에 걸맞는 아이덴티티를 갖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던 숙제를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쨌든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고딕의 아류가 더이상 한국교회의 얼굴일수 없듯이 직설적 전통건축어휘의 차입이 근본적 해결이 될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어설픈 데포르메보다 오히려 순진한 적용과 발전적 응용이 도심의 숲속 언덕에 위치했을 때 그렇게 잘 조화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교

회의 적극적인 협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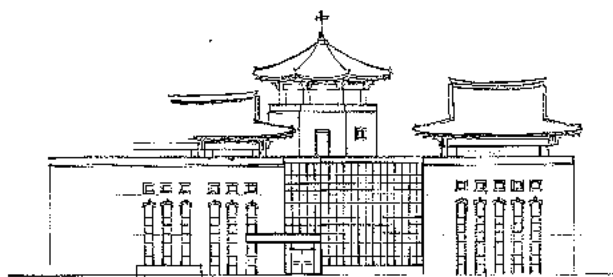
팔각정과 합각지붕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면서 대비와 분절, 질서의 복합, 절제와 파격 등을 구성·조화시키는 맛이 흥미로웠고 그로 인해 조성된 외부공간이 역동적인 공간으로 자연과 조화되며 짜여질 때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목사님은 한 요소 한 요소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건축위원회의 이해와 격려 속에 건축적으로 그 뜻을 구체화시키고 표현했다. 우리의 풍토속에서 수천년 다듬어져온 우리 건축의 얼굴을 현대에 맞는 새 내용을 담아 기능과 상징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한 발전적 시도를 깨울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포스트 모던이다 해체주의다 하여 무분별한 유행사조에 휩쓸리기는 쉽고 또 그렇게 해야 앞서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나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건축본질의 탐구와 테마와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답습이 아니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시도는 발전을 전제로 하는 시험이며 그 성과는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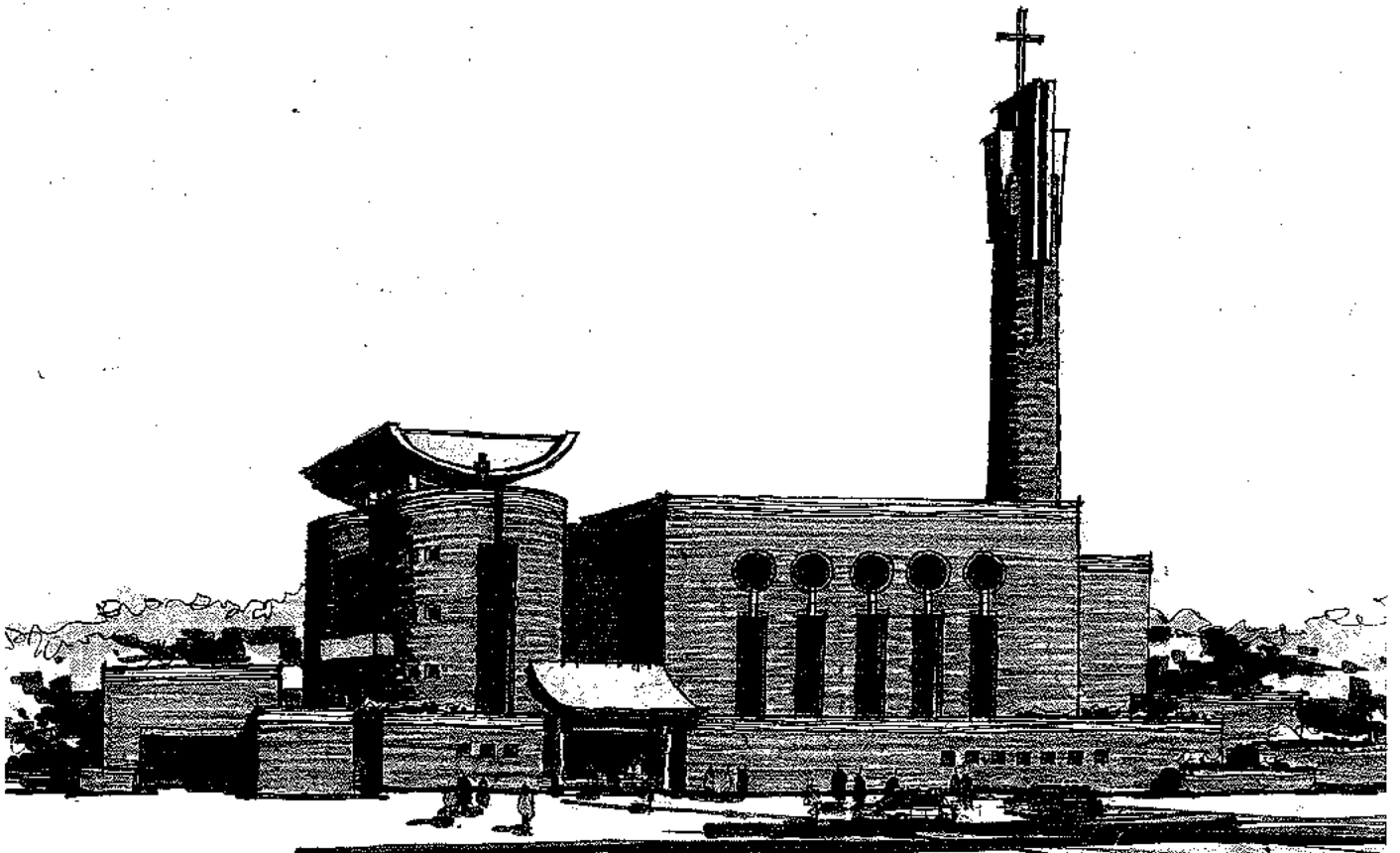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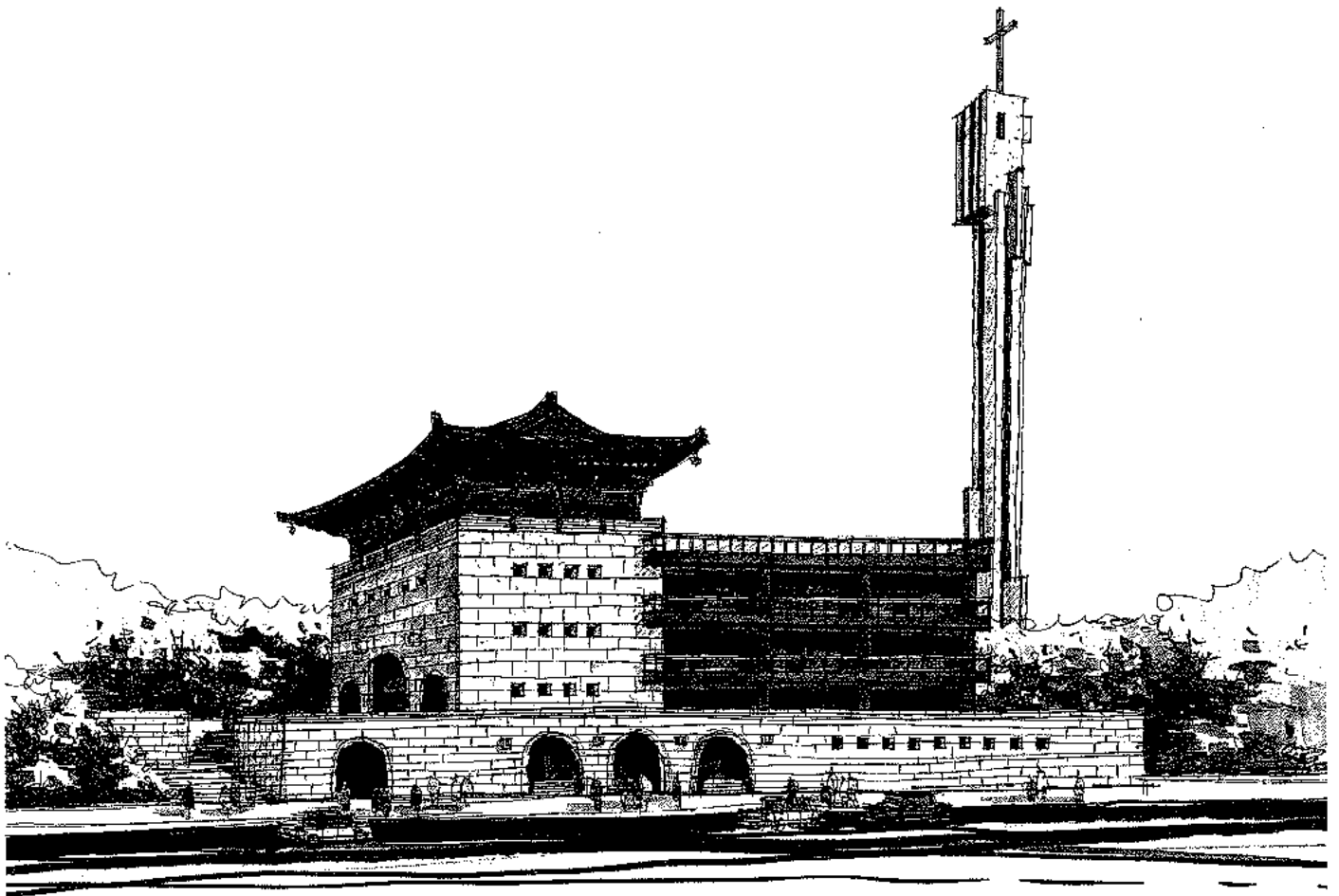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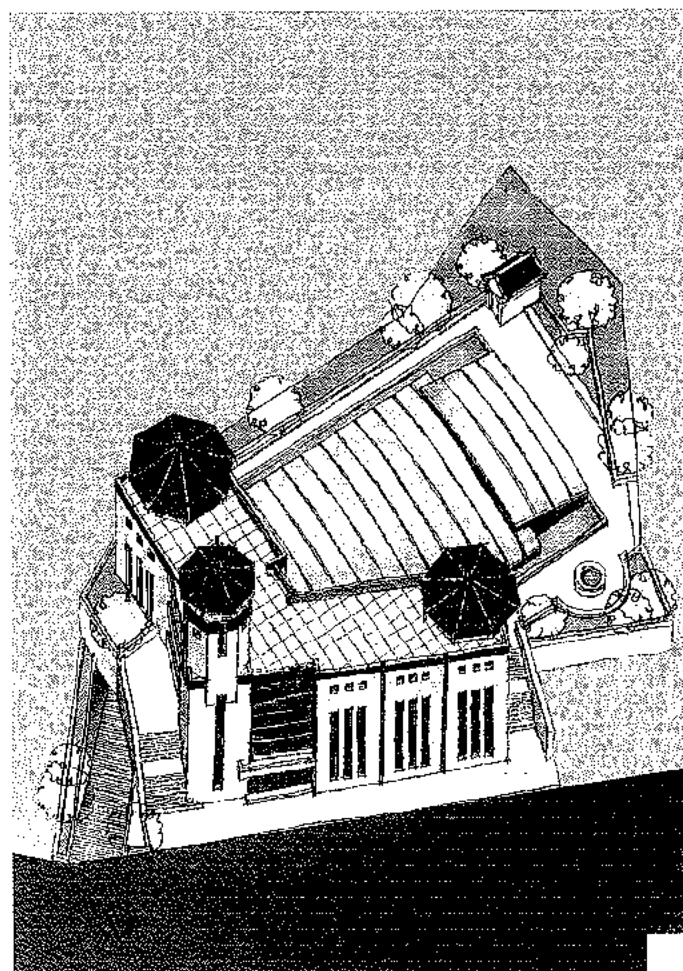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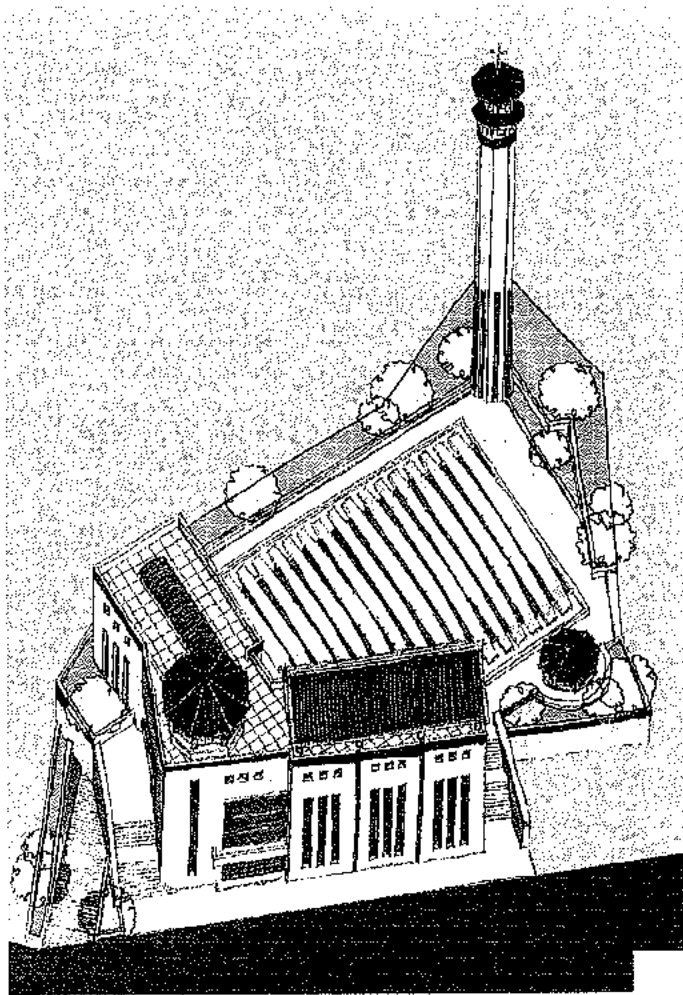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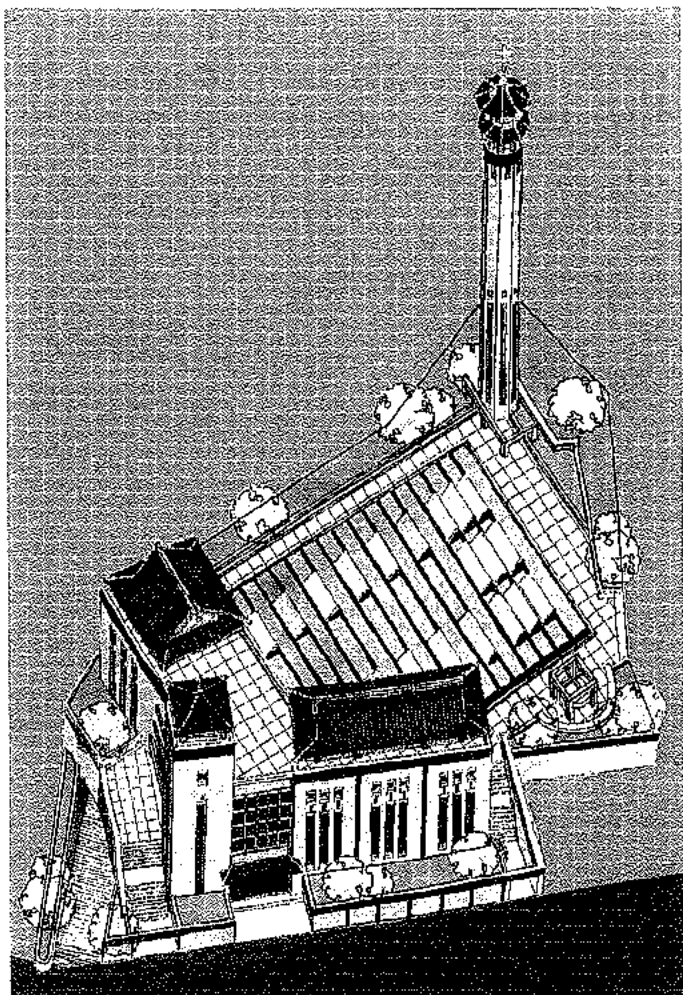
②

두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전통건축의 복원이나 답습, 재현이나 적용이 이루어져기는 하였지만 역지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이러한 시도가 시행착오가 될지 몇 들어진 실천적 대안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이런 기획에 의욕적인 시도가 다성적인 나태나 고식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발상에서가 아니고 주체적이고도 외도적인 대안의 실험으로 어렵게 정말 어렵게 만들어가는 일임을 이해하고 끝까지 지켜봐주길 바랄 뿐이다.



- ① 투시도
- ② 최종안
- ③ 지하2층 평면도
- ④ 지하1층 평면도
- ⑤ 지상1층 평면도





⑥ 초기안 I
⑦ 초기안 II
⑧ 대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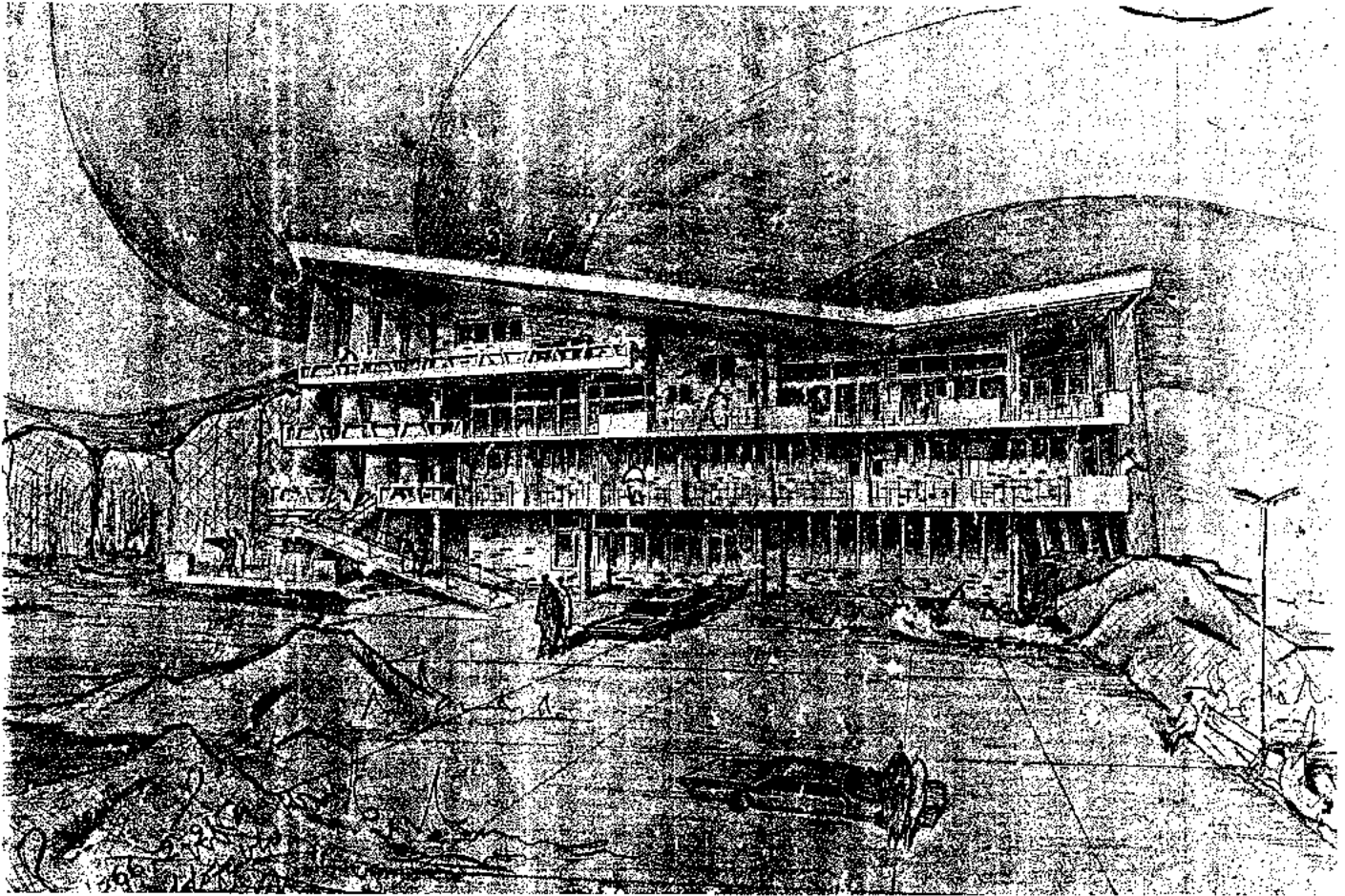
⑨ 대안 II
⑩ 대안 III
⑪ 입면스케치

스케치 5제

5 Project

洪宰東/종합건축사사무소 홍원

Designed by Hong, Jae-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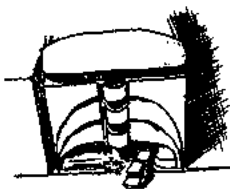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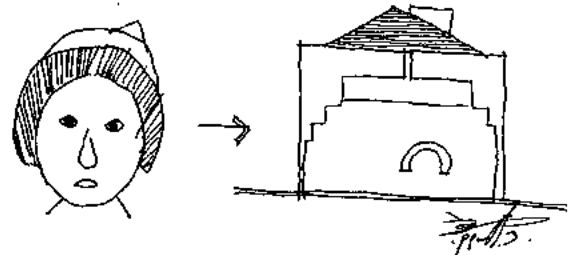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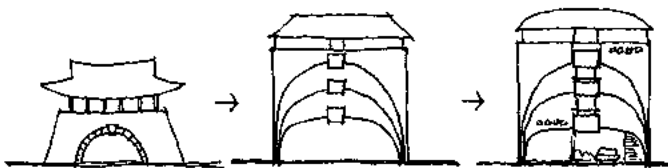
◎ 금정산 관광호텔

학교를 갓나와(66년) 건방지게 건축가협회 작품공모에 응모했던 초기의 sketch이다.

내 아내를 꼬실 때(propose) 선물한 이 그림은 장모님께서 이사 때도 꼭 챙겨

보관하셨던 것으로 장모님이 돌아가신후 임자를 찾아 왔다.

지금 나의 사무실에 채색된 투시도를 전시하고 있던터라 번번히 않게 여겼으나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있게 해주어 좋다.



◎ 남해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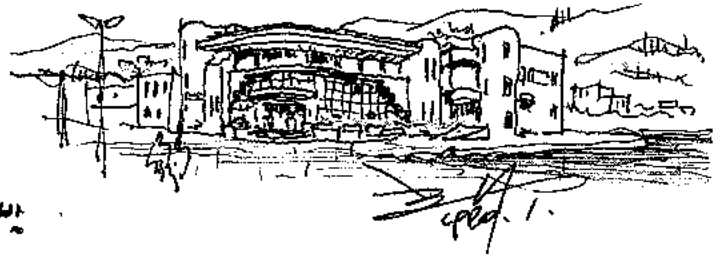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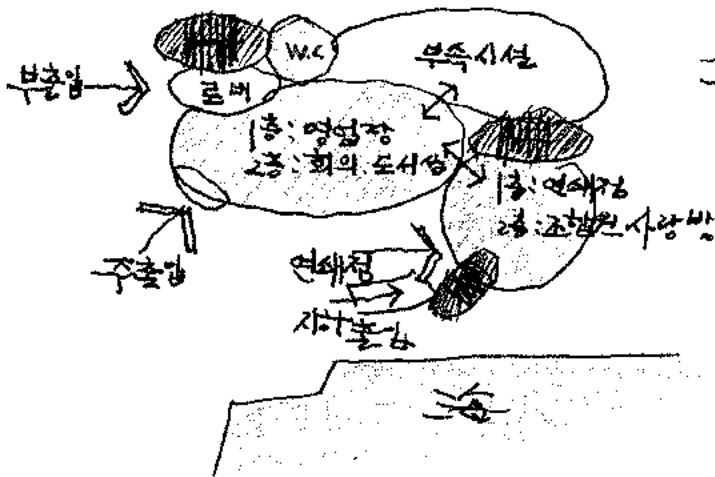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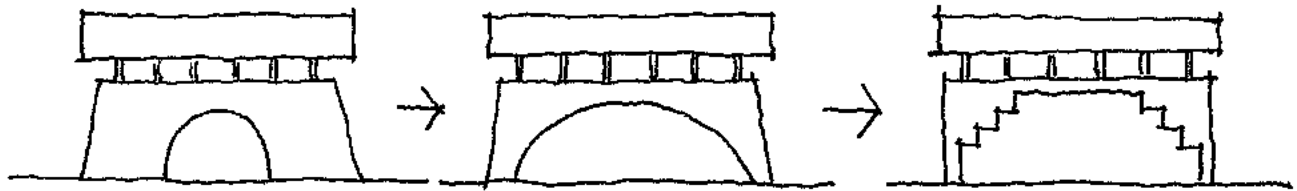
남해읍에 지어진 모델입면 계획으로 아취의 머리들의 수직확장, 전면 벽체를 인간을 감싸는 모습으로 안으로 오목하게 처리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이미지로 표현해 보았다.

지금 많은 손님들이 즐겨 찾고 있을까?

◎ MR. 장 미용연구소

"MR. JANG 미용연구소"

웬만한 사람이면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이름이다. 우연한 기회에 계획을 의뢰받아 고민한 끝에 인체의 머리부분에서 Image를 얻어 건축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7.8월 준공 예정으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당초의 이미지대로 태어났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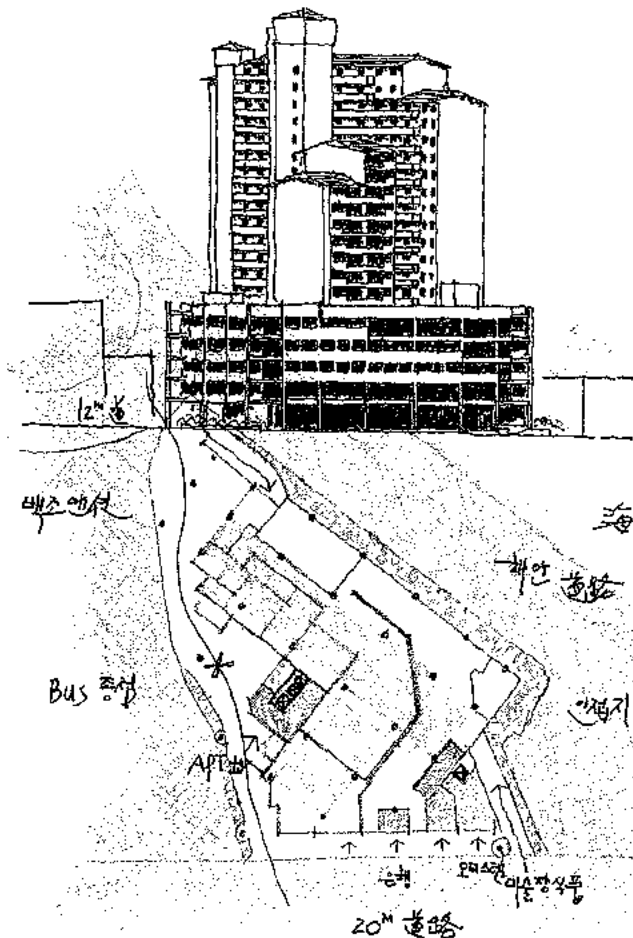
◎ 육지 농업협동조합 청사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농업청사로 어떤 작품보다도 애착이 가는 작품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성난 파도가 포효해 씻어가버린 해변가에서 멎었던

옛날을 회상하며 보다 안정된 건물이 되도록 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소박함과 건실함,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모티브로 하였다.

91년 9월 준공후 지역주민들 뿐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하여 한껏 보람을 느꼈던 작품이다.



◎ 상림주택-송도 주상복합시설

이 Project는 1월말 충무 한려관광호텔에서 계획을 의뢰받아 우여곡절끝에 설계를 맡게된 송도 해변가의 住商複合建物이다.

저층 상가와 고층 아파트의 접합부 구조해석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 완성될 모습을 상상해보며 주변경관과 잘 조화되고, 입주자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담아낼 손색없는 공간이 될 날을 기대해 본다.

구조 代案 제시의 활성화

Let's Activate, To Make a Alternative Idea on Structural Design

李昌男/센구조 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현상 설계를 하는 곳에 나는 가끔 초청을 받는다. 수북한 담배 재떨이, 마시다만 커피잔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설계실 환경에서 뽑아내는 천연색 설계도가 어찌면 그렇게도 현란한지 이해가 안간다. 그러나 평면도와 단면도 등 구석 구석을 살펴보면 입이 다물이지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다. 꼭 필요합직한 기둥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워버린다. 앞 뒤가 안맞는데도 그럴듯한 설명문을 써 달란다.

우선 당선해 놓고 보자는 작전이다. 하기사 평생 살을 맞대고 아들, 딸 낳고 살 부부가 될 상대방에게도 집안 흥 허물은 물론 당장 탄로날 본인의 신체적 결함까지도 숨기는 판국에 그 정도는 애교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는 강변도 있을 법 하나, 당선작으로 뽑힌 작품이 낙선작보다 반드시 우수하지는 않다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사위원의 판단에 혼란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간계주를 부리는 대신 우직하게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표현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때로는 현상설계 심의위원의 자질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안이 분명히 합리적이기는 한데, 심사위원이란 사람이 그 정도까지 이해할 만큼 유능할까? 오히려 평범하게 끌고 가서 감점이나 당하지 않는 것이 차선책일까? 를 고민하다 세월을 보내기도 한다.

10작품 중 1등만 본설계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봐야 할 판이다.

1년 내내 고생해서 통상에 깔린 문돈이 현상설계 하느라 쏟아 부은 여관값 설렁탕 값으로 또다시 빈털털이가 되니 맥이 풀릴 수밖에...

현상설계 10개 작품중 1개만 당선시킬 게 아니라 두, 서너개 우수작을 본설계까지 시켜서(물론 설계비 다 주고)콜라잡는 방법은 없을가 하고 터무니 없는 공상도 해본다.

외국에서는 한 1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한다는데, 달랑 한동 짓기 위한 설계니 아파트처럼 모델하우스 지으랴 수도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다. 완제품인 가전제품 하나를 고르는 것도 써보지 않고는 모르는데, 작가를 미리

선정해서 주문 생산한 작품이 100% 자기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또는 집짓는 동안 이사람 저사람으로부터 흠허물을 듣기 마련이다. 옛부터 길가에 짓는 집 3년 가도 못짓는다는 말이 있다지 않은가? 건축주가 제시한 설계 조건이란 것도 믿을 것은 못된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또 딴 생각으로 고민한다. 평생을 고생해서 번 돈 투자하는 건데 이것 저것 저울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건축주를 부추기다가 건물 완공도 못보고 망하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의 몇배라던가? 그래 놓고도 찬양받는 건축사는 양심도 없는 철면피라고 말해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 시내 모 빌딩은 짓는 도중 주인이 새번이나 바뀌었다. 고의는 아니였겠지만 건축사가 제시하는 공사비보다 계속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자들이 차례로 걸려든 것이란다. 설계비 두세번 지불한다고 해서 망하는 건축주야 없겠지만, 건축사 사무소는 많아지고 일거리는 줄어든다는 데 적어도 수십년을 쓸 집 짓는데 설계비 두세번 내는 것, 어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복덕방은 집 하나를 주인이 바뀔 때마다 땅값까지를 포함한 값의 몇%를 그것도 팔고 사는 양측으로부터 받는데 두세번 설계하는게 뭐 어렵겠는가?

대부분의 건축설계는 특정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전 지식없이 시행한다. 입찰이란 과정을 거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그로부터 최초의 불평을 듣는다. 자기들의 경험, 보유장비, 선호하는 공법, 재료 등으로 바꿨으면 하는 주문이다. 물론 "설계도면대로 하면 되지 무슨 간소리냐?"라는 옛날식 육박지름이 통할 때도 있으나, 그것도 한 두번 이상은 할 것이 못된다.

남시에 미친 사람, 새벽에 일어나도 피곤을 모른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공법으로 설계변경해 주면, 아주 짝 값에도 지어 준다.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푼 안되는 설계비 받고 법정감리비만으로 도장 찍으라고 건축주와 실랑이 하는 판에 설계변경까지 해 주려면 성가시고 본전생각 나는건 당연하다. 따라서 그 변경이 특정 시공업자가



성공한 건축사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다분히 건축주를 설득하는 마력이 있다. 작품을 소개하는 설명내용이 실제 작품의 질보다 앞섰을 때 건축주가 느끼는 배신감을 음미해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집 지어본 사람 중에는 건축사의 말을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분도 있다. 음치가 목청 돋구어 노래하듯, 색매이 유화를 그리듯 엄병대지 말고 근거있는, 그래서 진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돈 가진 자를 설득해 보자.



시공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 설계비 지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시공업자가 代案을 들고 나올 때 건축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0억짜리 공사를 80억에 짓는 방법이 있다는 데 안된다고 우길 필요가 무엇인가? 물론 건축사의 계획상 시도했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변경하는 것이라야 하겠지만, 때로는 얼마간 양보해도 안될 것은 없을 것이다.

자기가 뭐 천리안을 가졌다고, 무슨 100점짜리 예술가라고, 한번 그어 놓은 선이 수정되면 안될만큼 완벽할까?

Elevation이 어떻고, 평면의 축이 요것이라고 설정해 놓고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고집센 예술가 때문에 병드는 사람들도 이제는 말 좀 해 보라고 부추기고 싶다.

건축주나 사용자는 도면을 읽을 줄 모른다고 보아야 옳다.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종이에 그린 것을, 그것도 1/100, 1/50축적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건축사의 공간 개념을 이해할 것인가? 그저 그려려니 하고 돈 주고 계약서에 도장찍은 죄로 꼼짝없이, 마지못해, 마음에도 없는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성공한 건축사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다분히 건축주를 설득하는 마력이 있다. 작품을 소개하는 설명내용이 실제 작품의 질보다 앞섰을 때 건축주가 느끼는 배신감을 음미해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집 지어본 사람 중에는 건축사의 말을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분도 있다. 음치가 목청 돋구어 노래하듯, 색매이 유화를 그리듯 엄병대지 말고 근거있는, 그래서 진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돈 가진 자를 설득해 보자.

하나의 대지에는 동시에 하나의 건물 밖에 지을 수 없다. 남이 한번 설계한 도면, 신성불가침이고, 기독권을 인정해야 하며, 건축사의 체면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구실로, 조금만 손질하면 뻔히 노다지가 떨어지는데도 못본 체, 모르는 체 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긴다.

너는 왜 사전에 그런걸 모르고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했느냐? 질책하는 건축주가 두려워 쉬쉬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건축사도 있는 듯하다.

윤리니 도덕이니 들먹이며 부당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보았다. 무슨 천생연분이라고, 결혼식 올린 부부라고, 자기만 독점해야 하는 건축주인가?

관청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강제적으로 심사한 후 고치라는 명령을 받으면 군말없이 응하면서, 거기서는 윤리, 도덕 얘기를 꺼내 보지도 못하면서, 건축주가 소문 듣고 알아서 지척한 사항을 왜 목살해야 하는가?

내가 쓴 글을 내가 보아도 어떤 것은 가지런하게 예쁘고, 다른 것은 비뚤어져서 못생겼는데, “완벽”이란 게 어떻게 가능할까?

불과 2년전 온갖 자랑을 다 늘어 놓아 최고의 제품이라고 선전하더니, 이제 그것을 더 개선해서 더 싼 값에 내놓은 자동차 한두면 속아보았나?

우리도 마음을 열어 내 것도, 남의 것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U.R.로 물려들 외국 기업에게 일감 빼앗기지 않을 실력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형님 아우 체면보다 못먹은 떡, 코쟁이가 잽싸게 물어가면 그 억울하고 허전한 마음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이제 잔소리의 마감으로 긴급제안 제 3호를 정리해본다. 나의 설계, 수정할 것, 개선할 점 있으면 마음 놓고 고치도록 개방하자. 물론 나의 직업이 “구조”이니 “구조”에 국한된 얘기다.

건축계획 개념과 작품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공하기 쉬우며, 안전하고 값싼 공법 채택을 방해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물론 조건이 있다.

먼저 설계한 설계비는 완불하고, 새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을 개선안으로 절약하는 금액에서 지출하고도 만족할만한 절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착화하면 앞으로는 같은 Project를 놓고 여러개의 다른 안을 설계하는 기회(기본계획 현상설계 범위를 넘은)도 마련될 것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내가 관여했던 Project를 제3자가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물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변경한 당사자가 지는 조건이다.

비전의 제시와 통념의 정리

—서울오페라극장의 완공—

Presentation of Vision and Arrangement of Common Idea —Seoul Opera Theater

李範宰/단국대 교수

by Lee, Peom-Jae

예술의 전당은 93년 2월15일 서울 오페라 극장이 준공됨으로 해서 오랜기간에 걸친 공사와 논쟁의 여지,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의미반추의 여지등을 남기면서 대 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예술의 전당이라는 기획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단일 목적적 공간과 단일기능의 건축물—다목적적이지 아니라는 뜻이 아닌—을 문화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어느 것보다 그 상징적 기념성을 중요시해 왔던 80년대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기대해도 좋다고는 착상이었던 것이었다. 즉 다목적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것이 대다수의 관심이었다고 하겠다. 더우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계획되는 아트센터 (Art Center) 혹은 아트콤플렉스 (Art Complex)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는 참으로 궁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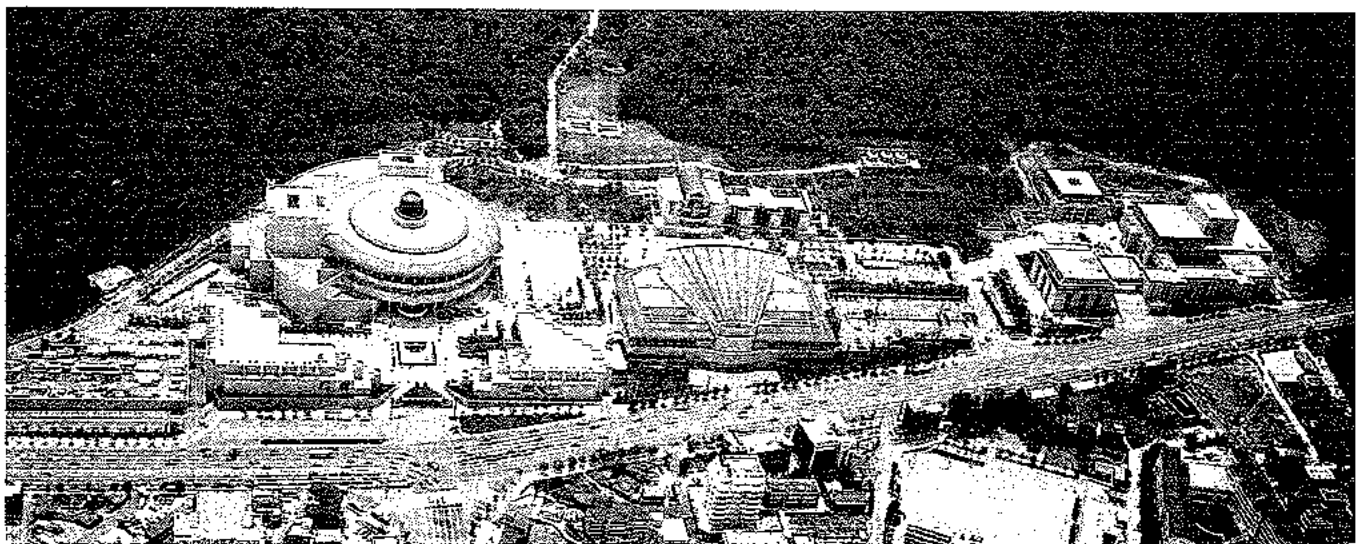
엄청나게 호기심이 생기는 사건이라 할 수 있었다. 그 당시까지의 관주도 또는 관청발주의 건축물에서 요구되어지는 이른바 한국적인 형상, 또는 강하게 요구되는 기념비적 표현이,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건축가의 개념과 의미등등과 조화, 마찰, 갈등, 정화되는가하는 것 또한 큰 흥미거리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그동안의 과정은 알려진 것 만큼이나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았으나,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설계한 건축가가 항시 그 이름을 걸고 맡아야한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역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현상설계를 거쳐 당선안으로서, 이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생략하거나 또는 집고 넘어가야 할 일들도 없지 않은 것으로 이미 알려지는 바있으나,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것을 넘어가고 공시적인 입장에서 서울 오페라극장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사실은 이 오페라극장에 대한 일벌된 시각으로 작품을 논한다는 것은 필자가 갖고있던 건축의 경험을 비추어가면서, 필자의 지식에 준하는 입장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두기로 한다.

서울 오페라극장을 평함에 있어, 건축물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전체 복합기능속에서의 이 극장이라는 유기적인 연결을 빼놓는 것이 되고 말것이다. 역시 전체 대지속 또는 도시의 맥락속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우선 우면산 북기슭이라는 대지의 위치가 지금과 당시에는 서울의 남쪽 끝 외진 곳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는 많았다. 그러나 작가 자신은 이것이 언젠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북한산으로부터 한강, 관악산으로 연계되는 커다란 형국으로 보고 이 곳이 하나의 도시적 공공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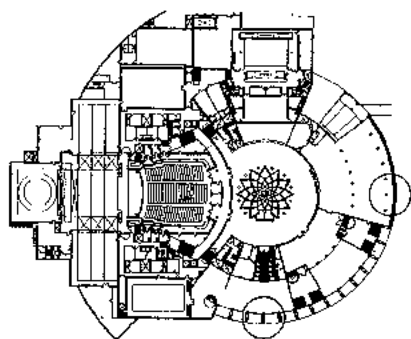
원경(항공사진)

예술의 복합 문화공간은 역사 진입이 자유롭게 유도되고, 그 위치가 주변의 환경—인공적이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있던—이 문화적 또는 일상 생활적인 것이어야 되지않나 싶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도시의 축과 도시의 평면적 또는 기하학적인 반영따위는 별로 설득력이 있어보이지를 않는 것이며, 도시적 공공공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였는가 중요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도시적 공공공간은 도시에서 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시 그 입지가 현재로서도 또는 가까운 미래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쉽게 인지되는 곳이어야 하지 않는가 싶다. 이 대지의 선택에 대하여는 더이상 건축가의 의지와는 관계없거나 대지선택과정에 작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일반적인 견해만 피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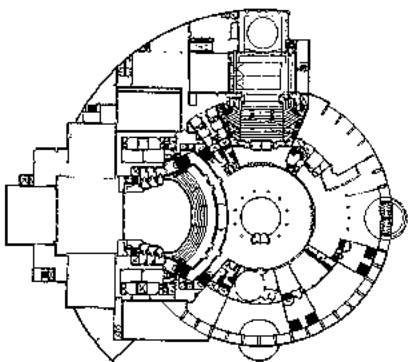
이 예술의 전당, 전체 계획상 오페라극장은 가장 중요한 점 또는 대상물 (Object)로 보인다. 여기서 점 또는 대상물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역시 전체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뜻과, 이 오페라극장을 하나의 원초적 기념성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술의 전당 전체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게 된 대지, 그것도 북쪽의 대지 일부가 잘려나간 형상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 도로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계획의 핵심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도로에 대응하는 두가지 방안이라면 하나는 도로에서 직교되는 어떠한 의미—즉 도로에서 직교해서 주출입구를 설정한다면가 또는 도로와 직교되는 몇개의 개념적 스트럭처(Structure—구조물이라는 뜻이 아님)를 설정한다면가 부여하는 방안과,

두번째는 좀 독특한 방안으로서의 현 계획안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이른바 도로에 평행한 내부축의 제안이다. 이점으로서 작가가 자신이 여러가지의 개념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측도로에서 본 전체적 인상은 성곽과 같은 높은 벽체들의 연속으로서 느껴지면서, 접근성이 차단된 계획으로 인식되어진다. 벽체너머 저 속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축제공간을 상상하기에는 차단하는 이미지가 아주 강한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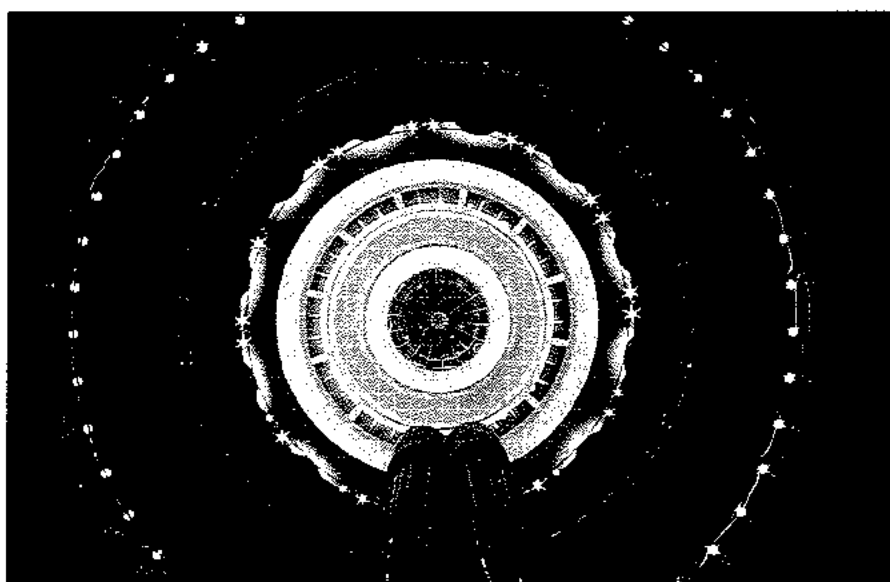
이는 도시속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하려는 작가의 의도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물론 각 건축공간에 들어가는 진입구는 잘 살펴보면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인지되고는 있다. 이 도시속의 도시, 또는 소도시의 개념이 어째서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 대체로 일본의 건축가들중에



대극장 무대레벨 평면도



중극장 무대레벨 평면도



중앙 동부분의 천장

도시내의 환경과 공간과의 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벽체등으로 도시공간속이 공간을 구성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예가 있기도 하고 물론 그러한 것과 이 계획은 다르지만, 역시 도시공간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도로가 가로(Street)로서의 의미를 가지게끔 최소한의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주위의 기존 문화환경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말기에는 너무 아쉬운 해석이 아니었는가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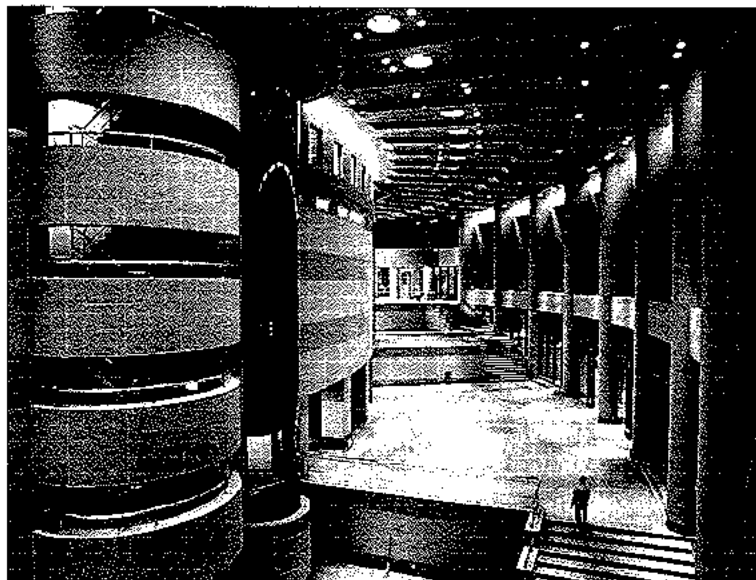
2. 작가가 잘 쓰는 건축적 어휘 또는 개념중의 하나는 '길'이라는 공동체적 의미가 내포된 '연계적 의미, 또는 연결적 매개수법'이 아닌가 한다. 작가가 그동안 계획했던 여러 다른 건축물에 나타나는 이 요소들은 계단의 개방(Open)이라던가 1층 펠로티(Piloti)의 사용이라던가 하는 건축계획 수법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다. 이

아트센터(Art Center)의 요소요소에도 이러한 계획수법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전체 계획의 개념에서 볼때 최소한 북측도로를 '길'로서 인식하고, 그 '길'과 아트센터 내부의 '길'이 연결되는 '매개'로서 의미를 갖게 하였으면 작가의 '도시속의 소도시'라는 이미지와 더욱 명확히 연상되지 않았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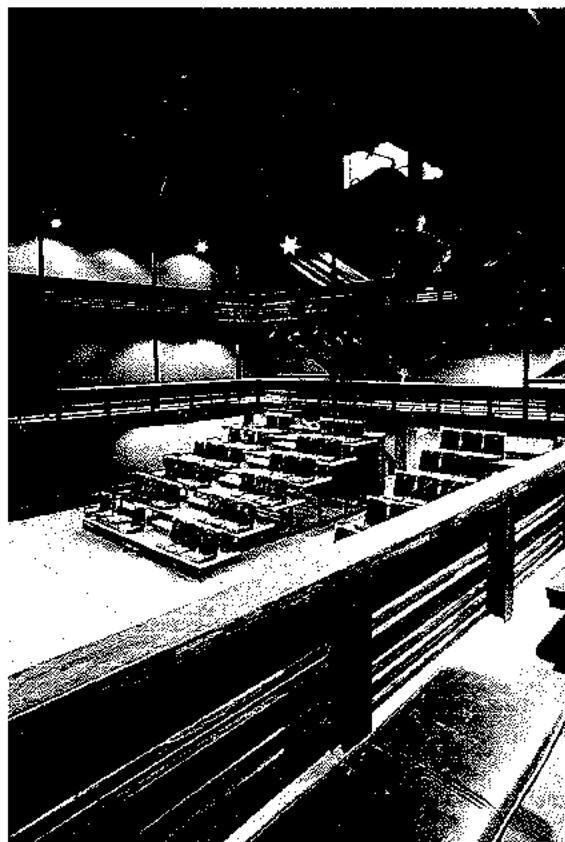
내지내 음악당, 서예관, 도서관(자료관), 갤러리 등등의 기능을 가진 건축과 이번에 완공된 서울오페라극장 등의 서로간의 관련성이 더욱 밀접하였으면 한다. 계획에는 몇개의 외부공간-심볼광장(Symbolic Plaza),아트프라자(Art Plaza),시장(Market Plaza), 옥외극장(Amphitheatre), 한국정원 등이 있었고, 이것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변경과 변화가 있었지만 정리해 본다면 결국 건물군들과 이 건물군을 연계시키는

오픈스페이스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몇개의 건축물이 적당한 가격, 스케일로 정렬되어있고 이것들 사이는 역시 기능을 갖는 몇개의 외부공간과의 연결이 주제인 것 같다.

여기서 각 기능, 건축물을 연결하는 외부공간(Open Space)의 크기와 스케일로 인해서 각 건축물 간에, 밀접한 인력이 강한 연결성을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생긴다. 따라서 단지내에 몇개의 건축물들이 단독으로 서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겠다. 충분한 액티비타(Activity)가 수용되어야할 넓이가 필요하기는 하였겠지만, 오브제(Object)들이 몇개 서있는 넓은 광장(Plaza)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닐까한다. 이번의 오페라극장의 완공으로 이러한 스케일상의 문제가 많이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페라극장 로비



로탈극장 내부

축제가 이루어지려는 중앙의 공간은 너무 잘 정돈이 되고, 작가의 세련된 건축의 경험이 너무 깨끗한 디테일과 섬세한 배려로서, 괜히 어슬렁거리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노래라도 부르고 싶어지는 구석진 코너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어눌한 구석이 있는 공간이 어딘가 여기저기 있었으면 한다.

3. 이번의 오페라극장은 역시 이 아트센터(Art Center)의 중심점으로 인식되어진다. 중심점이라함은 사실상 다른 융통성을 가지지 못하는 강력한 중력(Gravity)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오페라극장의 형상이 원형쪽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가한다. 원형의 의미는 그 도형자체의 강력함, 또는 단결함을 높이 인식된다는 것도 있으나, 이는 방향에서나 또한 별 저항없이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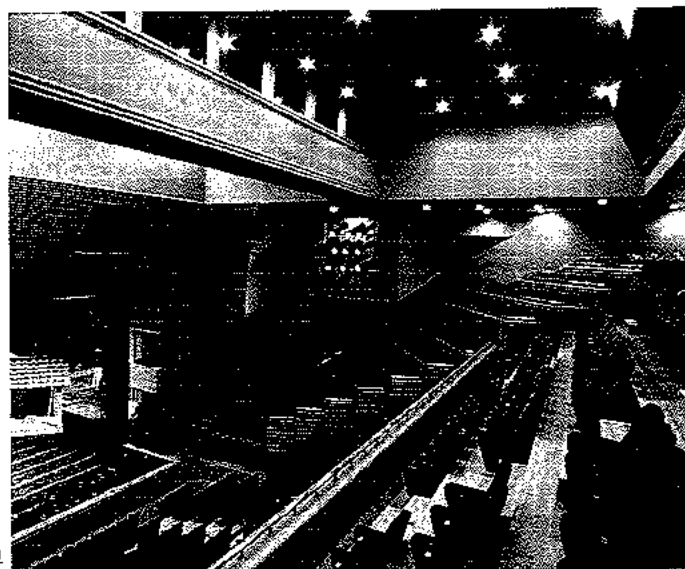
형상이라고 하겠다. 이 원형을 평면형태로 인식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평면자체도 사실은 원형(정원)만은 아니다. 또 실제극장의 기능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페라극장은 소위 말굽형의 객석형태를 가지고 있고 토월극장이나 자유소극장은 사다리꼴이나 직사각형의 평면 형태인 것이다. 지붕은 이러한 여러기능을 다 덮어버리고 통합하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원형이라는 이미지를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로툰다라는 중앙 홀에 대한 역점적인 이미지 구현이 주가 됐던 것 같다. 어찌서 이 오페라극장에 원형의 모티브를 도입한 것일까가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은 작가자신의 그동안의 계획안들에서 나온, 형상에 대한 본인의 잠재적 의식이 주된 이유의 하나인 것으로 보여진다. 작가의 다른 작품에 원형, 또는 이와 유사한 모티브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의 사각형 평면과 육면체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에서부터 현실을 분해하고 타파하며 새로운 작가고유의 형상과 질서를 추구하려는 작가정신의 고유함에서 그 이유의 첫째를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마 원형이외의 도형이나 형상에서 나타나는 고정적인 이미지, 나아가서 그런 형상에서 추측되는 방향성, 고정관념속에서 탈피하고 싶은 작가의 순수욕구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서 고정되지 않은 가능성, 가변성을 통한 작품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추가하였다 하겠다. 둘째는 이 오페라극장의 배치상의 위치에서부터 연유된 이유라고 하겠다. 초기 현상 당선안에는 원형의 평면이 아닌 사각형의 평면이었던 것이 원형으로 바뀌어진 것은, 전체 배치안을 놓고 오페라극장이 갖는 장소의 특수성에 입각한



오페라극장 객석 부분



자유소극장 내부

여러가지 고민을 통한 결과와 결론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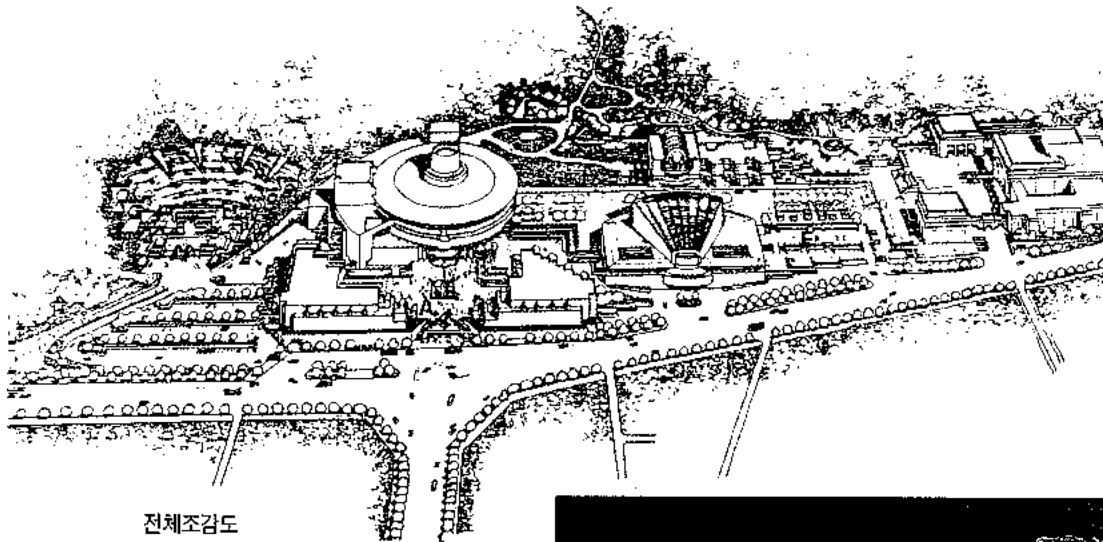
이 오페라극장이 갖는 위치의 중요성은 첫째로는 가장 큰 덩어리 (Mass) 이면서 북측의 T자형도로의 정면에 위치한다는 정면성을 가져야한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어느곳에서 보아도 이 오페라극장이 전체 아트센터의 가장 핵심적 중추로서 시각적 중심 목표 (Visual Target)가 될 위치라는 것이며, 셋째로는 거리에서 진입한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가지는 아트센터 내부의 광장과 연결될 수 있는 변환점적인 위치 (Turning Point)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해서 벽과 같은 한 방향에 강력히 대응하는 이미지, 박스와 같이 정면(Facade)가 너무 뚜렷한 이미지 등은 적합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역시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내포되는 형상은 정면성, 중심시각목표, 변환가능성으로 보아 원형의

모티브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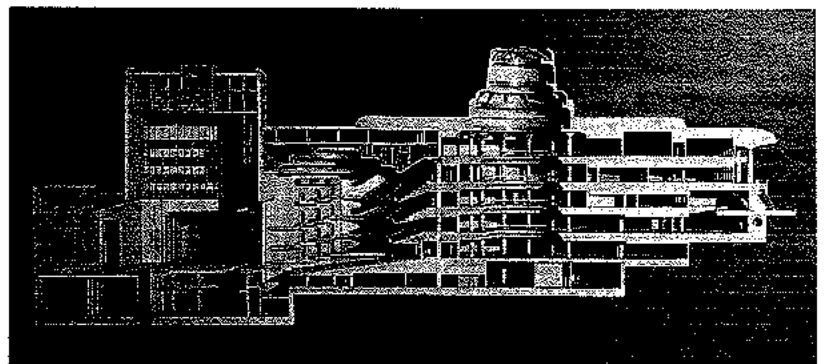
그러나 이 원형의 평면속에서 기능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극장이 갖는 여러가지의 기능은 원형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형태속에, 또는 순수도형속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는 인간의 삶이 추상적이지도 순수한 것만도 아닌 인간의 생활 패턴속에서 어우러져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원형의 가장 중앙부는 로툰다 (Rotunda)로서 지붕도 마치 상투달린 머리위에 쓰이는 갓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로툰다는 이런 현상적 필요와 이미지의 표현이라는 두가지 차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를 거꾸로 서술한 것 같은 바, 어쩔 수 없이 원형으로 '해결'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은 아니고, 원형평면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건축적 다양한 가능성이 이 원형이라는 순수도형을 채택한 중요한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작가의 원형에 대한 강한 이미지 집착은 오페라극장 내부—객석—부분의 실내 디자인에도 엿보인다. 주 객석층인 2층의 양측부분과 3층부분에는 박스를 배치하였는데 원호를 가지는 발코니 형태로 형성하고있다. 또한 이 극장의 객석천장은 단으로 점차 좁아지는 상승감을 나타내면서 원형통의 높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각 발코니 부분과 각 부분적인 디테일도 원형, 원호등의 디자인 요소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페라극장은 마치 커다란 통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위가 점차로 좁아지는 종 모양의 내부 공간은 음악적인 추억을 상기시키기에 적합한 것 같다. 바이올린의 울림통이나 또는 악기의 어느 부분에 들어와있는 것 같은 스케일이 적당한 실내공간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로툰다의 내부에서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중앙의 오픈된



전체조감도



단면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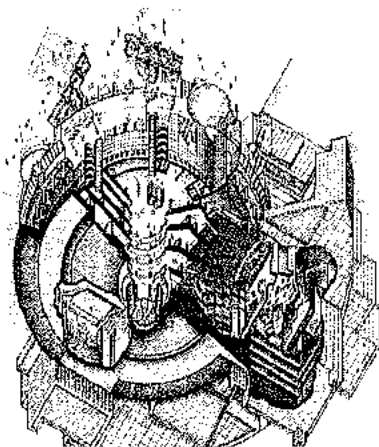
공간은 이 건축물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로서 원형의 평면적 해석이 아닌 공간으로서의 해석을 명확하게하여 주고있다. 중앙의 상부 오픈 공간이 어떤의미로는 극장보다 더 공공성 (Public)을 띄고 있으면서 전체 조형의 이미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있게 한다. 예술의 전당이 '도시속의 도시'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과 같이 이 로툰다공간은 '공간중의 공간'이라는 어휘로 풀어볼 수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우리는 공간의 의도된 정리를 보게 된다. 이 로툰다 공간에서 작가는 뚜렷한 의지를 표현한데서 성공하였지만, 판테온과 같은 질서정연하고 정돈된 공간으로서 의외성과-물론 계획된 의외성이 될런지는 모르나-파격이 형성되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없다.

출입구에서부터 로툰다로 이어지는 로비공간은 로비연결통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북측으로는 층마다 휴게공간을

두고 있다. 북측의 출입구에서 이 극장으로 진입하려면 거치는 부분이 바로 이곳인데,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다 보면 연주가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있다. 연주공간은 내부공간임에도 외부의 오픈 공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것은 겹쳐져서 보여지는 열주들사이를 통하여 태양빛이 슬릿 (Slit)로 인입되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스케일로 보아 오히려 실내라기 보다는 반(半)거부공간과도 같으며 알도로시의 열주공간을 보는 듯하다. 이 열주의 연속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늘 관료적이거나 통속적인 형상의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련된 컴플렉스의 하나는, 열주와 지붕이라는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본격적으로 형상화된 이 형식은 그후 우리나라의 문화건축물속에서

일종의 전형적모형 (Prototype)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열주도 원형기둥을 사용함으로써 고 건축의 원형기둥의 의미를 상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지붕도 근대건축의 기본적 원리와는 다른 율법을 따르고 있다. 서구의 근대건축 개념에서 별로 중요하게 구분되지 않는 수직적인 요소-벽·기둥 등-와 지붕의 분리가 항상 중요한 건축어휘로서 자주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이전의 시기에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건축물에는 이러한 원칙에 준하는 형식을 인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국립극장의 열주와 지붕, 세종문화회관의 열주와 지붕, 독립기념관의 열주와 지붕등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 한다면, 이 오페라극장의 열주와 원형지붕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결국, 시대적 상황의 조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지? 그 열주가 실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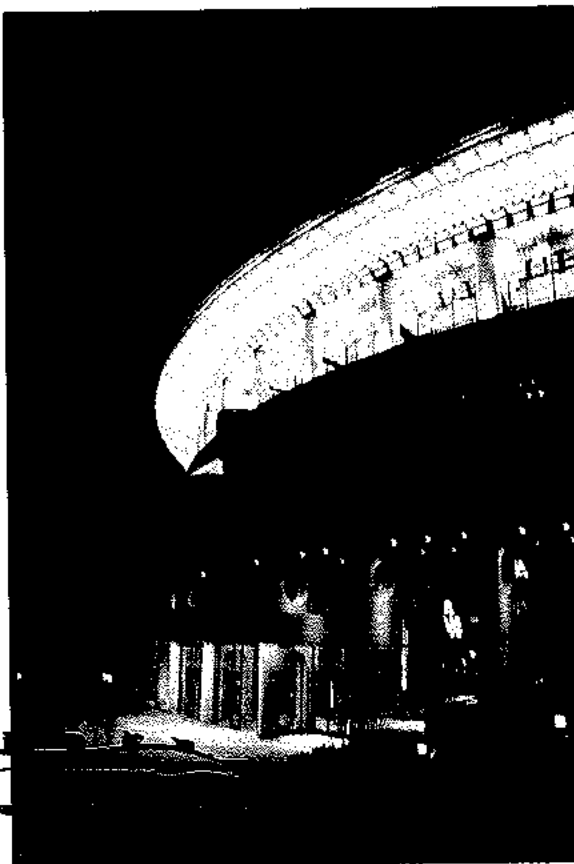


투시도



스케치

오페라 극장
주출입구측 야경



외부공간에 있어서의 공간적 구획과 건축적 의지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기둥, 지붕 또한 기단과 같은 세가지 구조해법요소에 의한 통상적인 구성인 것은 아니지? 열주는 이 작품에서 로툰다 부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나타나고 있다. 10개의 통로 기둥이 오프닝을 둘러싸고 있는데 주두 부분은 역 원추형을 만들고 있다. 주두가 형성되어 있는 기둥은 세계 도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역학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지 않나한다. 그래서 이 주두부분의 장식이 고대 아집트로부터 그리스 등등을 거쳐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타원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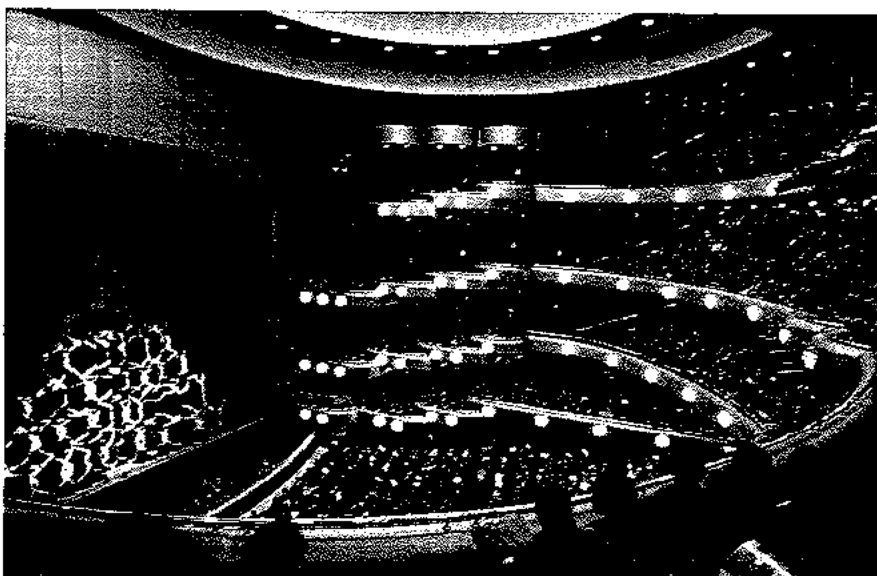
같은 원형의 기둥이지만 앞서 서술한 외부와 내부열주회랑의 기둥은 로툰다에서와는 달리 두개의 기둥이 하나로 묶여져있는 듯이 또는 기다란 벽기둥의 개념에서 중간 중간에 원형으로 뚫어 낸

것과 같이 보인다. 이것은 안과 밖의 열주공간의 연속성의 의미를 추구하였던것으로 보인다. 외부와 내부를 서로 연결시켜주려는 의도는 상층부에 있어서의 기둥처리와 지붕간의 관계에서도 보이는데, 이 처리 방안은 전체 덩어리 (Mass)를 수평으로 분할하여 열주가 수직으로만 형성되었을때의 꺾충함, 허약함—또는 그런것들을 보완하기위해 기둥이 과도하게 과장되어있는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디자인 수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의 불합리함—을 극복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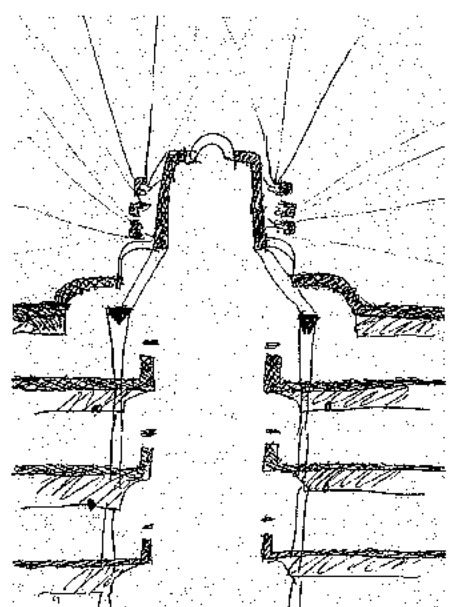
로비에서의 열주공간에는 직선계단 (Straight Stair)이 열주의 외부와 붙어서 설치되어있다. 그림으로서 북측 출입구의 로비에서 다른 층과의 연결이 외부 유리창을 통하여 외부의 공간감을 느끼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점은 공간의 연결과 변화라는 공간적 풍요감을 나타내기에

적합하게 되어있다. 이 로비의 열주공간은 로툰다의 공간과는 달리 외부내부의 변환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있다.

4 이 오페라극장에서 외부의 광장과 내부의 공간과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오페라극장에서 외부공간과의 연결을 위한 방법이 로비나 출입공간, 열주공간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있다. 즉 외부의 축제 Festival적인 공간이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인입되어 내부와 연결되는 건축적인 방법은 없었는가하는 것이다. 이 극장 자체는 완결된 형상과 완성된 상태로 정리되어있다. 자체가 갖는 비례라던가, 형상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추구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완벽한 개념의 표출이라고 할 수있다. 이 극장의 완결적 성격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조형물과 같은 흠집없는



오페라극장 내부전경



로툰다 스케치

조각과도 같다. 조각을 받쳐주는 받침대와 조각에 대한 배경과 같은 의미로 주의가 생각되어진 것이 아닌지, 주연 배우를 위한 엑스트라와 같이 주위가 처리되버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을 위하여 그 주변의 요소들이 희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형성이 강조됨으로서 다른 부분들의 의미가 축소화되어 버렸다고 하겠다. 마치 '성(成)'속의 '성(成)'으로서 두터운 돌 속에 갇혀진 조형물이 조각과 같이 보인다는 것은 전체 대지의 유용성을 보아서도, 작가자신이 처음부터 추구한 '길' '도시속의 소도시'라는 거리와의 연계, 소도시 자체의 독특한 축적공간이라는 의미가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남측 입면에서 보았을 때 무대 플라잉타워 (Flying Tower)의 높은 석재 탑의 매스가 -그 기능상 어쩔수없는 덩어리 (Mass) 이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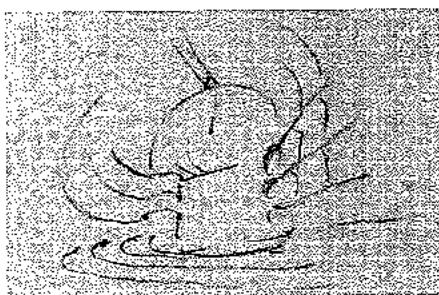
하지만-마치, 뒷면의 버려진듯한 인상을 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것이다. 원형의 평면과 원통의 모든 공간이 이 정채 아트센터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어느 방향에서도 변환과 가능성이 있는 방향감각을 주기위한 것이라면 정면과 측면, 측면이라는 명백한 구분이 생기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극장속으로 진입하여 느껴지는 공간의 변환, 공간의 감동적 의도, 진입공간의 공간적의미는 그것그대로 외부와의 연계성을 가져야하는 것이 아닌지?

외부와와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 외부에서의 단절을 간직하고난 후의 내부에서의 감동은 극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좀 더 풍부하고 역동적인 가치 연속이 되었으면 한다. 건축물속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즉, 안, 밖이 너무 뚜렷하며, 아트센터의 영역에 들어서므로해서 자연스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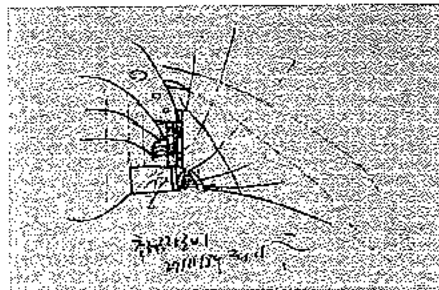
오페라극장이라는 공간속으로 유입되는 방법이었던면 하는 바이다.

5. 문화예술공간에서도 특히 공연공간은 그 시간대로 보아 보통은 저녁에 그 유용성이 증대하고 있다. 대기의 실내 공연의 액티비타 (Activity)는 저녁에서부터 밤에 이르는 시간에 일어나게되어 있다. 따라서 인공적인 조명과 야간의 건축공간, 건축의 경관이 (Night Scape)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밝음이 있는 조명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건축의 야경이 갖는 의미는 이미 익히 알려져있고, 특히 이런 극장과 같은 공간은 더욱 더 그 점에 유의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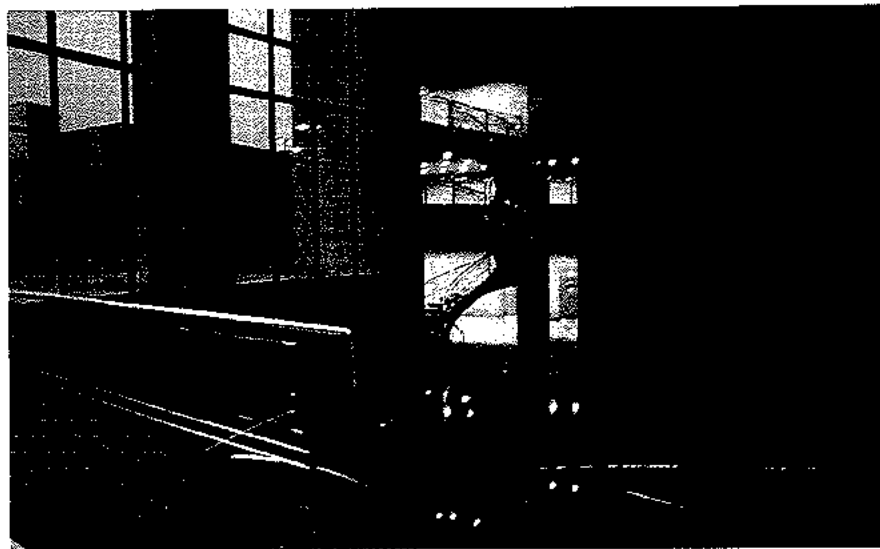
이 오페라극장의 야경은 원형지붕 바로 밑의 열주들의 밝음과 출입구부분의 밝음으로 확연히 규정되어진다. 로톤다 상부의 고른 불빛은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빛의 분배는



오페라 전용극장 스케치



로비스케치



오페라극장 연결계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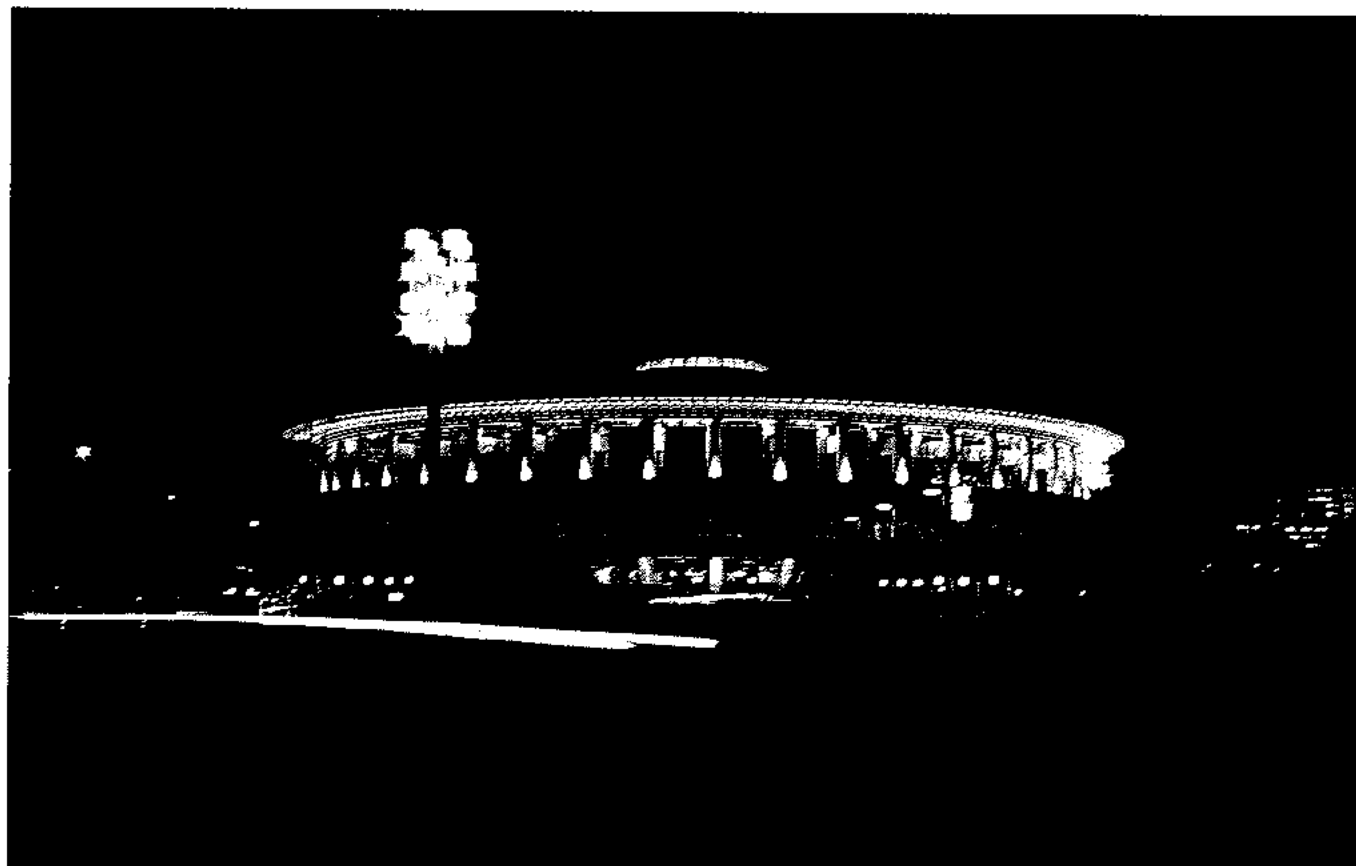
수직적인 장엄함보다는 빛의 고른 수평성이 눈에들어 옴으로 해서 친밀감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게된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적극적인 야경(Night Scape)의 개념이 넣어졌으면 한다. 건축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확연히 성립되었다면, 창문으로부터 새어 나오는 불빛정도가 아닌 무엇인가를 밤에 전달하려는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이다.

건축물 주위의 조경(Land Scape)은 넓고 평탄한 광장(Plaza)의 용도와 기능이 감상적으로 해석되어서, 나무를 심고 녹지를 형성한다는 개념에서 크게 넘어서지 않은 것 같다. 산기슭이었기 때문에 점차로 올라가야 하는 지형—도로로부터—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단등이 필요하였거니와, 어느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가져야 되기때문에, 그야말로 건축과 연관된 랜드스케이프의 본격적인 상념이 더욱 더 필요하였다고 생각되며, 녹지공간만이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은 아니었음을 작가 자신도 여러가지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바이긴 하다. 건축물내부에도 이런 조경의 개념들이 외부와 연계되어 공연과 음악과 더불어 자연적요소의 음미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더라면, 우면산이라는 산자락에 위치한 이 오페라극장이 더욱 큰 의미를 갖지 않았나 사료된다. 산의 일부를 밀어내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오페라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6. 사실 이 오페라극장은 그 규모나 스케일로 보아 상당한 덩어리(Mass)를 가진 건축물이다.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건축적 해석방법을 채택하였다면 아주 메시브 한 돌 덩어리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오페라극장은 얼핏보면 그다지 크지 않게 보인다. 그것은

작가자신의 건축적 재능임에 틀림없다. 또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남쪽은 제외하고, 그러나 사실 남쪽도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있다. 이 극장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거의 균일하다. 이것이 극장의 스케일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내부에 들어가면 또다시 작은 스케일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지만, 극장의 객석에 앉게되면, 또한 적절하고 아늑한—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스케일을 만끽하게 되며, 객석에서의 이 느낌은 객석주위의 발코니들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전달되고있다. 로툰다로 나오면 상부까지 통한 중앙 공간에서 스케일의 확장을 보게되나, 그것은 아주 적당한 크기임을 느끼게 된다. 역시 이러한 스케일의 적합함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오페라극장을 단순히 하나의 기념적 스케일의 공간—Over Scale—이 아닌



오페라극장 야경

사람들에게 의미있음을 주려고 한 계획상의 치밀함을 알게되는 것이다.

스케일의 적절함과 중간감의 변화를 주고 있는 스케일의 적절한 선택은 이 극장이 그 의관못지않게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장점이라 하겠다.

7. 오랜기간에 걸친 작업으로 이루어진 이 오페라 극장을 포함하여 예술의 전당이 완공되었다. 원래부터 작가가 생각해 왔던 개념이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현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축물들의 집합 (Complex)이 일단락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건축물 하나 하나가 모여서 자연적으로 특색있는 거리를 형성하고 이러한 거리들이 군집하거나 연관되어 도시를 이루어 나간다. 자연 발생적인 인간의 삶과 패턴이 스스로 생명력을 갖는데 비해서, 이

예술공간 (Art Complex)은 생명력을 갖게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자연발생적인 사태진전과는 반대로 계획, 실행, 운용의 단계로 나타났다.

‘도시속의 소도시’라는 개념이 과연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 공간들 (Complex)에 들어오면 작가 자신이 바랬듯이 누구라도 편안하게 머물러있을 수가 있는 곳일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축제공간이라는 의미가 계획상, 너무 의도되어 있어서, 축제가 일어나는 우연성, 자유로움이 오히려 위축되는 공간을 제시한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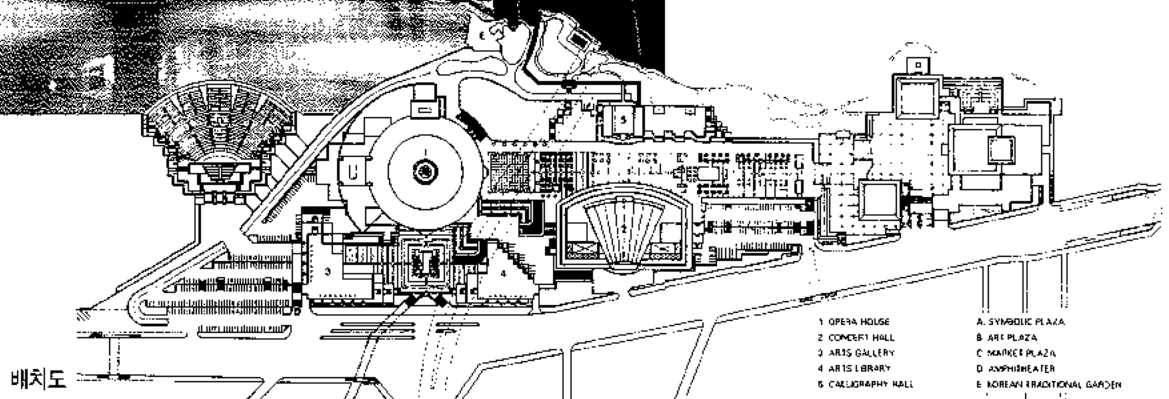
오페라극장이 너무 그 중심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서, 전체중의 하나, 또는 전체 예술공간 (Art Complex)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함에도, 자체가 중요한 대상물이 되고, 나머지 공간들이 부속되고 차등이 생겨버리지는 않았는가?

스케일의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오페라극장이 갖고 있는 기념성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또는 넓은 분류로 보아, 우리가 가져왔고, 우리의 사회적 잠재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예술공간 특히 공연장의 전형적 해법으로서, 지붕, 열주, 원형기둥, 서까래와 같은 조형의 모티브를 가진 디테일, 석재의 탄탄함, 관상적인 조정기법등이 사용되어, 미래의 어떤 이슈를 제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통시적인 관점에서—여러 쟁점으로 세련된 경험과 능숙함으로 정리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야만 했던 것이 아닌지?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의 단아하고 세련된 건축으로서의 오페라극장이 우리의 현대건축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바 크며, 그 속에서의 문화적 액티비티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로비전경



배치도

대전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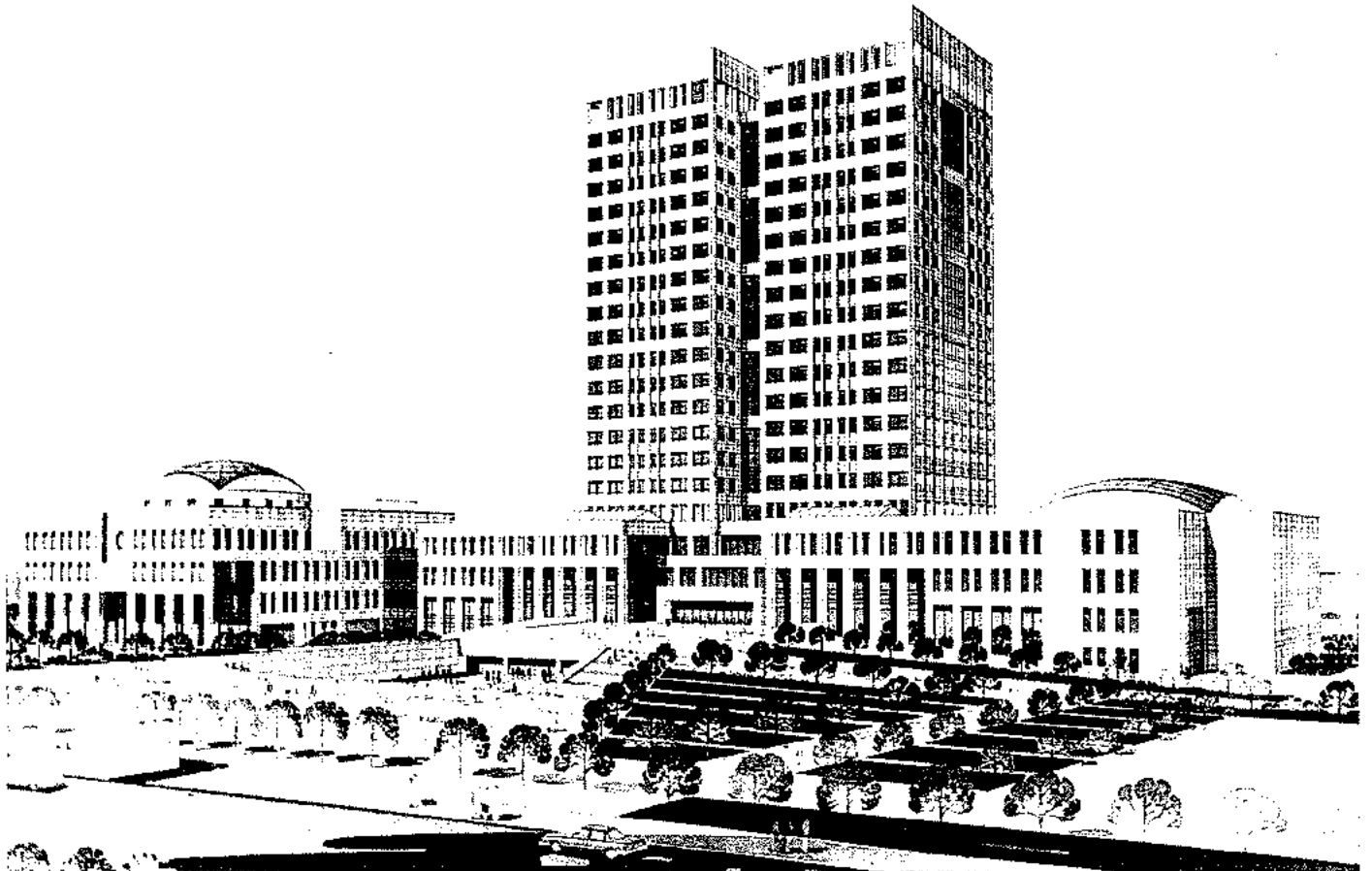
대전직할시에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93EXPO 개최와 더불어 날로 발전하는 직할시 위상에 걸맞는 새 청사를 건립코자 계획설계(안)을 현상 공모하여 전국의 32개 유수 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결과, 대전소재 정원건축(대표 박윤웅)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또한, 최우수작으로는 단우모람(대표 김홍수)안, 우수작으로는 청전건축(대표 정덕훈)안, 장려작으로는 주·아키프렌(대표 김우

성)안, 주·건원(대표 광홍길)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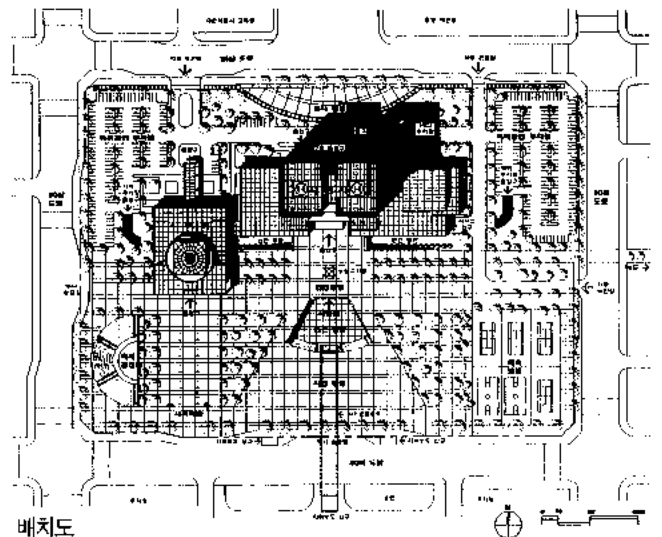
한편, 직할시에서는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전시민회관에서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시청사 건립을 위해 출품된 본선진입 작품을 대상으로 전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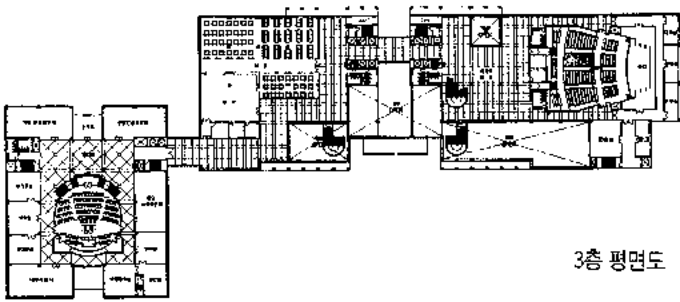
수상작외에 주·정림건축(대표 김정철)안, 주·한울건축(대표 최병천)안, 주·선진(대표 이상수)안, 주·신화건축(대표 김인수)안이 함께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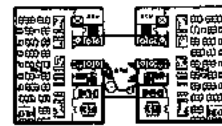
명칭
정원 종합건축(案)
(대표 박윤웅·이인호)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신시가지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대지면적 / 69,000㎡
건축면적 / 8,571㎡
연면적 / 71,864㎡(지상 60,024,
지하 11,840)
건폐율 / 12.42%
용적율 / 79.08%
규모 / 지하 2층, 지상 21층(지하
회: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 / 철골조+철근 콘크리트
외부마감 / 화강석 PC 붙이기
주차대수 / 744대(옥내 380대, 옥
외 36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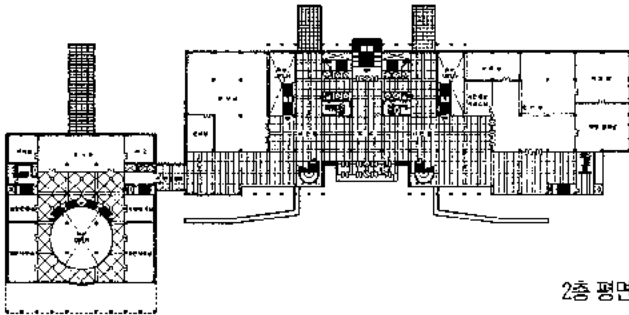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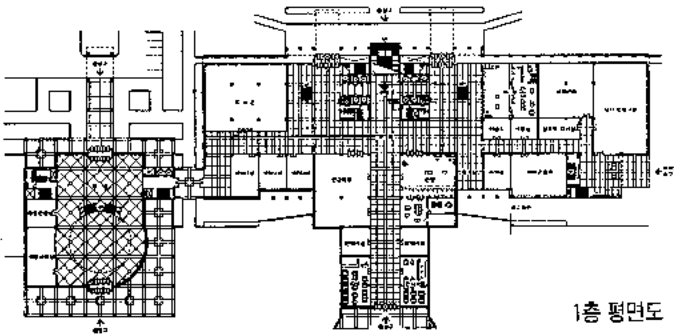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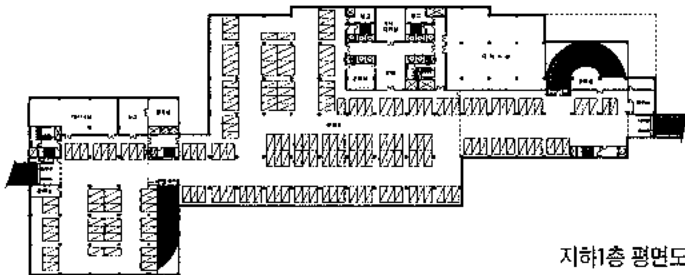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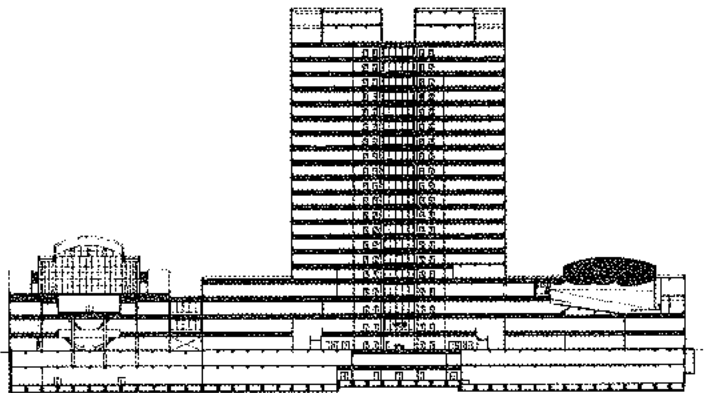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

■ 계획의도

둔산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계획되어진 시청사는 시민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민의 자치사회·문화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민의 장'으로 계획하였다.

주변공원 및 도시맥락을 수용하여 활성화된 외부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입체적 동선체계(진입체계)로 한층 시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창조적인 건축물로 계획하였다.

■ 배치계획

둔산 신도시의 도시축과 부지축에 의하여 공간을 배분하고 공원 및 녹도축을 부지로 끌어들이며 도시활성화 공간인 광장을 조성했다.

건축물은 부지의 중심에서 약간 뒤로 후퇴 배치하여 가로선상의 상업 및 주거지역과 연계된 녹도축을 살리고 녹도축선상의 끝에 위치한 시의회는 시본정보다 전면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부여했다.

광장은 공원축과 건축물이 접하는 매개공간인 시민의 모이는

장소,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에 시민광장, 후면에 휴식광장, 시의회 전면에 수경광장을 계획했다.

광장, 후면에 휴식광장, 시의회 전면에 수경광장을 계획했다.

주차장은 건축물과 근접하게 좌우로 배치, 건물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하주차를 통한 옥외 주차면적 감소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꾀했다.

또한 증축개념에 의하여 계획상 '┐'자 배치인데, 증축후 '└'자 배치가 되도록 하여 증정의 아늑한 광장이 되도록 했다.

■ 동선계획

보행자는 전면광장을 통한 1층, 2층진입, 후면광장을 통한 1층진입으로 입체적 동선체계로 접근성을 강화했다.

차량동선은 후면에서만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특별차량, 서비스 차량을 위한 가변동선으로

이용의 효율화를 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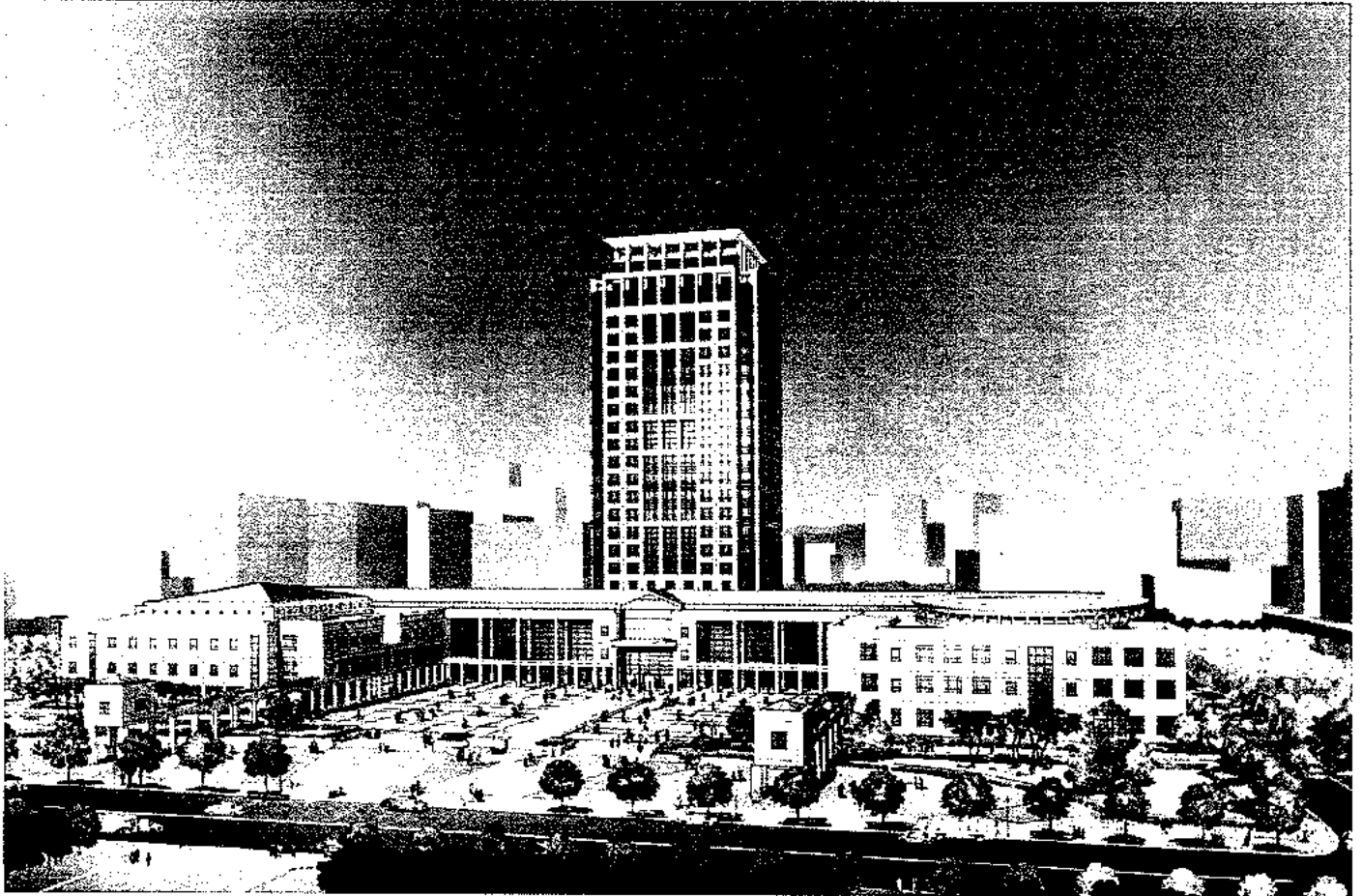
■ 건축계획

저층부(1층~4층)에 대민관련 시설, 고층부(5층 이상)에 업무시설을 배치하여 기능적 분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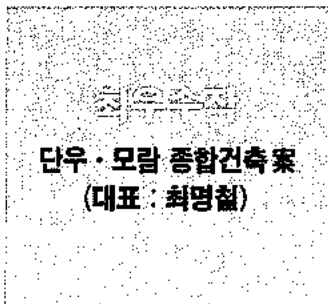
저층부는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넓은 홀과 시민 편의시설을 집중배치하고 피로티를 도입, 개방하여 동선을 유도했으며 고층부는 고도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텔리전트화 빌딩으로 층고를 높이고 기둥이 없는 넓은 업무공간으로 계획했다.

또한 업무공간을 아분화하여 국별, 실별 규모에 적절하게 한 계층에 한 개의 국이나 실이 모두 들어갈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은 국, 실은 한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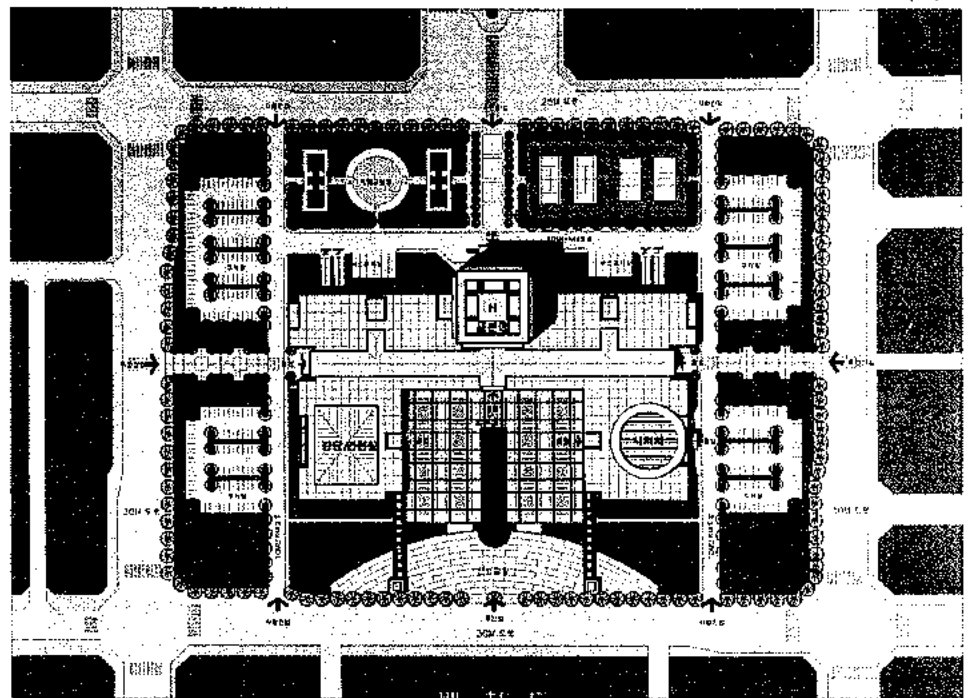
업무공간이 연결되는 곳에 3개층에 1개소씩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사무공간이 되도록 했다.



투시도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행정용지 198B
대지면적 / 69,550m²
건축면적 / 14,082m²
연면적 / 70,956m²
건폐율 / 20.25%
용적률 / 79.46%
규모 / 시본청-지하 1층,
지상 21층
시의회-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골조+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811대(법정 390대)
외부마감 / 알루미늄 커튼월+화
강석



배치도

■대지의 도시적 위상과 접근체계

도시의 중심

둔산 신시가지는 구도심 진잠
유성 대역의 부도심을 묶어주는
새로운 도시 중심이다. 중심지
구의 중심축선상에 있는 대지
는, 지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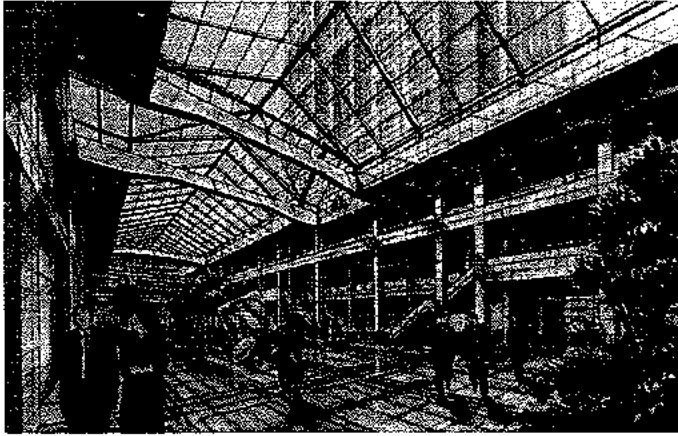
광역 대전의 중심이다.

둔산지구를 중심으로 각 부도
심들은 계룡로 둔산대로 대덕대
로로 연결된다. 도시내 간선도
로이면서 지구내 간선도로인 이
도로들은 격자형 가로체계로 묶
여진다. 대지는 격자체계 내의
한 가구로, 어느 방향에서든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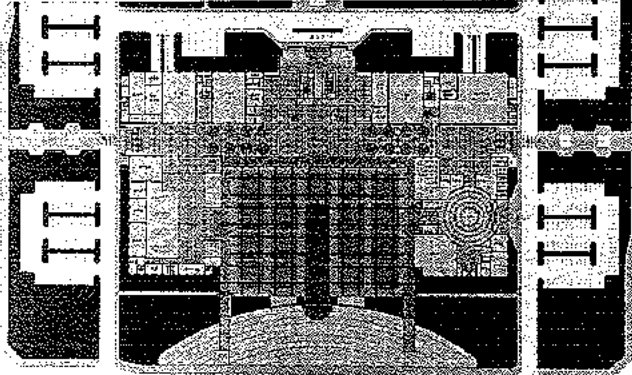
게 접근할 수 있다.

대지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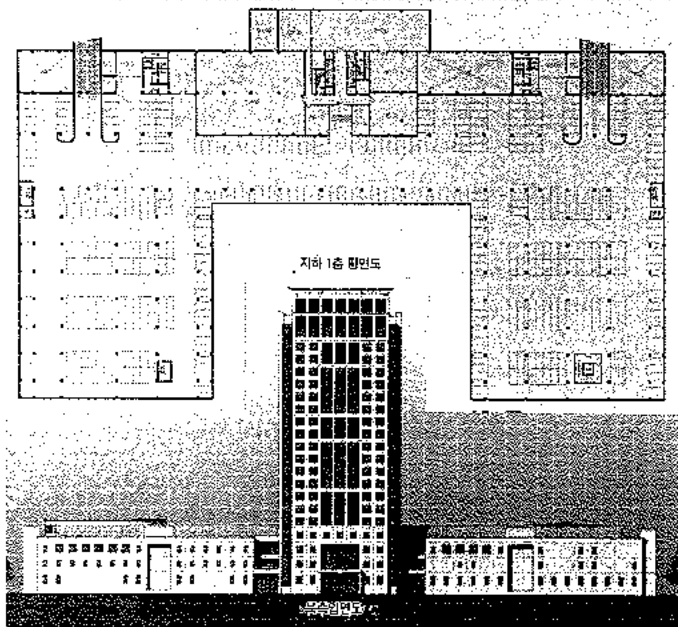
대지를 에워싸는 도로들의 위
상과 네변의 조건은 거의 동일
하다. 접근이 쉬운 대신, 대지
는 특별한 성격이나 방향성을
갖지않는다.



실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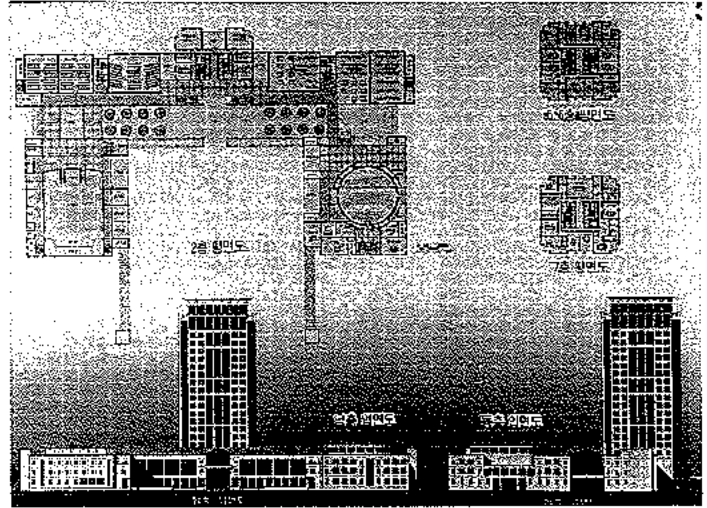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부속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6층 평면도

7층 평면도

8층 평면도

9층 평면도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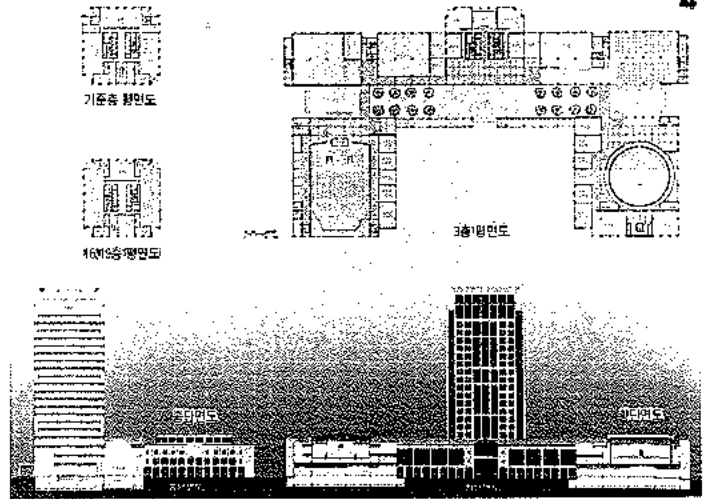
11층 평면도

12층 평면도

13층 평면도

14층 평면도

1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6층 평면도

7층 평면도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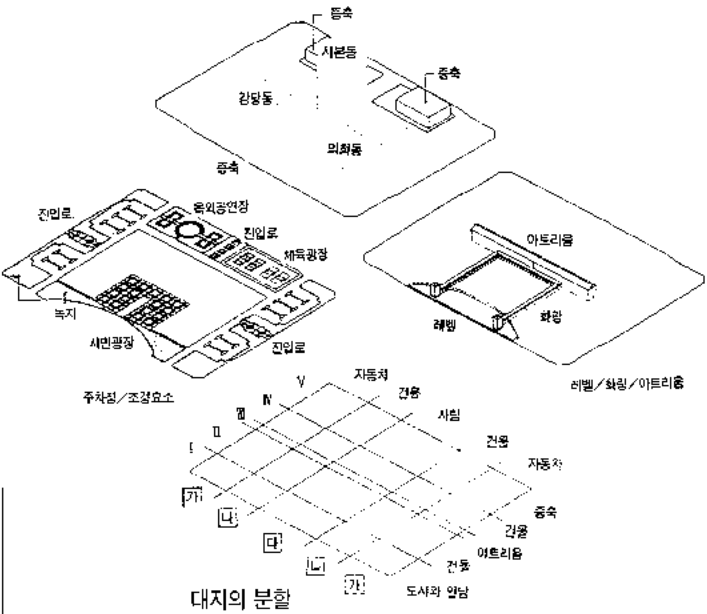
9층 평면도

10층 평면도

11층 평면도

12층 평면도

13층 평면도



대지의 분할

■ 대지의 분할/토지이용계획

대지의 구조화

대지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지만, 그 공간적 성격은 불분명하다. 규모 또한 300m×200m가 넘는 도시적 스케일의 대지이다. 대지 전체를 건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지는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으로 각각 다섯개로 구획된다.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I은 도

시와 만나는 커, II와 IV는 구체적인 건물기능이 채워지는 커, III은 대지의 동과 서를 잇는 동선 커, V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커로 정의한다. 세로방향으로는 대지의 동서쪽 끝부분인 [가]는 자동차, 그 안쪽의 [나]는 건물, 중앙의 [다]는 사람을 위한 커로 구분한다. 그럼으로써 무성격한 대지는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구조화된다.

대지구조의 구체화

구조화된 대지는 레벨과 회랑 구조화된 대지는 레벨과 회랑과 아트리움으로 구체화 된다. 대지의 중심은 회랑으로, 대지의 폭은 아트리움으로, 대지의 깊이는 레벨로 구체화 된다. 그 선을 기준선으로 주차장, 광장과 볼, 녹지대, 체육시설 및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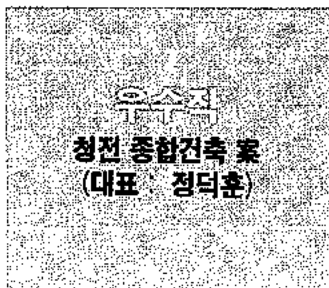
의시설물이 놓여진다.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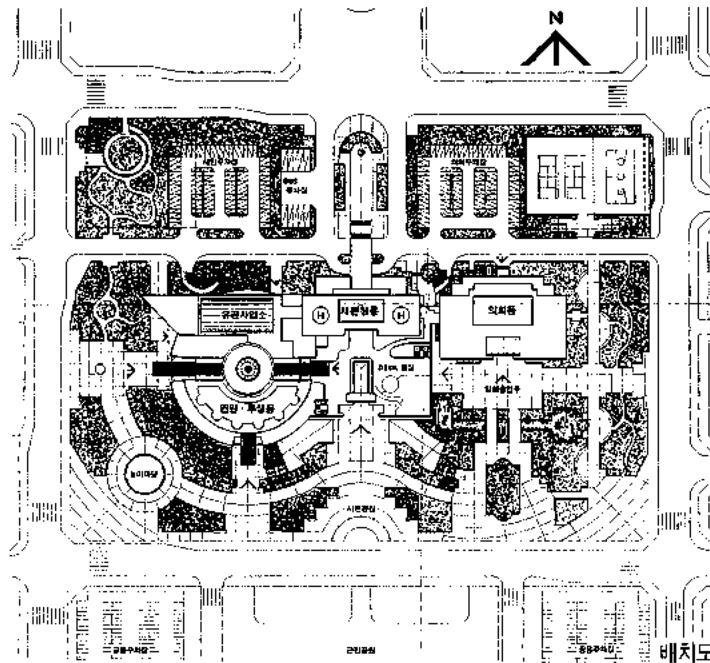
현재 체육시설과 야외공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는, 북쪽 커 E의 [나]구역은 앞으로의 증축에 대비한다.



투시도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문산동 행정용지 189B
지역·지구 / 문산 선서가지
행정용지
대지면적 / 69,550㎡
건축면적 / 12,110.89㎡
연면적 / 70,095.33㎡
건폐율 / 17.4%
용적률 / 66.95%
규모 / 시본청동—지하 2층,
지상 20층
시외화동—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시본청동—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시외화동—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트러스
주차대수 / 652대
주요외장재 / 화강석, 복층유리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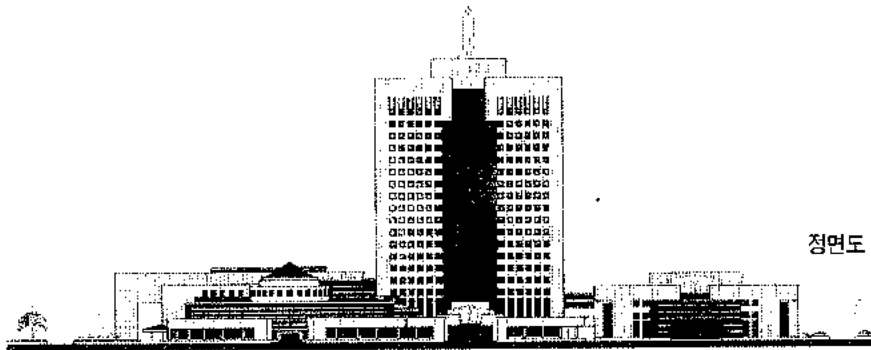
동계획

- 기능적, 시각적으로 주공간—부공간—매개공간으로 구성
- 접지성과 개방성이 강한 공간과 관리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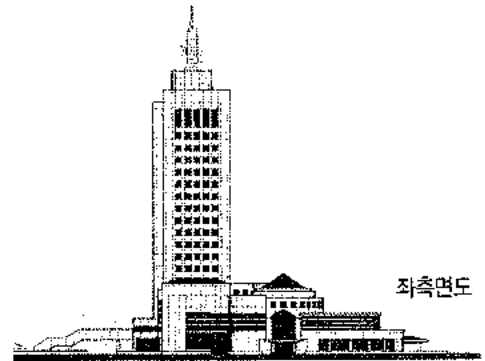
- 복수 기능 공간(의회동, 민원동 및 유관사업소)은 별도로 배치하여 독립성 확보
- 방문객 및 보행자 중심의 주 진입 보행공간 배치

기능별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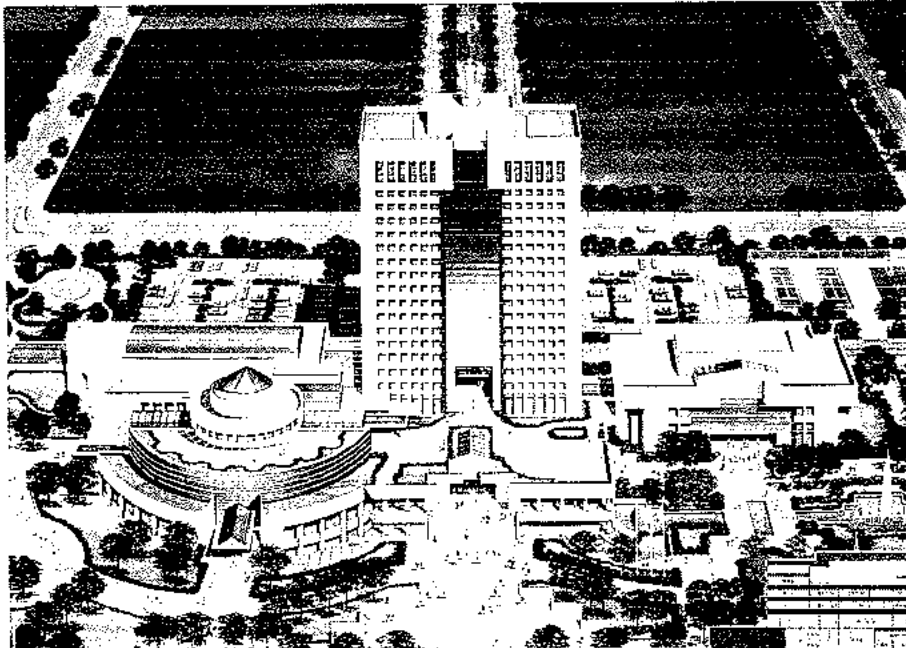
- 진입광장
 - 랜드마크적 역할 담당, 진입시의 적절한 공간적 깊이 부여
 - 시민을 위한 공동체 시설물로서의 개방공간 구성
 - 연못 및 분수, 조각 등 적극적인 환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장소성 부여
 - 부 진입 광장은 이벤트(Event) 공간으로 활용
 - 보행자와 차량통제를 위한 완충공간
 - 형태적 특성 도입으로 공간적 일체감과 전이 공간 활용
- 주 건물공간
 - 각 기능의 상호관계를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으로 배치
 - 동선 체계 및 조닝(Zoning)의 명확화 및 행정기능의 변화에 따른 가변성 확보
 - 시청의 업무기능(주변의 정보관리, 교육문화의 진흥, 환경의 정비, 후생복지의 증진, 지방자치제기능, 비상사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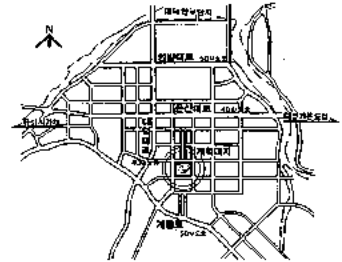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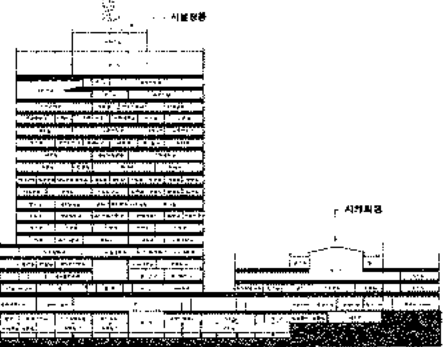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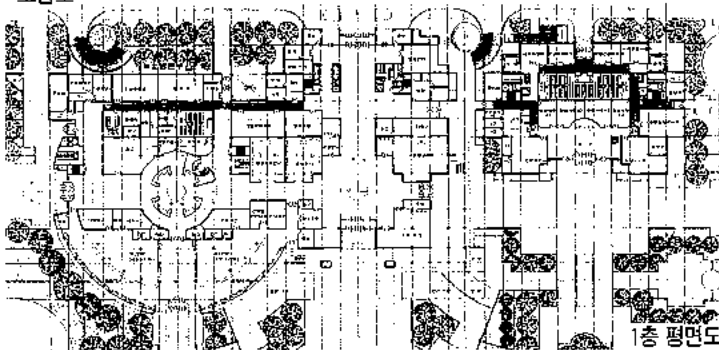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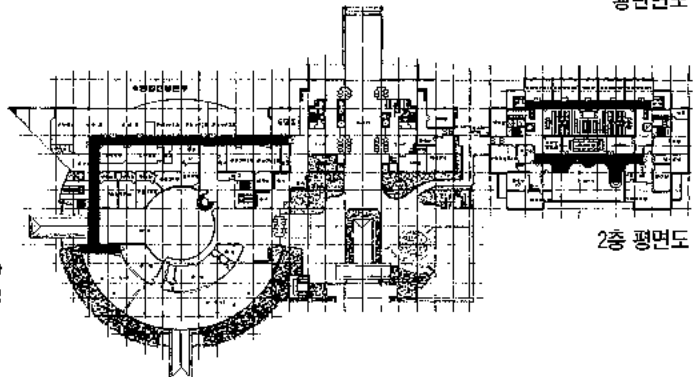
접근 교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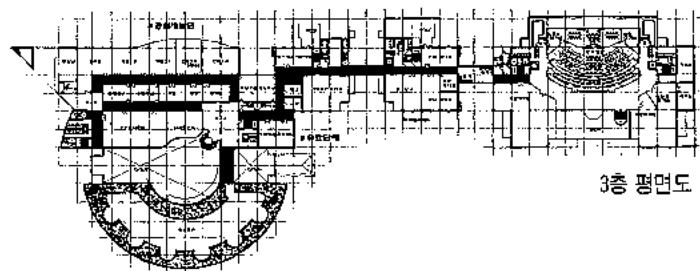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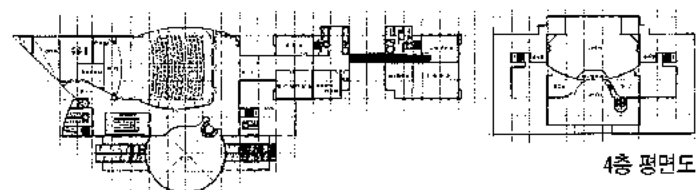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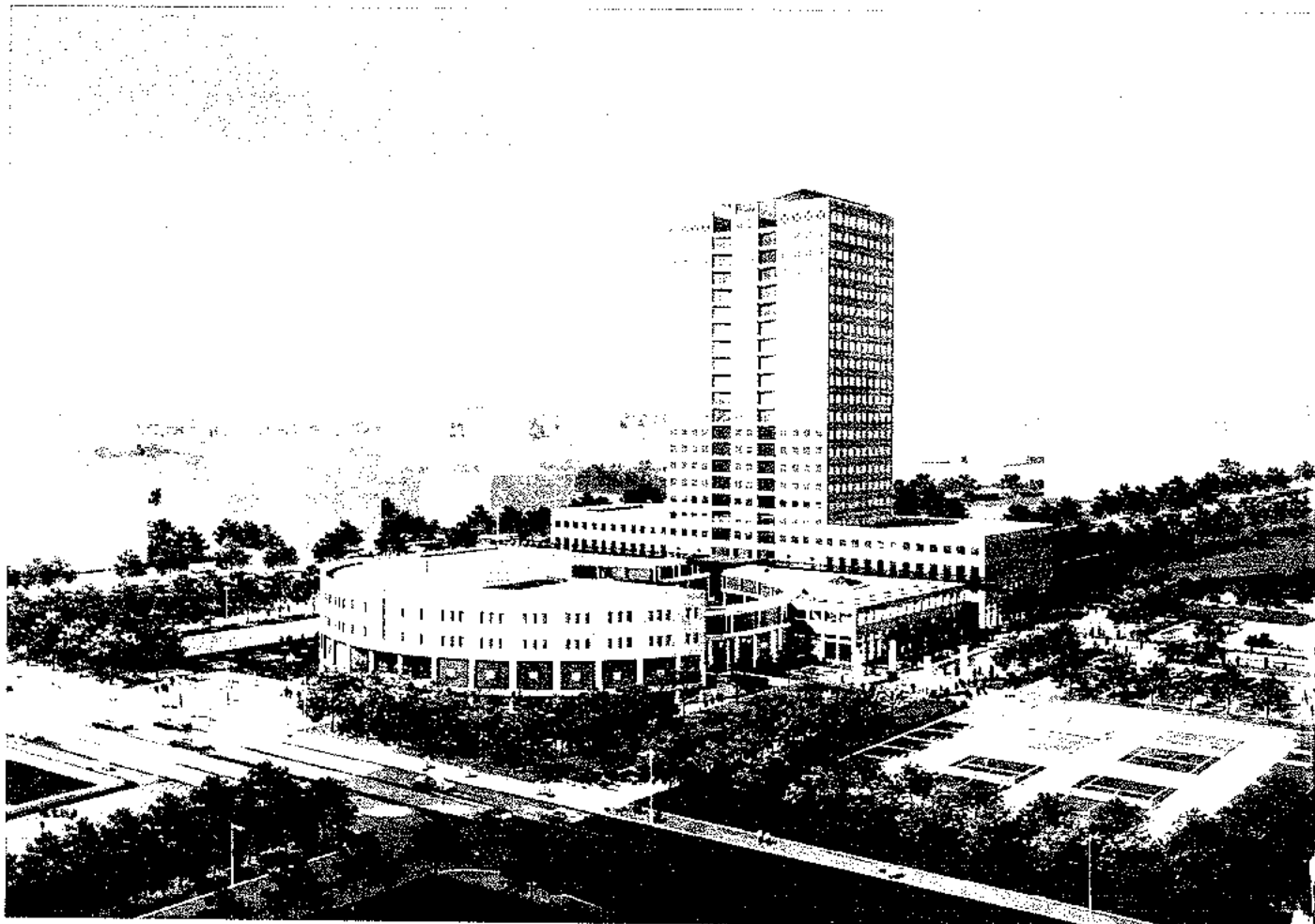
4층 평면도

호계회의 독립성 확보 및 유기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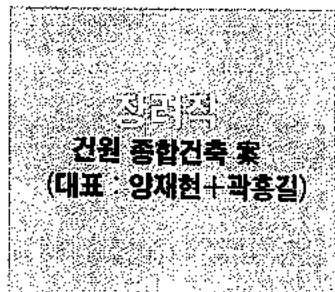
- 다목적 공간(유보지역)
— 증축에 대비한 여유공간 및 소공원, 체육시설 배치/시민공간화
- 주거단지를 비롯한 주위 건물과 시각적, 영역적 완충공간 확보
- 주차공간
— 옥외주차는 주건물 공간의 후면에 집결배치
- 외부와의 경계 및 완충공간으로 구성
- 서비스 차량 및 직원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확보

■ 건축계획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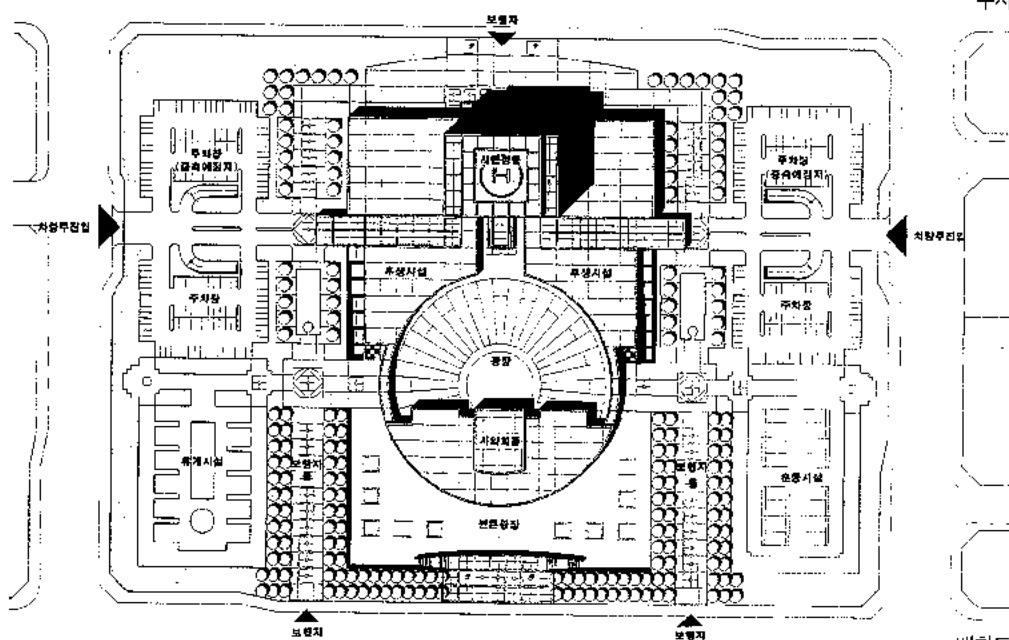
- 새로운 행정문화의 상징성을 표현한 도시 발전의 핵심시설
- 인텔리전트 빌딩(I.B.S) 개념 도입
- 기능적 통합과 분리에 적절한 규모로서 효율성 증대
-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
- 대전시의 전통과 역사, 미래가 조화된 이미지가 부여된 건축물
- 증축에 대비한 유보지 확보
- 에너지 절약형 건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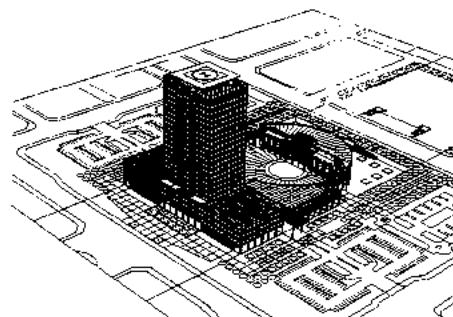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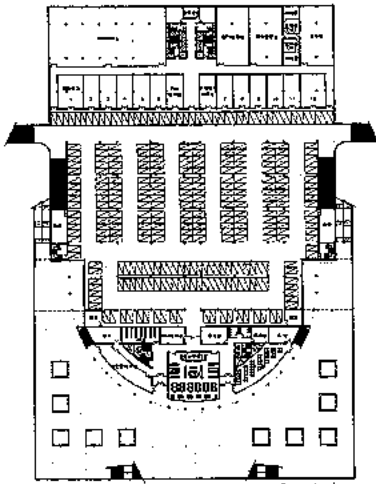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행정용지 189-13
 대지면적 / 69,550㎡
 건축면적 / 7,995㎡
 연면적 / 70,404㎡
 건폐율 / 11.4%
 용적률 / 65.7%
 규모 / 본청-저층부(1~4층) 본청
 업무 부대시설
 고층부(5~20층) 본청
 업무시설
 시의회동-3층
 후생복지동-2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골
 트러스
 주차대수 / 764대 (옥내 452대, 옥
 외 312대)
 주요외장재 / 화강석 마감+복층
 단열 반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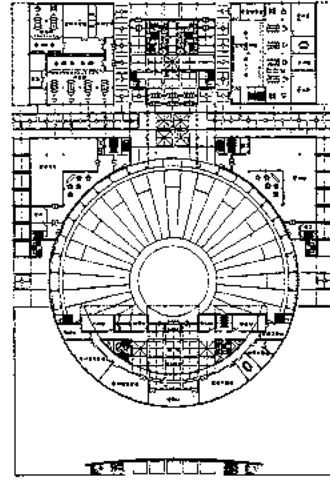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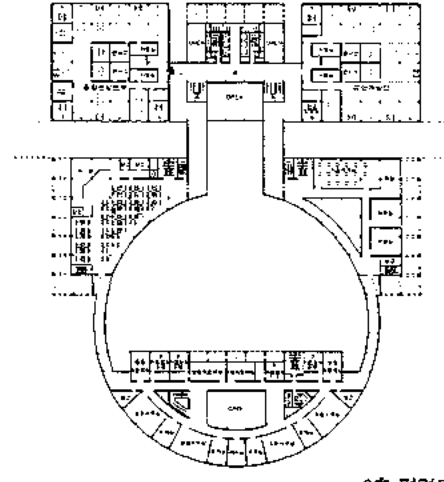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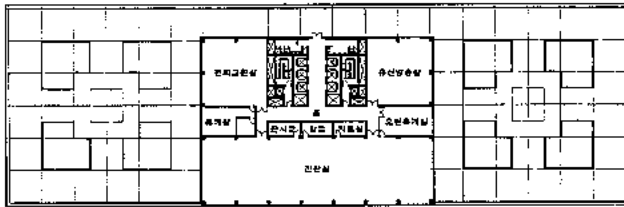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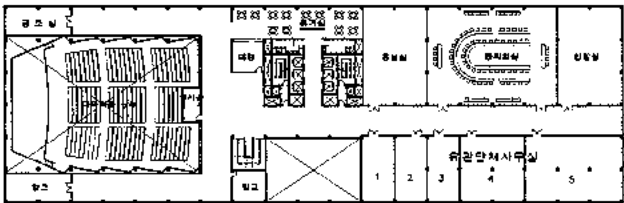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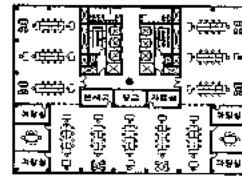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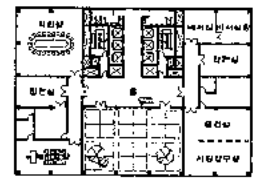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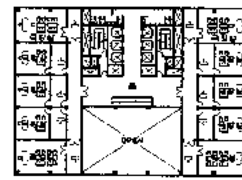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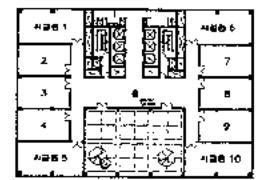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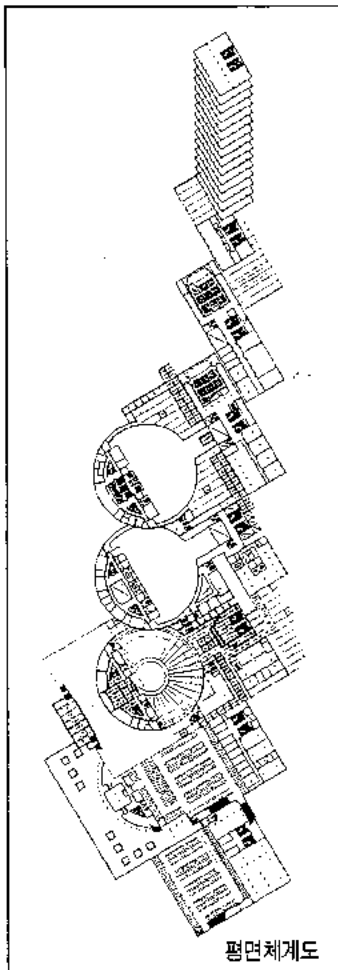
7층 평면도



8층 평면도



20층 평면도



평면체계도

■ 건물배치계획

기본방향

고층부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가로축을 주축으로 설정한다. 저층부는 시의회 및 후생복지시설·민원시설을 고층부는 행정업무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저층부는 남측에서 진입할 시 단계적으로 상승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동보다 앞으로 배치하고 남측에 의회시설을 배치하여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중앙광장 둘레에 후생복지시설들을 배치하여 우리네 전통적인 안마당의 분위기를 창출한다.

또한 민원실을 고층부 저변에 깔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동선상에 배치한다.

고층부는 랜드마크적 요소로써 제3청사와 조화되게 축선상에 위치시키고, 대지 북측에 배치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한다. 아울러 의회동과 본청동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지상부에 개방감을 증가하고, 민관울 연결하는 상징적 요소로도 활용

한다. 의회도 진입광장을 레벨차를 두어 변화를 주도록 한다.

■ 평면계획

기본계획

행정 업무용 청사 시설과 민원 시설 부분, 시의회 시설·후생 복지 시설의 명쾌한 공간 분리에 의한 동선 체계를 계획한다.

저층부 평면 계획

각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상호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하도록 시의회 부분과 청사를 브릿지로 연결하면서 중간에 후생 복지 시설을 두어 상호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고 1층 부분은 가능한 한 개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고층부 평면 계획

동선의 명확한 처리, 기계·설비, 전가등 제반 설비 기능을 집약하고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을 도입, 에너지 절약,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코아를 북측에 배치한다.

■ 입면계획

대지를 수용하는 저층부의 넓은 부분과 합리성과 상징성 그리고 랜드마크로서의 고층부의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외장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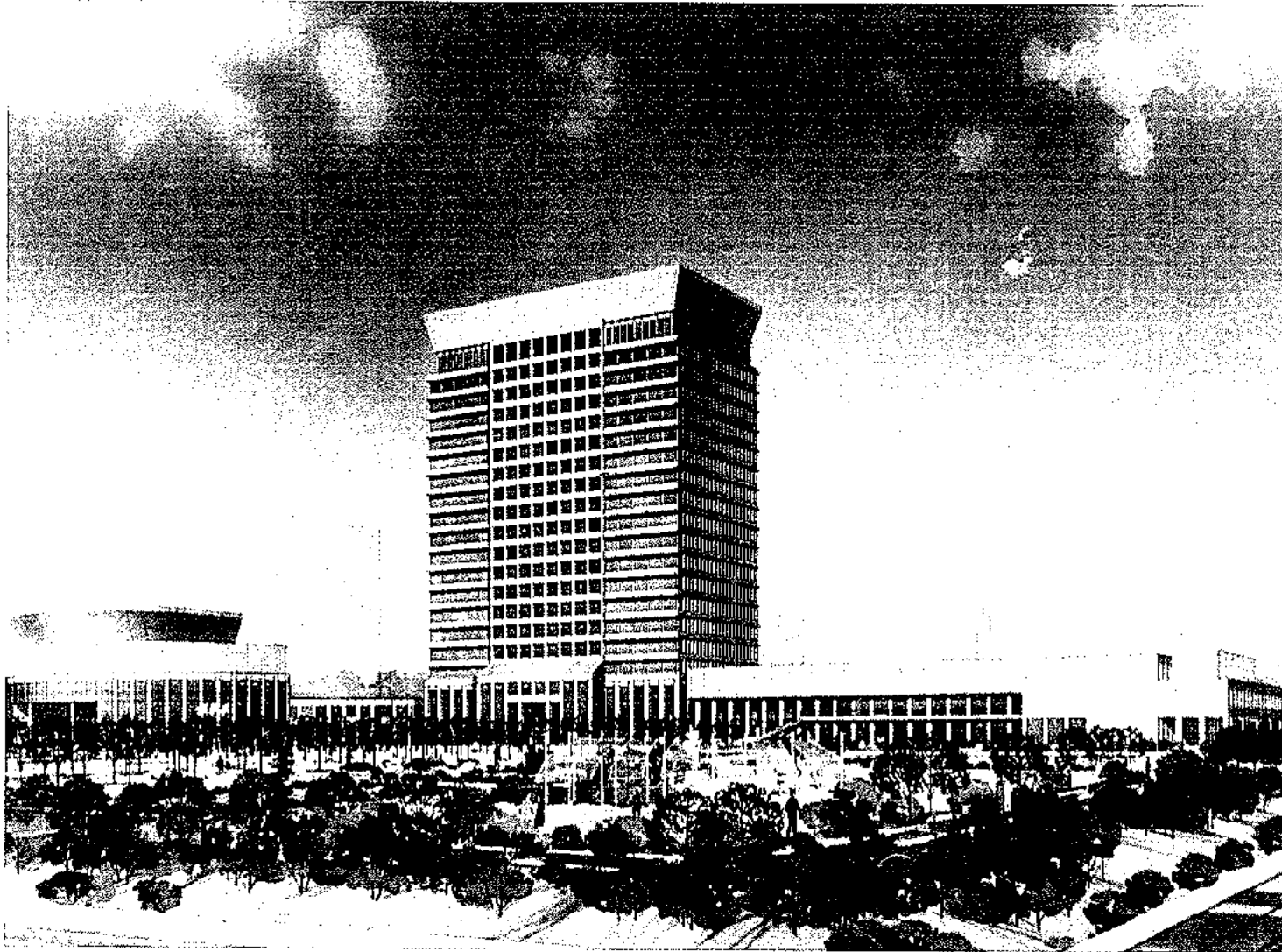
외장재료 : 외벽 국산 화강석 버너구이 마감
창호 컬러알미늄바,
두께 24mm 파스텔톤 유리

■ 단면계획

기본방향

설비체계 및 합리적인 층고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단면계획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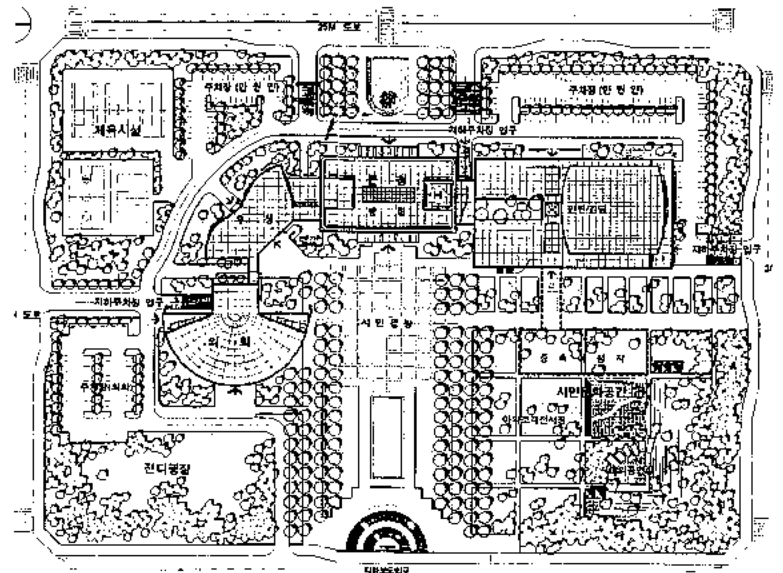
지원 시설 및 옥내 주차는 관라의 효율성을 고려 지하층에 배치하고 고층부 중간에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내부로 유입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투시도

정리
아키프랜 종합건축
(대표 : 김우성)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도시계획 / 둔산신시가지 행정용지
대지면적 / 69,000㎡
건축면적 / 8,640㎡
연면적 / 69,889㎡
건폐율 / 12.5%
용적률 / 65.4%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시청동-지하 2층, 지상 20층
의회동-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 825대(지상 275대,
지하 550대)
주요외장재 / 화강석, 칼라 복층유리



배치도

■ 토지이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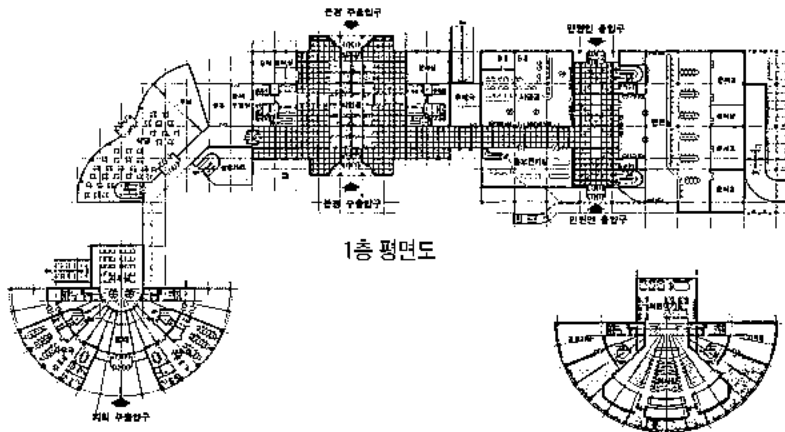
- 부서별 독립성 및 위계성 고려
- 동별 독자성을 고려한 외부공간 영역의 형성
- 기능별 배치에 의한 효율성 극대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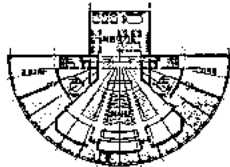
- 기능 연계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공간 배치
- 다양한 공간연출
- 기준층에 아트리움 설치로 쾌적한 업무환경 제공

■ 형태 및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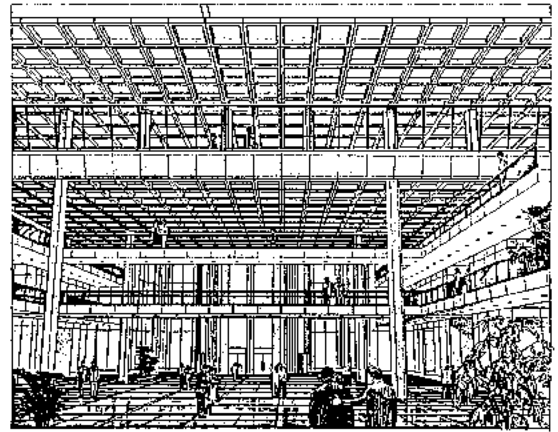
- 안정된 Mass에 의한 신뢰성 있는 청사 이미지 추구
- 각 기능별 건물의 독자적 특성 부여
- 비대칭적 배치형태로 새로운 청사이미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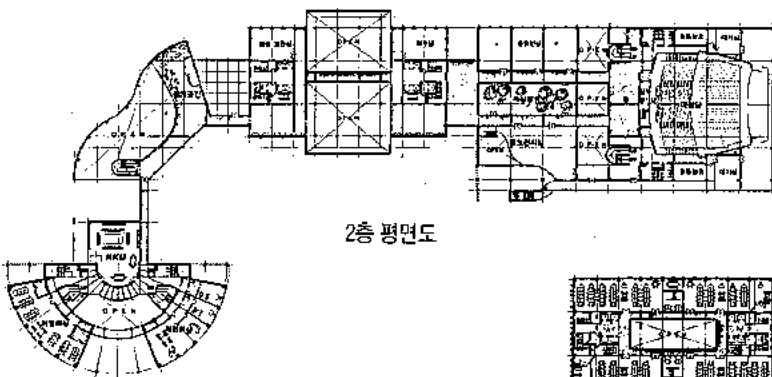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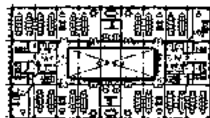
외사당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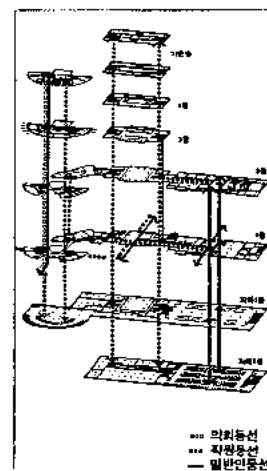
시민홀 실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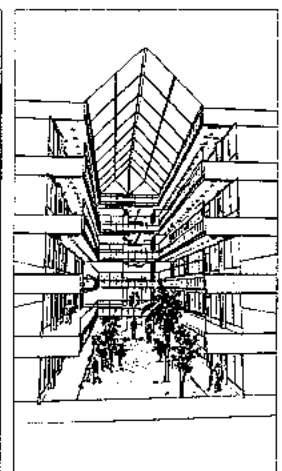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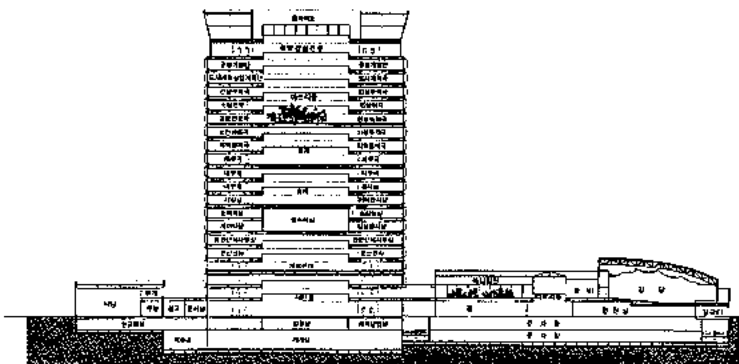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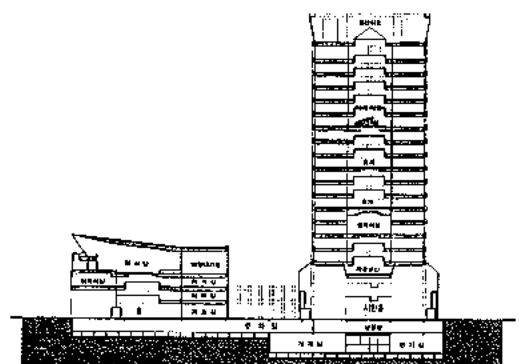
기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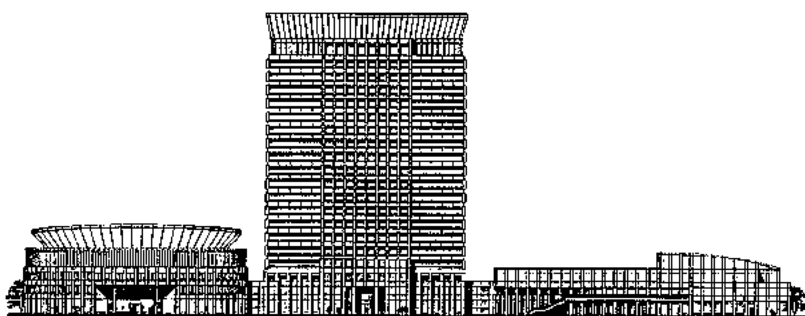
기준층 아트트리움 실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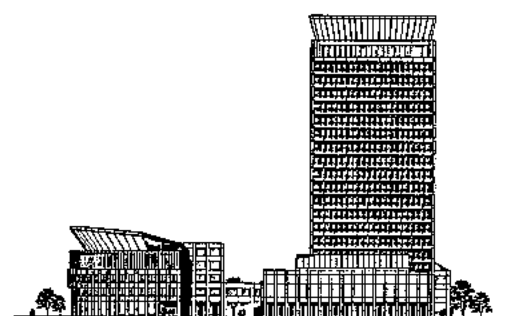
횡단면도



중단면도



정면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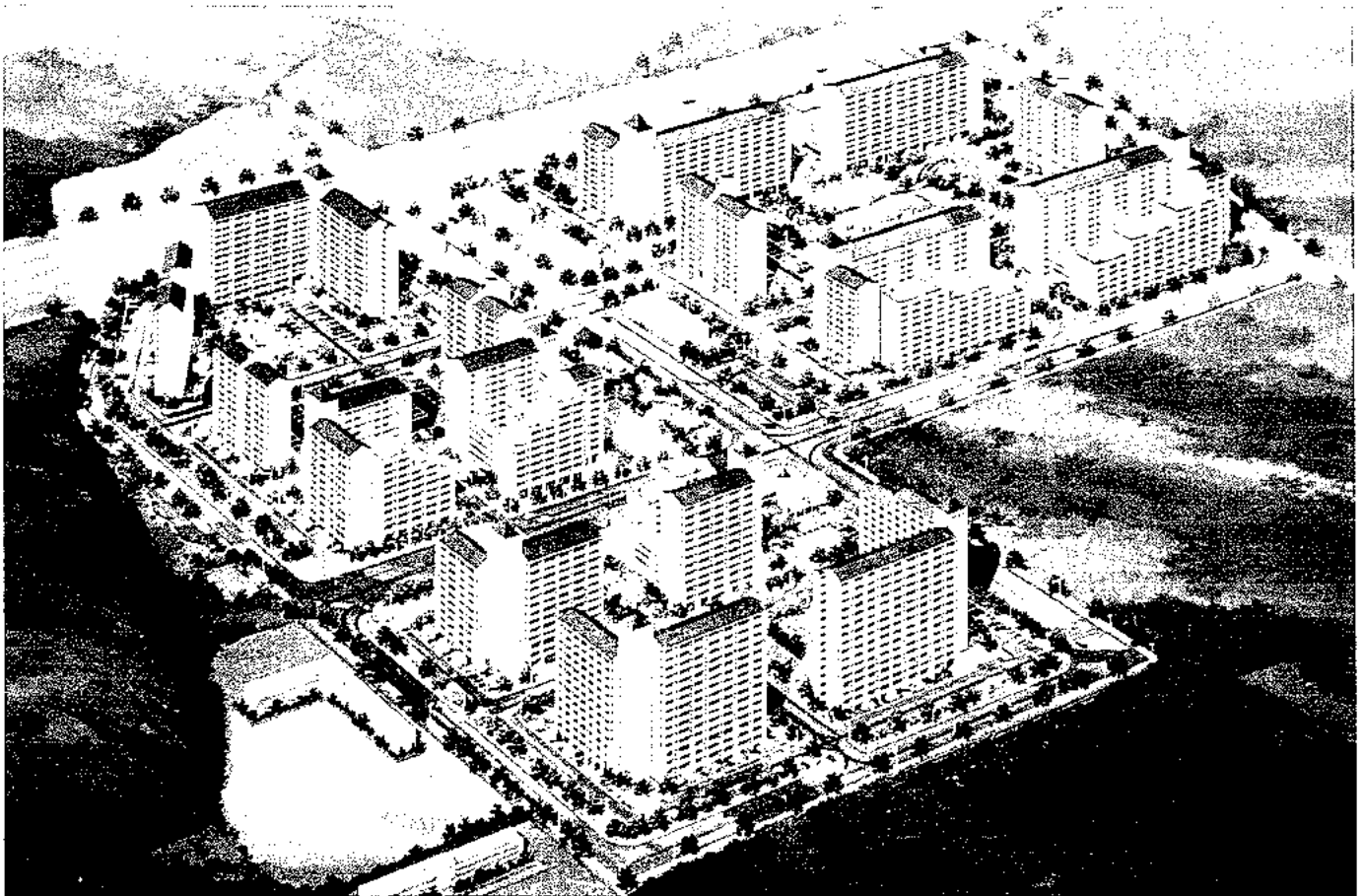
거여지구 아파트 단지계획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난 2월 거여지구 아파트 현상설계(안) 공모를 실시하여 총 10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출품한 결과,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컨설턴트(대표 최두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거여지구 아파트 현상설계에서는 기존의 아파트와는 다른 고밀도 주거단지에 적합한 트윈 코리더(Twin Corridor)의 주거형식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우수작으로는 예전건축(대표 김상경)안이, 가작으로는 환경건축(대표 정종섭)안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당선작인 토문컨설턴트(안)은 1단지에서 4단지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수작인 예전건축(안)은 5단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각각 맡게 되었다.

이번 현상설계를 마친 거여지구 아파트는 93년 12월 착공, 95년 11월경 입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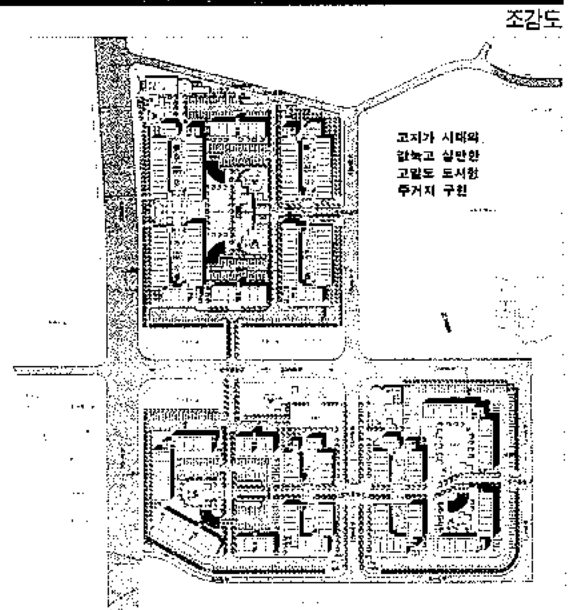


명상작
(주)토문컨설턴트
종합건축 案
(대표 최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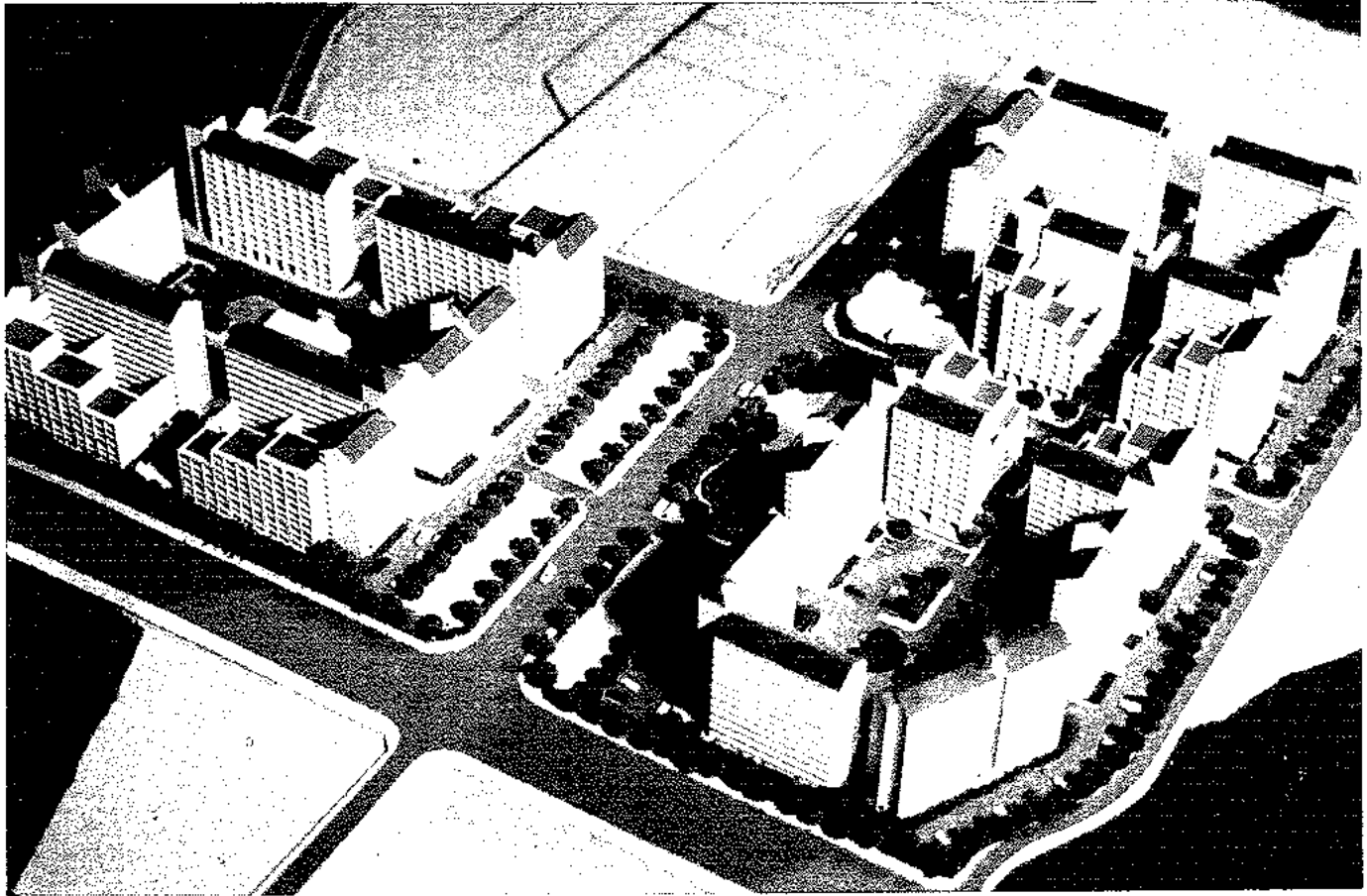
4단지
대지면적 / 15,555㎡
건축면적 / 3,121.99㎡
연면적 / 38,223.27㎡
건폐율 / 20.07%
용적률 / 218.27%
건설호수 / 12평형-226호
15평형-199호
18평형-107호

1단지
대지면적 / 23,461㎡
건축면적 / 5,657.99㎡
연면적 / 66,149.87㎡
건폐율 / 24.12%
용적률 / 227.41%
건설호수 / 10평형-316호
12평형-484호
15평형-2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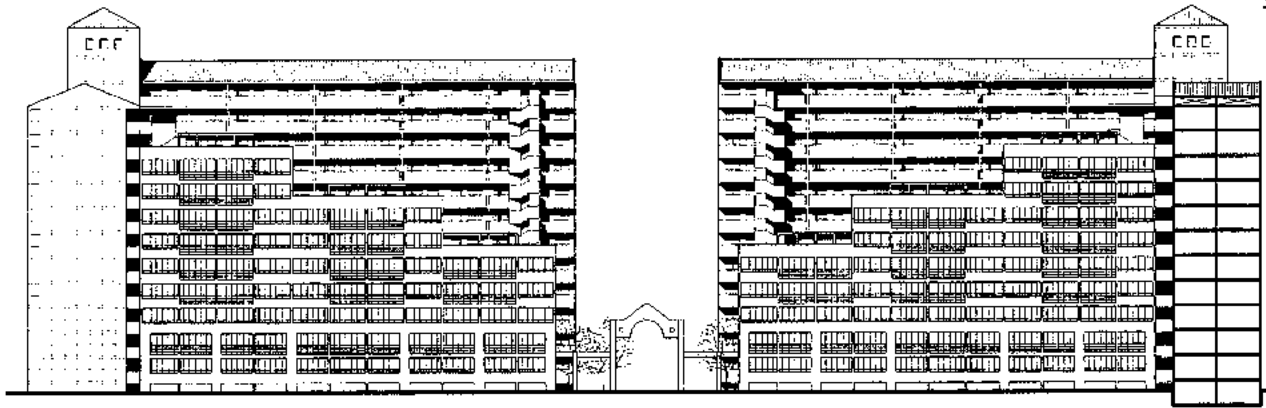
5단지
대지면적 / 14,529㎡
건축면적 / 3,569.78㎡
연면적 / 40,569.78㎡
건폐율 / 24.39%
용적률 / 246.75%
건설호수 / 10평형-351호
12평형-363호



단지계획도



모형도



입단면도

기본계획

• 계획목표

— 고지가 시대의 값높고 살만한 도시형 고밀도 주거지 구현

• 기본구상

— 고지가시대의 저렴한 서민 주택공급 : TWIN CORRIDOR 주거형 도입
— 고밀도주거단지의 폐쇄감 저감 : 단지중앙 대형녹지공간 계획 및 피로티 설치
— 도시와 단지의 미려한 경관 조성 : 단지의곽주거동 층고 변화, 경사지붕, 입면스케일 분절, 발코니 형태의 변화시도

— 거주성 취약층 개선과 단지 부대시설의 적지성 확보 : 주거동 1층부분에 주민공동시설, 점포, 유아놀이실 설치
— 남한산성등 주변경관 조망과 고층부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 옥상정원, 층별휴게소 설치

— Twin Corridor 중정의 소음 저감과 주민통행 편의제공 : 연결복도 및 피로티 설치

대지현황

• 입지현황

— 서울도심 동남측 15km권의 신개발 주거지임
— 남한산성과 Green Belt가 인

접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거주 환경여건이 양호함
— 인접한 30m 간선도로를 통하여 잠실, 강남까지 30분 통근권에 위치함
— 택지개발 사업에 의한 공공사업지구로서 계획된 개발이 불가피함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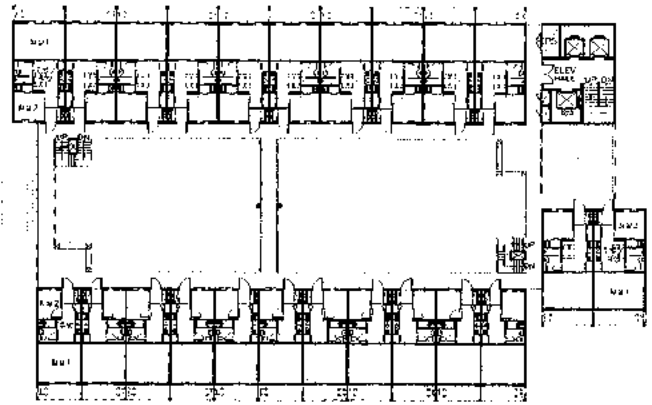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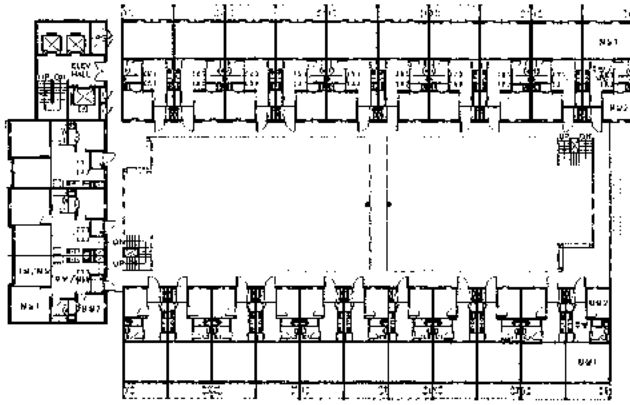
— 동북측 진입부는 기계발지에 접하고 남서측에는 군부대 위치
— 인접한 군사시설보호 목적으로 건물층수가 12~15층으로 한정됨
— 높은 토지가로 인한 초고밀단지개발이 불가피함

• 잠재력

— 수려한 주변경관, 인접한 자연녹지 등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함
— 강남등 기본 도심권과 인접함

• 단지계획

— 계획지침상 초고밀주거단지 (1300~1800인/ha)로의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쓸모있고 개방감 있는 옥내외공간 창출
— 이용행태를 고려한 옥외공간의 기능과 입지를 정확히 하여 주민공동체적 옥외생활환경 조성
— 도시미관과 단지적 동질성이



기준층 평면도

- 구현되는 건물 배치, 층고배분 및 새로운 주거형식 도입
- 통과교통등 불필요한 역외교통유입을 배제하고 보행통로를 체계화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도모
- 급증하는 차량보유 추세와 대응하는 주차공간의 확보

건축계획

• 계획 개념

- 고지가 시대를 극복하는 고층 초고밀도 주거형 도입
- 도시경관 기여를 고려한 주동형태 및 입면계획
- 주변 자연환경 여건을 향유하는 건축적 대응 : 일조, 조망, 통풍
- 단위평면의 입주자 선호층과 공유면적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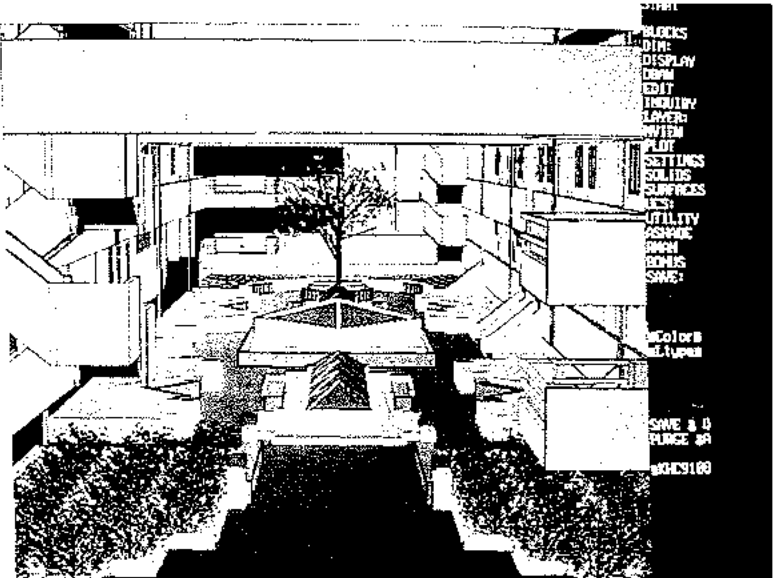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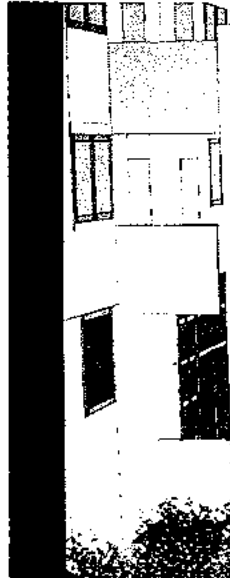
• 주동계획

- 간선도로변 주동의 다단식 층고 구성과 경시지붕 설치로 변화있는 단지 경관 및 Sky Line조성
- 저고층 주거형 및 스케일의 분절
-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지하공간 최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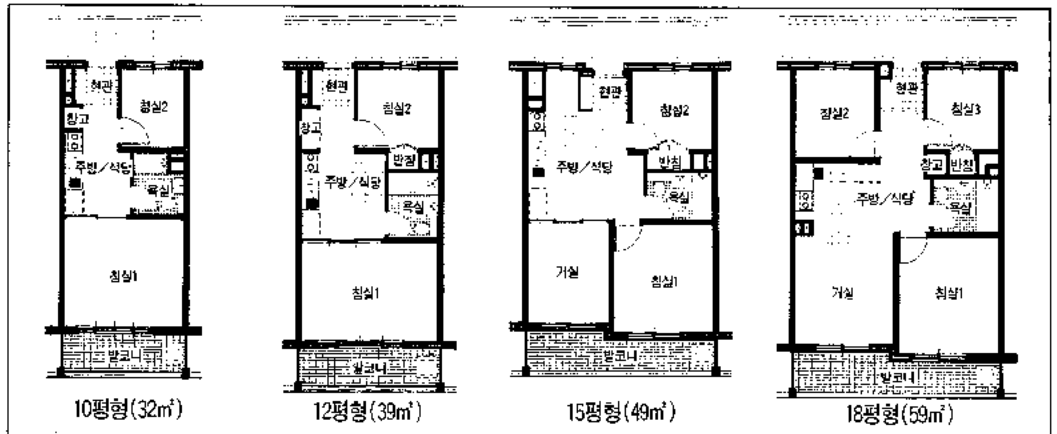
- 양복도형 및 편복도형의 혼합배치
- 개방감/통풍/일조확보
- 부대시설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여 주민간 친화력 도모 및 이삿짐 적재공간 확보
- 층별 휴게소 설치
- 옥상정원 설치

• 단위 주호 계획

- 소형주택의 개방성, 융통성을 고려한 평면구성
- 침실 2개이상 설치 및 수납공간의 최대확보



주동중정부분투시도



단위평면도

- 욕실 및 발코니에 세탁공간 확보
- 거실 발코니폭 확대(15, 18평형)
- 구조 및 설비시스템의 합리화, 집약화
- 화물경용 승강기 설치로 곤도라 설치배제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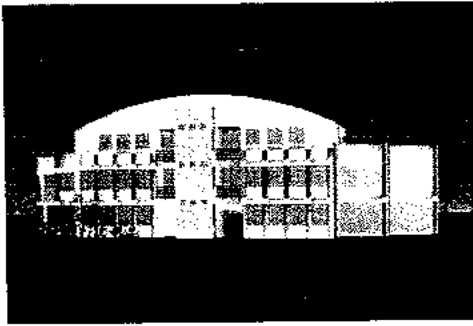
- 단지 동질성과 특징 및 입면 변화감 부여
- 수평적 분절 요소를 두어 입면에서 느끼는 수직적 위

- 압감을 저감시키며 단조로움을 탈피
- 주동형식별로 특징있는 입면을 구성하되 주동간에는 통일된 질서감이 창출되도록 계획
- 도시경관의 시각적 효과를 부여코자 주변자연색을 구조색으로 하여 조화와 변화 도모
- 아파트의 외장, 보도, 식재, 가로시설물, 안내표지판 등 모든 설계대상을 Total 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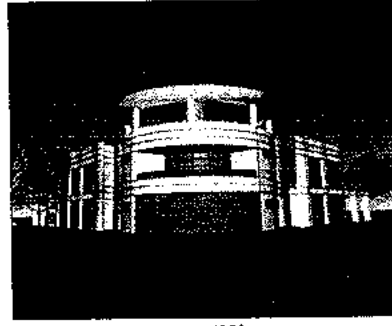
sign개념으로 접근

• 지하주차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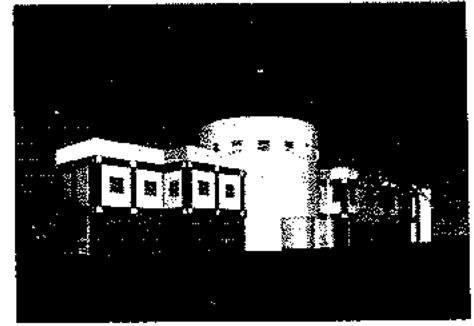
- 지상부의 녹지공간을 증대하고 지하공간의 최대활용
- 교통영향평가상의 가구단위별 주차대수 확보와 장래 주차수요에 대비
- 지하주차장 이용주민의 이용동선 최소화하고 보안성 유지고려



북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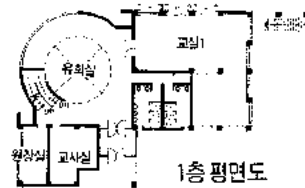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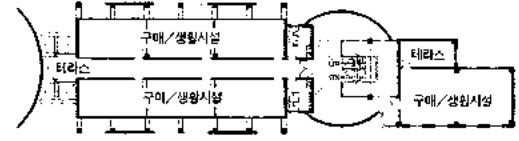
상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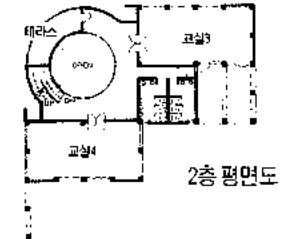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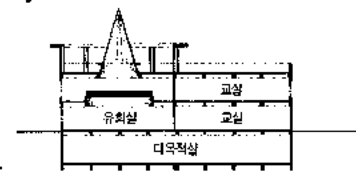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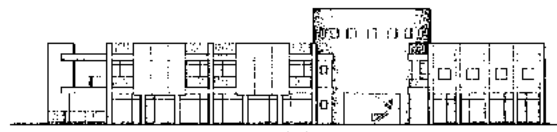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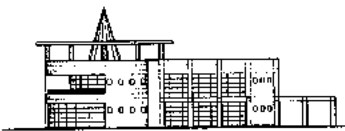
입면도



입면도



단면도



단면도



단면도

조경계획

• 기본방향

- 고밀도 주거지역에서 여유 있는 녹지공간 제공
- 쾌적한 옥외활동 보장
- 주변녹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 아파트 단지내 건물배치, 동선체계등 전체경관과 유기적 조화를 고려한 수목배식

• 식재설계 계획기준

- 지역별 식재패턴의 일괄성 부여
- 공간특성에 따른 적절한 변화감 조성
- 전체적 배식의 리듬감 부여

- 장소별 특성에 따른 기능 식재

• 수종선정 기준

- 환경조건에 잘 적응하며 생장력이 강한 수종
- 공해에 강하고, 병충해의 피해가 적은 수종
- 수형이 아름다우며, 계절감을 느낄수 있는 수종
- 이식이 용이한 수종
- 구입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양복도형 아파트에 대한 검토

• 양복도형 적용시 기대효과

- 택지비 및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용적율을 증가
- 중복도형에 비해 용적률은 감소하나 일종통풍 및 주거환경 양호
- 관복도의 경우, 초고층화해야 밀도가 제고되는데, 이 경우 지하주차장, 초고층에 따른 시설설치비용의 추가 요소

• 환경조건을 고려한 설계방향

- 축:북서-남동축이 바람직함
- 통로:소음차단 및 이웃간

- 의 동선축소를 위해 층별 연결통로(15m~25m)설치

- 조도:반사광에 의해 주광률을 높이기 위해 밝은색(흰색계통)으로 페인트 처리
- 공용공간:1층에 피로티 설치

- 중정부분: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

- 피로티부분: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 코아:중앙코아형보다 편심코아 설치(채광/환기/소음측면에서)

- 소음:소음의 공명현상 발생시 흡음재를 벽면에 상용(단, 시공비 증가)



1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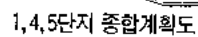
대지면적 / 23,461㎡
 건축면적 / 5,598㎡
 연면적 / 64,965㎡
 건폐율 / 25.39%
 용적율 / 226%
 건설호수 / 10평형-288세대
 12평형-482세대
 15평형-200세대

4단지

대지면적 / 15,555㎡
건축면적 / 4,273㎡
연면적 / 43,679㎡
건폐율 / 27.47%
용적률 / 228%
건설호수 / 12평형-222세대
15평형-210세대
18평형-103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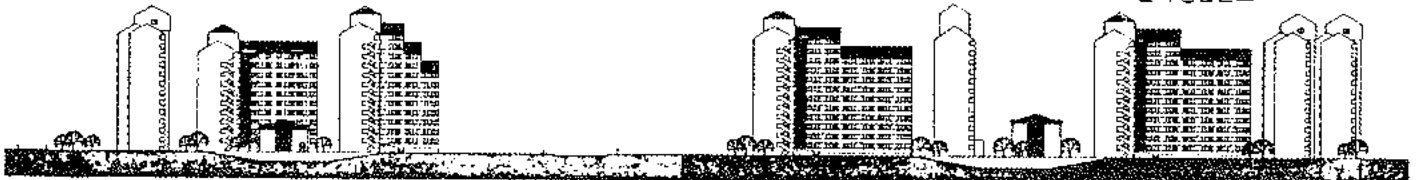
5단지

대지면적 / 14,592㎡
 건축면적 / 3,057㎡
 연면적 / 43,433㎡
 건폐율 / 21.97%
 용적율 / 245%
 건설호수 / 10평형-362세대
 12평형-335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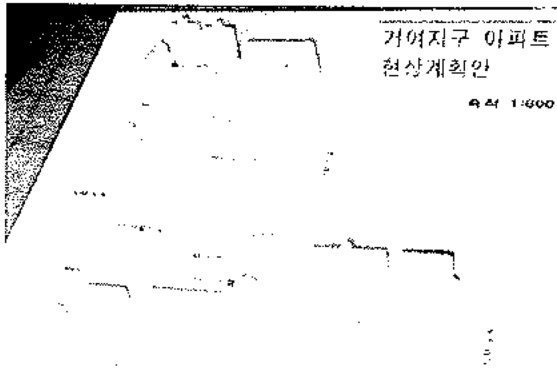




단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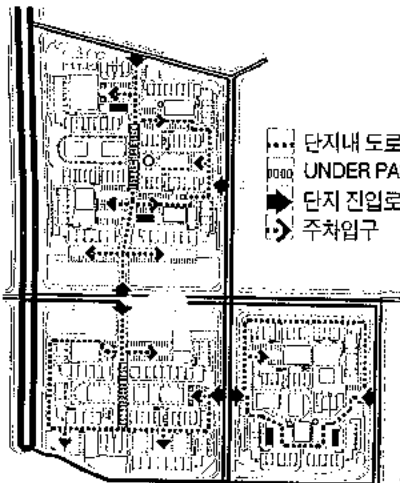
단지 종단면도



거여지구 아파트
현상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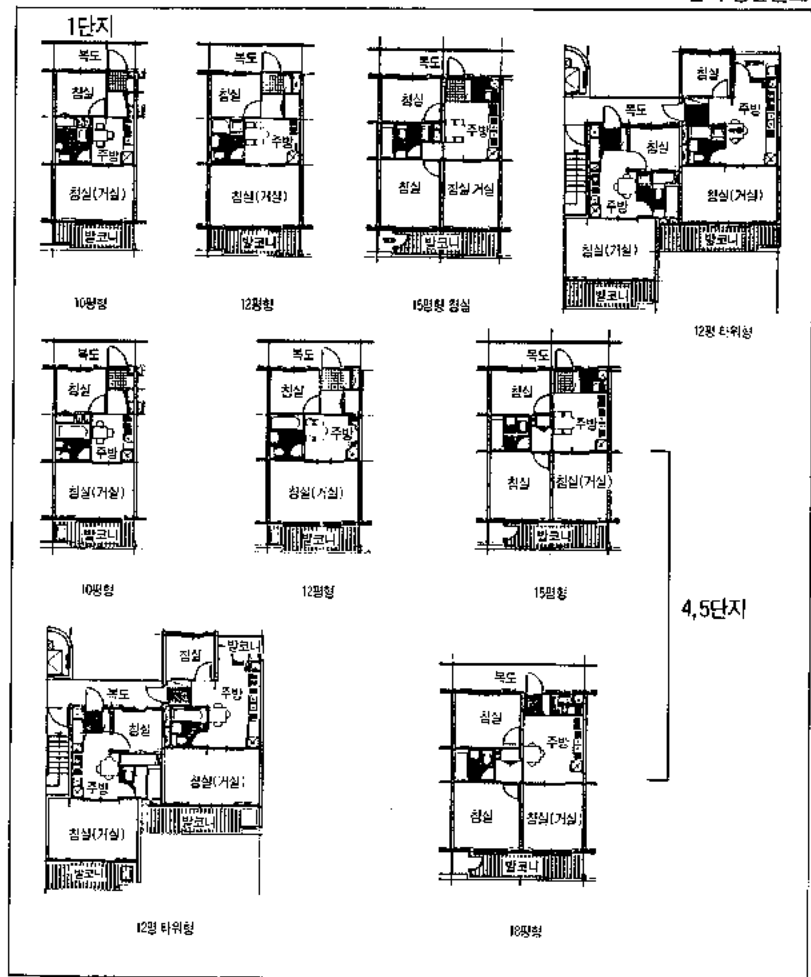
축척 1:500

모형도



단지내 도로
UNDER PASS
단지 진입로
주차입구

교통계획도



4,5단지

단위세대 평면도

■ 기본계획 방향과 배치계획

- 1) 부지조건과의 조화와 개성있는 도시경관 기여 : 보행자 전용공간의 가로(street)와 광장(square) 및 중정(courtyard)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가로와 가로공원(pedestrian mall)을 형성하여 이 공간을 따라 판상형과 T자형을 배치하고 단지의팍에 타워형을 교차하여 다양하고 개성있는 배치계획 시도
- 2)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아파트 주거동의 혼합배치 : ② 단지와 외곽의 도시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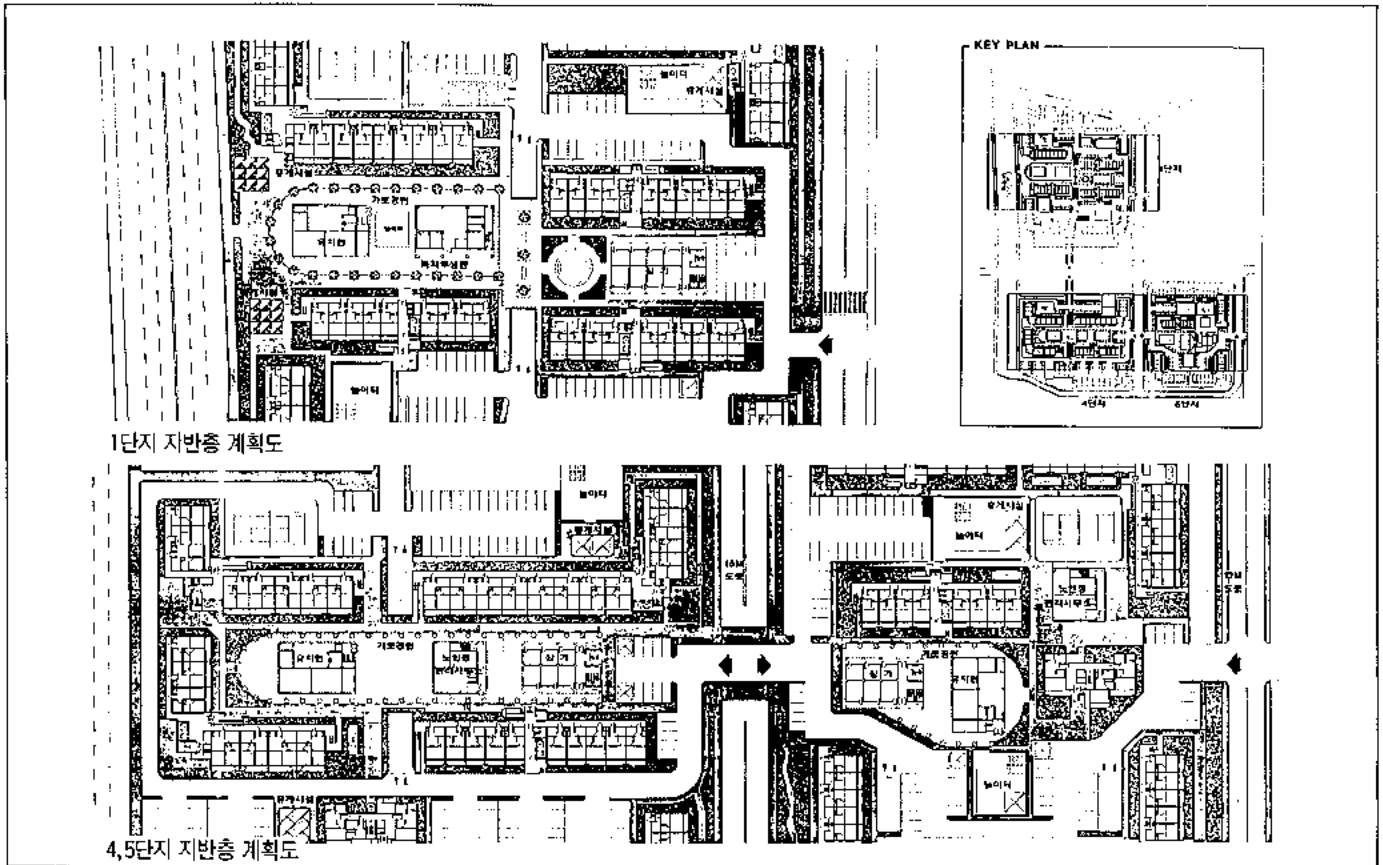
가 만나는 부분에 T자형 배치패턴을 도입하고 판상형의 정면(building wall, 10~12층)과 측면(tower, 12~15층)의 교차로 유기적 도시 조직과 리듬구성으로 도시환경과 조화와 스카이라인의 변화추구

③ 단지의팍에는 공원속의 타워 (TOWER-IN-THE-PARK) 개념 도입과 단지중앙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집합구성과 중앙공원과 단지의 방향성과 쾌적성 및 조

- 망 부여하고 남향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입주자의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의 시도
- 3) 커뮤니티 가로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판상형 및 T자형 아파트는 각 단지의 중앙부분을 비교적 낮게 하고, 북측에 면한 아파트를 고층으로 하여 시각적으로 개방성을 부여 그리고, 주거동의 층수를 다단형으로 조성하여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시도
- 4) 도시성과 전통성의 회복

고밀도 고층주거형태에 기존의 전통적인 주거동네 분위기로 구성되는 요소들(가로공원, 계단, 테라스, 커뮤니티가로 1층전용마당, 낮은 담장 등)부여로서 『가로형 주거』의 제시와 각 주거동의 앞과 뒤는 각각 정원과 주차장으로 구분한다.

5) 단지중심부분은 가로공원을 따라서, 상가, 복지후생시설, 유치원, 광장, 중정 등 공동 생활시설을 연속적으로 연계하여 배치하여 녹지대로 구성되는 보행권 커뮤니티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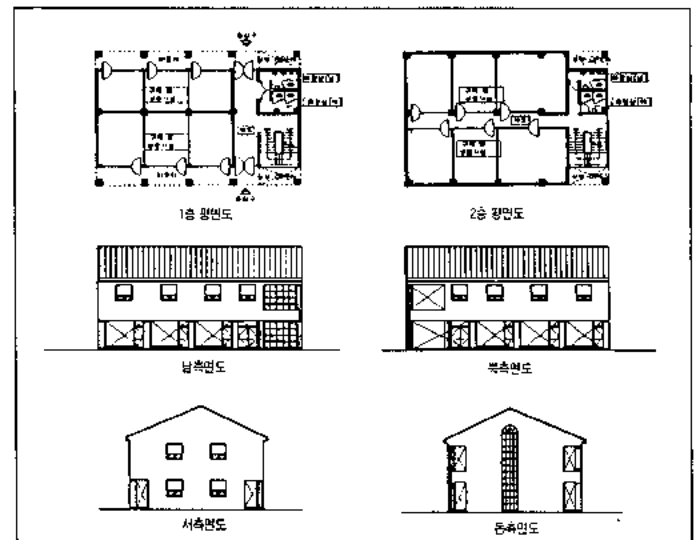
- 6) 차량 동선은 남측의 일렬선상으로 배치된 주거동을 중심으로 순환형(Loop형)으로 구성하고, 이에따라 각 주거동에서 CUL-DE-SAC 개념의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 확보
- 7) 단지의팍의 순환방향은 산책로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공원, 그리고 학교부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8) 어린이놀이터는 이용자측면을 고려하여 각 주거동 집합군 별로 조성하고 그 주변에 휴게소와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동반자의 휴식장소로 활용하였다.
- 9) 이러한 시도는 커뮤니티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정한 세대 그룹들이 공유하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통제하는 공간의 영역성이 보장되어 각세대 그룹간의 소속감과 방범효과가 기대된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자기동네를 가꾸며 관리하게끔 유도하여 그들의 주거영역에

삶의 표현(personalization)을 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 10) 이상과 같이 주변환경과의 조화안에서 다양한 주거동의 배치패턴의 시도로 각 외부 공간의 영역성과 그 공간의 성격의 변화, 각 주거동과 만나는 지상면적의 특정한 성격부여 등으로 거주자와 입주자가 주거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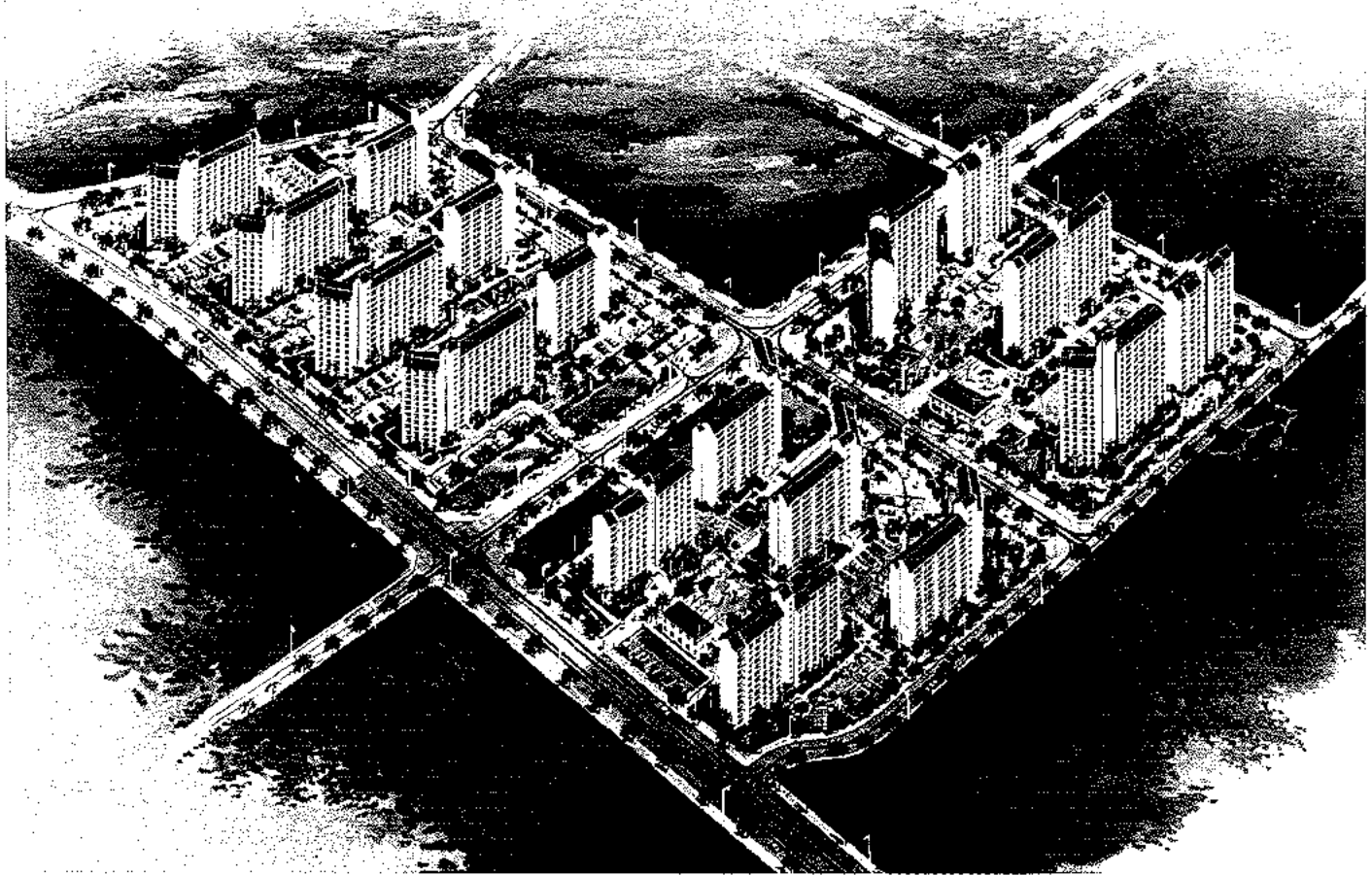
■아파트 주거동 설계

- 1) 판상형, 다단형, T자형(원북도형)과 타워형등 다양한 주거형식의 제공으로 입주자들에게 선택성 부여
- 2) 각 유형안에서 여러가지 크기와 형태의 단위주호 조합과 교와의 변화있는 공간구성 창조
- 3) 층수를 9~15층으로 다양화하여 스카이라인 변화를 시도하고, 옥상층에 정원을 두고 측면에 창문설치, 박공의 지붕형태 등으로 아파트 형태의 다양화
- 4) 각 주거동의 엘리베이터홀, 계단, 경비실, 로비 등의 공



4,5단지 상가동

- 간을 전후면으로 관통하여 개방적 성격과 통과성을 부여하여 앞, 뒤공간의 단절감을 해결. 그 결과 내부의 거주생활과 외부공간의 지상생활(Ground Activity)을 상호연결하여 거주성 증진
- 5) 1층 경비실은 거주성 앞, 뒤의 동선을 통제 가능하게 배치 T자형의 Core는 충분한 라운지 구성으로 휴게공간 확보
 - 6) 현관입구와 테라스를 넓게 하여 입구성과 전면성을 강조하고 그 주변의 공간에 대해 전이적 매개공간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웃들과 상호교류 장소로서 계획
 - 7) 공적영역을 구성하는 외부공간과 사적영역의 내부공간사이의 가로공원 정원, 담장, 계단홀, 테라스 등의 구성으로 단계적인 공간의 위계성 추구
 - 8) 아파트 주거동을 가로공원생활과 직접 연계시킴으로 「단지형주거」 개념에서 탈피하여 「가로형 주거」 환경조성



조감도

가작

환경종합건축 및
(대표 정종섭 +
윤태호 + 박호중)

1단지

대지면적 / 23,416㎡
건축면적 / 5,174.25㎡
연면적 / 58,981.96㎡
건폐율 / 22.05%
용적율 / 218.43%
세대수 / 10평형-299호
12평형-489호
15평형-192호
주차대수 / 지 상-244대
지 하-20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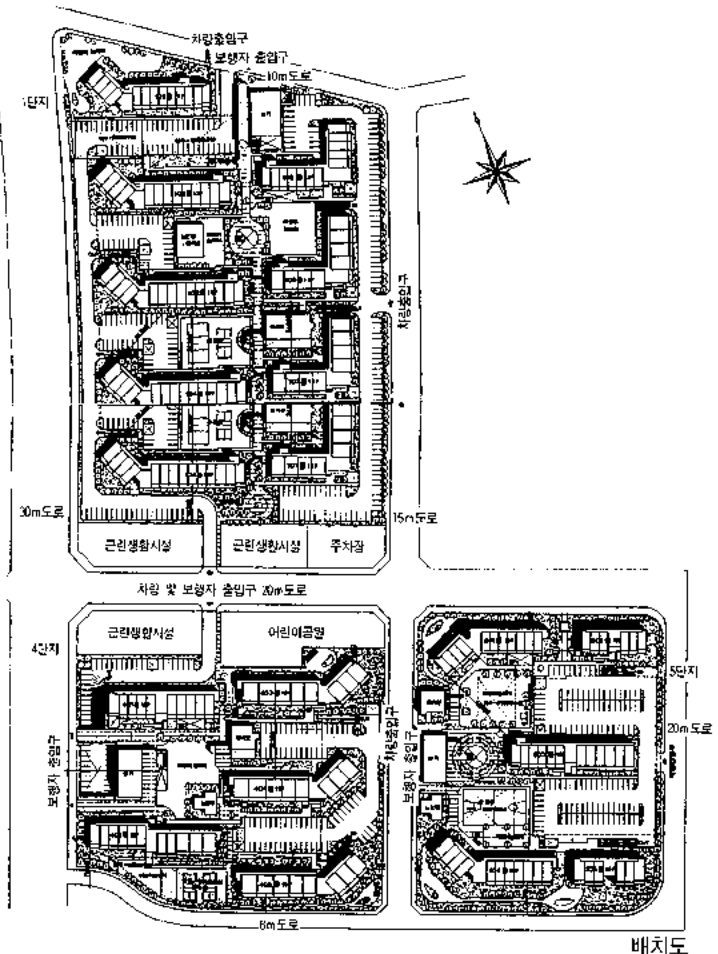
18평형-108호
주차대수 / 지 상-134대
지 하-172대

5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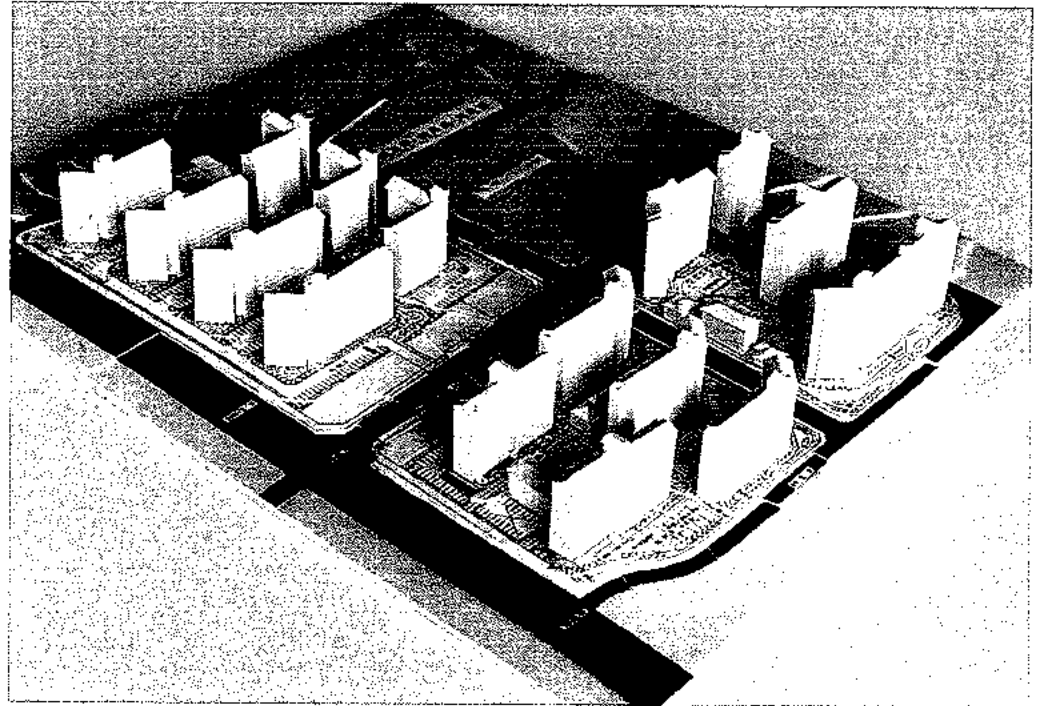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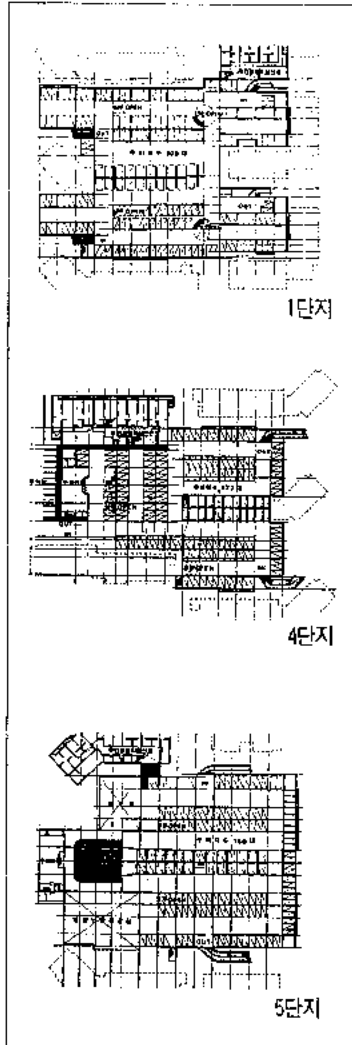
대지면적 / 14,592㎡
건축면적 / 2,846.83㎡
연면적 / 40,078.58㎡
건폐율 / 19.51%
용적율 / 230.9%
세대수 / 10평형-344호
12평형-344호
주차대수 / 지 상-121대
지 하-160대

4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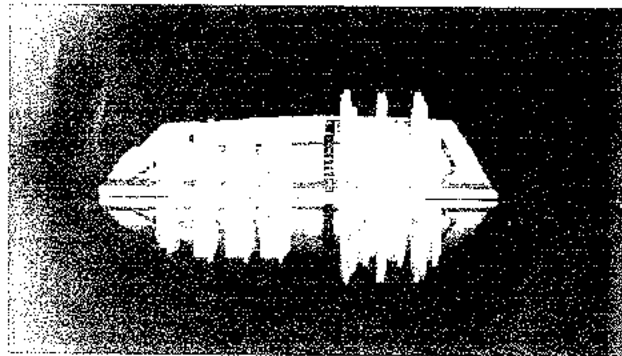
대지면적 / 15,555㎡
건축면적 / 3,493.55㎡
연면적 / 40,175.58㎡
건폐율 / 22.46%
용적율 / 219.86%
세대수 / 12평형-216호
15평형-2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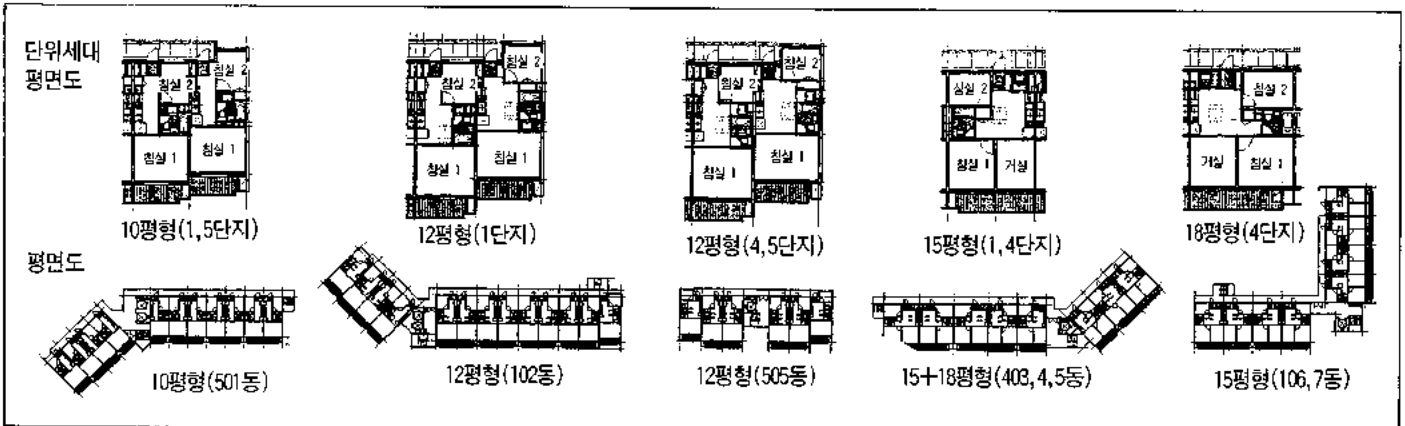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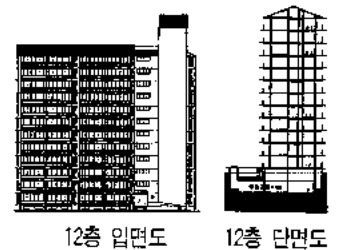
배치도



모형도 I



모형도 II



계획 개념

- 주변의 자연조건에 순응하고 전통적 도시축을 수용하며 인접단지와의 질서와 변화를 추구하여 건물 배치
- 단지의 조형성과 고른 일조량 확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주거동의 배치를 남향위주로 하되 주동배치를 대지의 축에 맞추어 리듬감을 부여하

여 변화를 줌

- 소형주택의 다양한 주요충족과 예민한 치수개념을 감안한 공간구성
- 단지 외곽부에 주차 및 도로를 배치하고 중앙에 보도축을 설정하여 내부에 충분하고 위계성있는 공간구성
- 보도축을 따라 동네개념의 장소성을 부여하여 1·4·5단지를 적절히 연결, 아웃과의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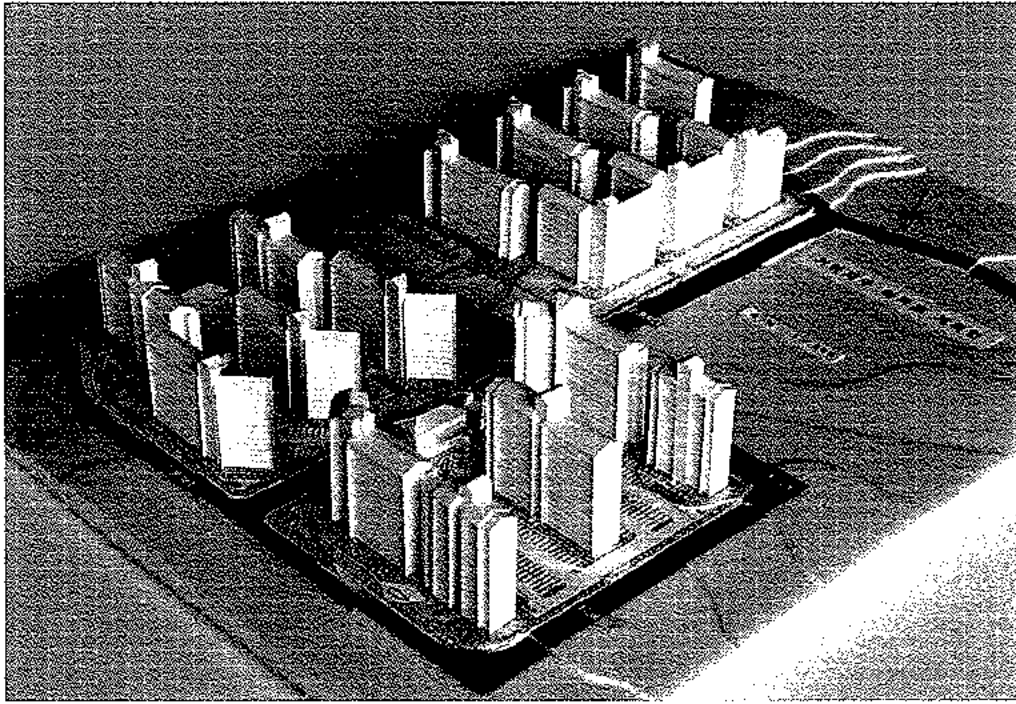
남의 장소로 도모

- 간선도로변의 주호군을 사전 배치하여 공간의 흐름과 입면의 변화감을 추구하고 간선도로와의 직각 및 사선배치로 소음의 최소화와 좋은 전망 확보
- 건설비 및 관리비 등의 최소화를 위해 주동지층을 PIT처리 및 주민공동시설등의 설치, 코아등의 집중배치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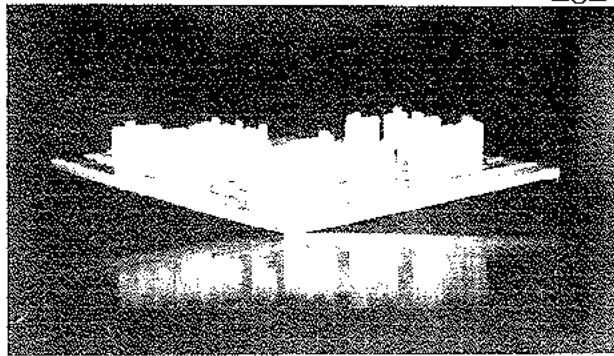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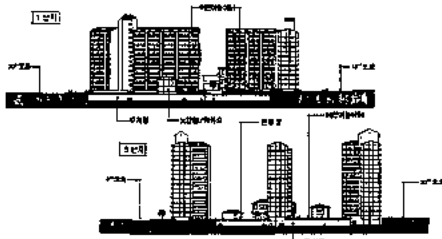
간의 효율화 및 공용면적을 최소화함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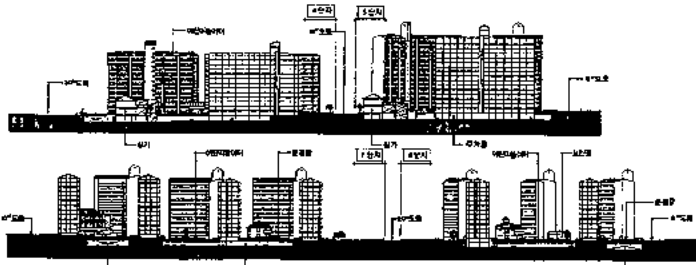
- 보도축을 중심으로 부대시설, 체육, 놀이시설등을 적정규모 배치하여 주민이용의 편의의 도모 및 질서있는 개방공간을 구성



모형도 III



모형도 IV



대지종횡단면도

- 주동배치의 패턴화로 공간의 일체감, 연속성, 방향성 창출
- 공간의 전통적인 마을개념을 도입하여 각 공간의 특성 배가, 인간적환경추구, 다양한 볼거리제공, 각동의 인지도 고양, 동선의 혼재방지
- 보행자 및 차량의 결절점에 단지의 주민생활시설 집중배치로 동선의 교차를 방지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도모
- 적정평형의 주동조합으로 평형간 위화감 해소

교통 계획

- 단지의곽으로 차량동선을 유도하여 철저한 보차분리로 보행자 안전성 도모
- 보차분리로 단절된 차량동선을 지하에서 적절히 순환연결
- 지하주차장과 지상의 중앙광장과의 수직동선체계확립 및 주동 및 부대시설로의 접근동선을 최소화함
- Zoning별 적절한 주차공간 분할

건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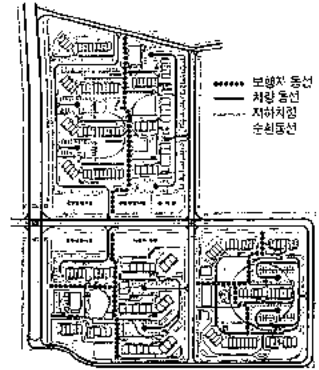
기본 방향

• 주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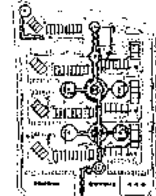
- 인접 단지와의 조화 및 질서정립
- 남향위주의 주동배치 및 조망확보
- 전체의 주동을 편복도형으로 구성
- 1개소의 코아로 수용될 수 있는 주호수로 주동을 구성
- 적정 평형의 함으로 위화감 해소
- 간선도로변에 사선및 직각 배치로서 도로소음을 최소화

•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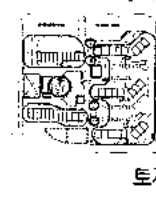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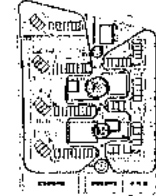
- 주동의 비례를 고려한 주동 규모 설정
- 박공지붕의 수용으로 친화감 조성
- 주동의 분절 및 셋백(Setback)으로 시각적 변화



교통계획도



오픈스페이스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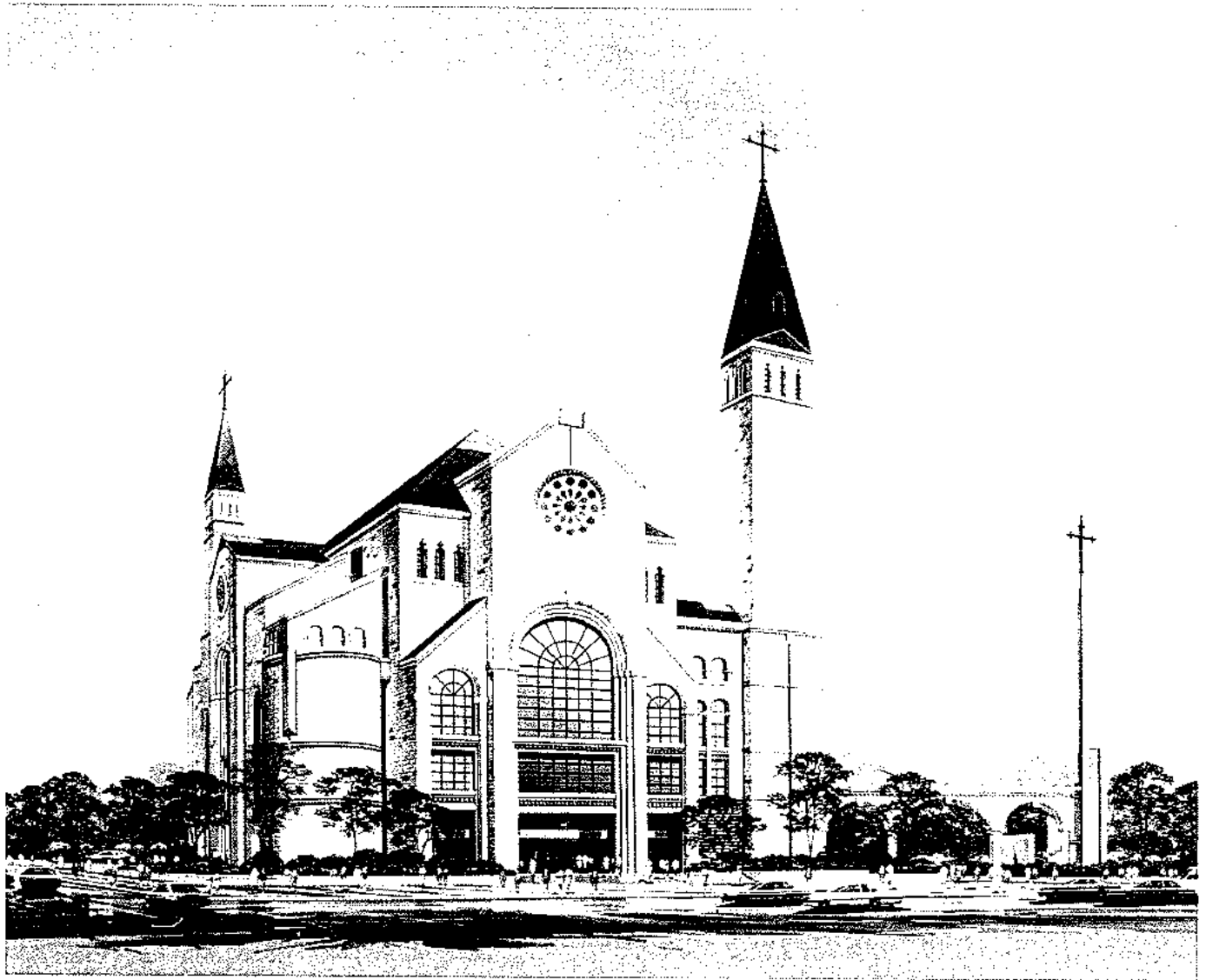
토지 이용 계획도

- 추구 및 매스(Mass)의 위압감 해소
- 단순화 하여 절제된 입면 계획
- 주호 계획
- 전용면적비의 극대화
- 각 평형별로 병합가능성 유지
- 가사공간의 기능성, 효율성 제고
- 충분한 수납공간 및 서비스 공간의 확보로 생활의 편의 제공
- 소요 제 설비공간의 적절한 배치
- 단면 및 코아 계획
- 다수의 주동 지하는 핏트(PIT)로 처리하고 일부의 주동 지하는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을 유치
- 코아의 집중배치로 효율성 증대 및 안전성 확보

분당성당

분당성당에서는 지난 4월 지역주민과 친근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규모의 성당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임이 종합건축을 비롯한 총 5개 사무소를 지명하여 실시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임이 종합건축(案)(대표 : 이각표)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에너지 관리센
터 앞 천주교 지정용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4,000㎡

건축면적 / 2,388.32㎡

연면적 / 19,162.60㎡

건폐율 /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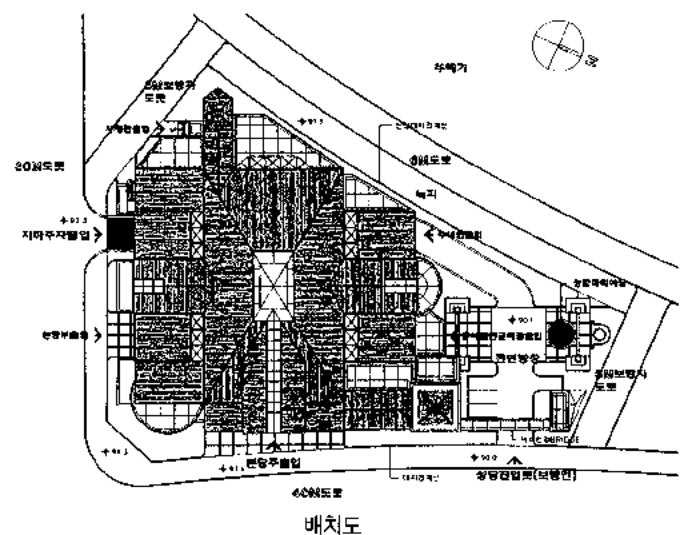
용적률 /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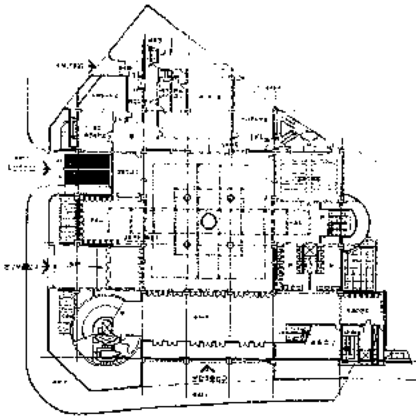
규모 / 지하 4층, 지상 5층

외부마감 / 화강석+T.16mm 복층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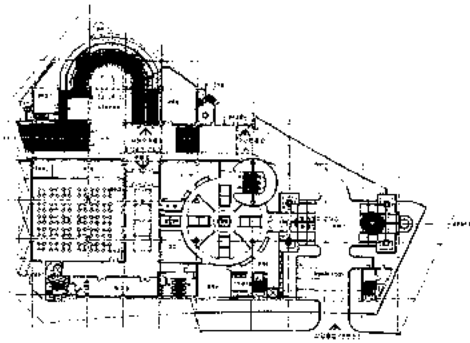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월골
트러스

주차대수 / 200대(육내 : 190대, 육
외 : 1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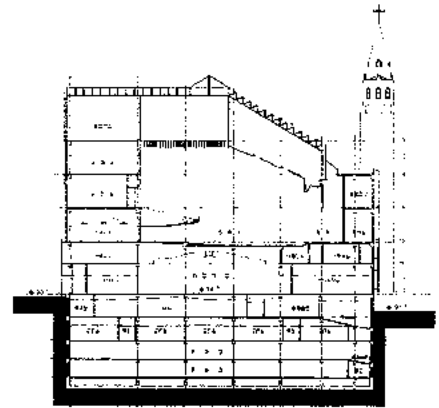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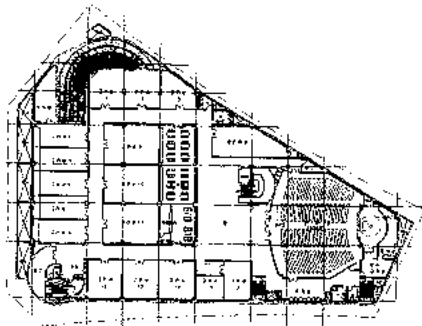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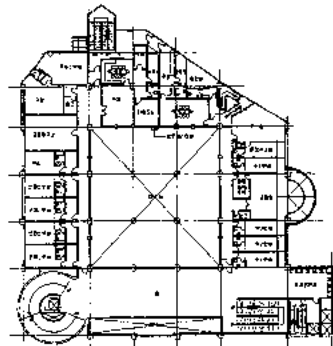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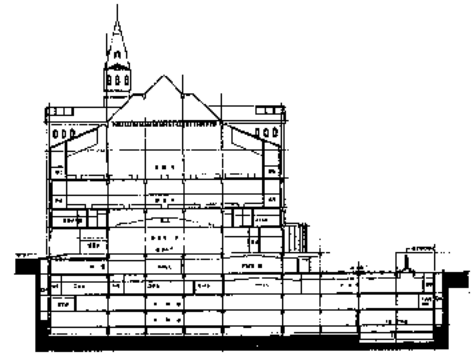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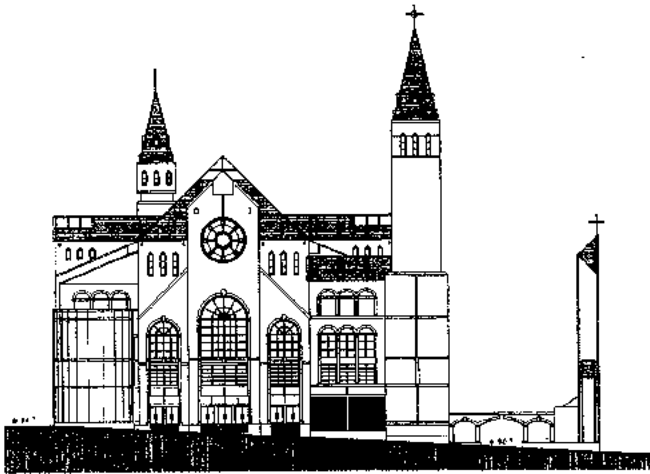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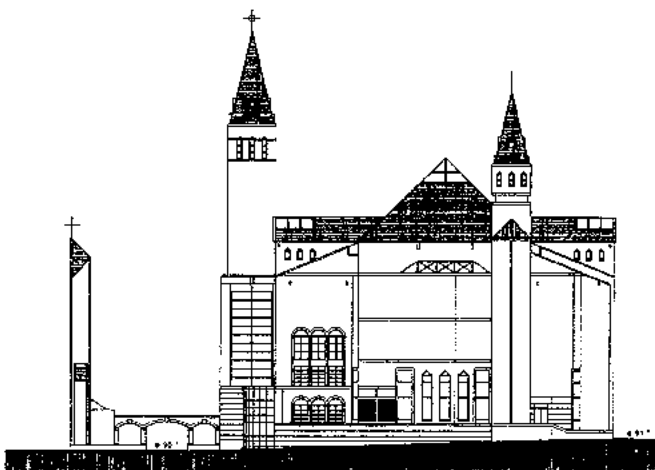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횡단면도



입면도



배면도

■ 배치계획

- 대지형태에 따른 적절한 배치를 하였다.
-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 보행자동선과 주차동선을 분리하였다.
- 도시속에 따른 연속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 평면계획

-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당에는 유아실 및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였다.
- 사제관은 현관을 별도로 처리하고 성당과 직접 연결하였다.
- 수녀원은 현관을 별도로 처리하고 수녀원과 제의실을 연결하였다.
- 본당 사무실을 비롯한 수녀사무실, 사목회 사무실, 각 단체장 사무실, 성물 보관소 등 신자관리시설을 배치하였다.
- 교육시설로써 교실 14실과 교

무실 2실 및 도서실, 탁구장을 설치하였다.

- 기타시설로써 혼인, 장례를 위한 식당, 주방 및 다방, 폐백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다.

■ 입면계획

- 친밀감 있는 입면을 구성하였다.
- 부정형의 벽과 높이가 다른 경사지붕으로 단조로움을 완화하였다.
- 현대적 감각의 성당의 상징적 이미지 부각시켰다.

■ 단면계획

- 1층 상부를 오픈시켜 개방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 대지의 경사를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였다.
- 기초를 윈 지반층에 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과 함께 공사비 절감의 효과를 갖는다.

“P”빌딩 구조설계에 얹힌 이야기 (3)

Structural Designed Procedure of “P” Building

李昌男/센구조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5. 임기응변(Base Plate 설계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배우고 기초적인 운전교육을 받아 면허를 따면 누구나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별로 까다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큰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고비를 아슬아슬 넘기는 유능한 사람도 있다.

소질, 재능이라 해도 좋고 적성까지는 들먹여야 설명이 된다.

똑같은 제품을 수천, 수만대 제작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건축구조는 대부분 1회용의 설계여서, 마치 맞춤복 주문 형식과도 같다.

즉, 대지(垠地)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이르기까지 항상 다른 조건들의 조합에 대응해야 한다.

이제 구조상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재인 Base Plate를 예로 들어 보자. 앞서 설명한대로 본 건물의 최하층 기둥축력 최대치는 약 6,000ton이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상 Base Plate가 차지해도 되는 두께(공간)가 45cm에 불과했다. Base Plate의 기능상 필요성은 철골 기둥을 상대적으로 약한 이질재인 콘크리트 기초에 접합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그의 구조상 구실은 매우 단순하다. 철골 기둥을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직접 올려 놓았을 때 기초가 깨지지 않고 충분히 기둥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면 구태여 Base Plate가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 Base Plate는 기둥에서 내려오는 집중하중을 기초에 분산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Base Plate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튼튼하다면 기초가 필요 없으며 그 자체가 기초 역할을 감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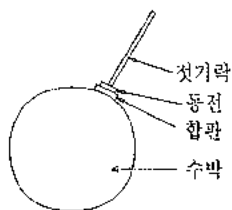
된다. 또한 반대로 기둥 뿌리의 크기가 Base Plate 소요면적만큼 크다면 당연히 Base Plate는 생략된다.

기둥과 벽에는 반드시 기초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원두막을 짓는데는 기초가 필요없으며 네개의 말뚝을 땅속에 묻거나 박아서 기둥으로 겸용하면 된다. 원두막이 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만 기둥하중의 크기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조선호텔 신축 당시 건물 주변 옹벽 도면을 본 적이 있다. 기초가 전혀 없이 판대기가 서있는 형상이다. 물론 사용중 넘어지지 않도록 가설 버팀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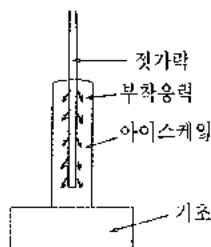
우리는 Sheet Pile을 박아 흙막이로 삼고 한 쪽의 흙을 파낸다. 이 때 Sheet Pile에는 분명히 기초가 없다. 축하중이 크지 않고 횡하중이 주된 설계하중일 때는 흙의 마찰력이 기초 역할을 하기도 하며, 지하실 바닥 일부가 기초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 즉 기초가 필요 없을 정도의 기둥에 Base Plate는 왜 필요하겠는가! 그래도 Base Plate의 개념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림 14와 같은 실험을 해보자.

나무 젓가락으로 수박을 눌러보자. 젓가락이 충분히 튼튼해서 부러지거나 구부러지지는 않는데 그만 수박에 구멍이 난다면 곤란하다. 그래서 수박 표면에다 1.5mm두께의 합판조각을 붙이고 눌렀더니 이번에는 그 합판조각이 구부러진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00원 짜리 동전을 젓가락 끝과 합판 사이에 끼워 넣었더니 괜찮더라! 뭐 그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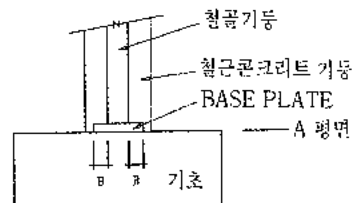
여기서 젓가락은 기둥이고 동전은 Base Plate, 합판은 기초, 마지막으로 수박은 지구(땅)라는 것을 눈치챘을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안해본 최초의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는 외로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Engineering의 뒷받침이 어렵다.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주위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톱날같이 생긴 Rib를 추가하여 마무리하였다. 도면상으로는 매우 복잡한 형상이었는데 막상 시공 현장에 가 본즉 그 나름대로 보기에 그럴듯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구조도 일반적으로는 보기 좋은 것이 튼튼하다.

Base Plate에 작용하는 하중은 수십~수백톤/m²으로 외곽 크기가 1cm만 커져도 두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 두께가 모자라는 것, 그래서 성가신 구조이다.



것이다. 누르는 힘이 크면 젓가락도 굵어야 하고 동전도 500원짜리로, 합판두께도 3mm로 키우면서 크기도 더 늘어나야 한다.

젓가락을 누르는 힘의 크기와 수박 겉질의 단단한 정도(지내력)에 따라서 합판조각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그 두께 등의 계산은 위의 동전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다.

누르는 힘은 커졌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없다. 그러면 3mm합판 대신 4.5mm합판 또는 철판 등 단단한 재료를 쓰면서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겹쳐 놓아도 된다. 아니면 젓가락을 굵은 것으로 바꿔 써도 된다. 이와 같이 수박의 표면강도(지내력)에 알맞는 합판, 동전, 젓가락 등 3가지 함수의 조합이 구조장이가 써먹는 현장이다.

지하 최하층이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어서 기둥 크기가 좀 커진다 해도 사용상 지장이 없다면 기둥크기(젓가락 굵기)를 늘리고, 그 대신 Base Plate(동전)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일 하기에 편하다.

즉 지하실 최하층 기둥 외곽 크기가 충분히 커서, 말하자면 철근 콘크리트 만으로도 설계가 가능한 정도라고 하자. 그러면 상부 철골기둥을 타고 내려오던 축하중을 해당 층 높이의 부착응력을 활용, 또는 Shear Connector 등을 적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전달시킬 수 있다. 마치 아이스케의 젓가락처럼 별도의 Base Plate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림 15)

이런 글을 쓸 때마다 당혹스러운 것은 장거리 진화로 겹싸게 들어오는 팬들의 음성이다. “그렇다면 철골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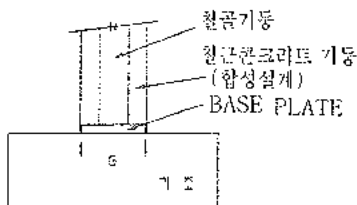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다. 일반적으로 기초 상단에 두되 철골 기둥 외곽 크기보다 약간 큰 최소두께의 Base Plate를 부착하여 철골 조립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최하층 기둥 크기를 마음대로 크게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때는 임기응변으로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철근 콘크리트만으로 부담할 수 있는 축하중을 우선적으로 기초에 전달시키고 난 후 전체 축력에서 철골기둥이 지탱할 수 밖에 없는 나머지 부담용으로 Base Plate를 산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두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힘이 내 생각대로 이동해 줄 것인가?”라는 것과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철골기둥 외곽 크기를 벗어난 Base Plate부위(B)의 하중 전달 경로이다.

같은 평면 A에 Base Plate도 앉아있고 철근콘크리트 기둥도 놓여있으니 그 응력의 자리다툼(충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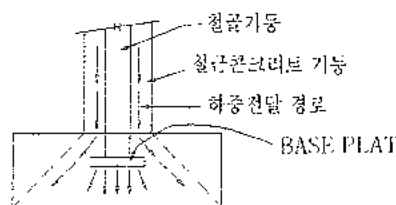
유명한 설계사무소의 도면에도 그림 17과 같은 Base Plate가 있다.

R.C. 피복이 다만 내화피복용이라면 모르되, 철골기둥과 힘을 분담하도록 합성설계한 것이라면 Base Plate가 타고 앉은 기초자리(B)가 2중 부담을 해야한다. 즉 기초의 B부분을 동시에 고속도로로도 사용하고 철도로도 사용하겠다는 위험한 착상이다. (기초 콘크리트 강도를 기둥의 그것보다 엄청나게 코도록 설계 시공한다면 예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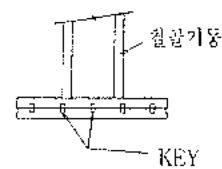
이렇게 하려면 터널을 뚫어 밑에는 지하철이 지나가게하고 그 위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도 같은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공사가 필요하다. (그림 18)

꼭 필요한데는 인식하면서도 Anchor Bolt 인심은 의외로 후하다. 담배처럼 기다랗게 생겨서 그런가?

축하중이 큰 대부분의 다층건물 기둥, 특히 지하실 층수가 많은 건물의 최하층 기둥 뿌리에는 횡력이 작용할 겨를이 없고 위 보에서 전달되는 Moment 값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또한 얼마간의 횡력이 작용한다 해도 Base Plate가 옆으로 미끄러질 정도, 그래서 Anchor Bolt로 꽂꽂 붙들어 매야 할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책상에 네개의 다리가 있다.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을때는 옆으로 밀어서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책상 위에 책을 잔뜩 쌓아 놓거나 사람이 올라앉아 있을 때에는 웬만한 힘으로 밀려가지 않는다. (다리가 부서질지언정) 마찰력 때문이다. 그래서 책상 다리에는 Anchor Bolt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경우 조립용으로 배열한다. 더구나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피복되는 철골 기둥일때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P"빌딩 Base Plate의 단면산정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AISC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II형 기둥 단면마다 이에 적합한 규격의 Base Plate를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냥 평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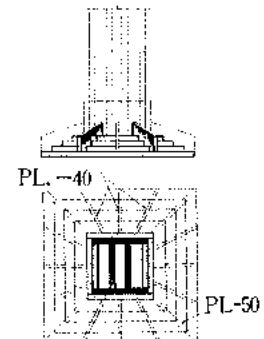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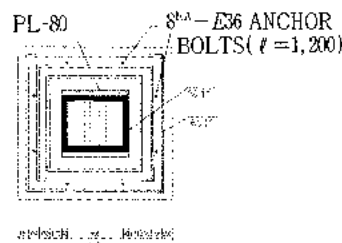
구두방에 가서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사 신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발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면 특별 주문을 해야 하는 것처럼 "P"빌딩의 Base Plate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 설계되었다.

30층 주 골조의 응력해석에 소요된 Computer 사용시간과 맞먹는 많은 시간을 Base Plate 계산에 소비했다면 믿어줄 지 모르겠다.

Base Plate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양은 4각형 단일 강판이다. 마치 Flat Slab에서의 Drop Panel과 같다. 그러나 이번 경우 하나의 4각형 판대기로 Base Plate를 설계한다면 특수 대장간에서 단조해야 하는데 그런대가 없다. 현재 POSCO에서 생산 보증하는 강판의 두께는 80mm가 최대인데 필요한 단일강판두께는 약 300mm이다. 얇은 Base Plate에다 Rib를 붙여서 보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Rib 높이 450mm제한 때문에 어렵도 없다.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제시한 안이 적층식(積層式) Base



(그림 20)



(그림 21)

Plate였다.

물론 이런 모양의 Base Plate는 본적이 없으며 아마도 세상에서 처음일지도 모른다. (세상이 하도 넓어서 처음이란 말은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 맹세코 1968년도의 Rock Anchoring과 1975년경 De-watering공법 개발이 당시 내 판에는 세상에서 처음인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남들도 쓰고 있었다는 것을 후에 알았기 때문)

한장 한장 쌓아놓은 철판 위를 늘렸을 때 베니아 합판처럼 한 덩어리로 작용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철판 상하를 Sand Blasting하면 마찰저항이 미끄럼 방지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오래전(1960년대)에는 지금 남대문시장 E동(일명 지하 도깨비시장 건물)이 20층 인가로 증축 고려한 철골건물이다. 당시 Base Plate로 두께 200mm가 필요했었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100mm강판 2개를 겹쳐놓되 맞닿는 면에 구멍을 뚫고 Key를 끼워 넣었다. (그림 19)

그러나 이번 경우는 강판을 무려 4장이나 겹쳐야하므로 번거로운 뿐만 아니라 Key를 삽입하기 위한 강판의 단면산상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강판들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절단하여 각추대(角錐臺)가 되게하는 대신 계단처럼 층층이 겹쳐 용접하게 하였다.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만큼 두께를 확보하게 하여 강재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안해본 최초의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는 외로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Engineering의 뒤받침이 어렵다.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주위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톱날같이 생긴 Rib를 추가하여 마무리하였다. 도면상으로는 매우 복잡한 형상이었는데 막상 시공 현장에 가 본즉 그 나름대로 보기에다 그럴듯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그림 20, 21).

구조도 일반적으로는 보기 좋은 것이 튼튼하다.

Base Plate에 작용하는 하중은 수십~수백톤/m²으로 크므로 외곽 크기가 1cm만 커져도 두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 두께가 모자라는 것, 그래서 성가신 구조이다.

건축법 질의·회신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건설부 건축계획과

▶ 질의

기존공해공장을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질의자 : 경남 김해 정한성)

▶ 질의

가. 건축허가 대상구역으로서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1층에 주택(85제곱미터), 2층에 감귤창고(100제곱미터)를 건축시 신고로서 건축가능한지 여부

나. 주택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신축시 신고로서 가능한 바, 이 경우 도시계획 도로예정지내에서 가설건축물로서 주택을 신축시에도 신고로서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질의자 : 제주 남원 김성훈)

▶ 질의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건설업법상의 연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질의자 : 경기 수원 이주환)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의 규정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일조권규정의 적용 지역(질의자 : 경기 수원 권 용)

▶ 질의

타인소유의 대지에 사용승락을 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중 대지가 분할되어 지번의 정정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주의 사용승락을 별도로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질의자 : 충남 서산 권석주)

▶ 회신(건축 58070-1307, '93.4.17)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인 경우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상호간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건축법상 용도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92, '93.4.27)

가. 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상구역인 읍·면의 지역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는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바, 문의의 건축물도 주택부분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창고부분도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 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며, 신고로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 도시계획 예정도로내에서 가설건축물인 주택의 신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09, '93.4.19)

가. 연면적이라 함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만,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 산정시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주차장으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나. 건설업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408, '93.4.27)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일조권 규정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409, '93.4.27)

건축법령상 적법한 건축물로서 지번의 정정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을 정정하는 경우라면 건축법령상 별도로 동의할 득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기타 민법 등 관계법령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

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정북방향쪽에 도로가 접하고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은?

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쪽의 대지에 하천이 접하고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은?(질의자: 경기 안양 유성호)

▶ 질의 —————

소요폭에 미달된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 건축가능여부(질의자: 경기 광주 김춘식)

▶ 질의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권 등의 적용을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가 대지최소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 필지가 있는 경우 이를 도로 등과 같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질의자: 전북 전주 김종태)

▶ 질의 —————

철골조림식 자주식주차장으로서 높이가 6미터 이하로서 3개층의 구조물인 경우 건축물인지 또는 공작물인지의 여부(질의자: 경남 양산 김진철)

▶ 질의 —————

도시계획 예정도로내에 가설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질의자: 경기 남양주 정상만)

▶ 질의 —————

도시계획구역내의 시급지역에서 기존단독주택(84제곱미터)에 6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질의자: 경북 영주 권영욱)

▶ 질의 —————

건축물을 건축중에 채권채무 관계로 대지의 소유권과 건축물의 소유권을 각각 타인에게 변경하고자 건축물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대지주와 건축주가 동일인이여야 하는지의 여부(질의자: 경북 영덕 김용성)

▶ 질의 —————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보전지역에서
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축시 건축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시 건축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다.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회신(건축 58070-1410, '93.4.27)

가. 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 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대지 사이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423, '93.4.28)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라면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경우이므로 소요도로폭의 확보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407, '93.4.27)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420, '93.4.28)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6미터이하의 철골조림식 주차장은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 공작물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421, '93.4.28)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예정도로내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존치기간이 3년이내인 것 등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422, '93.4.28)

건축법시행령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바, 이 경우 연면적합계라 함은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문의의 건축물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제곱미터 미만의 증축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430, '93.4.29)

건축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의 명의변경에는 대지주와 건축주가 반드시 동일인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신(건축 58070-1433, '93.4.29)

가 및 나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구역이 아니라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 또는 2층이하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가. 기존건축물(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신고대상인지 여부.

나. 근린생활시설과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연립주택)을 복합건축물로 신축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 매입기준은? (질의자: 광주 동구 정인영)

▶ 질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할 당시 2필지에 농가주택을 건립할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승인받은 경우 나머지 한 19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허가받아 건축가능한지 여부(질의자: 서울 도봉 왕용식)

▶ 질의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연면적 772제곱미터인 건축물의 1층 및 2층(바닥면적의 합계 455제곱미터)의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을 입시계학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바 가능여부(질의자: 광주 동구 좌형선)

▶ 질의

도시설계에 의하여 2필지에 공동개발로 지정된 대지에 공동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단독개발 가능여부 및 공동개발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영등포 안재휴)

▶ 질의

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가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황도로가 기준이 되는지, 도시계획도로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강남 박원석)

다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외의 구역에서 농업용비닐하우스의 건축시에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축조가 가능한 것이나, 수자원보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69, '93. 4. 22)

가. 단독주택이 아닌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가능한 것이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3” 부표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채권매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하여만 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 회신(건축 58070-1387, '93. 4. 26)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에 건설되는 주택건설세대수가 사업계획승인대상인 20세대(20호)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건축 58070-1370, '93. 4. 22)

교육연구시설인 입시계학원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의하실 사항이며, 건축조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건축법시행령 별표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제곱미터이하로서 시장·군수가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또는 폭 35미터이상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한하여 대학입시계학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51, '93. 4. 21)

수립된 도시설계에 2필지 이상의 필지가 공동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수립된 도시설계의 내용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는 시장 등이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된 도시설계의 내용에 따라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50, '93. 4. 21)

가. 질의의 인접대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동 규정에 의한 도로이며, 또한 질의의 현황도로가 농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한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라면 위의 두 도로 모두에 건축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의 현황도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도로 대장 등을 조사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

일반주거지역내 관광호텔의 오락실 용도를
위락시설(투전기업소)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관리대상상 오기된 용도의 정정 가능여부
(질의자 : 서울 중구 박길남)

▶ **질의** —————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대지가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경우 등 대지에 단독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서울 영등포 채준식)

▶ **질의** —————

설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절차 및 현행법상 설계변경허가의
가능성은? (질의자 : 서울 종로 정천일)

▶ **질의** —————

가로 5미터, 세로 10미터, 최고높이 2미터의 구조물을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바닥면적 105평의 규모인 실내스키장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질의자 : 서울 영등포 고종문)

▶ **질의** —————

종합병원이 있는 일단의 대지안에 별도의 증축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바, 동 건축물 아닌 다른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로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서울 구로
오광욱)

▶ **질의** —————

종교시설인 교육관을 내부시설이나 구조변경없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바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질의자 : 광주 북구 변한규)

▶ **질의** —————

2인의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가 당사자간 합의하에 공증하여
지분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된 경우 본인의 지분상에 있는 건축물에
증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도 공유지분권자의 사용승락서가
필요한지 여부(질의자 : 서울 송파 문덕수)

▶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LPG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질의자 : 서울 도봉 이정희)

▶ **회신**(건축 58070-1386, '93.4.26)

관광호텔안의 위락시설은 관광호텔의 부속용도가 아닌 주용도로
분류되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위락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이며,
적법한 사항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정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31)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32, '93.4.20)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먼저
설계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허가 또는 신고없이 시공된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추진허가는 가능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53, '93.4.21)

질의의 경우 실내스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4)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04, '93.4.19)

질의와 같은 경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과 증축공사중인
건축물이 다른 경우라면 별도의 용도변경허가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13, '93.4.1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을 동 제9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315, '93.4.19)

건축법령상 대지라 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증을 통하여
지분의 범위가 설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허가시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 받은 경우라 하면 건축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신**(건축 58070-1312, '93.4.19)

질의의 LPG판매소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 위규정 바목의
액화가스취급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

하나의 대지를 15필지로 분할하여 8필지에 8개동의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이를 다시 합필한 후 18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신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강남 서재정)

▶ 질의

지목이 묘지이나 묘는 없으며,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경우 동 대지상에 건축하고자 할 때 지목을 변경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인천 북구 김현수)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전면도로부분으로 너비 13미터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베치는 동 부분이 아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를 띄어서 건축하고자 할 때에도 고도지구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강남 김지덕)

▶ 질의

노대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질의자: 대전 중구 송형섭)

▶ 질의

서울지역의 준공업지역안에 창고를 공장(도시형업종 또는 비도시형업종)으로 또는 공장간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 질의

최고 고도지구 15M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최고높이 15M이하이나 승강기탑(건축면적의 1/8이하임)부분이 15M초과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부산 부산진 정인설)

▶ 질의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위락시설인 노래연습장을 설치한 경우 동 건축물에 대한 처벌규정은? (질의자: 서울 강남 이화목)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시 1층부분만 확보하고 2층부터는 이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서울 동작 유승훈)

▶ 질의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사시공자란에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2개의 건설회사를 기재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서울 성동 조영하)

▶ 회신(건축 58070-1301, '93. 4. 19)

질의의 경우 8개필지에 개별건축허가를 얻었으나 각 필지를 합하여 1건의 18세대인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라면 신축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260, '93. 4. 15)

질의의 지목이 묘지인 경우라도 여타 관련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건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령상의 대지로서 동 대지상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축허가신청전에 반드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건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점사시 일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236, '93. 4. 14)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과반이상이 고도지구에 속하거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고도지구의 건축제한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235, '93. 4. 14)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노대의 수평투영면적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그 수평투영면적의 일부가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230, '93. 4. 14)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233, '93. 4. 14)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고도지구는 그 지정목적이 건축물의 높이를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로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환경조성이나 토지의 고도이용을 증진키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대하여는 동 도시계획을 결정한 시장 등이 동 지구의 지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당해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215, '93. 4. 13)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또는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94, '93. 4. 13)

질의와 같은 건축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상부에는 피난 또는 소화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95, '93. 4. 13)

질의와 같이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라면 착공신고서 사실대로 구분하여 기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질의** —————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일반상업지역안으로서 건폐율이 96.54%임)의 2분의 1정도가 소실되어 이를 개축 또는 재축하고자 하는 바, 이의 범위는 화재가 나기 전의 면적 및 층수에 맞게 할 수 있는지 또는 현행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부산 중구 고광영)

▶ **질의** —————

상업지역안에서 1976.4.30 건축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로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상가이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아파트(100세대)일 때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절차는?
(질의자: 대전 중구 길운찬)

▶ **질의** —————

질의의 측량성과도와 같은 대지에 신고후 84.8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으나 추가하여 더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영등포 이태연)

▶ **질의** —————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에서 1층의 전부를 주차전용으로 하고 외벽없이 기둥만 있고, 상층부용의 계단만 있는 경우 1층의 주차전용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질의자: 서울 서초 노병우)

▶ **질의** —————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양측에 도로가 질의서의 그림과 같이 접하고 있으나 당해 대지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쪽에 있는 도로가 소요너비에 미달되며 동 도로와 높이 6미터의 고저차가 있는 낮은 쪽에 또다른 도로가 있을 때 동 소요너비를 확보하는 방법은?(질의자: 서울 마포 송진아)

▶ **질의** —————

자연녹지지역안의 기존 공장을 농산물로 가공된 상품의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서울 강남 김주희)

▶ **질의** —————

대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공정 10%)의 건축물만 양도하고 대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존하고자 할 경우로서, 제3자 또는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의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부산 서구 정수임)

▶ **질의** —————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중 1994년 5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내용중 이의 기준이 되는 행위가 입지심의,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신청중 어느 행위를 기준하는지

▶ **회신**(건축 58070-1219, '93.4.13)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재축은 면적과 층수 및 높이가 종전의 건축물의 범위이내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라면 개축이나 재축을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220, '93.4.13)

질의의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구역인 경우라면 건축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축물안에 설치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의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용도변경시 동 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71, '93.4.10)

질의와 같은 대지와 도로의 조건에서 이미 신고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건축가능한지의 여부는 당해허가권자가 검토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며 건축물의 사용검사전에 신고대상 건축물을 또다른 신고로 허가대상 규모를 넘어 건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73, '93.4.10)

질의의 1층 주차장이 피로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동 부분은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단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74, '93.4.10)

도로의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반대편에 경사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75, '93.4.10)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 건축법시행령 별표12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농수산물보관창고의 건축은 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77)

건축주의 명의변경신고는 건축법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동 규칙 별지8호 서식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신**(건축 58070-1183)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개정규정 또는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종전에는 허용되었으나 건축을 금지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시점

여부(질의자 : 서울 노원 최성순)

▶ 질의

개정시행중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시행중으로서 동 조례에서 준공업지역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5월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서울 강남 윤석배)

▶ 질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공장을 설립한 정확한 날자는 알 수 없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1969.7.2자로 확인되는 바, 동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관계없는 배출시설의 설치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부산 북구 홍철수)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도로 사선제한 및 일조권제한시에도 제외되는지 여부(질의자 : 대구 동구 서익수)

▶ 질의

'92.6.1부터 시행중인 개정건축법령의 규정에서 준공업지역내 허용되는 공장은 단순히 연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바, 동 규모이하인 종전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물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허용된다는 뜻인지 여부(질의자 : 서울 구로 신동문)

▶ 질의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건축비 등의 조달을 위해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하고자 건축주를 2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서울 서초 전정배)

▶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공사중 원설계도서를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변경하고자 할 때 당초 설계를 한 건축사의 포기서가 있어야 하는지와 현 공사감리자를 해지하고 다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새로 지정하고자 할때 현 공사감리자의 감리포기서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서울 중구 박태원)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 및 도로와 고저차가 있어 하나의 층의 일부분을 지하층으로하고 나머지부분을 1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서울 강남 송경식)

적용시 건축허가신청을 기준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승인신청으로 보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79)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의 개정 및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1994년 5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52, '93.4.9)

질의의 경우가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건축법시행령 제65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장이라면 건축법정상 건축행위(공장시설의 교체로 인하여 일반공장이 공해공장으로 되거나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출시설의 설치(증설포함)인 경우라면 건축법정상에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회신(건축 58070-1139, '93.4.9)

질의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산정에 제외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사선제한이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122, '93.4.8)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Ⅱ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에는 질의의 배출시설의 설치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은 건축가능한 것이며, 종전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동 규모이하인 기존의 공장인 경우에 위의 배출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한 것이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의 건축가능여부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신(건축 58070-1123, '93.4.8)

질의와 같은 경우의 건축주명의변경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과 권리관계의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회신(건축 58070-1112, '93.4.8)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만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의 설계변경 또한 건축사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하며, 동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시 건축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포기서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나, 전 설계자 또는 전 공사감리자의 계약내용에 이의변경시 포기서를 받도록 하였다면 민사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93, '93.4.7)

건축물의 하나의 층에 지하층과 1층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 —————

건축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부서에서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강서 류춘기)

▶ **질의** —————

구 시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받은 재래시장도 건축법시행령 별표3 제1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양천 조영희)

▶ **질의** —————

가. 호화주택의 정의 및 평당 170만원 규모의 주택도 호화주택인지 여부.
나. 농가주택 건축의 법규상 진행절차는?
다. 주택자재로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 그 제한 및 규모는?(질의자: 서울 서초 손경재)

▶ **질의** —————

1층은 피로티구조로서 주차장에 전용되고 2층 내지 5층이 공동주택으로서 660제곱미터 미만일 때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자: 부산 진구 김창영)

▶ **질의** —————

지하 4층, 지상 8층 건축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업무시설인 복합건축물임)의 지하부분에 기계전기실 및 주차시설이 동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주용도별 면적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영등포 김성기)

▶ **질의** —————

'92.5.31 전에 건축허가받아 시공중인 건축물의 중간검사는 현행법에 의하는지 또는 종전법령에 의하는지 여부(질의자: 부산 동구 (주)새롬주택)

▶ **질의** —————

철골조립식이며 기계식 주차장이 높이 6미터이하로서 외벽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강남 강신우)

▶ **회신**(건축 58070-1091, '93.4.7)

질의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건축법 제8조 제4항의 규정과 도시계획법부칙(법률 제4427호, '92.12.1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일괄처리되는 것인 바, 이 경우 처리절차는 건축허가신청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함께 하면 건축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 등을 종합한 후 건축허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도 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92, '93.4.7)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3 제1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구 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된 재래시장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89, '93.4.7)

가. 건축법령상 호화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나. 질의의 농가주택의 건축은 그 규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8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의 절차는 다른 건축물의 경우와 같으며,

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건축물은 높이 13미터(처마높이 9미터)미만, 연면적 3,000제곱미터미만으로 건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 **회신**(건축 58070-1057, '93.4.3)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58, '93.4.3)

질의와 같이 복합용도인 건축물의 부속용도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이는 주된 용도의 면적에 따라 비례배분하거나 설치가 의무된 주차장의 경우 당해 주용도의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60, '93.4.3)

질의와 같이 종전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령의 시행중에 도래한 중간검사는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동 건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서 이 법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종전규정과 건축기준이 변경되어 재설계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개정 건축법령의 건축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도 개정 건축기준을 건축주 의사에 따라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중간검사,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63, '93.4.3)

질의와 같이 높이 6미터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공작물로서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 —————

부친명의로 시화지구 이주주택지를 분양받아 모친이 상속받은 경우 동 택지에 대하여 본인이 사용승락(인감증명서 첨부)을 받아 본인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인천 남구 김형식)

▶ **질의** —————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서울 종로 이정국)

▶ **질의** —————

두사람의 공유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유지분의 면적과 위치가 확정된 경우 공유지분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동 공유지분의 경계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는지의 여부와 분할되기 전의 대지가 15미터의 도로 및 광장에 접하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 본인의 대지는 15미터의 도로에만 접한 경우 도로사선제한의 기준은?(질의자 : 부산 남구 고팡명)

▶ **질의** —————

이미 준공되어 사용중인 건축물이 현행법령상 도로로부터 띄우는 거리 등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미달된 경우 동 건축물의 일부 증축 및 주차장을 추가설치하고자 할 때 종전법령을 적용받는지 또는 현행법령을 적용받는지 여부(질의자 : 서울 영등포 박세형)

▶ **질의** —————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최소면적에 미달되는 대지의 인접에 도로, 하천,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거나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신축, 증축, 개축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대지최소면적 기준의 10분의 7(기준의 강화시 10분의 5)이상인 대지만 적용되는지 또는 10분의 7이하인 대지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질의자 : 서울 은평 김종복)

▶ **회신**(건축 58070-1040, '93.4.2)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사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즉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사용승락이 동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경우라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 **회신**(건축 58070-1042, '93.4.2)

질의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축조시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44, '93.4.2)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유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었다라도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이 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부분 각각 별개의 대지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인접대지를 공유지분의 경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36)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축하고자 하는 시점에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37, '93.4.2)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제2호 단서 하단부의 규정은 대지최소면적에 미달되는 대지가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도로, 하천,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대지면적이 기준면적의 10분의 7 등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안)

1. 개정사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장을 건축할때 하기를 받아야 하던것을 공업지역에서 전면적합제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을 건축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 및 주택에 대하여는 지하층설치 의무제도를 폐지 하던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며 상업지역에 한하여 전면도로쪽에 따른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모든지역으로 확대하는등 건축절차와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 용지 지구내에서 전면적합제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은 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함 (안 제11조 제2항 제4호)
- 나. 공장 및 주택을 지하층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과 주택의 건설공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함 (안 제62조 제1항)

- 다. 전면도로쪽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상업지역에 한하여 전면도로쪽의 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그 대상지역을 모든지역으로 확대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5조 제1항)
- 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소매점의 규모를 바닥면적합제 500제곱미터 미만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안[별표1]제4호 가목 (1))
- 마.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사무소의 규모를 바닥면적합제 300제곱미터미만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안[별표1]제4호 가목 (1))
- 바.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를 조정함(안[별표1]제4호 나목 (10))
- 사. 생산복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한 대상용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추가함(안[별표13]제2호)
- 아. 자연복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별표14]제2호 거목)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개발촉진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전면적합제가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

제45조 제1항중 “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을 “노인시설·공동주택”으로 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공장”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으로 한다.

제62조 제1항 단서중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을 “공장·단독주택·공동주택·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으로 한다.

제81조 본문중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를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으로부터”로 한다.

제8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구역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다만, 시장등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에 의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1]제4호 가목 (1)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것”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으로 한다.

[별표1]제4호 나목 (6)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것”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으로 한다.

[별표1]제4호 나목 (4)중 “실내납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를 실내납시터·골프연습장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로 한다.

[별표1]제4호 나목 (9)중 “동물병원 기타이

와 유사한 것”을 “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것”으로 한다.

[별표1]제13호 다목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것”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으로 한다.

[별표1]제19호 아목을 삭제한다.

[별표13]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주차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별표14]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위락시설(관광호텔 내에 있는 위락시설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령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건축신고)① (생략)	제11조(건축신고)① (현행과 같음)
② 법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중 시설용 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로서 2층이하인 공장
③ (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4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같은 건축물안에서는 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위락시설·공연장·위험물질저장및처리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수 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노인시설 · 공동주택 ·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위락시설 · 위험물질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또는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62조(지하층의 설치) ① 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 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 및 창고시설 및 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지하층의 설치) ① 다만, 공장·단독주택·공동주택·운동시설.....
"표"(생략)	"표"(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 (대지의간의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퇴어야 할 거리는 다음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1조 (대지의간의 공지).....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 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으로 부터.....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중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지정·공고한다.	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구역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86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부분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86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도로와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1.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간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본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현행	개정안
뛰어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과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에 의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뛰어 건축허가 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2. — 3. (생략)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 제1항13호관련) 1. — 3. (생략) 4. 근린생활시설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같다)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2) — (5) (생략)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1) — (3) (생략) (4) 정구장·헬스크럽·볼링장·실내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 (5) (생략)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소개업소·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것 (7) — (8)(생략) (9)사진관·표구점·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정리·속셈·속독·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 독서실·장 의사·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것. 5. — 12. (생략) 13.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가. — 나. (생략) 다. 상점 : 제4호 가목(1)의 용도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것. 14. — 18. (생략)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가. — 사. (생략) 아. 총포판매소 20. — 32. (생략) [별표2]—[별표12](생략) [별표13]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생략)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하. (생략) (신 설) [별표14]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생략)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하. (생략) (신 설) [별표15](생략)	다만, 시장등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 제1항13호관련) 1. —3. (현행과 같음) 4. 근린생활시설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1).....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2) — (5) (현행과 같음)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1) — (3) (현행과 같음) (4) 정구장·헬스크럽·볼링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500..... (5) (현행과 같음) (6) 500..... (7) — (8)(현행과 같음) (9) 동물병원·총포판매소..... 5. — 12. (현행과 같음) 13.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가 1천제곱미터이상인것. 14. — 18. (현행과 같음) 19.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삭제 20. — 32. (현행과 같음) [별표2]—[별표12](현행과 같음) [별표13]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현행과 같음)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주차장(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별표14]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현행과 같음)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위락시설(관광호텔내에 있는 위락시설에 한한다) [별표15](현행과 같음)

건축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공사를 먼저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허용하여 기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폐율)을 녹지지역에서는 모두 20퍼센트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에서는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녹지지역에서도 자연취약지구와 같이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건축된 곳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2. 주요골자

- 가.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기받아 공사를 먼저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허용함 (안 제18조 제1항)
나. 건폐율을 20퍼센트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에서는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함 (안 제47조 제1항)

建築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 제1항중 “建築物의 使用檢査를 申請”을 “建築物의 使用檢査 (棟別 使用檢査

査를 포함한다)를 申請”으로 한다.
第47條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綠地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區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8條(建築物의 使用檢査) ①	建築主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を 完了한 경우에는 完了한 날부터 7日 이내에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築物의 使用檢査를 申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工事監理者의 署名을 받아 申請하여야 한다.	第18條(建築物의 使用檢査) ①		建築物의 使用檢査(棟別使用檢査를 포함한다)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⑤(생략)		②-⑤(현행과 같음)		
第47條(建蔽率) ①	坪地面積에 대한 建築面積(坪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比率(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最大限度는 다음 各號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第47條(建蔽率) ①		
1. 綠地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1. 綠地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다만, 綠地地域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區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생략)		② - ③(현행과 같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 단지안에 건설하는 복리시설중 구매시설, 유치원등 일부시설의 설치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세대수에 따라 일정규모의 구매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단지설정에 따라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의무를 완화함(안 제50조 및 제52조)

나.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세대수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단지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②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 또는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부대시설, 다음 각호의 복리시설·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준치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② 좌동	
1. 생략 2. 생략 3. 일반목욕장으로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	1. 좌동 2. 좌동 3. 일반복육장	
4. 구매시설로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	4. 구매시설	
5. 생활시설로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	5. 생활시설	
6.~9. 생략 제50조(구매시설) ②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 세대당 0.3제곱미터(시·군지역은 0.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구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	6.~9. 좌동 제50조(구매시설등)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이하 "구매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합계는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구매시설등의 면적이	

현 행	개정안	비 고
부터 동행거리 500미터이내에 동일면적이상의 구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천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구매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매시설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④ 삭제	
⑤ 구매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 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매시설등의 면적이 ...	
제50조(생활시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생활시설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생활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생활시설의 면적	제50조(생활시설)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 제50조 제4항의 규정은 생활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구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유치원등) ②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과 보육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	제52조(유치원등) ②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분양된 대지에 유치원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의 유치원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유치원등이 있거나 당해 단지에 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1. ~3. 생략	③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및 보육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3. 좌동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공사 발주자의 편의와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 및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 부설시공방지와 건설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도급한도액 적용방법과 하도급대금 지불제를 개선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를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인 경우는 공사금액 2,000만원미만에서 3천만원미만, 전문공사인 경우는 공사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700만원 미만인 공사로 함(안 제4조제1항)	나. 전문건설업체가 예외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4천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함(안 제18조제2항) 다. 건물, 교량, 터널, 댐등과 같은 동일구조물공사를 2개이상으로 분리하여 동일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그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토록 하고, 도급한도액을 공사종류별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규정은 1년간 연기하여 '94년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안 제22조제2항, 부칙) 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체결된 공사중 하도급한 공사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5호) 마. 건설업면허수첩에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의 하한을 기재하는 업무를 건설협회에 위탁함(안 제54조제1항)
---	---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4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전제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
- 건축물, 교량, 터널, 댐등 공사의 성

질상 자체로서 한단위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를 2개이상으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계속 계약하는 공사

제3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체결한 공사중에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제54조제1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중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

액의 하한의 기재

1992년12월26일 공포한 대통령령 제13,789호의 부칙중 "1993년7월1일"을 "1994년7월1일"로 한다.

부 칙

- ②(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③(도급한도액기준금 변경신고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자본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4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②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1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중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5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② 3천만원 700만원
③ (생략)	③ (생략)
제18조 [부대공사의 범위] ② 법 제12조 각항에서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어느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원 공사를 말한다.	① 8천만원 원
③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본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
제22조 [도급한도액의 적용] ② (생략)	제22조 [도급한도액의 적용]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건설공사를 말한다)마다 이를 적용한다.	② 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⑤ (생략)	1.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 2. 건축물·교량, 터널, 댐 등 공사의 성질상 전체로서 한 단위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동일구조물 공사를 2개이상으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계속 계약하는 공사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② 1~4(현행과 같음)

100 건축사 9305

현행	개정안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기재	
부칙 이 영은 1993년1월1일부터 시행	부칙

현행	개정안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7월1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안) 입법예고

●건설부공고제1993-59호

1.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투자행위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이 1992년 12월8일 동법시행령중개정령이 1993년 2월20일 공포되어 1993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현재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등록을 낸 1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적합여부등은 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자본금의 증액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의 이율, 사용용도는 건설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타 예금의 실시지역과 종류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

다.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

고 모집시에는 최초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였음.

라. 사업주채와 시공보증회사가 모두 파산등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등이 임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10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들이 공사를 계속 시공할 자를 지정, 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마. 현재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안전진단실시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축사협회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을 추가 지정하고 진단 결과는 진단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진단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기준, 진단수수료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 주택국장, 전화번호 503-73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개정령 (안) 입법예고

●건설부공고제1993-142호

1.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92.12.8 법률 제4,530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93.2.20. 대통령령 제13,851호)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과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92.12.8 법률 제4,530호)에 따라, 주택의 대량 생산·공급체계에 적합한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정함.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항목)

○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방·내화성능, 피난·추락방지성능

○거주성능: 환기 및 기밀성능, 열환경성능, 음환경성능

○내구성능: 방수 및 배수성능, 방청 및 방부성능, 유지관리성능

(공업화주택의 생산기준항목)

○콘크리트조립식부재에 대한 생산설비·품질관리시설기준

○경량조립식부재에 대한 생산설비·품질관리시설기준

나. 공업화주택의 인정신청서 및 인정서등의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주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1993년 3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3월분 1천1백75만3천7백20㎡ 보다 9.78%(1백14만9천8백41㎡)감소 한 1천60만3천8백79㎡의 실적을 보였다.

27㎡)감소 한 2천7백92만9천6백32㎡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3월 누계 2천8백53만2천3백59㎡보다 2.11%(60만2천7백

전월 2월분 1천2백53만2천9백75㎡보다 15.39% (1백92만9천96㎡) 감소 한 1천60만3천8백79㎡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 - 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2년도	1993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351,374	1,533,812	182,438	13.50%
	부산	909,352	1,033,221	123,869	13.62%
	대구	223,973	394,336	170,363	76.06%
	충북	430,933	499,526	68,593	15.92%
	전남	281,308	319,384	38,076	13.54%
	경북	662,387	829,687	167,300	25.26%
	경남	582,218	924,048	341,830	58.71%
감소지역	인천	853,651	802,204	(51,447)	-6.03%
	광주	615,482	272,725	(342,757)	-55.69%
	대전	318,033	253,167	(64,866)	-20.40%
	경기	3,009,165	2,557,668	(451,497)	-15.00%
	강원	1,046,941	287,133	(759,808)	-72.57%
	충남	572,957	438,556	(134,401)	-23.46%
	전북	779,313	381,896	(397,417)	-51.00%
	제주	116,633	76,516	(40,117)	-34.40%
합	계	11,753,720	10,603,879	(1,149,841)	-9.78%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도별	2월분	3월분	증 감	비율(%)
단독주택	1,476,219	1,376,924	(99,295)	-6.73%
다세대주택	733,971	569,471	(164,500)	-22.41%
연립주택	75,381	146,895	71,514	94.87%
아파트	5,199,942	3,755,089	(1,444,853)	-27.79%
근린생활시설	1,806,256	1,672,892	(133,364)	-7.38%
종교시설	188,129	76,169	(111,960)	-59.51%
의료시설	33,851	36,663	2,812	8.31%
교육연구시설	283,587	379,491	95,904	33.82%
업무시설	659,780	324,638	(335,142)	-50.80%
숙박시설	161,806	118,572	(43,234)	-26.72%
공장	915,676	938,553	22,877	2.50%
기타	998,377	1,208,522	210,145	21.05%
계	12,532,975	10,603,879	(1,929,096)	-15.39%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 概況(3月分)

(단위/㎡)

구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2,275	2,339	1,351,374	4,133	4,191	1,533,812	1,858	1,852	182,438	14%	
부산	1,560	1,832	909,352	1,071	1,348	1,033,221	(489)	(484)	123,869	14%	
대구	796	849	223,973	1,371	1,436	394,336	575	587	170,363	76%	
인천	502	760	853,651	624	707	802,204	122	(53)	(51,447)	-6%	
광주	491	621	615,482	434	475	272,725	(57)	(146)	(342,757)	-56%	
대전	467	519	318,033	472	502	253,167	5	(17)	(64,866)	-20%	
경기	2,349	3,040	3,009,165	2,217	2,715	2,557,668	(132)	(325)	(451,497)	-15%	
강원	846	1,090	1,046,941	672	760	287,133	(174)	(330)	(759,808)	-73%	
충북	918	1,157	430,933	802	1,013	499,526	(116)	(144)	68,593	16%	
충남	745	759	572,957	533	572	438,556	(212)	(187)	(134,401)	-23%	
전북	656	738	779,313	481	591	381,896	(175)	(147)	(397,417)	-51%	
전남	809	925	281,308	494	615	319,384	(315)	(310)	38,076	14%	
경북	1,290	1,455	662,387	786	1,125	829,687	(504)	(330)	167,300	25%	
경남	1,447	1,719	582,218	1,240	1,504	924,048	(207)	(215)	341,830	59%	
제주	375	444	116,633	211	278	76,516	(164)	(166)	(40,117)	-34%	
합 계	15,526	18,247	11,753,720	15,541	17,832	10,603,879	15	(415)	(1,149,841)	-10%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3月 合計分)

(단위/㎡)

구분 건축사회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4,589	4,877	3,163,873	10,578	10,896	5,450,962	5,989	6,019	2,287,089	72%	
부산	3,708	4,727	2,416,762	2,525	3,805	2,310,213	(1,183)	(922)	(106,549)	-4%	
대구	1,789	1,942	880,370	3,416	3,740	1,870,411	1,627	1,798	990,041	112%	
인천	1,103	1,479	1,432,560	1,673	1,782	1,455,882	570	303	23,322	2%	
광주	973	1,155	844,681	1,086	1,259	1,174,509	113	104	329,828	39%	
대전	994	1,253	1,633,329	1,023	1,129	838,618	29	(124)	(794,711)	-49%	
경기	4,825	6,700	7,690,539	5,838	6,838	5,953,312	1,013	138	(1,755,227)	-23%	
강원	1,552	1,959	1,545,008	1,405	1,597	714,856	(147)	(362)	(830,153)	-54%	
충북	1,943	2,405	919,940	1,851	2,364	1,442,961	(92)	(41)	523,021	57%	
충남	1,496	1,605	1,083,401	1,286	1,348	1,271,958	(210)	(257)	188,557	17%	
전북	1,110	1,268	1,081,841	863	1,094	737,522	(247)	(174)	(344,319)	-32%	
전남	1,719	2,091	838,715	1,194	1,480	708,959	(525)	(611)	(129,756)	-15%	
경북	2,409	2,867	1,914,608	1,795	2,534	1,618,563	(614)	(333)	(296,045)	-15%	
경남	3,223	4,192	2,801,580	2,709	3,358	2,209,532	(514)	(834)	(592,048)	-21%	
제주	691	819	285,151	380	503	189,374	(311)	(316)	(95,777)	-34%	
합 계	32,124	39,339	28,532,359	37,622	43,727	27,929,632	5,498	4,388	(602,727)	-2%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3月分)

(단위/㎡)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7,269	7,610	1,323,728	7,170	7,325	1,376,924	(99)	(285)	53,196	4%	
다세대주택	464	615	221,894	1,194	1,272	569,471	730	657	347,577	157%	
연립주택	46	52	65,179	49	65	146,895	3	13	81,716	125%	
아파트	226	1,201	5,882,533	152	917	3,755,089	(74)	(284)	(2,127,444)	-36%	
근린생활시설	4,752	5,002	1,543,899	4,338	4,564	1,672,892	(414)	(438)	128,993	8%	
종교시설	137	155	90,650	117	134	76,169	(20)	(21)	(14,481)	-16%	
의료시설	15	19	38,353	18	20	36,663	3	1	(1,690)	-4%	
교육연구시설	119	174	331,928	89	128	379,491	(30)	(46)	47,563	14%	
업무시설	175	186	409,065	131	144	324,638	(44)	(42)	(84,427)	-21%	
숙박시설	25	29	61,212	124	153	118,572	99	124	57,360	94%	
공장	752	1,141	1,004,387	681	1,014	938,553	(71)	(127)	(65,834)	-7%	
기타	1,546	2,063	780,892	1,478	2,096	1,208,522	(68)	33	427,630	55%	
합 계	15,526	18,247	11,753,720	15,541	17,832	10,603,879	15	(415)	(1,149,841)	-10%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3월 合計分)

(단위/㎡)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13,484	14,561	2,346,383	16,809	17,271	3,387,529	3,325	2,710	1,041,146	44%	
다세대주택	1,022	1,269	473,800	3,311	3,531	1,577,649	2,289	2,262	1,103,849	233%	
연립주택	136	205	303,712	142	166	261,124	6	(39)	(42,588)	-14%	
아파트	542	3,299	14,963,629	424	2,435	10,491,966	(118)	(864)	(4,471,663)	-30%	
근린생활시설	10,580	11,118	3,788,633	10,677	11,542	4,343,547	97	424	554,914	15%	
종교시설	293	344	168,811	308	377	317,105	15	33	148,294	88%	
의료시설	34	43	89,909	48	52	101,969	14	9	12,060	13%	
교육연구시설	310	402	699,159	229	340	783,983	(81)	(62)	84,824	12%	
업무시설	446	483	1,130,071	336	372	1,256,217	(110)	(111)	126,146	11%	
숙박시설	95	104	178,300	349	360	370,384	254	276	192,084	108%	
공장	1,746	2,895	2,328,486	1,706	2,793	2,340,430	(40)	(102)	11,944	1%	
기타	3,436	4,616	2,061,466	3,283	4,468	2,697,729	(153)	(148)	636,263	31%	
합 계	32,124	39,339	28,532,359	37,622	43,727	27,929,632	5,498	4,388	(602,727)	-2%	()=마이너스

본 협회 신입 임원 취임 승인 지연

본 협회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전임 이영희 회장 후임으로 추대된 신임 오웅석 회장은 새 이사진을 구성, 지난달 21일 건설부에 승인요청하였으나,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자문위원회와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건설부와 활발한 접촉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신임 이사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감사

康佑植, 金椿培(이상 2명 유임)

이사

李春相(서울/신양건축)

金伸幸(부산/서강건축)

金在佑(대구/한남건축)

宋良漸(광주/한미건축)

李一潤(경기/한림건축)

李鍾萬(서울/녹야·현의·호성건축)

金澤盛(서울/흥인·피에이건축)

李鍾寬(서울/한국건축)

金仁坤(서울/동일건축)

(이상 9명 신임)

건축허가 민원처리 문제점 발표회



공무원 특별교육

강원도건축사협회의 김길창 회장과 박세진 회원은 지난 4월 22일과 28일 양일간에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간부직 및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한 교육 내용은

건축허가 복합 민원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 이의 시정 및 완화를 촉구하는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사고와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광주 건축사보 교육

광주직할시건축사회(회장 김덕수)에서는 지난달 27일(화) 오후 2시부터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광주지회 건축사보 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광주건축사회 윤

익상 부회장의 정신교육에 이어, 건축환경 건실화 대책, 개정된 소방법 해설, 그리고 구내 통신 선로설비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광주 건축사보교육



관계공무원 연석간담회

건축행정 쇄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도 건축사회(회장 김수현)에서는 지난 6일(목) 오후 5시 1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제주 파라다이스 회관에서 건축사회 회원 및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경제 교통 분담 및 건축행정 쇄신을 위한 관계 공무원 연석 간담회를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수현 제주건축사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건축사회의 교통분담 자율 실천 위기 확산계획 설명 및 의견교환과 건축행정 쇄신을 위한 건축행정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에 관한 기탄없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제주건축사회 유관단체 운영비 지원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김수현)에서는 지난 4월 26일(월) 93년도 유관단체 운영비를 지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운영위원(단체)으로서 83년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비 93년도분(삼십만원)과

85년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는 직장 새마을운동 제주시협의회 운영비(십오만원)를 지원했다.

한편, 제주도건축사회는 지난해 3월 직장새마을운동 제주시협의회 부회장 단체로 선임된 바 있다.

건축학회 정기총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대한건축학회(회장 송종석)에서는 지난 4월 24일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93년도 정기총회와 함께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21세기의 국토 건설"이라는 주제로 이진영 건설부장관과의 특별강연에 이은 학술발표와 93년도 정기총회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93

년도 대한건축학회상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을 함께 가졌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로상/신현식, 학술상/정일영·부척량·김무한, 기술상/박철림, 작품상/한창진·장석웅, 특별상/남파(박학재)상: 박인곤, 우당(신무성)상: 황상일

건축가협회 5월 금요토론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에서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동송동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금요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유재현 박사의 "도시환경의 미래와 건축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전직할시 현상설계 수상작 발표

대전직할시에서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21일까지 '93EXPO 개최와 더불어 날로 발전하는 직할시 위상에 걸맞는 새 청사를 건립코자 계획설계(안)을 현상 공모하여 전국의 32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결과, 대전소재 정원건축(대표 박윤웅)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또한, 최우수작으로는 단우모람(대표 김홍수)안, 우수작으로는 청전건축(대표 정덕훈)안, 장려작으로는(주)아키프랜(대표 김우성)안, (주)건원(대표 박홍길)안이 각각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한편, 대전직할시에서는 지난 5월9일부터 13일까지 대전시민회관에서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시청사 건립을 위해 출품된 본

선 진입 작품을 대상으로 전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수상작외에(주)정림건축(대표 김정철)안, (주)신진(대표 이상수)안, (주)한울건축(대표 최병천)안, (주)신화건축(대표 김인수)안이 함께 전시되었다.

이번 현상공모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이근영 대전직할시 부시장

위 원: 이은근 대전직할시 의회 의원

황오선 대전직할시 건설주택국장

김진균 서울대 교수

김성우 연세대 교수

이강업 한양대 교수

송용호 충남대 교수

김억중 한남대 교수

김상경 대전대 교수

거여지구아파트단지 현상설계 수상작 발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난 2월 거여지구 아파트 현상설계(안) 공모를 실시하여 총10개 사무소에서 출품한 결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컨설턴트(대표 최두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거여지구 아파트 현상설계에서는 기존의 아파트와는 다른 고밀도 주거단지에 적합한 트윈 코리더(Twin Corridor)의 주거형식이 적용된 것이 특징

이다.

한편, 우수작으로는 예전건축(대표 김상경)안이, 가작으로는 환경건축(대표 정종심)안이 선정되었으며, 당선작인 토문컨설턴트(안)은 1단지, 4단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수작인 예전건축(안)은 5단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각각 맡게 되었다.

이번 현상설계를 마친 거여지구 아파트는 오는 12월 착공, 95년 11월경 입주 예정이다.

한국 고건축 강좌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에서는 우리의 옛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강좌와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정기강좌는 한국건축사를 중심으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부터 4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건축사상사,

건축사학사, 건축경제사, 건축풍속사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강좌는 오는 7월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동안 경북 선산 동호재(東湖齋)에서 수강자들이 직접 한옥에 머물면서 살림집과 마을 이야기를 듣는 현장강의로 구성된다.

강의 내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건축사 정기강좌

5/22 건축사개론

신영훈(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

5/29 목수의 연장과 쓰임

이왕기(목원대 건축과 교수)

6/5 건축의례

김광언(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6/12 조선조 실학건축

김홍식(명지대 건축과 교수)

6/19 조선조 건축조영

김동욱(경기대 건축과 교수)

6/26 우리산, 산줄기

이우형(과우당대표)

7/3 건축의 꾸밈

유문용(문화재전문위원)

7/10 창덕궁 현장강의

황의수(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이사)

7/24, 31 건축사방법론(1), (2)

신영훈

○하계 살림집 특별강좌

7/16 살림집특강(1)및 슬라이드 강의

신영훈

7/17 살림집꾸밈 및 슬라이드 강의

유문용(문화재전문위원)

전통(민속)마을

김홍식(명지대 건축과 교수)

7/18 살림집 특강(2)

신영훈

주거사회사

7/19 안동 봉정사의 답사

이호열(민양산업대 건축과 교수)

※ 참가문의: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사무국
(전화: 547-9757, 544-0959)

건설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

— 건 축 —

공장건축물에 대한 동별 준공규제

규제근거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검사)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대규모공장건축물을 상기에 걸쳐 건설하는 경우에도 전체 건축물이 완공되어야만 사용검사 신청가능(다만, 가사용승인은 가능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별준공을 주택 건설촉진법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 상공자원부가 추진중인 기업경영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에 반영
—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동별사용검사 제도도입

건축물에 대한 지하층 의무설치규제

규제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62조(지하층의 설치)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인구 20만 이상의 시지역과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행정구역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 330㎡(수도권은 200㎡)이상 건축물은 일정면적의 지하층을 설치
— 유사시 대피호로 사용

개선방안 : 건축법시행령 개정
— 공장 및 주택은 지하층설치의무 면제

소규모공장의 허가절차변경

규제근거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9조(건축신고)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서 모든 허가를 받아야 함
— 소형주택 등 일부 소규모건축물은 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하고 있음

개선방안 : 일정구역에서 소규모공장(2층이하, 500㎡이하)은 신고대상에 포함
일정구역 예) 도시계획구역중 공업지역, 도시계획이외구역중 공업지역 및 공업용지지구

중개업자의 업무실적 보고의무

규제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25조(업무실적보고)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중개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개선방안 : 업무실적 보고제도 폐지
— 이유 : 중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경감 및 행정관청의 능률적인 업무집행

건축허가관련 임의규제내용

규제근거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규제내용 및 목적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할때 건축법령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사유로 자체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시키는 사례가 다소 있음
— 주요사례(서울시)
· 건축물의 건축주와 대지주가 다른 경우 건축허가 불허

개선방안 : 지침시달

— 법규에 근거가 없는 허가처리 지침은 일체 폐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점의 면적과다 제한 상공부 요청사항

규제근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제의 부작용 : 유통근대화로 점포가 점차 대형화되는 경향이나 과다한 면적제한으로
—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의 입사가 어렵고 영세화될 초래
— 주위에 환경영향이 적고, 구조상 문제점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화되어 있는 주민생활을 규제함으로써 위법행위 유발

개선방안 : 건축법시행령 개정

— 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의 면적기준을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

총포판매소의 용도 분류규제

규제근거 : 건축법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 분류)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총포판매소는 건축법령상 위험물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동위험물지장 및 처리시설은 공업지역등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허용

개선방안 : 건축법시행령 개정

— 총포판매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등에 허용하고 있음)